

#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빈곤요인 실태조사

노대명 원일 이종아 박은영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제 출 문



## 머리말

우리사회는 지난 10년간 경제사회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해 왔으며, 이는 사회 보장제도의 전반적인 미성숙과 맞물려 소득불평등과 빈곤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험제도가 미성숙한 상황에서 공공부조제도에 더 큰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이는 사후적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조제도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원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지출규모나 보호 대상 측면에서 현재 빈곤층을 지원하는 가장 큰 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하고, 제도가 시행된 지 9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도의 보장성과 건강성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크며, 제도의 취업촉진 및 탈수급 효과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견 이 두 가지 문제는 별개의 문제처럼 인식되고 쉽다. 하지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문제가 선결조건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도확대를 이루지 못하고 일종의 정체상태에 놓이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취업촉진 및 탈수급 실태와 탈수급 의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제도개편을 둘러싸고 가장 큰 논쟁을 야기하고 있는 취업수급자의 탈수급 실태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수급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비교집단으로 탈수급자에 대한 실태 또한 살펴보고 있다. 즉, 동일지역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터 탈출한 집단을 분석함으로써 취업수급자의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실태 또한 분석하고 있다. 그것은 기존 연구결과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 의지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취업수급자와 비교할 때, 어떠한 양태를 나타내는지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노대명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김경휘 교수, 원인 연구원, 박은영 연구원, 이종아 연구원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취업수급자 및 탈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코리아리서치를 통해 수행되었다. 이 기회에 제한된 조사기간 중에 성실하게 조사를 수행해 준 코리아리서치 담당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연구보고서에 대한 조언을 주신 김태완 부연구위원과 이태진 부연구위원에게도 감사드린다. 본 연구에 들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능력 탓이다.

본 보고서가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건강성을 강화하고 탈수급을 촉진하는 정책에 필요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9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 목 차

요약 .....	1
<b>제1장 서론 .....</b>	<b>13</b>
제1절 연구목적 .....	15
제2절 연구방법 .....	17
제3절 연구의 한계 .....	19
<b>제2장 탈수급에 대한 이론적 검토 .....</b>	<b>21</b>
제1절 문제제기 .....	23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세 가지 과제 .....	23
제3절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	27
제4절 탈수급의 경로와 결정요인 .....	29
<b>제3장 기초보장제도 수급 빈곤층과 비수급 빈곤층의 특성 비교 .....</b>	<b>33</b>
제1절 문제제기 .....	35
제2절 빈곤율 및 취업빈곤율에 대한 기초분석 .....	36
제3절 취업수급자와 비수급빈곤층의 특성 비교 .....	42
제4절 취업 및 빈곤결정요인 비교분석 .....	49
제5절 소결 .....	57

<b>제4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탈수급자의 특성 비교와 시사점</b> .....	61
제1절 문제제기 .....	63
제2절 조사표본의 특성 .....	64
제3절 인구학적 특성의 비교 .....	66
제4절 가구특성의 비교 .....	73
제5절 소득 및 지출특성의 비교 .....	78
제6절 취업특성의 비교 .....	85
제7절 복지제도 수급실태 비교 .....	103
제8절 탈수급에 대한 인식과 실태 .....	133
<b>제5장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탈수급 결정요인 분석결과</b> .....	141
제1절 문제제기 .....	143
제2절 전체 가구의 탈수급 결정요인 .....	144
제3절 집단별 탈수급 결정요인 .....	148
제4절 소결 .....	158
<b>제6장 자활사업 참여자 분석결과</b> .....	159
제1절 문제제기 .....	161
제 2절 조사표본의 특성 .....	162
제 3절 인구학적 특성 .....	164
제 4절 가구특성의 비교 .....	167
제 5절 소득 및 지출특성의 비교 .....	170
제 6절 취업특성의 비교 .....	178
제 7절 복지제도 수급실태 비교 .....	193
제 8절 탈수급에 대한 인식과 실태 : 탈수급 전망과 장애요인 .....	205

<b>제7장 기초보장수급자의 탈수급 의지</b> .....	211
제1 문제제기 .....	213
제2절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	214
제3절 기초현황 .....	216
제4절 탈수급의지 결정요인 분석결과 .....	220
제5절 시사점 .....	224
<b>제8장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탈수급 촉진방안</b> .....	225
제1절 문제제기 .....	227
제2절 탈수급 지원정책의 주요 대상 .....	228
제3절 탈수급 지원정책의 개편방안 .....	236
제4절 소결 .....	248
<b>제9장 결론 및 정책제안</b> .....	251
제1절 연구결과의 함의 .....	253
제2절 주요 정책제안 .....	256

## 그림목차

[그림 2-1] 상대빈곤율과 수급자 규모의 추이 .....	2
[그림 2-2] 차상위계층의 추정 규모(2006년 기준) .....	52
[그림 2-3] 빈곤층 및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개편방향 .....	7
[그림 2-4] 빈곤진입 및 빈곤탈출의 메커니즘 .....	8
[그림 2-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탈수급 경로 .....	3
[그림 3-1] 한국복지패널에 따른 빈곤율 추이 .....	9
[그림 3-2] 취업빈곤층의 추정 규모(2008년 기준) .....	04
[그림 3-3] 취업수급가구와 비수급 취업빈곤가구의 지출비교 .....	7
[그림 4-1] 평균 가구원 수 및 취업자 수 .....	7
[그림 8-1] 자립촉진지원제도의 기본구조 .....	21
[그림 8-2] 자립촉진지원제도의 전달체계 및 업무의 흐름도 .....	24

## 표 목차

<표 3-1> 2008년 소득유형별·빈곤수준별 상대빈곤율 .....	63
<표 3-2> 2008년 빈곤수준별 절대빈곤율 .....	73
<표 3-3> 한국복지패널에 따른 빈곤율 추이 .....	8
<표 3-4> 2008년 취업빈곤층 규모(상대빈곤선 기준) .....	04
<표 3-5> 2008년 취업빈곤층 규모(절대빈곤선 기준) .....	04
<표 3-6> 주요 모형에 따른 취업빈곤층 규모 추정 .....	4
<표 3-7> 주요 모형에 따른 취업빈곤층 규모 추정 .....	2
<표 3-8> 취업수급자와 비수급 취업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 비교 .....	4
<표 3-9> 취업수급자와 비수급 취업빈곤층의 가구특성 비교 .....	5
<표 3-10> 취업수급가구와 비수급 취업빈곤가구의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 비교 .....	6

<표 3-11> 취업수급가구와 비수급 취업빈곤가구의 지출 비교 .....	4
<표 3-12> 취업수급자와 비수급 취업빈곤층의 취업특성 비교 .....	8
<표 3-13> 수급에서 탈수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9
<표 3-14> 비수급에서 수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9
<표 3-15> 실업에서 취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9
<표 3-16> 취업에서 실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9
<표 4-1> 조사대상자 지역별 분포 .....	6
<표 4-2> 조사대상자 성별 및 연령 분포 .....	6
<표 4-3> 가구주 성별 .....	6
<표 4-4> 가구주 및 전체 가구원 연령 .....	7
<표 4-5> 가구주의 연령별 성분포 .....	8
<표 4-6> 가구주의 연령별 혼인상태 .....	8
<표 4-7> 가구주 및 가구원 교육수준 .....	10
<표 4-8> 가구주 및 가구원 장애보유 현황 .....	11
<표 4-9> 가구주 주관적 건강상태 .....	12
<표 4-10> 가구주 만성질환여부 .....	12
<표 4-11> 가구규모의 비교 .....	13
<표 4-12> 평균 가구원 수 및 취업자 수 .....	14
<표 4-13> 수급 및 탈수급가구의 취업자 수 분포 .....	15
<표 4-14> 취업자 및 실업자의 구성형태별 분포 .....	15
<표 4-15> 가구원 구성유형 및 가구주 혼인상태 .....	17
<표 4-16> 요보호 가구원 유무 .....	17
<표 4-17> 주거현황 .....	18
<표 4-18>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의 소득 비교 .....	19
<표 4-19>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의 지출 비교 .....	19

<표 4-20> 가계소득 및 부채비율 .....	8
<표 4-21> 가구별 경상소득과 공공부조전 경상소득의 비교 .....	8
<표 4-22> 수급가구와 탈수급 가구의 개인소득 비교 .....	8
<표 4-23> 임금근로자의 연령별 평균 개인근로소득 비교 .....	8
<표 4-24> 금융채무불이행(신용불량) 현황 .....	8
<표 4-25> 수급가구와 탈수급 가구의 재산 비교 .....	8
<표 4-26> 수급가구와 탈수급 가구의 재산 비교(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8
<표 4-27> 가구주 경제활동상태(2009년 8월 기준) .....	68
<표 4-28> 가구주 취업 업종 : 현재 업종과 최초 일자리 업종 비교 .....	8
<표 4-29> 가구주 취업 직종 : 현재 직종과 최초 일자리 직종 비교 .....	8
<표 4-30> 가구주 최초 일자리 근로기간 .....	9
<표 4-31> 가구주의 현재 일자리 근로기간 .....	9
<표 4-32> 가구주의 2008년 취업기간 .....	09
<표 4-33> 가구주의 지난 6개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	9
<표 4-34>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9
<표 4-35> 일자리의 규칙성 여부 .....	9
<표 4-36> 사업장 규모 .....	9
<표 4-37>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비율 .....	9
<표 4-38> 현재 일자리 취업계기 .....	9
<표 4-39> 이직 또는 창업희망 여부 .....	9
<표 4-40> 사업시작 계기 .....	9
<표 4-41> 현재 사업(일)에서 어려운 점 .....	9
<표 4-42> 취업 또는 업종변경 희망 여부 .....	9
<표 4-43> 이직 또는 취업 희망 이유(1순위/복수응답) .....	89
<표 4-44> 이직 또는 취업 준비경험 및 준비방법(복수응답) .....	9

<표 4-45> 창업 또는 업종변경 희망 이유(1순위/복수응답) .....	0
<표 4-46> 창업 또는 업종변경 어려움(1순위/복수응답) .....	0
<표 4-47> 창업 준비경험 및 준비방법(복수응답) .....	10
<표 4-48> 가구원 경제활동상태 .....	10
<표 4-49> 가구원 취업 직종 .....	12
<표 4-50> 가구원 비경제활동사유 .....	12
<표 4-51> 사회보험 가입률의 비교(현재) .....	13
<표 4-52> 현재 사회보험 가입여부 .....	14
<표 4-53> 수급전 사회보험 가입여부 .....	15
<표 4-54>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경험 .....	17
<표 4-55> 아동·청소년 시절의 경험 .....	19
<표 4-56> 현재생활과 아동·청소년 시절과 비교했을 때의 변화 .....	10
<표 4-57>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 중 복지제도별 지원중단 경험 비율 .....	111
<표 4-58> 주거 - 영구임대 아파트 신청 .....	12
<표 4-59> 영유아 - 보육료 지원 .....	13
<표 4-60> 아동/청소년 - 인터넷 수능방송, 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 신입생 교복 지원, 방과후 공부방 .....	14
<표 4-61> 장애인 - 장애수당 .....	15
<표 4-62> 기타 복지제도 수급경험 .....	16
<표 4-63> 미취학자녀 .....	10
<표 4-64> 여성가구주 가구의 미취학자녀유무 .....	12
<표 4-65>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제활동상태 .....	12
<표 4-66> 취학자녀 .....	14
<표 4-67> 여성가구주 가구의 취학자녀유무 .....	16
<표 4-68> 취학자녀가 있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제활동상태 .....	16

<표 4-69> 간병 필요 가구원 .....	127
<표 4-70> 여성가구주 가구의 간병가구원 유무 .....	129
<표 4-71> 간병가구원이 있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제활동상태 .....	130
<표 4-72> 수급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실태 .....	131
<표 4-73> 수급가구의 탈수급 전망과 탈수급가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	133
<표 4-74> 수급가구의 탈수급 전망과 탈수급가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	134
<표 4-75> 수급자의 탈수급 및 재수급 실태 .....	136
<표 4-76> 탈수급 가구의 탈수급 사유 .....	139
<표 5-1> 탈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전체가구주 .....	147
<표 5-2> 배우자의 건강상태 .....	148
<표 5-3> 가구주 성별 탈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남성 .....	149
<표 5-4> 가구주 성별 탈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여성 .....	150
<표 5-5> 가구주 연령별 탈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30대 .....	152
<표 5-6> 가구주 연령별 탈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40대 .....	153
<표 5-7> 가구주 연령별 탈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50대 .....	154
<표 5-8> 수급기간별 탈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단기수급(3년이하) .....	156
<표 5-9> 수급기간별 탈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장기수급(4년이상) .....	157
<표 5-10> 미취학자녀 및 취학자녀에 의한 취업활동 어려움 .....	158
<표 6-1> 자활사업 참여자(가구주)의 성별 .....	163
<표 6-2> 자활사업 참여자(가구주)의 지역별·성별 분포 .....	163
<표 6-3> 자활사업 참여자(가구주)의 성별 .....	164
<표 6-4> 자활사업 참여자(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65
<표 6-5> 자활사업 참여자의 장애·만성질환·주관적 건강상태 .....	166
<표 6-6>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구특성 .....	168
<표 6-7>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구특성(계속) .....	169

<표 6-8>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의 돌봄 가족 유무	169
<표 6-9> 자활사업 참여 가구의 소득비교	170
<표 6-10> 사업유형별 자활사업 참여자 개인의 소득 비교	171
<표 6-11>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의 지출 비교	172
<표 6-12>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계소득 및 부채비율	172
<표 6-13> 생활비 부족시 이용방법	173
<표 6-14> 자활사업 참여자의 늘리고 싶은 지출 항목	173
<표 6-15>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	174
<표 6-16> 수급형태별 자활사업 참여 가구의 재산 비교	175
<표 6-17> 사업유형별 자활사업 참여 가구의 재산 비교	175
<표 6-18> 자활사업 참여자의 금융채무불이행(신용불량) 현황	176
<표 6-19> 자활사업 참여자의 저축 현황	177
<표 6-20> 자활사업참여 일자리 특성(현재)	179
<표 6-21>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성별 만족도	182
<표 6-22>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사업 참여별 만족도	183
<표 6-23>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성별 인식	184
<표 6-24>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사업유형별 인식	184
<표 6-25>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으로 배치되기 전 받았던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185
<표 6-26>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으로 배치되기 전 받았던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185
<표 6-27> 자활사업 참여 역사 - 과거부터 현재까지(2008년 12월 기준)	186
<표 6-28> 자활사업 참여기간별 참여횟수	188
<표 6-29> 향후 취업 창업 희망 여부	189
<표 6-30> 향후 취업 창업 희망 여부	189
<표 6-31> 자활참여기간에 따른 취업 창업 희망 여부	190
<표 6-32>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191
<표 6-33>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192

<표 6-34> 취업 혹은 창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	138
<표 6-35>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대보험 가입현황 .....	194
<표 6-36>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초보장제도 수급 신청 이유 .....	195
<표 6-37>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초보장제도 수급경험 .....	196
<표 6-38> 자활사업 참여자의 아동·청소년 시절의 경험 .....	197
<표 6-39> 자활 사업 참여자의 현재생활과 아동·청소년 시절과 비교했을 때의 변화 .....	197
<표 6-40>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타복지제도 수급 중단자 비율 .....	198
<표 6-41>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타복지제도 수급경험 .....	199
<표 6-42>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타복지제도 수급경험 .....	200
<표 6-43>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타복지제도 수급경험 .....	201
<표 6-44>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의 요보호 가구원 - 미취학 자녀 .....	202
<표 6-45>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의 요보호 가구원 - 취학 자녀 .....	202
<표 6-46>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의 요보호 가구원 - 간병 가구원 .....	203
<표 6-47> 수급가구의 수급 실태 .....	204
<표 6-48> 수급계층과 차상위계층 및 기타일반계층의 탈수급 전망에 대한 인식 비교 .....	205
<표 6-49> 수급계층과 차상위계층 및 기타일반계층의 탈수급 전망에 대한 인식 .....	206
<표 6-50> 수급계층과 차상위계층 및 기타일반계층의 탈수급 전망에 대한 인식 .....	207
<표 6-51> 일반수급, 조건부 수급, 특례수급 대상자의 탈수급에 대한 인식 .....	208
<표 6-52> 차상위계층 및 기타 일반계층의 탈수급 특성 .....	209
<표 7-1> 분석대상 표본의 구성 .....	216
<표 7-2> 분석대상집단의 지역 및 가구특성 .....	217
<표 7-3> 분석대상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218
<표 7-4> 분석대상집단의 취업 관련 특성 .....	219
<표 7-5> 분석대상집단의 생애최초 취업에 관한 특성 .....	220
<표 7-6> 분석에 투입된 범주형 변수의 코딩과 분포(1) .....	221
<표 7-7> 탈수급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	223
<표 8-1> 면접조사대상의 특성 .....	228
<표 8-2> 수급자 특성에 따른 지원정책의 패키지화 방안 .....	245

## 부표목차

〈부표 1〉 감면	265
〈부표 2〉 주거	267
〈부표 3〉 융자	268
〈부표 4〉 영유아	269
〈부표 5〉 아동/청소년	270
〈부표 6〉 노인복지	271
〈부표 7〉 취업	272
〈부표 8〉 장애인	273
〈부표 9〉 한시생계비 지원	275
〈부표 10〉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성별 만족도	276
〈부표 11〉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사업 참여별 만족도	278
〈부표 12〉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성별 인식	280
〈부표 13〉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대보험 가입현황(현재)	282
〈부표 14〉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대보험 가입현황(수급전)	283
〈부표 15〉 감면	284
〈부표 16〉 주거	286
〈부표 17〉 융자	287
〈부표 18〉 영유아	288
〈부표 19〉 아동/청소년	289
〈부표 20〉 노인복지	290
〈부표 21〉 취업	292
〈부표 22〉 장애인	293
〈부표 23〉 한시 생계비 지원	295
〈부표 24〉 미취학자녀	296
〈부표 25〉 취학자녀	298
〈부표 26〉 간병 필요 가구원	300



# 요약

## I. 서론

### 1. 연구 목적

- 시행 9년이 지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속적으로 근로빈곤층의 취업과 탈수급을 촉진하는 기능이 취약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왔음.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그 원인을 진단한 연구는 거의 없음.
-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취업자의 탈수급 실태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취업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의 탈수급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음.
  - 그 원인을 포착함에 있어 <노동시장 요인, 개인 및 가구요인, 복지제도 요인>이라는 세가지 관점에 주목함.
  - 탈수급 저해요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수급자를 <비수급 빈곤층·탈수급자·자활사업 참여자>와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 2.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착하고, 이를 토대로 탈수급 분

석모형을 구축하였음.

- 실증분석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업수급자들의 취업 및 탈수급을 저해하는 요인을 포착하고, 이를 비수급빈곤층, 탈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와 비교하여 분석함.
- 실증분석을 위해 기존 데이터(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 활용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업수급자, 탈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취업수급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

### 3. 연구의 한계

- 연구 진행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 현황에 대한 정보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임.
- 탈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는 표본추출과 조사 진행 과정상의 문제로 그 분석 결과를 모수추정 근거자료로 사용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

## II. 탈수급에 대한 이론적 검토

- 기초보장제도의 당면문제를 살펴보면,
  - 첫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3년 이후 빈곤문제 심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둘째, 정태적 관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법적인 의미와 통념적 의미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특히 법적 의미의 사각지대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움.
  - 셋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탈수급 또는 탈빈곤의 효과가 크지 않음.
    - 기초보장제도가 탈수급이나 탈빈곤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음. 더 심각한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탈수급 효과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매우 취약한 실정

이라는 것임.

- 기초보장제도의 탈수급 경로를 설명하기 앞서 <빈곤진입 및 빈곤탈출>의 경로 모형을 보면 다음과 같음. 이때 탈수급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탈빈곤을 의미하진 않음.
  - 빈곤진입 및 빈곤탈출 경로에서 소득의 증가 및 감소가 지출의 증가 및 감소와 어떠한 조합을 이루는가에 따라 빈곤 탈출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임.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탈수급은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탈수급 외에도 재산기준이나 행정기준 변화에 따른 탈수급이 존재함.
    - 가구 소득 증가는 취업상태 변화(취업 진입)나 근로소득 증가에 기인하는 좁은 의미의 <탈수급 I>, 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그리고 특례기준 적용에 따른 경우를 <탈수급 II>로 정의.
    - 행정적으로 새로운 소득이나 재산 발견으로 수급자격 상실의 경우는 탈수급 보다는 수급자격 상실 또는 수급탈락으로 규정할 수 있음.

### III. 기초보장제도 수급 빈곤층과 비수급 빈곤층의 특성 비교

- 취업수급자와 비수급빈곤층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임.
- 기초보장 수급자의 탈수급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 가구원수 변화, 공적이전 소득변화, 의료지원경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경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경험, 전세 자금대출 경험, 지역 요인이 기초보장 수급자의 탈수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보장수급 결정요인 분석결과, 연령, 사적이전소득, 생계비지원제도,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요인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의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건강상태, 장애, 가구형태, 지역, 균등화된 가구구분, 직장알선경험, 직업훈련경험,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가입여부, 사업장 규모가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 취업자의 실직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학력, 건강상태, 장애, 가구형태, 지역, 균등화가구구분, 주거점유형태, 구직알선경험, 직업훈련경험, 인터넷 사용여부, 근로능력,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가입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IV.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탈수급자의 특성 비교와 시사점

- 본 연구에서 조사된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 수급 및 탈수급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음.

- 조사된 표본은 총 1015개로, 수급가구 813개, 탈수급 가구 202개임. 가구주 면접을 통해 조사된 가구원 수는 총 3,271개임.
- 대도시 491개, 중소도시 307개, 농어촌 217개임.

##### □ 개인 특성

- 성별의 경우,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가구주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빈곤이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탈수급 가구의 가구주의 연령 분포는 40대(40.3%), 50대(22.9%), 20대(19.9%) 순으로 나타남. 이는 40대~50대 가구주가 탈수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20대 미만의 경우 탈수급 가구에 주목해야 함.
- 혼인상태를 보면, 이혼(39.7%), 사별(14.9%), 미혼(5.3%)의 순으로 나타남.
  - 탈수급 가구의 탈수급률은 40대와 50대 가구주의 경우 이혼, 유배우, 사별 순임. 연령집단 및 혼인상태별로 보면 40대와 50대 가구주 중 사별한 가구주의 탈수급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 이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탈수급 가구의 경우 수급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초대졸 이상이 더 많은 분포를 보임.
- 장애 특성을 보면, 탈수급 가구의 비장애인 비율이 수급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중증장애인 비율이 낮으나 수치는 큰 차이가 없음.

- 주관적 건강상태는 탈수급 가구의 가구주가 수급 가구 가구주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 특성

- 탈수급 가구는 수급가구에 비해 단독가구와 2인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탈수급 가구주의 미혼 비율이 기본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며 유배우자의 비율은 수급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수급가구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가 탈수급 가구에 비해 3배 정도 많음.

□ 소득 및 지출특성 비교

- 가구소득을 보면 탈수급 가구가 평균 1,271만원으로 수급 가구 1,164만원보다 107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9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탈수급에 이르는 주된 경로는 소득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가계지출은 탈수급 가구의 가계지출이 101만원으로 수급가구의 97만원보다 약 4만원 가량 높으며 두 가구의 지출 비중은 비슷함.

□ 취업 특성

-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에서 수급 가구에 비해 탈수급 가구의 경우 상용임금자의 비율이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며, 자영업자와 전업주부의 비율은 낮게 나타남.
- 종사업종을 보면, 숙박음식점업→사업서비스업→도소매업→개인공공서비스업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나 사업서비스업에서의 탈수급 확률이 가장 높음.
- 직종을 보면, 단순노무종사자→서비스종사자→사무종사자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나, 직종별 탈수급 확률은 사무종사자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개인의 근로시간을 보면 탈수급 가구의 경우 31시간 이상 근로하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 복지제도 수급 실태

- 사회보험 가입률은 수급가구에 비해 탈수급 가구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적게는 3배에서 4배까지 높게 나타남.
  - 이는 탈수급 가구의 노동시장진입이 상대적으로 사회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함.
- 기초보장생활제도 수급 경험을 살펴보면, 가장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이혼·사별로 인한 소득 감소로 나타남.
- 과거의 빈곤 경험이 현재의 빈곤상태를 더 고통스럽게 인식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탈수급 가구가 수급 탈출 후 각종 현물 및 현금 급여 중단이 가구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탈수급 의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가구의 지출부담이 큰 항목을 중심으로 탈수급 후 지속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탈수급 가구는 미취학 자녀, 취학자녀, 간병 가구원 수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수가 적으며, 이들을 돌보는 것 때문에 취업활동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경제활동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 탈수급에 대한 인식과 실태

- 수급가구의 탈수급 및 재수급 실태를 보면, 탈수급 경험한 가구는 매우 적으며(4.8%), 그 원인으로 소득증가와 행정상의 이유가 높게 나타남. 이들은 향후 탈수급 희망 여부에 대해 다수가 탈수급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탈수급 가구가 수급 탈출을 하게 된 주요 요인은 소득 증가와 행정상의 이유 때문임.
- 두 집단 모두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 V.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탈수급 결정요인 분석결과

□ 탈수급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체 가구주를 대상으로 수급가구의 탈수급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 개인특성(성, 연령, 혼인상태, 장애여부), 가구특성(미취학 자녀 유무, 취학자녀 유무, 간병필요가구원 유무, 주거유형), 경제적 특성(경제활동 상태, 금융채무경험여부)이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각 집단별(가구주의 성별, 연령별, 수급기간별) 탈수급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의 자녀보육부담과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가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가구지출을 변화시키는 자녀보육 및 교육관련 변수는 전체 조사대상 및 각 집단별 분석에서 유의미하게 도출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VI. 자활사업 참여자 분석결과

□ 본 연구에서 조사된 자활조사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음.

- 조사된 표본은 총 158가구로, 가구주 면접을 통해 조사된 가구원 수는 총 465개임.
- 대도시 69가구, 중소도시 64가구, 농어촌 33가구임.

□ 인구학적 특성

- 성별은 여성(70.2%)의 참여가 남성(29.8%)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은 40대, 50대, 30대위 순으로 나타남.
- 혼인상태는 남성은 유배우, 이혼 순으로 나타나며, 여성은 이혼, 유배우 순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대부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 보유현황은 모두 경증으로 남성에서만 나타나며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남성(2.65)이 여성(2.88)보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 가구 특성

- 분석대상을 가구주로 통제했을 경우 각각 부자기구와 모자기구의 비중이 높으며, 여성 가구주는 남성가구주에 비해 일반가구의 비율이 낮음.
  - 이는 자활참여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가족해체 등의 경험 비율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임
- 기초보장수급형태를 보면, 조건부 수급이 가장 높으며 차상위계층 및 일반계층, 일반수급, 특례수급의 순으로 나타남.
- 거주실태를 보면 남성 자활참여자는 보증금 있는 월세, 자가, 전세 순이며, 여성은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무상거주, 보증금 없는 월세 순으로 나타남.
- 가구 내 요보호 아동이 있는 경우 남성 가구에는 미취학 자녀(12.2%), 간병가구원(4.4%)이 더 많았으며, 취학 자녀는 여성가구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소득 및 지출 특성 비교

- 총소득은 남성가구가 913만원으로 여성(808만원) 가구보다 약 105만원 가량 많으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87%), 여성(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월 지출액은 남성 가구 총 92만원, 여성가구 96만원으로 소득보다 지출이 많으며, 연소득대비 부채비율은 특히 여성(304%)이 남성(151%)보다 막대한 것으로 나타남.

#### □ 취업 특성 비교

- 자활사업 참여비율은 남성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순이며, 여성은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비중이 67.2%로 높게 나타남.

- 여성이 사회적 일자리 자활 근로 비중이 높은 것은 건강상태, 취업경험, 가구여건 등에 따른 선택으로 볼 수 있음.

□ 복지제도 수급실태 비교

- 4대 보험 가입률을 보면 여성의 경우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수급전보다 현재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으며, 남성은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장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신청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여성 자활 참여자는 이혼·사별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37.4%), 남성가구주는 가구 원 양육, 간병(24.4%)를 주요 요인으로 꼽음.

□ 탈수급에 대한 인식과 실태 : 탈수급 전망과 장애요인

- 일반·조건부·특례 수급 가구의 탈수급 및 재수급 실태를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난 경험은 조건부 수급 가구(5.3%)에서만 나타나며, 그 사유는 재산 증가(50.0%)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차상위계층 및 기타일반계층의 수급 기간 중의 경험을 물어본 결과, 수급 탈출의 사유로 소득증가(41.9%)와 행정상의 이유(22.9%)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두 집단 모두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Ⅶ. 기초보장수급자의 탈수급 의지**

-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중 취업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지역의 경제 환경, 자녀유무와 가구주의 연령과 교육수준으로 나타남.
- 자활사업 참여자에 비해 취업수급자의 탈수급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취업 수급자의 노동시장 경험 및 개인특성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수

급지위가 탈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개연성을 또한 시사하는 것임.

### VIII. 기초보장생활제도 수급자의 탈수급 촉진방안

- 비수급 빈곤층과 비교 분석 결과, 탈수급의 가능성이 높은 가구주의 연령대는 50대 이하로, 이들의 건강상태는 취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지 않아야 하며, 저임금 상황에서 필요한 중요한 지출을 보전하는 기타 복지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음.
-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탈수급을 유도하는 정책은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특성화되어야 함
  - 둘째,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의 탈수급은 가구 내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탈수급 확률이 낮기 때문에 보육 및 교육서비스가 강화되고, 이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취업촉진정책이 필요함
  - 셋째, 수급기간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 탈수급 지원 정책의 전제 조건
  - 첫째,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단순히 기초보장제도를 확대나 제재 강화를 넘어 공공부조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을 고려해야 함.
  - 둘째,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한 탈수급 전략이 필요함
- 탈수급 지원정책의 개편 방안
  - 첫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초보장제도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편이 필요함
  - 둘째,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약을 비롯한 대상선정 및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함
  - 셋째, 탈수급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 및 유형화를 위한 사례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함

## IX. 결론 및 정책방안

### 1. 연구결과 함의

- 첫째, 기초보장제도로의 진입과정에서 급격한 몰락을 경험하는 집단에 주목해야 함
- 둘째, 기초생활제도 진입요인 분석결과 최근 30대 인구집단의 빈곤화 문제에 주목해야 함
- 셋째,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적 요인이 갖는 의미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함
- 넷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될 때 탈수급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점 지적
- 다섯째,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수급자들이 탈수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이들의 능력과 여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들에게 미치는 점이 어떠한지 말해줌
- 여섯째, 탈수급 가구에 대한 후속지원이 매우 중요함

### 2. 주요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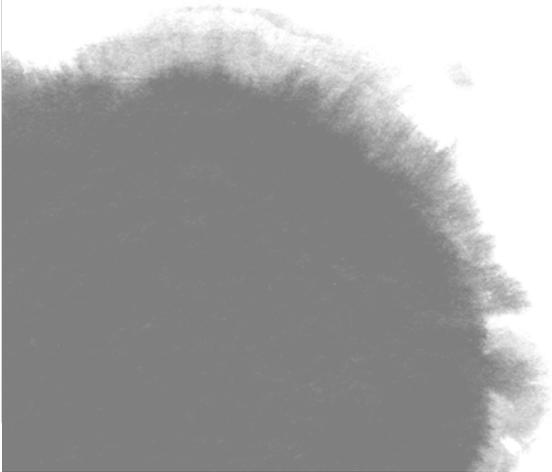
- 첫째, 탈수급 정책이 매우 다양한 경로와 지원방식을 전제해야 함
- 둘째,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의 탈수급을 축지나히 위해 기타복지제도를 확대하고 <교육, 주거, 의료급여>를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함
- 셋째, 탈수급을 축진하기 위해서 기타 복지제도의 수급대상 선정을 용이하게 하는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함
- 넷째,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탈수급을 축진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와 취업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함
- 다섯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 실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강화해야 함



01

K  
I  
H  
S  
A

서론





## 제1 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취업자의 탈수급 실태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행 9년이 지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속적으로 근로빈곤층의 취업과 탈수급을 촉진하는 기능이 취약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왔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그 원인을 진단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성과 중 탈수급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거의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간 수 조원의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정책평가와 관련해서 중요한 연구의 사각지대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취업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의 탈수급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원인을 포착함에 있어 <노동시장 요인, 개인 및 가구 요인, 복지제도 요인>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 주목하고 있다. <노동시장 요인>은 실업, 저임금, 고용불안이 취업수급자의 근로소득 증가 및 탈수급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며, <개인 및 가구 요인>은 취업수급자의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과 직업경험 등이 취업상태와 근로소득 그리고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며, <복지제도 요인>은 취업수급자의 근로노력과 탈수급 선택에 복지제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지위가 취업과 탈수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탈수급 저해요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수급자를 <비수급 빈곤층·탈수급자·자활사업 참여자>와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sup>1)</sup> 이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수급자를 다른 집단과 비교하는 이유는 이들 집단 모두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집단은 복지제도 안에, 다른 집단은 복지제도 밖에 머무르고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분석집단과 비교집단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수급 취업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칭하며, 탈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를 의미하며, 자활사업 참여자는 <적극적 탈빈곤정책의 효과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포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 또는 질문 군(群)을 통해 논의를 전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취업빈곤층과 비수급 취업빈곤층은 <개인특성·가구특성·취업특성> 상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만일 두 집단의 특성에 큰 차이가 있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선별이 나름대로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예산상의 이유인지, 아니면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혹 때문인지가 그것이다.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수급자와 탈수급자(수급경험자)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주제이자,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사항이다. 이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취업수급자와 탈수급자 사이에는 <개인특성·가구특성·취업특성>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특정한 조건과 특성을 가진 수급자가 탈수급을 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집단이 누구인지 포착하는데 논의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전담공무원과 수급자의 합의도출이 용이한 조건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탈수급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자녀성장을 통한 탈수급이라는 전통적 경로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수급자들이 당대에 근로소득 증가로 탈수급하기 힘들다는 점, 자녀가 고등교육과정을 마치면 탈수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전담

1) 물론 탈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조사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며,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위험성 또한 크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 또한 향후의 심층연구를 위한 소중한 경험으로 인식하고,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공무원과 수급자간의 합의도출이 용이하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물론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근로능력 수급자의 취업상태와 소득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미취업 수급자 대상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취업 및 탈수급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낮은 자활성공율은 반복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리고 그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들이 생각하는 탈수급 전망과 장애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자활사업의 개편이 누구의 관점에서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 일종의 균형 잡힌 접근을 시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기존의 평가가 타당한 것인지를 검증하고, 만일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편논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정책성과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며, 그것이 개편방안을 선택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는 현 교착상태를 푸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율이 낮지 않다는 주장과 탈수급율이 낮다는 주장이 객관적 논거없이 갈등하는 상황을 해소하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 제2절 연구방법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분석방법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탈수급 현황, 탈수급 성공요인 및 장애요인 등을 살펴보고 있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착하고, 이를 토대로 탈수급 분석모형을 구축하였다. 여기서 탈수급은 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의 이탈 중 근로소득 증가로 인한 이탈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그것이 자발

적인 경우 외에도, 비자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탈수급에 이르는 주된 경로는 소득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며, 그것은 주로 근로소득 증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문제는 근로소득 증가의 원인이 매우 다층적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가구원의 취업상태 변화를 통해 가능할 뿐 아니라, 가구규모의 변화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취업상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근로소득 증가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요인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업수급자들의 취업 및 탈수급을 저해하는 요인을 포착하고, 이를 비수급빈곤층, 탈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와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대부분의 주요한 시사점은 대상집단을 구분한 단순한 기술통계를 통해 도출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이 두 집단을 구분한 데이터 자체가 취약한 상황에서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단순한 기술통계로 설명하기 힘든 주제에 대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이나 로지스틱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것은 취업수급자와 탈수급자를 대상으로 탈수급 결정요인을 포착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특히 비수급 근로빈곤층과의 비교분석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생산하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3차 년도의 데이터가 발표되어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비교분석, 취업상태 변화에 따른 수급지위변동 등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 외에도 새롭게 실태조사를 시도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이는 본 연구주제에 맞는 적절한 데이터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기존에 발표된 제반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분석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취업수급자를 가진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았다. 더욱이 질문문항 또한 일반적인 분석목적에 맞게 설계되어 활용이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업수급자와 탈수급자<sup>2)</sup>,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자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취업수급자와 탈

2) 참고로 조사표를 작성한 이후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모형을 수정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자문회의에서는 주로 취업수급자와 탈수급자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연구진은 이 의견을 수렴하여 탈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결정하였다.

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2009년 9월 15일부터 한 달간 전문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의 면접조사원들에 의해 실시하였다. 조사에 활용된 표본은 복지행정전산망을 통해 추출한 조사대상 리스트에서 층화표본 추출방식에 따라 선정하였다. 이어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행정구역별 지역자활지원센터 실무자들에 의해 실시되었다.<sup>3)</sup>

끝으로 취업수급자에 대한 보다 생동감 있는 이해를 위해 연구자들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것은 실태조사에 앞선 예비조사 및 현장방문을 통한 면접조사 등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이는 양적 데이터가 <문제의 종합적 재구성> 측면에서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었을 뿐 아니라, 취업수급자들의 입을 통해 어떠한 문제가 중요한가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를 얻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는 실증분석을 위한 분석모형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 제3절 연구의 한계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수급자의 탈수급 실태에 대한 연구는 연구의 설계, 실태조사, 분석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추가적인 시간을 투입해야 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 중 일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 이는 연구기간 자체가 주는 제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다른 일부의 문제는 이 연구 자체가 갖는 한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먼저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자 현황에 대한 정보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자 규모와 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탈수급율을 보다 다양하게 추정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취업수급자 및 탈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와 타당성을 비교 검증하는 것 자체도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본 실태조사가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수급자 비중을 고려하여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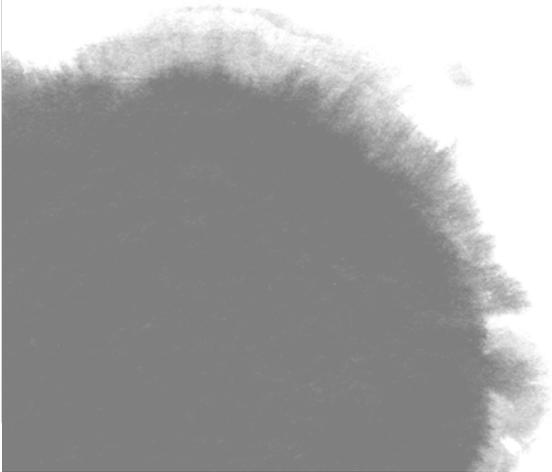
3) 이 기회를 빌어, 많은 업무부담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애써주신 지역자활지원센터 실무자분들께 그리고 시간을 할애하여 길고 복잡한 설문지를 작성해 주신 자활사업 참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사표본을 추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데이터를 토대로 추출된 정보에 근접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어 이 연구에서 탈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갖는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실태조사에서 탈수급자는 표본추출과 조사진행 과정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조사표본을 추출함에 있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으로 국한해야 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복지자원망에 연결되어 있는 집단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이 집단은 접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응답거부율이 매우 높다는 특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조사표본 설계과정에서 제시된 할당율을 지키기 힘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분석에서 활용하고 있는 실태조사 자료는 그 분석결과를 모수추정의 근거자료로 사용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것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각각의 수치가 취업수급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탈수급자의 규모를 추정하기는 더욱 힘들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갖는 탈수급율은 복지행정전산망을 토대로 추정한 탈수급율임을 밝혀둔다.

탈수금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제2장 탈수급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제1절 문제제기

우리사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은 빈곤층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소득보장 제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 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하나의 사회권으로 정립하였으며,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 10년, 시행 9년을 맞는 현재 상황에서 제도의 효과성 또는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어떠한 의견이 개진되어 왔으며, 어떠한 문제의식에 따라 분석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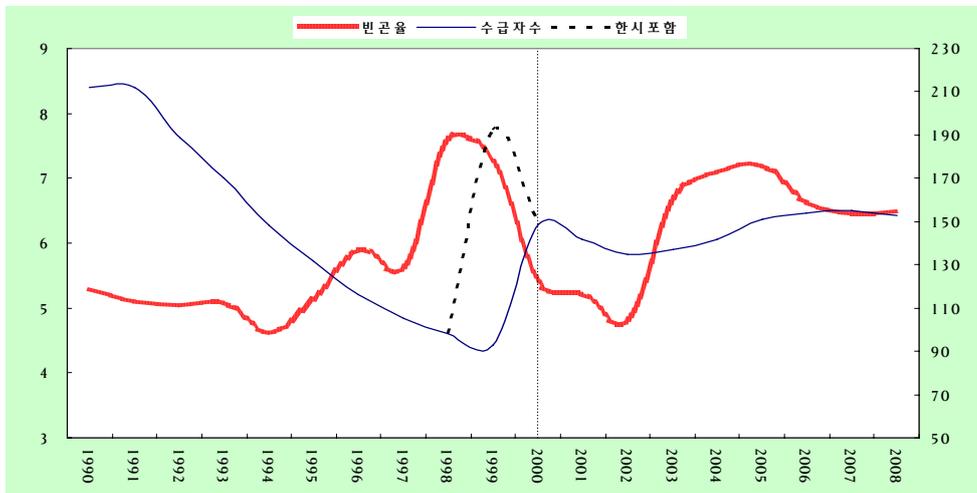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직면한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것은 경제성장과 빈곤율의 증가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효과를 정태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의미한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를 주요한 입장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비교하였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효과 및 탈빈곤(탈수급) 효과에 대한 연구에 국한하였다. 끝으로 이후의 분석에서 탈수급의 경로와 결정요인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분석모형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세 가지 과제

여기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당면문제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이 제도가 빈곤율의 경향적 변화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며, 현재 전체 빈곤층의 몇 %를 보호하고 있으며, 정책적 효과는 어떠한가의 문제를 의미한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3년 이후의 빈곤문제 심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아래 그림은 상대빈곤율의 장기적 추세를 파악하는 자료로 2인 가구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해석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상대빈곤율의 변화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변화가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자료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그림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외환위기 직후에는 한시적 보호제도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지만, 2003년 이후에는 빈곤율 증가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그림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이다. 전자는 노인빈곤층 대부분이 아래 데이터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후자는 2009년 하반기 시행된 제도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림 2-1] 상대빈곤율과 수급자 규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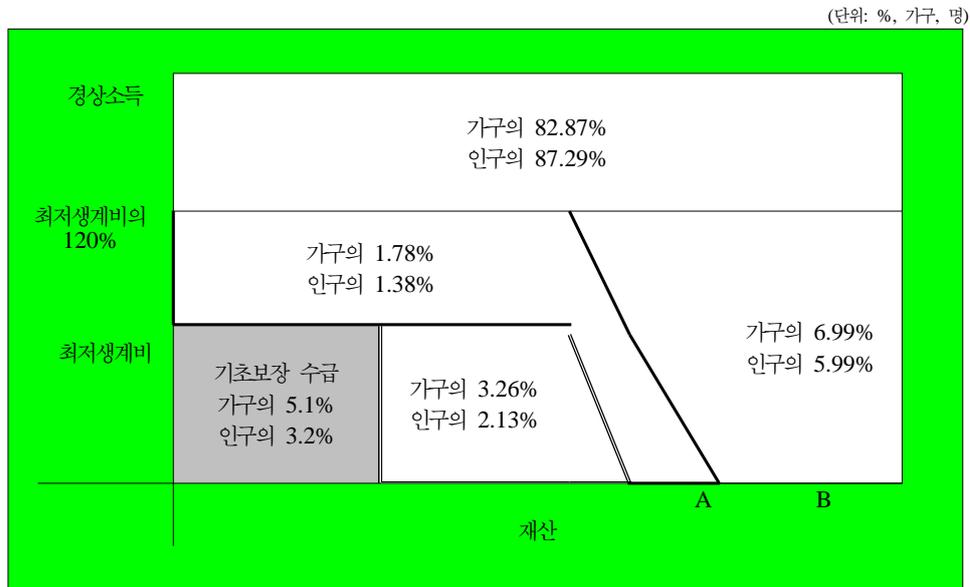
주: 빈곤율은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대상 경상소득 중위값의 40%를 빈곤선으로 설정

자료: 노대명(2009), "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 평가 및 정책과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9년 11월 학술대회 발표논문

이러한 정태적 관점에서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법적인 의미와 통

념적 의미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법적 기준이 빈곤층의 실질적 욕구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산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면> 사각지대의 규모는 훨씬 방대한 것이다.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집단 모두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법적인 의미의 사각지대 규모는 정확하게 추정하기 힘들다. 그 규모를 추정하려는 시도를 했던 최근의 연구로는 2008년 <차상위계층 실태조사>를 들 수 있다. 이 조사보고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추정되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행정적 사각지대> 규모를 전체 인구의 2.13%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 규모는 수급자와 행정적 사각지대 집단을 더한 규모보다 크다.

[그림 2-2] 차상위계층의 추정 규모(2006년 기준)



자료: 이현주 외(2008), 『2006년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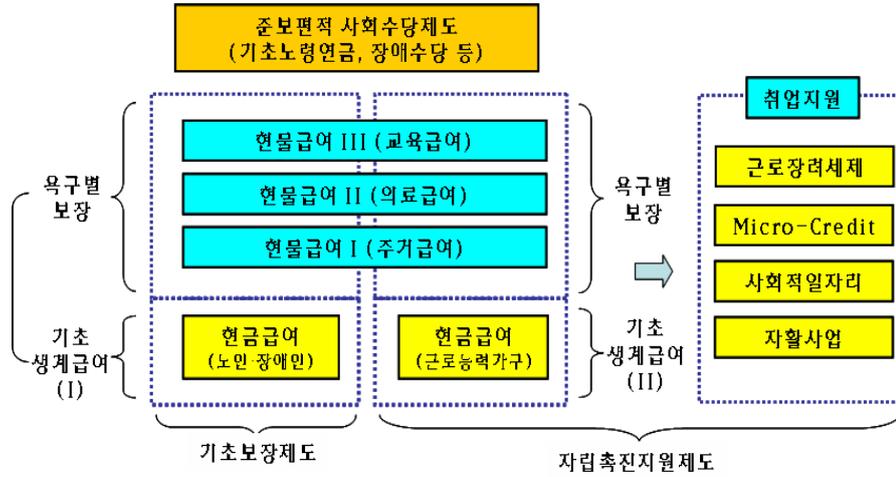
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탈수급 또는 탈빈곤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탈수급이나 탈빈곤을 정책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현재 우리사회가 처한 객관적

인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탈빈곤이란 그리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탈수급을 강조한다는 것은 빈곤층을 더 힘든 생활여건으로 밀어내는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적 선택인가 하는 점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빈곤층 대부분이 기초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과 복지급여>의 결합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기초한 정책설계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복지급여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집중화 경향을 차단할 필요성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마지막 문제(탈수급 및 탈빈곤 효과의 문제)는 그러한 목표설정 자체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탈수급 효과가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달리 표현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조차 취약한 상황이다. 그것은 제도운영과 관련된 각종 연구의 발전 정도와 비교할 때, 다소 민망스러운 상황이다. 그리고 실태진단을 전제로 우리사회의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탈수급 및 탈빈곤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인지, 만일 그래야 한다면 어떠한 제도적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이 제도의 발전방향에 있다기보다, 이를 위한 객관적인 논거와 추진전략에 있다는 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래 제시한 그림은 향후 우리사회 빈곤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장 및 취업지원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가를 예시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그림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해석과 추진전략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바람직한 논쟁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의 출발점은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림 2-3] 빈곤층 및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개편방향



자료: 노대명(2009), “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 평가 및 정책과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9년 11월 학술대회 발표논문

### 제3절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연구는 지난 10년간 방대한 분량이 발표되었으며, 그것은 주로 다음 세 가지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및 개편과 관련된 연구였다. 이는 새롭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목적을 둔 연구였다. 최저생계비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에 목적을 둔 연구였다면, 개별급여체계에 대한 연구는 제도개편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였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새로운 제도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였다. 이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근로장려세제, 자산형성지원제도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직간접적인 관련을 갖는 제도에 대한 연구였다. 셋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였다. 물론 제도의 효과성은 사각지대해소, 보장의 형평성, 근로유인, 탈수급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연구 중 온전하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

과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의 한계와 관련이 있었다. 통계청 데이터의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불완전하며, 기타 데이터는 소득정보의 신뢰성이나 시계열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복지패널조사가 3년도에 이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 중 제도의 효과성과 관련된 연구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근로유인 또는 노동공급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연구보고서의 주제를 감안하면, 보다 직접적으로 탈수급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불행하게도 이 주제에 관해 체계적으로 연구된 성과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취업수급자의 탈수급에 앞서 이들의 근로유인효과에 대한 연구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는 차선을 선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문헌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효과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유경준·김대일(2002)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효과를 간접적으로 추정한 결과 생계비를 지원받는 수급가구들의 경우 노동공급이 감소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어 이상은(2004)은 실증분석결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효과가 부정적이라는 점을 말해주지만, 이를 해석함에 있어 제도의 보장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의미부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변금선(2005)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효과가 집단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제도 전체의 노동공급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집단에서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김을식(2008)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효과가 집단특성을 통제하는 경우,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견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데이터 자체가 갖는 한계, 분석모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의 주요 가정의 차이, 그리고 실증분석결과가 갖는 함의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증분석결과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다양한 질적조사 및 사례연구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제도의 실질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취하는 경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부분이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효과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수급자 본인들도 이러한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본 연구의 말미에 제시할 사례연구를 통해 언급할 것이다. 이처럼 일선에서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상황에서 왜 실증분석결과가 엇갈리고 있는 하는 점은 그 자체로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 할 것이다.

#### 제4절 탈수급의 경로와 결정요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 경로를 설명하기에 앞서, <빈곤진입 및 빈곤탈출>의 경로와 관련된 모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것은 탈수급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탈빈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둘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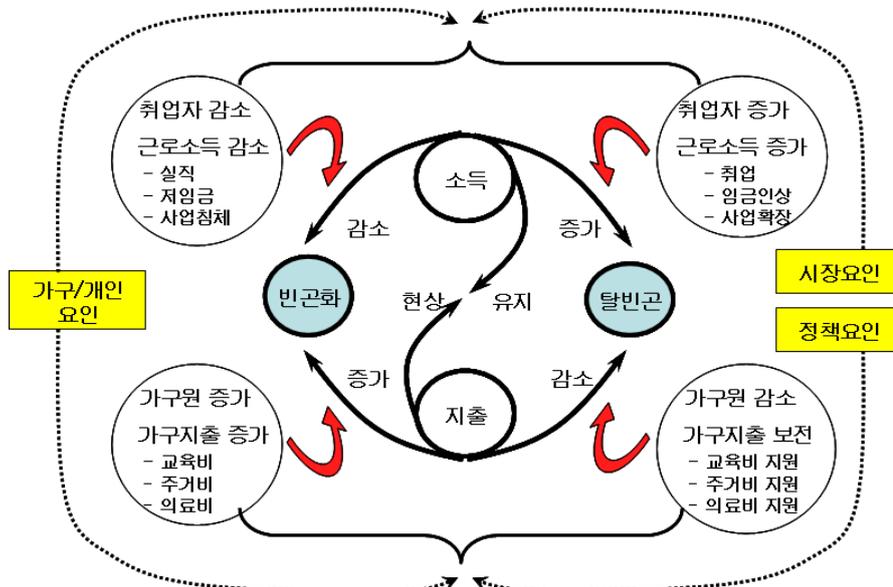
먼저 우리사회에서 빈곤진입과 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궁극적 요인은 <소득과 지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빈곤진입과 빈곤탈출을 판별하는 최종적인 기준이기 때문이다. 물론 소득과 지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구성원의 취업상태와 가구구성에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분석모형은 취업상태와 관련된 소득변화와 가구구성과 관련된 지출변화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빈곤층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소득의 불안정성이다. 이는 빈곤 문제를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 각종 선행연구의 공통된 합의점이다. 즉, 전체 빈곤층 중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집단의 비중이 매우 높고, 이들은 취업상태 자체의 변화보다, 취업상태 변화 없는 소득변화를 경험하는 집단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빈곤층 중 상당수는 가구유형 또는 생애주기별로 과도한

지출부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전형적으로 <교육, 주거, 의료>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빈곤층의 근로소득 증가로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공통점을 갖는다.4)

아래 그림은 빈곤진입과 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구성원의 취업 상태변화와 근로소득변화>를 한 축으로 하고, <생애주기별 또는 가구특성별 가구의 지출변화>를 다른 한 축으로 빈곤진입과 빈곤탈출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요지는 <소득의 증가 및 감소>가 <지출의 증가 및 감소>와 어떻게 조합을 이루는가에 따라 빈곤탈출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림 2-4] 빈곤진입 및 빈곤탈출의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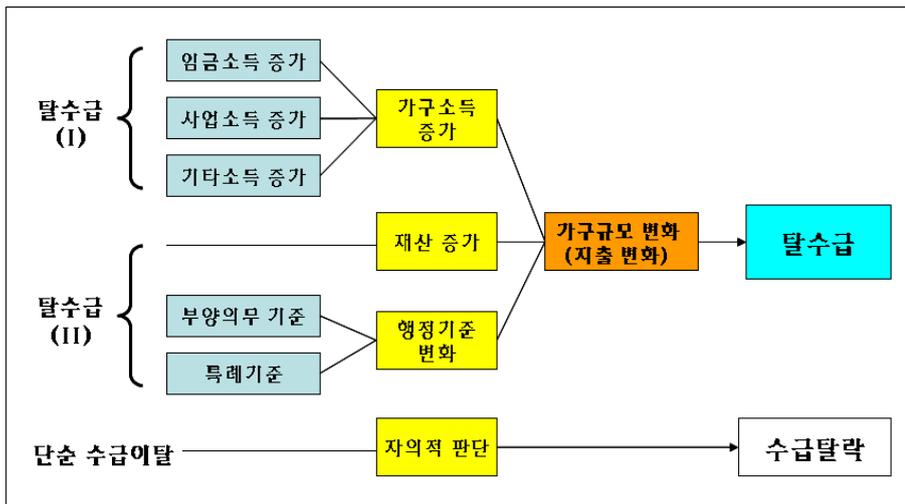
문제는 탈수급의 경우에는 다른 요인이 상당부분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진입과 탈출이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통제된다는 점에서 위에

4) 2008년 전국가계조사를 토대로 빈곤층 여성가장가구의 교육비 지출을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여성빈곤가구에서 교육비 지출이 62%를 넘어서는 양상이 발견된다. 이는 해당가구의 지출부담이 생애주기의 특정 시점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절대금액 측면에서 보면, 빈곤가구의 교육비는 비빈곤가구의 그것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언급한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 장에서 언급하게 될 행정적인 탈수급사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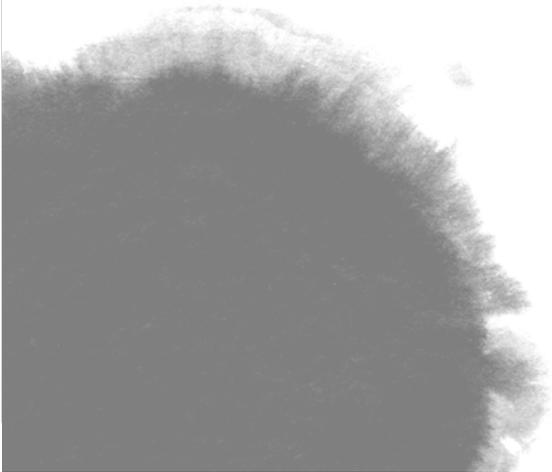
아래 그림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탈수급이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탈수급 외에도 재산기준이나 행정기준 변화에 탈수급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중에서도 가구소득 증가는 취업상태 변화(취업진입)나 근로소득 증가에 기인하는 경우를 좁은 의미의 <탈수급 I>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그리고 특례기준 적용에 따른 경우를 <탈수급 II>로 규정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를 탈빈곤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새로운 소득이나 재산이 발견됨에 따라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는 탈수급이라는 표현보다 수급자격 상실 또는 수급탈락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림 2-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탈수급 경로





## 기초보장제도 수급 빈곤층과 비수급 빈곤층의 특성 비교





# 제3장 기초보장제도 수급 빈곤층과 비수급 빈곤층의 특성 비교

## 제1 절 문제제기

본 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수급자의 탈수급 실태를 파악하기에 앞서, 이 집단을 비수급 취업빈곤층과 비교함으로써 이 두 집단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두 집단의 취업결정요인 및 빈곤결정요인을 비교함으로써 최근 쟁점이 되었던,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수급자의 근로유인 또는 노동공급 실태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빈곤층 및 취업빈곤층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그것은 이후에 논의될 취업빈곤층 특성 비교를 위한 기초자료라는 의미를 갖는다. 참고로 그 수치는 통계청 전국가계조사 원자료와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할 것이다.

이어 취업수급자와 비수급 취업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 가구특성, 소득과 지출특성, 취업특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집단이 인구학적 특성상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가구구성 측면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고, 가구소득과 지출측면에서는 어떠한 특성차이가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 차이는 취업빈곤층의 종사상지위와 복지제도의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하는 점 또한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이 두 집단을 중심으로 노동이동과 그에 따른 소득이동의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그것은 노동이동이 소득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수급지위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절 빈곤율 및 취업빈곤율에 대한 기초분석

### 1. 2008년 상대빈곤율에 따른 빈곤층 규모

2008년 전국가계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추정된 빈곤층 규모는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상대빈곤선을 활용하여 소득유형별·빈곤기준별 빈곤율을 추정하면, 시장소득 기준 중위 40%~60%를 빈곤선으로 활용하여 추정한 빈곤율은 13.7%, 18.1%, 23.2%로 추정된다. 이어 경상소득 기준 중위 40%~60%를 빈곤선으로 활용하여 추정한 빈곤율은 12.4%, 17.1%, 22.5%로 추정된다. 끝으로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 40%~60%를 빈곤선으로 활용하여 추정한 빈곤율은 12.1%, 16.6%, 22.0%로 추정된다.

〈표 3-1〉 2008년 소득유형별·빈곤수준별 상대빈곤율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비빈곤층	전 체
시장소득	가구	19.6	24.4	29.6	70.4	100.0
	개인	13.7	18.1	23.2	76.8	100.0
경상소득	가구	18.1	23.4	29.1	70.9	100.0
	개인	12.4	17.1	22.5	77.5	100.0
가처분소득	가구	17.5	22.7	28.3	71.7	100.0
	개인	12.1	16.6	22.0	78.0	100.0

주: 수치는 전체 가구 및 인구의 %  
 자료: 통계청, 전국가계조사, 2008년 원자료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각종 빈곤정책에 활용되는 기준선은 최저생계비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선을 활용하여 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절대빈곤선을 활용하여 빈곤기준별 빈곤율을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 먼저 최저생계비와 그 120%를 빈곤선으로 활용하여 추정한 빈곤율 및 차상위층 비율은 각각 13.3%와 17.0%로 추정된다. 이를 전체 인구대비 규모로 환산하면, 빈곤층 및 차상위층 규모는 각각 647만명 및 825만명으로 추정된다.

〈표 3-2〉 2008년 빈곤수준별 절대빈곤율

	빈곤층	차상위층	비빈곤층	합계
가구	17.8	21.8	78.2	100.0
개인	13.3	17.0	83.0	100.0

주: 수치는 전체 가구 및 인구의 %  
 자료: 통계청, 전국가계조사, 2008년 원자료

빈곤율 및 빈곤층 추정규모와 관련해서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점은 통계청 전국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한 빈곤율 추정작업 또한 과대 추정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월 단위 가계부 기장방식에 따라 집계된 데이터는 한 가구의 가구소득이 특정 월에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연 평균 가구소득은 빈곤선을 초과할 수 있다. 이는 자영업자 및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문제는 이처럼 월간 단위 소득이 낮더라도 연평균 소득이 빈곤선을 초과하는 가구는 이러한 수입 패턴에 따라 소비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빈곤가구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현행 전국가계조사 자료는 동일 가구의 특정 월 자료를 하나의 독립된 케이스로 간주하게 된다는 점에서, 빈곤율 과대추정의 위험이 있는 것이다.

아래 그림은 2008년 전국가계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빈곤율을 산출하고, 그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기존의 방식대로 동일 가구의 월간 데이터를 독립된 가구로 간주하는 방식에 따라 빈곤율을 추정하면, 위의 표와 같은 수치를 얻게 된다. 하지만 가구 ID가 같은 가구별로 응답기간 평균 경상소득에 중위값의 40%~중위60%를 빈곤선으로 적용하여 빈곤율을 산출하면, 기존 방식에 비해 빈곤율이 각각 1.78%, 1.69%, 1.44% 감소하게 된다. 이는 통계청 전국가계조사의 추정 빈곤율이 다소 과대 추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 2.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에 따른 빈곤층 규모

여기서는 통계청 조사자료 외에도 이후 분석에서 활용할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빈곤율을 추정하고자 한다. 2005년~2007년 가처분소득에 중위값의 40%~60%를 빈곤선으로 적용하여 추정한 빈곤율을 보면, 중위 40%에 따른 빈곤율

은 11.3%, 10.7%, 10.4%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경상소득에 중위 값의 40%~60%를 빈곤선으로 적용하여 추정된 빈곤율 또한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2005년~2007년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층 규모는 상대빈곤율보다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최저생계비의 120% 기준 차상위층 규모도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추정된 빈곤율은 경상소득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적용한 소득을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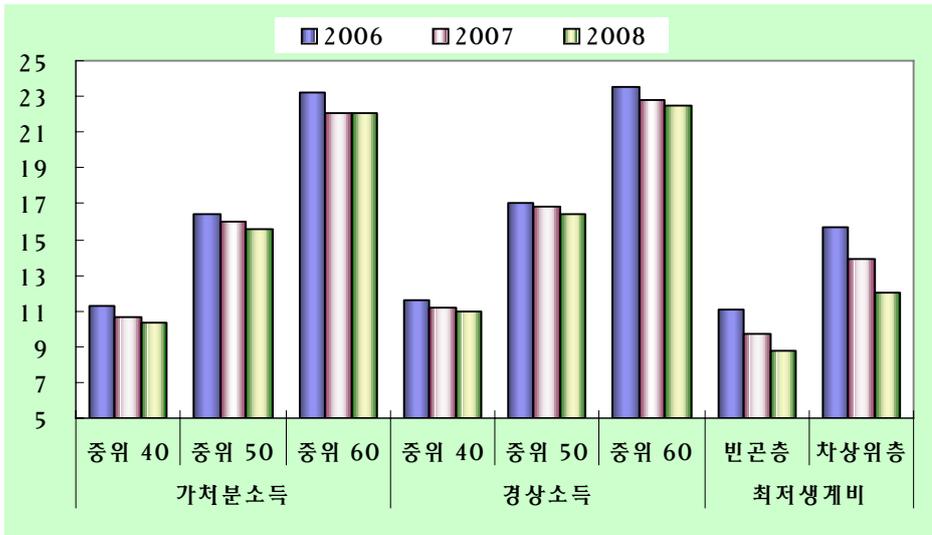
〈표 3-3〉 한국복지패널에 따른 빈곤율 추이

		제1차(2005)		제2차(2006)		제3차(2007)	
		개인	가구	개인	가구	개인	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40	11.3	16.3	10.7	15.9	10.4	16.1
	중위50	16.4	22.1	16.0	22.1	15.6	22.4
	중위60	23.2	28.5	22.0	28.4	22.0	28.9
경상소득 기준	중위40	11.6	17.0	11.2	16.7	11.0	17.2
	중위50	17.0	22.8	16.8	23.1	16.4	23.4
	중위60	23.6	29.1	22.8	29.2	22.5	29.5
공공부조전 경상소득	빈곤층	11.0	14.7	9.7	13.2	8.7	12.6
	차상위층	15.7	20.0	13.9	18.0	12.1	16.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조사, 원자료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에 따른 빈곤율 추이와 관련해서는 상대빈곤율과 절대빈곤율 간의 감소 폭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각각의 빈곤선이 다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는 수치해석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만일 이 데이터의 정보를 신뢰한다면, 그것은 최저생계비의 증가 폭이 가구소득의 실제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달리 표현하면,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보장수준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1] 한국복지패널에 따른 빈곤율 추이



### 3. 취업빈곤층 추정 규모

여기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통계청의 2008년 전국가계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취업빈곤층 규모를 추정하고, 이어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참고로 통계청 자료는 취업빈곤층 규모를 추정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다는 점에서 이후 논의의 준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08년 전국가계조사를 토대로 1인 가구 이상 전체가구의 취업자 중 빈곤층 규모를 추정하면 아래와 같다.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40%~60%를 상대빈곤선으로 활용하여 취업빈곤층 규모를 추정하면, 각각 5.5%(130만명), 8.9%(209만명), 13.5%(317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취업빈곤층 규모를 추정하면, 5.6%, 9.3%, 14.9%로 추정된다. 끝으로 공공부조급여전 경상소득에 최저생계비 및 최저생계비의 120%를 빈곤선으로 적용하여 취업빈곤층 규모를 추정하면, 각각 5.8%(137만명)와 8.6%(203만명)으로 추정된다.

〈표 3-4〉 2008년 취업빈곤층 규모(상대빈곤선 기준)

		시장소득 기준	경상소득 기준	가처분소득 기준
비율	중위 40%	6.19	5.62	5.51
	중위 50%	9.77	9.26	8.88
	중위 60%	14.16	14.87	1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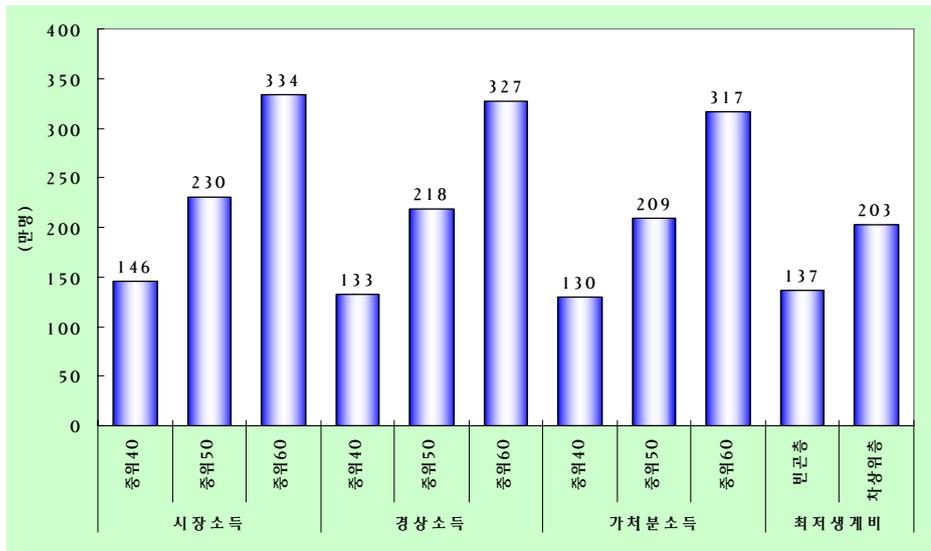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전국가계조사, 2008년 원자료

〈표 3-5〉 2008년 취업빈곤층 규모(절대빈곤선 기준)

		공공부조급여 전 경상소득
비율	빈곤층	5.83
	차상위층	8.62

자료: 통계청, 전국가계조사, 2008년 원자료

[그림 3-2] 취업빈곤층의 추정 규모(2008년 기준)



주: 단위 = 만명

자료: 통계청, 전국가계조사, 2008년 원자료

이러한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취업빈곤층 규모를 추정하면 아래와 같다. 이 표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1)연령제한 없이, 2)18~64세로 통제하여,

3) 18~64세 근로능력자로 통제된 뒤, 소득유형과 빈곤선에 따라 취업자 중 빈곤층(취업빈곤층) 규모를 추정한 결과이다. 그에 따르면, 연령을 통제하는 경우, 취업빈곤층 규모가 현저하게 감소하며, 근로능력 여부에 따른 규모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6〉 주요 모형에 따른 취업빈곤층 규모 추정

	적용소득	빈곤선	2005	2006	2007	전 체
비연령제한 (Model 1)	가처분소득	중위 40	7.49	6.56	6.14	6.75
		중위 50	11.70	10.89	10.40	11.02
		중위 60	17.38	15.80	15.99	16.41
	경상소득	중위 40	7.65	6.84	6.52	7.02
		중위 50	12.28	11.46	10.98	11.59
		중위 60	17.47	16.66	16.25	16.81
공공부조전 경상소득	최저생계비	6.74	5.33	4.38	5.51	
	차상위기준	10.55	8.63	6.92	8.74	
18~64세 (Model 2)	가처분소득	중위 40	5.59	4.52	3.86	4.68
		중위 50	9.10	8.03	7.53	8.24
		중위 60	14.49	12.49	12.42	13.17
	경상소득	중위 40	5.52	4.62	3.92	4.71
		중위 50	9.55	8.49	7.69	8.61
		중위 60	14.55	13.30	12.52	13.49
공공부조전 경상소득	최저생계비	5.34	4.07	2.96	4.16	
	차상위기준	8.39	6.68	4.80	6.68	
18~64세 근로능력자 (Model 3)	가처분소득	중위 40	5.59	4.58	3.89	4.72
		중위 50	9.15	8.16	7.59	8.33
		중위 60	14.56	12.66	12.44	13.26
	경상소득	중위 40	5.54	4.69	3.94	4.75
		중위 50	9.60	8.60	7.73	8.68
		중위 60	14.60	13.46	12.55	13.58
공공부조전 경상소득	최저생계비	5.34	4.14	2.94	4.19	
	차상위기준	8.40	6.79	4.80	6.7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조사, 원자료

주요 모형에 따라 연도별 취업빈곤층을 종사상지위별 비중으로 살펴보면, 연령집단을 18~64세로 통제하는 경우,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자영업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노인취업인구 대부분이 자영업자이거나 무급가족종사자라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만 해석상 주의해야 할 점은 2005년과 이후 시점에서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조사

과정에서 종사상지위에 대한 기준 변화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표 3-7〉 주요 모형에 따른 취업빈곤층 규모 추정

		전체 취업자 대상 (Model_1)			18~64세 취업자 대상 (Model_2)		
		중위40	중위50	중위60	중위40	중위50	중위60
2005	상용직	7.4	7.6	10.5	10.4	10.0	13.3
	임시직	14.9	18.2	21.3	19.0	21.9	24.3
	일용직	18.8	20.3	20.8	21.7	23.5	23.0
	자활	2.7	2.4	2.1	3.0	2.7	2.3
	고용주	1.4	1.1	1.0	2.0	1.5	1.2
	자영업자	37.0	34.0	30.2	27.9	26.1	23.9
	무급종사자	17.8	16.4	14.2	16.0	14.3	12.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6	상용직	8.5	12.9	16.6	11.1	16.2	20.0
	임시직	8.3	10.0	11.6	11.8	13.1	14.6
	일용직	21.4	21.3	22.3	23.0	23.8	24.7
	자활	2.7	2.9	2.6	2.6	3.1	2.8
	고용주	4.8	3.0	2.8	7.5	4.4	3.8
	자영업자	37.0	33.2	29.4	27.9	24.4	21.2
	무급종사자	17.3	16.8	14.8	16.1	14.9	12.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7	상용직	6.9	9.8	15.5	9.8	13.2	19.9
	임시직	7.6	9.5	11.8	10.5	12.0	14.3
	일용직	23.5	25.3	24.6	25.0	26.7	26.0
	자활	2.5	2.5	2.5	3.5	3.4	3.3
	고용주	1.3	1.3	1.0	2.3	2.0	1.5
	자영업자	41.4	36.5	31.4	34.0	29.5	23.7
	무급종사자	16.8	15.0	13.2	14.8	13.2	11.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조사, 원자료

### 제3절 취업수급자와 비수급빈곤층의 특성 비교

본 절에서는 먼저 분석대상 집단은 다음과 같이 통제하여 분석하고 있다. 먼저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50%를 빈곤선으로 각 구성원의 소득계층을 판별한 뒤, 18~64세의 근로능력자 중 비학생인구로 대상집단을 통제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판별된 취업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여부에 따라, 취업수급자와 비수급 취업

빈곤층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아래 언급하고 있는 수치는 2005년~2007년 수치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 1. 인구학적 특성 비교

취업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과 연령 그리고 교육수준 측면에서 주목 할만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주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성별로 보면, 취업수급자 중 여성의 비중이 60.9%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비수급 취업빈곤층 중 여성의 비중이 48.7%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유의미한 수치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일정 정도 여성가장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어 연령구분을 보면, 취업수급자는 4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비수급 취업빈곤층은 30대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일한 근로빈곤층이라 하더라도 40대 인구집단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진입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육수준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수급자 중에는 무학자의 비중과 중졸자의 비중이 비수급 취업빈곤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한 집단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진입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8〉 취업수급자와 비수급 취업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 비교

		비수급 취업빈곤층	취업수급자	전체
성별	남성	51.3	39.1	49.7
	여성	48.7	60.9	50.3
연령대	20대	7.0	4.5	6.7
	30대	20.8	16.3	20.2
	40대	31.1	42.1	32.5
	50대	23.6	22.6	23.4
	60대	17.6	14.5	17.2
	평균 연령	46.73	46.71	46.72
교육수준	무학	8.7	18.6	10.0
	초졸	23.1	24.5	23.3
	중졸	15.3	22.7	16.3
	고졸	35.0	29.5	34.3
	초대졸	6.6	2.7	6.1
	대졸이상	11.2	1.8	10.0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60.0	65.0	60.6
	배우자	31.7	24.5	30.8
	기타	8.3	10.5	8.6
전체		100.0	100.0	100.0

주: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 50% 빈곤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조사, 원자료

## 2. 가구특성 비교

취업수급자와 비수급 취업빈곤층의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가구규모 측면에서 흥미로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 가구원수는 두 집단 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구규모별 구성을 보면, 비수급 취업빈곤가구는 2인 가구의 비중이 27.1%로 취업수급자의 19.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반면에 취업수급가구는 3인 가구의 비중이 비수급 취업빈곤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 점유형태별로 보면, 비수급 취업빈곤층 중 자가에 거주하는 집단의 비율이 56.8%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취업수급자의 24.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이는 재산기준 등이 이들의 수급진입을 차단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와 비교할 때, 취업수급자에게서 보증부월세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은 이들의 주거환경이 좀 더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영구임대아파트 등에 거주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가구형태와 관련해서는 취업수급가구에서 모자가구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9〉 취업수급자와 비수급 취업빈곤층의 가구특성 비교

		비수급 취업빈곤층	취업수급자	전체
가구원수	1인	8.4	10.9	8.7
	2인	27.1	19.1	26.0
	3인	23.0	30.0	23.9
	4인	26.7	25.5	26.5
	5인	10.8	11.4	10.9
	6인 이상	4.1	3.2	3.9
	평균 가구원수	3.17	3.18	3.17
점유형태	자가	56.8	24.5	52.6
	전세	17.8	12.3	17.0
	보증부월세	15.6	40.0	18.8
	월세	3.2	14.1	4.7
	기타	6.5	9.1	6.9
가구형태	단독가구	8.4	10.9	8.7
	모자가구	2.1	12.3	3.5
	부자가구	0.8	1.4	0.9
	소년소녀가장	0.1	1.4	0.2
	기타	88.6	74.1	86.7
전체		100.0	100.0	100.0

주: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 50% 빈곤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조사, 원자료

### 3. 소득 및 지출특성 비교

취업수급가구와 비수급 취업빈곤가구의 가구소득을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취업수급자의 공공부조전 경상소득은 비수급 취업빈곤층의 평균 가구소득이 807만원으로 취업수급자의 725만원에 비해 약 82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

장소득 측면에서 비수급 취업빈곤층의 근로소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공부조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이 개입된 이후에는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수급가구의 경상소득이 비수급 취업빈곤가구의 그것에 비해 약 176만원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가처분소득의 경우,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간단위에서 조세와 사회보장분담금 등으로 인해 가처분 소득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는 대부분 사회보험료나 주민세 등 조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비수급 취업빈곤층은 사회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표 3-10〉 취업수급가구와 비수급 취업빈곤가구의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 비교

(단위: 만원)

		비수급 취업빈곤층	취업수급자	합계
가구단위	경상소득	808	984	832
	가처분소득	623	910	661
	공공부조전 경상소득	807	725	796
개인단위	총 근로소득	496	309	472

주: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 50% 빈곤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조사, 원자료

두 집단의 가계지출을 보면, 비수급 취업빈곤가구의 가계지출 금액이 월평균 165만원으로 취업수급가구의 108만원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비수급 빈곤가구가 직간접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출부담은 가구소득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만성적자를 면하기 힘든 상황임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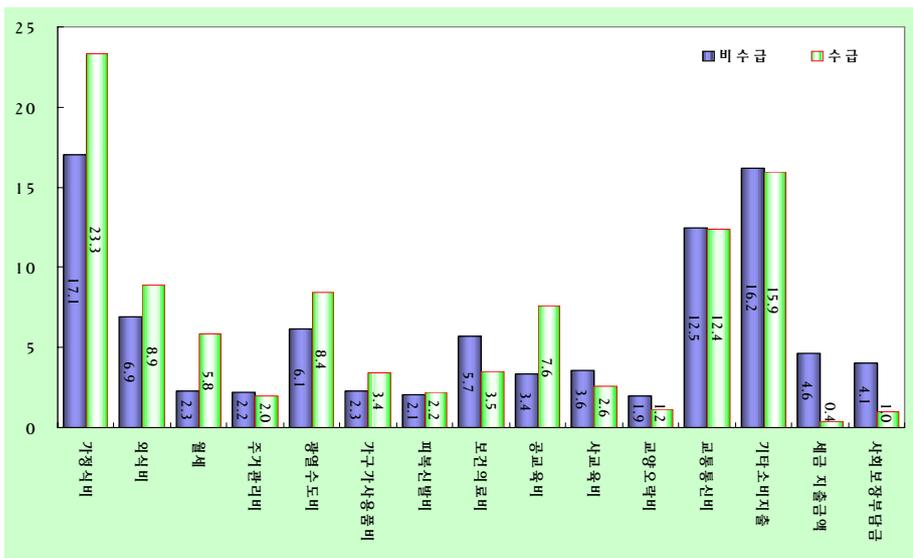
〈표 3-11〉 취업수급가구와 비수급 취업빈곤가구의 지출 비교

	비수급	수급	합계
가정식비	17.1	23.3	17.7
외식비	6.9	8.9	7.1
월세	2.3	5.8	2.7
주거관리비	2.2	2.0	2.2
광열수도비	6.1	8.4	6.4
가구가사용품비	2.3	3.4	2.4
피복신발비	2.1	2.2	2.1
보건의료비	5.7	3.5	5.5
공교육비	3.4	7.6	3.8
사교육비	3.6	2.6	3.5
교양오락비	1.9	1.2	1.9
교통통신비	12.5	12.4	12.5
기타소비지출	16.2	15.9	16.2
세금 지출금액	4.6	0.4	4.2
사회보장부담금	4.1	1.0	3.7
월 생활비(만원)	100.0(165.4)	100.0(108.2)	100.0(157.2)

주: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 50% 빈곤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조사, 원자료

[그림 3-3] 취업수급가구와 비수급 취업빈곤가구의 지출비교



#### 4. 취업상태 비교

취업수급자와 비수급 취업빈곤층의 종사상지위 분포를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이 흥미로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임금근로자의 비중을 보면, 비수급 취업빈곤층(52.8%)보다 취업수급자(80.1%)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과악이 힘들다는 점에서 수급자로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연령이 18~64세의 근로연령집단인 경우에는 이러한 양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취업수급자의 경우, 일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취업수급자 중 일용직 근로자는 40.7%로 비수급 취업빈곤층의 22.0%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매우 신중한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일차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의 수급진입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차적으로는 취업수급자가 공식부문에서 비공식부문으로 이행하고 있을 개연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표 3-12〉 취업수급자와 비수급 취업빈곤층의 취업특성 비교

(단위: %)

			비수급 취업빈곤층	취업수급자	전체
종사상 지위	임금 근로자	상용직	13.6	8.1	12.9
		임시직	16.0	14.9	15.9
		일용직	22.0	40.7	24.5
		자활사업	1.1	16.3	3.1
		소계	52.8	80.1	56.4
	비임금 근로자	고용주	3.0	-	2.6
		자영업자	28.3	15.8	26.7
		무급종사자	15.9	4.1	14.3
		소계	47.2	19.9	43.6
		전체	100.0	100.0	100.0

주: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 50% 빈곤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조사, 원자료

## 제4절 취업 및 빈곤결정요인 비교분석

### 1. 탈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기초보장 수급자의 탈수급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 가구원수 변화, 공적이전소득변화, 의료지원경험, 영구임대아파트입주 경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경험, 전세자금대출 경험, 지역 요인이 기초보장 수급자의 탈수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연령대별 탈수급가능성을 보면, 50대 기초보장수급자가 60대 이상의 수급자보다 탈수급할 가능성이 약 3.8배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급자의 연령이 50대를 기준으로 많을수록 탈수급 가능성이 그 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가구규모변화에 따른 탈수급 가능성을 보면, 가구원수 변화의 폭이 수급자의 탈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차 조사 때보다 3차 조사때 가구원의 숫자가 증가했고, 그 증가의 폭이 클수록 기초보장 수급자는 탈수급 할 가능성이 그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공적이전소득 증가에 따른 탈수급 가능성을 보면, 공적이전소득의 변화가 기초보장 수급자의 탈수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적으로는 이전 조사 때보다 공적이전소득의 양이 증가하여 그 차이가 클수록 기초보장 수급자의 탈수급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주거와 자산규모에 따른 탈수급 가능성을 보면, 기초보장 수급자가 자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기초보장 수급자보다 탈수급 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기초보장 수급자의 탈수급에 주거의 점유형태가 자산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섯째, 각종 복지지원이 기초보장 수급자의 탈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면, 1) 의료비 지원이 가장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기초보장 수급자는 그렇지 않은 수급자보다 탈수급 할 가능성이 무려 30.2배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다음으로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임대아파트 및 전세자금대출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임대아파트

및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한 수급자는 그렇지 않은 수급자보다 탈수급 할 가능성이 약 5-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영국임대아파트를 이용한 기초보장 수급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수급자에 비해 탈수급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서울지역 외에 거주하는 기초보장 수급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보장 수급자보다 탈수급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급자들의 탈수급에 지역적 특성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13〉 수급에서 탈수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B	S.E.	Wald	Exp(B)
개인특성	성별(남성)	.503	.297	2.866	1.654
	연령(60대이상)			11.329	
	30대 이하	.273	.480	.324	1.314
	40대	.398	.536	.550	1.489
	50대	1.332***	.453	8.638	3.788
	교육여부(무학)	.539	.479	1.266	1.715
가구특성	건강상태(나쁨)	.211	.349	.367	1.235
	가구형태(단독)			1.537	
	해체가정	-.181	.437	.171	.835
	정상가정	-.640	.528	1.467	.527
경제적특성	가구원수변화	-1.071***	.197	29.658	.343
	공적이전소득변화	-.718*	.317	5.131	.488
	사적이전소득변화	-.002	.139	.000	.998
정부지원	주거점유형태(자가)	-1.350**	.416	10.526	.259
	학비지원경험(무)	-.261	.376	.482	.770
	생계비지원경험(무)	.826	.611	1.823	2.283
	의료비지원경험(무)	3.411***	.669	25.957	30.283
	물품지원경험(무)	-.341	.346	.971	.711
	영구임대경험(무)	-2.158**	.748	8.330	.116
	공공임대경험(무)	1.626**	.512	10.101	5.083
	전세자금경험(무)	2.054*	.850	5.837	7.795
지역(서울)	인천경기	-1.299**	.451	8.275	.273
	부산/ 울산/ 경남	-1.820**	.576	9.985	.162
	대구/ 경북	-.582	.391	2.222	.559
	대전/ 충남	-1.150*	.519	4.909	.317
	강원/ 충북	-.335	.585	.328	.715
	광주/ 전남/ 전북/ 제주	-16.500	1250.250	.000	.000
	Constant	-9.588	178.610	.003	.000
	X2			274.997***	
-2LL			467.456		
Nagelkerke R2			.378		

\*p<.05, \*\*p<.01, \*\*\*p<.001 종속변수: 수급에서 탈수급으로의 이행=1, 그 외=0

## 2. 기초보장 수급 결정요인 분석결과

기초보장 비수급자가 수급자가 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사적이전소득, 생계비지원제도,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30대 이하 비수급자는 60대 이상 비수급자보다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약 1.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반적으로 60대 이상 노인들이 근로능력이 낮아 빈곤할 가능성이 높다는 일반적인 결과와 다르다. 유의하지는 않지만 40대와 50대의 결과를 살펴봐도 30대 이하보다 수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예측할 수 있는 설명은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여건이 그만큼 어려워져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하는 30대 이하 계층에서 빈곤발생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수급자의 저연령화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사적이전소득의 변화가 기초보장수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대비 사적이전소득의 변화가 클수록(+방향으로) 기초보장 수급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공적이전소득의 변화가 (+)방향으로 큰 변화를 나타낼 경우 수급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공·사적 이전소득이 증가함에도 수급가능성도 같이 증가한다는 것은 현재 빈곤의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상황들이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정부의 지원이 기초보장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 학비지원경험과 생계비지원경험, 영구임대아파트임대경험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비지원경험의 경우 학비지원을 받은 비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해 수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구임대아파트 역시 영구임대아파트를 이용한 비수급자가 그렇지 않은 수급자에 비해 수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영구임대아파트를 비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가와 함께 앞서 살펴본 탈수급 요인 분석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이 제도 수급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이다. 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후자의 문제는 정말 영구임대아파트가 탈수급에 적절한 제도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갖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현재 영구임대아파트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14〉 비수급에서 수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B	S.E.	Wald	Exp(B)
개인특성	성별(남성)	-.082	.241	.116	.921
	연령(60대이상)			4.859	
	30대 이하	.635*	.351	3.275	1.888
	40대	.548	.395	1.917	1.729
	50대	-.178	.489	.133	.837
	교육여부(무학)	.441	.335	1.726	1.554
	건강상태(나쁨)	-.084	.287	.085	.920
가구특성	가구형태(단독)			.691	
	해체가정	.178	.370	.232	1.195
	정상가정	-.221	.359	.379	.802
	가구원수변화	-.300	.323	.865	.741
	지역(서울)			18.719	
	인천경기	.568	.361	2.471	1.764
	부산/ 울산/ 경남	-1.425*	.575	6.133	.241
	대구/ 경북	-.848*	.463	3.348	.428
	대전/ 충남	-.136	.379	.128	.873
	강원/ 충북	.312	.440	.504	1.366
/ 제주	.191	.510	.141	1.211	
결혼제적	공적이전소득변화	.025	.264	.009	1.026
	사적이전소득변화	.451***	.113	15.820	1.570
	주거접유형태(자가)	.156	.288	.293	1.168
정부지원	학비지원경험(무)	-.890*	.357	6.210	.411
	생계비지원경험(무)	1.720**	.570	9.096	5.587
	의료비지원경험(무)	1.373	.673	.002	3.954
	물품지원경험(무)	.232	.301	.594	1.261
	영구임대경험(무)	-1.601**	.546	8.581	.202
	공공임대경험(무)	-.488	.657	.551	.614
	전세자금경험(무)	-16.841	3964.394	.000	.000
Constant		-22.386	396.674	.003	.000
X2		435.438***			
-2LL		547.281			
Nagelkerke R2		.454			

\*p<.05, \*\*p<.01, \*\*\*p<.001 종속변수: 비수급에서 수급으로의 이행=1, 그 외=0

### 3. 미취업자의 취업결정요인 분석결과

저소득층의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결과, 연령, 건강상태, 장애, 가구형태, 지역, 균등화된가구구분, 직장알선경험, 직업훈련경험, 국민연금과 산재보험가입여부, 사업장규모가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60대 이상의 고연령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저소득층의 취업가능성이 약 1-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60대 이상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능력 및 인적자본수준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건강상태가 좋은 실업자는 그렇지 않은 실업자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장애 역시 장애가 없는 저소득층이 장애가 있는 저소득층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의 건강상태가 취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건강상태가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원활한 자기실현 및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료적인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모부자가정 및 소년소녀 가정이 단독가구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 가지 가능한 예측은 우리 사회에서 모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확산되어 사회적으로 지원의 대상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부족하지만 비교적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넷째, 일반가구에 속한 실업자가 저소득층에 속한 실업자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저소득층은 일반소득계층과는 달리 인적자본 및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과 같은 사회진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다섯째, 구직알선경험 및 직업훈련경험이 있는 저소득층은 그렇지 않은 저소득층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구직알선 및 직업훈련과 같은 지원은 분명 저소득층에게 부족한 취업정보 및 인적자본을 보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분석 결과는 이와 상반되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저소득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직업

소개 및 직업훈련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구직경로에서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알선에 이용률의 낮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미미하다는 보고가 있다. 또 직업훈련 역시 동일한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표 3-15〉 실업에서 취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B	S.E.	Wald	Exp(B)
개인특성	성별(남)	-.108	.099	1.204	.897
	연령(60대이상)			27.452	
	30대 이하	.917***	.181	25.594	2.502
	40대	.485**	.175	7.676	1.624
	50대	.473**	.145	10.605	1.604
	교육수준(무학)			3.703	
	초졸	-.143	.216	.439	.867
	중졸	-.193	.185	1.090	.825
	고졸	-.046	.186	.061	.955
	전문대졸이상	.095	.126	.568	1.100
	건강상태(나쁨)	-.508***	.112	20.731	.602
장애유무(유)	-.432**	.163	7.038	.649	
가구특성	가구형태(단독)			9.246	
	해체가정	.409***	.139	8.624	1.506
	정상가족	.378	.315	1.438	1.459
	지역(서울)			8.620	
	인천경기	.010	.149	.005	1.010
	부산/울산/경남	-.023	.140	.027	.977
	대구/경북	-.170	.146	1.362	.843
	대전/충남	-.377*	.164	5.247	.686
	강원/충북	-.143	.178	.646	.866
	광주/전남/전북/제주	-.271	.209	1.689	.762
	균등화(저소득가구)	.176**	.107	2.697	1.192
기초보장수급유무(유)	.231	.166	1.923	1.259	
직장 및 근로준비 특성	구직알선경험(유)	-1.732**	.584	8.785	.177
	직업훈련경험(유)	-1.084**	.194	31.370	.338
	인터넷사용여부(무)	.084	.145	.333	1.087
	근로능력정도(없음)			6.053	
	근로능력미약	.129	.158	.664	1.138
	근로가능	-.254	.180	1.987	.776
	기술유무(유)	-.661	.380	.001	.001
	Constant	3.141	1.226	6.560	23.123
X2		773.242Z***			
-2LL		4063.439			
Nagelkerke R2		.188			

\*p<.05, \*\*p<.01, \*\*\*p<.001 종속변수: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이행=1, 그 외=0

#### 4. 취업자의 실직결정요인 분석결과

저소득층 취업자의 실직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학력, 건강상태, 장애, 가구형태, 지역, 균등화가구구분, 주거점유형태, 구직알선경험, 직업훈련경험, 인터넷사용여부, 근로능력,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가입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여성근로자가 남성 근로자에 비해 동일한 여건에서 실직할 가능성이 약 1.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있어왔던 여성인력의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둘째, 40대와 50대 근로자는 60대이상 근로자보다 취업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고연령이 될수록 임금수준 대비 노동생산성이 낮을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들이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무학인 근로자에 비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실업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으로 인적자본이론의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학자 중에서도 전문대졸 이상인 근로자는 고졸이하 근로자보다 취업을 유지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건강상태가 좋거나 장애가 없는 근로자는 그렇지 못한 근로자보다 취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취업유지에 있어 신체적 또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가구형태 중 모부자 가정 및 소년소녀가정은 단독가구에 비해 실업에 빠질 가능성이 약 1.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부자 가정 및 소년소녀가정은 상황에 따라 직원감소 및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일자리를 포기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일자리로의 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집단인 것이다.

여섯째, 구직알선경험 및 직업훈련경험이 없는 근로자는 구직알선경험 및 직업훈련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비해 실업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곱째,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근로자보다 실업할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일의 수준 대비 근로능력

이 낮다면 해당 직장에서 실업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실업할 가능성이 낮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실업에 처할 가능성이 약 1-5배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6〉 취업에서 실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B	S.E.	Wald	Exp(B)
개인특성	성별(남)	.634***	.084	57.553	1.885
	연령(60대이상)			51.806	
	30대 이하	-.102	.169	.361	.903
	40대	-.777***	.168	21.296	.460
	50대	-.623***	.158	15.529	.536
	교육수준(무학)			18.830	
	초졸	-.362#	.214	2.852	.696
	중졸	-.540**	.176	9.373	.583
	고졸	-.605**	.175	11.914	.546
	전문대졸이상	-.345***	.098	12.287	.708
	건강상태(나쁨)	-.428***	.115	13.760	.652
	장애유무(유)	.411**	.152	7.311	1.508
가구특성	가구형태(단독)			9.212	
	해체가정	.320*	.128	6.227	1.377
	정상가족	-.439	.287	2.329	.645
	지역(서울)			20.046	
	인천경기	-.208	.129	2.611	.812
	부산/울산/경남	-.247*	.126	3.865	.781
	대구/경북	-.525***	.140	14.128	.592
	대전/충남	-.285#	.146	3.824	.752
	강원/충북	-.267	.165	2.600	.766
	광주/전남/전북/제주	.091	.166	.300	1.095
	균동화(저소득가구)	.557***	.109	26.015	1.745
기초보장수급유무(유)	-.134	.150	.794	.875	
직장 및 근로준비 특성	구직알선경험(유)	-1.22*3	.559	4.781	.294
	직업훈련경험(유)	-.398*	.190	4.390	.672
	인터넷사용여부(무)	-.239#	.138	2.967	.788
	근로능력정도(없음)			50.019	
	근로능력미약	.278	.177	2.466	1.321
	근로가능	-1.781***	.311	32.793	.169
	기술유무(유)	-1.866	.354	.000	.000
	국민연금가입여부(무)	-.800***	.094	72.734	.449
	고용보험가입여부(무)	.692***	.147	22.312	1.998
	산재보험가입여부(무)	1.749***	.170	105.267	5.749
	사업장규모(5인미만)	-.148	.107	1.904	.863
Constant		-2.197	1.184	3.442	.111
X2/ -2LL/ Nalgelkeke R2		988.338***/ 5173.218/		.196	

#p<.1, \*p<.05, \*\*p<.01, \*\*\*p<.001 종속변수: 취업에서 실업으로의 이행=1, 그 외=0

## 제5절 소결

### 1. 취업수급자와 비수급빈곤층 특성비교

취업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과 연령 그리고 교육수준, 측면에서 주목 할 만 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주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정책 마련 시, 이와 같은 요인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의 경우, 취업수급자는 4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비수급 취업빈곤층은 30대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일한 근로빈곤층이라고 하더라도 40대 인구집단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진입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수준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수급자의 무학자의 비율과 중졸자의 비율이 취업빈곤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한 집단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진입해 있음을 의미한다.

자산의 경우, 비수급 취업빈곤층의 자가소유 비율은 취업수급자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산기준이 비수급 취업빈곤층의 수급진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의 경우, 비수급 취업빈곤층 공공부조전 경상소득은 취업수급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소득 측면에서 비수급 취업빈곤층의 근로소득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공부조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이 개입된 이후에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취업상태의 경우, 취업수급자의 경우 일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 비수급 취업빈곤층의 두 배 가량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의 수급진입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차적으로는 취업수급자가 공식부문에서 비공식부문으로 이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 2. 수급에서 탈수급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공적이전의 단순한 양적 증가로는 탈수급율을 높일 수 없다. 본 분석의 결과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탈수급율은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수급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의 시스템 및 지원의 질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함의를 주고 있다. 단순한 현금보장과 같은 지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현물제도와 연계되어 지원된다면 동일한 지원의 투입으로도 높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뒷받침 하듯, 정부지원의 탈수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의료비지원 및 주거복지 정책들이 정책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의료비지원은 다른 어떤 제도보다 탈빈곤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점차 확대되면 탈빈곤 효과를 얻는데 높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의료비지원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미 의료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나, 차상위계층 이상이 될 경우는 의료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의료급여가 중요한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및 전세자금대출의 자격요건 완화와 같은 조치를 통해 기회를 확대한다면 저소득층의 탈빈곤율을 높일 있다는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빈곤자들을 위한 주거지원임에도 탈빈곤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현금지원보다 각 수급자의 개인적 상황에 맞는 현물급여 형태의 지원이 현금급여와 함께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비수급에서 수급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현재 저소득층은 단순한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소득으로 빈곤을 벗어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빈곤하게 만드는지를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저소득층이 비수급에서 수급으로 이행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및 가구의 주거문제를 들 수 있다. 저소득층 자녀는 빈곤한 환경에서 자람으로써 빈곤의 되물림 위험이 있다. 이러한 빈곤의 되물림의 한 축에서는 주거문제 역시 함께 하고 있다. 주거문제는 단순한 공간적인 의미를 떠나 아동의 교육과 보건과 지역사회와의 통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저소득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문제와 함께 저소득층 주거의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구임대아파트는 분명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주거지원정책이다. 그럼에도 운영과정에서 많은 입주자들이 월세를 납입하지 않아 결국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나와야 되는 사례도 빈번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주거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도 각 수급자의 상황을 고려한 지원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4.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저연령에서 고연령으로 갈수록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이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연령에 속한 실업자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고용지원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희망근로 및 노인의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실시되고는 있으나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연령 실업자들을 위한 고용지원정책이 통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예산에 인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고용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에 예산과 인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신체적 또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근로자는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서 저소득층 실업자들이 자신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일 자리를 만들 경우 각 대상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의료적 개입 및 일자리 알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직알선경험 및 직업훈련경험이 있음에도 취업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구직알선시스템 및 직업훈련에 구조적 또는 질적인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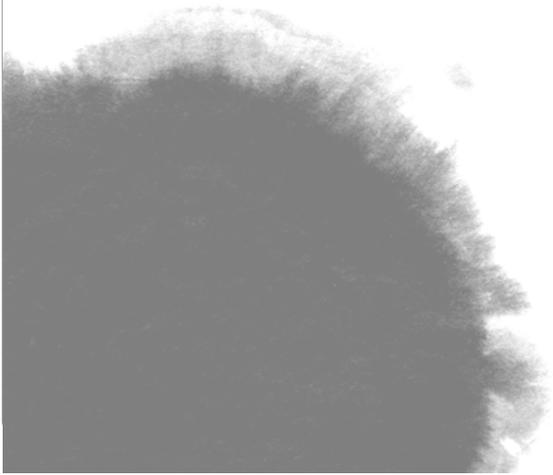
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현재 대부분의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고용안정센타를 통해 취업정보를 획득하기 보다는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 및 정보지를 통해서 일자리 정보를 얻고 있다. 이는 현재의 공공 구직알선 기관들이 소비자인 실업자의 기대치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직업훈련 역시 직업훈련을 받았음에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 5. 취업에서 실업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취업자 중 학력수준이 낮은 근로자는 학력수준이 높은 근로자에 비해 실업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끊임없는 자기개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제도적으로는 취업자들이 자신의 부족한 인적자본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사회적 측면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소득층 역시 자신의 부족한 인적자본을 보충하기를 원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요구된다. 따라서 저소득층들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능력이 낮은 근로자는 실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인적자본과는 다른 신체적, 정신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즉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근로능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른 계층에 비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들이 취업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이들을 위한 자립 및 자활 의지를 심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거친 근로자고 한다면 취업을 하더라도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탈수급자의 특성 비교와 시사점





## 제4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탈수급자의 특성 비교와 시사점

### 제1 절 문제제기

이 장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수급자의 탈수급 요인을 파악하기에 앞서,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수급자와 탈수급자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수급집단과 탈수급집단 사이에는 개인특성, 가구특성, 취업특성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인구학적 요인, 가구요인, 소득 및 지출요인, 취업요인, 복지제도 수급, 탈수급에 대한 인식 및 실태와 관련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두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인구학적 요인은 가구주와 가구원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에서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장애보유여부, 건강상태관련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가구요인으로는 가구규모, 평균 가구원 및 취업자 수, 가구유형, 요보호 가구원 유무, 주거실태를 분석하였으며, 개인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는데 필요하다. 또한 소득 및 지출요인은 가구요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수급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분석요인이다. 본 조사에서 소득은 가구단위와 개인단위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지출과 부채는 가구단위로 분석하였다. 취업요인으로는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일자리의 질, 가구원의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하였다. 복지제도 수급요인으로는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들에 대한 수급여부 및 인식에 대한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수급집단의 탈수급에 대한 인식과 탈수급 집단의 탈수급 이후의 생활 실태에 대해서 비교분석하였다.

## 제2절 조사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전체 수행기간은 8월 초부터 10월 말까지이며, 실제 조사는 9월 초부터 10월초까지 이루어졌다. 조사과정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는 실사 준비단계로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빈곤 실태 및 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조사표 구성, 표본추출 등을 실시하였다. 조사표본은 지역별 수급자 규모를 파악하고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중 평균 규모에 근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복지행정전산망에 입력된 전수데이터를 표집틀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탈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2006년~2008년 사이 탈수급한 집단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두 번째는 실사단계로 리서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표본에 대한 면접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과정을 관리·감독하였다. 세 번째는 분석 및 보고서 작성단계로 수집된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주요 변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된 표본은 총 1015개이며, 수급가구가 813개, 탈수급가구가 202개이다. 가구주 면접을 통해 가구원 전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가구원 데이터를 추가 구성하였으며 조사된 수는 3271개이다. 수급가구는 가구주가 현재 일하고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탈수급가구는 2007년 이후 취업 등으로 실제 소득이 증가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다. 본 조사에서의 가구주란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해당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 즉 주생계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후 실태분석 부분에서 언급하는 가구주 또한 위의 조작적 정의에 근거한다.

조사대상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고<sup>5)</sup>, 전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규모 및 비율에 근거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5) 본 조사에서 대도시는 제주도를 제외한 특별시 및 광역시로, 중소도시는 각 시도의 시, 도로, 농어촌은 각 시도의 군으로 정의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는 491개이며 조사지역은 서울시 노원구(211), 부산시 북구(162), 대전시 동구(118)이다. 중소도시는 307개이며 조사지역은 경기도 안산시(130), 강원도 춘천시(62), 전라북도 전주시(115)이다. 농어촌은 217개이며 경기도 여주군(130), 전라남도 영광군(87)이다.

〈표 4-1〉 조사대상자 지역별 분포

		(단위: 개, %)	
		빈도(개)	백분율(%)
대도시	서울 노원	211	20.8
	부산 북구	162	16.0
	대전 동구	118	11.6
중소도시	경기 안산	130	12.8
	강원 춘천	62	6.1
	전북 전주	115	11.4
농어촌	경기 여주	130	12.8
	전남 영광	87	8.6
전체		1,015	100.0

조사대상자의 가구주 성별 및 연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전체적으로 여성이 62.9%, 남성이 37.1%로 여성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집단별 분포에서도 두 집단 모두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가구주 연령은 전체적으로는 40대가 47.1%로 가장 높고, 50대, 30대, 30대 미만, 60대 이상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급 집단의 경우 전체 분포와 유사하게 가구주 연령이 분포되어 있으나, 탈수급 집단의 경우에는 30세 미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 조사대상자 성별 및 연령 분포

		(단위: 명, %)		
		전체(명)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가구주 성별	남	377	36.5	39.6
	여	638	63.5	60.4
전체		1015	100.0(813)	100.0(202)
가구주 연령	30세미만	69	3.6	19.9
	30세이상40세미만	202	21.3	14.4
	40세이상50세미만	478	48.8	40.3
	50세이상60세미만	223	21.8	22.9
	60세이상	42	4.6	2.5
전체		1015	100.0(813)	100.0(202)

### 제3절 인구학적 특성의 비교

#### 1. 수급자와 탈수급자의 성별 분포 비교

조사결과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 가구주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빈곤화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를 비교해 보면 수급가구의 여성가구주 비율은 63.5%, 탈수급가구는 60.4%로 나타나 수급가구의 여성가구주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노동시장이 남성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이 일을 통해 빈곤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가구주의 경우 더 많은 가사 및 양육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일과 가정 사이에서 양립하기가 쉽지 않고,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표 4-3〉 가구주 성별

		(단위: 명, %)		
		전체(명)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성별- 가구주	남	37.1	36.5	39.6
	여	62.9	63.5	60.4
전체		100.0 (1015)	100.0 (813)	100.0 (202)

X<sup>2</sup>=.654 p=.419

\*p<.05 \*\*p<.001 \*\*\*p<.000

## 2. 수급자와 탈수급자의 연령분포 비교

조사대상 가구의 연령분포를 가구주 및 전체 가구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주의 연령분포를 보면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 모두 40대가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50대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한 정책대상이 40~50대 가구주가 있는 가구임을 시사해준다. 가구주 연령분포에 있어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의 큰 차이점은 탈수급가구의 경우 30세 미만 가구주가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수급가구에 비해 약 8배 이상 높은 비율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탈수급 경로를 유추할 때, 수급가구의 성인 자녀가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가계소득이 증가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급가구 아동의 교육 및 성인자녀의 취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뿐만 아니라 전체 가구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30세 미만 가구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저소득 가구의 통합적 지원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4-4〉 가구주 및 전체 가구원 연령

(단위: 명, %)

		전체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가구주 연령	30세미만	6.8	3.6	19.9
	30세이상~40세미만	19.9	21.3	14.4
	40세이상~50세미만	47.1	48.8	40.3
	50세이상~60세미만	22.0	21.8	22.9
	60세이상	4.1	4.6	2.5
전체		100.0 (1015)	100.0 (813)	100.0 (202)
X <sup>2</sup> =71.216    p=.000				
가구원 연령	30세미만	54.9	55.2	53.1
	30세이상~40세미만	8.9	9.3	6.8
	40세이상~50세미만	20.1	20.1	19.8
	50세이상~60세미만	10.7	10.0	13.9
	60세이상	5.5	5.3	6.4
전체		100.0 (3271)	100.0 (2710)	100.0 (561)
X <sup>2</sup> =11.272    p=.024				

\*p<.05 \*\*p<.001 \*\*\*p<.000

수급집단과 탈수급집단 가구주의 연령별 성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급집단과 탈수급집단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 여성 가구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여성 가구주의 경우 가사 및 양육부담이 가장 큰 집단일 뿐만 아니라 가장 빈곤에 빠지기 쉬운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0대 여성 가구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표 4-5〉 가구주의 연령별 성분포

(단위: 명, %)

성별		연령					
		전체	3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60세미만	60세이상
수급 가구	남	36.5	48.3	29.5	32.6	49.7	37.8
	여	63.5	51.7	70.5	67.4	50.3	62.2
전체		100.0 (813)	100.0 (25)	100.0 (157)	100.0 (405)	100.0 (184)	100.0 (42)
$X^2=21.426$ $p=.000$							
탈수급 가구	남	39.6	47.5	20.7	30.9	57.4	60.0
	여	60.4	52.5	79.3	69.1	42.6	40.0
전체		100.0 (202)	100.0 (43)	100.0 (27)	100.0 (77)	100.0 (49)	100.0 (6)
$X^2=15.092$ $p=.005$							

\* $p<.05$  \*\* $p<.001$  \*\*\* $p<.000$

### 3. 수급자와 탈수급자의 혼인상태 비교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수급가구의 가구주는 이혼 39.7%, 사별 14.9%, 미혼 5.3%, 별거 3.0%, 유배우 37.2%로 미혼이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약 1.5배 정도 많았다. 탈수급 가구는 유배우 비율이 19.4%로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약 4배 정도 많았다. 또한 미혼자의 비율이 23.4로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어 가구주가 미혼인 경우에 탈수급 확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가구주 연령분포를 참고할 때 더 명확해 진다. 탈수급 가구는 수급가구보다 상대적으로 30세 미만 가구주가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는 수급가구의 성인자녀가 새로운 가구를 구성하기 이전에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얻은 소득이 빈곤가구의 빈곤 탈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빈곤가구의 성인자녀가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정착할 수 있고, 새로운 가구를 구성할 때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표 4-6〉 가구주의 연령별 혼인상태

(단위: 명, %)

		전체(명)	30세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수급 가구 가구주	유배우	37.2	3.4	32.9	36.3	47.2	45.9
	별거	3.0	-	2.3	3.0	3.4	5.4
	사별	14.9	-	9.2	17.4	13.6	32.4
	이혼	39.7	3.4	52.6	41.6	33.5	16.2
	미혼	5.3	93.1	2.9	1.8	2.3	-
전체		100.0 (813)	100.0 (25)	100.0 (157)	100.0 (405)	100.0 (184)	100.0 (42)
X <sup>2</sup> =.497.269      p=.000							
탈수급 가구 가구주	유배우	19.4	-	10.3	25.6	30.4	25.0
	별거	3.0	-	-	4.9	4.3	-
	사별	20.4	-	6.9	29.3	28.3	50.0
	이혼	33.8	5.0	69.0	37.8	30.4	25.0
	미혼	23.4	95.0	13.8	2.4	6.5	-
전체		100.0 (202)	100.0 (43)	100.0 (27)	100.0 (77)	100.0 (49)	100.0 (6)
X <sup>2</sup> =.165.873      p=.000							

\*p<.05 \*\*p<.001 \*\*\*p<.000

주: 미혼은 남성 18세, 여성 16세 이상으로 정의

#### 4. 수급자와 탈수급자의 교육수준 비교

가구주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고졸이하가 수급가구 50.7%, 탈수급가구 40.6%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중졸이하로 수급가구 21%, 탈수급가구 24.8%이다. 두 집단의 차이는 초대졸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탈수급가구의 경우 수급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초대졸 이상이 더 많은 분포를 보인다. 이는 이후 살펴볼 가구주의 취업업종 및 직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7〉 가구주 및 가구원 교육수준

(단위: 명, %)

		전체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가구주 교육수준	무학	2.8	3.1	1.5
	초졸이하	14.7	15.1	12.9
	중졸이하	21.7	21.0	24.8
	고졸이하	48.7	50.7	40.6
	초대졸이하	5.6	4.0	11.9
	대졸이하	6.0	5.4	8.4
	대학원졸이상	0.6	0.7	-
전체		100.0 (1015)	100.0 (813)	100.0 (202)
X <sup>2</sup> =.28.117      p=.000				
가구원 교육수준	미취학	3.6	4.1	1.4
	무학	3.4	3.1	4.6
	초졸이하	20.7	21.4	17.5
	중졸이하	19.8	20.4	17.1
	고졸이하	37.6	38.4	33.5
	초대졸이하	5.3	3.9	11.9
	대졸이하	9.4	8.4	13.9
대학원졸이상	0.2	0.3	-	
전체		100.0 (3271)	100.0 (2710)	100.0 (561)
X <sup>2</sup> =93.366      p=.000				

\*p<.05 \*\*p<.001 \*\*\*p<.000

### 5. 수급자와 탈수급자의 장애인 특성 비교

조사가구의 장애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두 집단 모두 비장애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급가구의 비장애인 비율이 수급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증장장애인 비율이 낮긴 했으나 수치에 큰 차이는 없었다. 가구주 장애보유 가구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지체장애였고 수급가구는 뇌병변 장애, 탈수급 가구는 시각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전체의 장애보유 현황을 장애등급으로 살펴보면, 탈수급가구의 비장애인 비율이 92.6%로 수급가구 88.7%에 비해 다소 높았고, 증증 장애인 비율이 매우 낮았다. 탈수급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장애보유 여부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가구원의 장애보유 현황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요보호 가구원의 유무

는 탈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8〉 가구주 및 가구원 장애보유 현황

		(단위: 명, %)		
		전체(명)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가구주 장애등급	비해당(비장애인)	86.4	85.7	89.2
	중증(1/2급)	3.1	3.3	2.5
	경증(3/4/5/6급)	10.1	10.7	7.9
	비등록 장애인	0.3	0.2	0.5
전체		100.0 (1015)	100.0 (813)	100.0 (202)
		X <sup>2</sup> =2.209	p=.530	
가구원 장애등급	비해당(비장애인)	89.4	88.7	92.7
	중증(1/2급)	3.7	4.1	1.6
	경증(3/4/5/6급)	6.6	6.8	5.5
	비등록 장애인	0.3	0.3	0.2
전 체		100.0 (3271)	100.0 (2710)	100.0 (561)
		X <sup>2</sup> =10.409	p=.015	

\*p<.05 \*\*p<.001 \*\*\*p<.000

주: 비등록장애인은 보훈처등록 장애인을 포함

## 6. 수급자와 탈수급자의 건강상태 비교

### 가.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건강, 보통, 건강하지 않음으로 나누어 가구주 연령별로 두 집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전 연령층에서 수급가구보다 탈수급 가구의 가구주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3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에서 이러한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탈수급 집단의 경우 30세 미만 가구주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건강상태가 탈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체 가구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분석결과 수급가구와 탈수급 가구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표 4-9〉 가구주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명, %)

		전체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수급 가구 가구주	건강한편	32.7	75.9	39.9	34.0	19.2	16.2
	보통	19.2	3.4	24.9	21.4	13.0	10.8
	건강하지 않음	48.1	20.7	35.3	44.6	67.8	73.0
전체		100.0 (813)	100.0 (25)	100.0 (157)	100.0 (405)	100.0 (184)	100.0 (42)
X <sup>2</sup> =.75.440      p=.000							
탈수급 가구 가구주	건강한편	40.8	80.0	41.4	35.8	19.6	-
	보통	15.9	15.0	13.8	18.5	10.9	40.0
	건강하지 않음	43.3	5.0	44.8	45.7	69.6	60.0
전체		100.0 (202)	100.0 (43)	100.0 (27)	100.0 (77)	100.0 (49)	100.0 (6)
X <sup>2</sup> =.47.026      p=.000							

\*p<.05 \*\*p<.001 \*\*\*p<.000

**나. 만성질환여부**

본 조사에서 건강상태는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응답자의 주관적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 가구주의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가구주의 만성질환 보유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해당이 수급가구 63.0%, 탈수급가구 62.4% 이고, 6개월 이상 투병 및 투약이 수급가구 30.3%, 탈수급가구 28.7%로 었다. 객관적인 건강상태는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수급가구 가구주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0〉 가구주 만성질환여부

(단위: 명, %)

		전체(명)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만성질환 여부	비해당	62.9	63.0	62.4
	3개월 미만 투병/투약	3.6	3.3	5.0
	3개월~6개월 투병/투약	3.5	3.4	4.0
	6개월 이상 투병/투약	30.0	30.3	28.7
전체		100.0 (1015)	100.0 (813)	100.0 (202)
X <sup>2</sup> =.1.438      p=.697				

\*p<.05 \*\*p<.001 \*\*\*p<.000

## 제4절 가구특성의 비교

### 1.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의 가구규모 비교

조사대상자의 가구규모를 분석해 보면 3인 가구가 가장 많고, 5인 이상 가구는 비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수급 집단과 탈수급 집단의 가구규모를 비교해보면 탈수급가구는 수급가구에 비해 단독가구와 2인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인 가구와 4인 가구 비율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제4장의 탈수급 결정요인 분석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가구규모가 작을수록 탈수급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4-11〉 가구규모의 비교

		(단위: %, 명)		
		전체(명)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총 가구원 수	1명	6.1	4.6	12.3
	2명	19.5	16.4	32.0
	3명	37.1	38.1	33.0
	4명	25.2	27.2	17.2
	5명	8.6	9.8	3.4
	6명 이상	3.5	3.9	2.0
전체		100.0 (1,015)	100.0% (813)	100.0% (202)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평균 가구원 수 및 취업자 수 등을 살펴보면, 이들 가구가 소득요인과 지출요인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 있다. 아래 표에 따르면, 수급가구는 평균 가구원 수가 3.34명으로 탈수급가구의 2.73명에 비해 많은 반면, 취업자 수는 1.04명으로 탈수급자의 1.24명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탈수급가구의 경우, 취업을 통한 소득증가 요인과 가구규모 측면에서 지출부담의 경감이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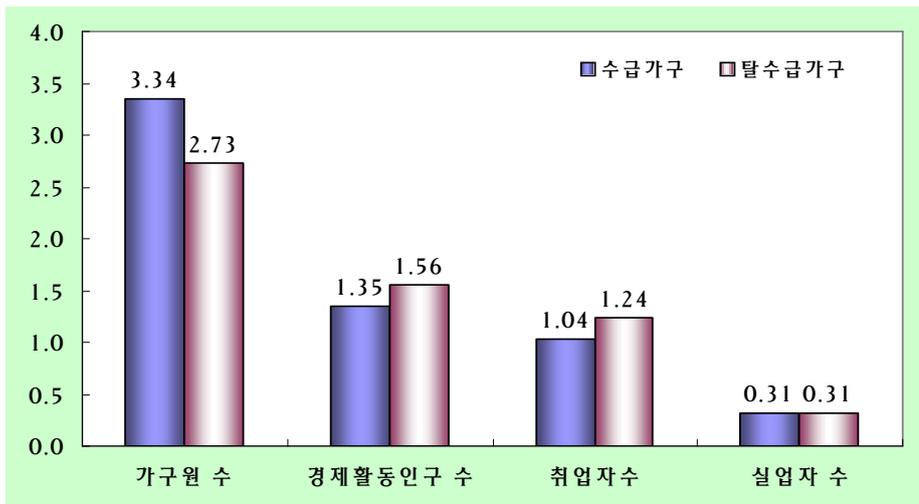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동일한 취업자라 하더라도 임금근로자 수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수급가구의 평균 임금근로자 수는 0.90명으로 탈수

급가구의 1.17명보다 작게 나타나지만, 반대로 비임금근로자 수는 0.14명으로 탈수급가구의 0.07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탈수급하는 취업요인이 주로 임금근로자로의 취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4-12〉 평균 가구원 수 및 취업자 수

	합계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평균 가구원 수	3.22	3.34	2.73
경제활동인구수	1.39	1.35	1.56
√ 취업자 수	1.08	1.04	1.24
· 임금근로자수	0.95	0.90	1.17
· 비임금근로자수	0.13	0.14	0.07
√ 실업자 수	0.31	0.31	0.31

[그림 4-1] 평균 가구원 수 및 취업자 수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의 취업자 수 분포를 보면, 수급가구는 취업자가 2인인 가구의 비율이 10.4%로 탈수급가구의 23.3%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취업자 수 자체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탈수급가구 중 1인 취업자 비중이 67.3%로 높기 때문이다. 그것이 수급가구의 81.0%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자 수가 중요한 요인이나,

그것만으로 탈수급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뒤에 언급할 가구의 생애주기별 지출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표 4-13〉 수급 및 탈수급가구의 취업자 수 분포

(단위: %)			
	합계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0	7.6	8.0	5.9
1인	78.2	81.0	67.3
2인	13.0	10.4	23.3
3인	1.2	0.6	3.5
전 체	100.0	100.0	100.0

위의 표에서 취업자 수가 탈수급에 절대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점은 아래 취업자 및 실업자 구성형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는 가구 내 취업자와 실업자의 구성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뒤, 그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탈수급가구에서 취업자와 실업자가 함께 있는 가구의 비율이 20.7%로 수급가구의 17.4%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4〉 취업자 및 실업자의 구성형태별 분포

(단위: %)			
	합계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취업자 가구	74.3	74.6	73.4
취업자+실업자 가구	18.1	17.4	20.7
실업자 가구	7.6	8.0	5.9
전 체	100.0	100.0	100.0

## 2.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의 가구유형 비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가구의 가구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구규모 외에 가구유형, 혼인상태 등 기타 다른 가구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구유형을 가구원의 구성 비율로 살펴보면 가구주 외에 자녀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상대적으로 배우

자의 비율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비율도 작아서 주로 가구주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많고, 이혼 및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구유형은 가구주의 혼인상태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탈수급 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미혼인 비율이 기혼인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배우자 비율은 수급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탈수급 가구의 성인 자녀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여 가구의 주생계원이 되었으며, 이것이 빈곤가구의 탈수급을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빈곤가구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적자본투자를 확대하고, 성인자녀의 취업 및 자립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구 내에 미취학 아동 또는 간병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 가구원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수급가구의 경우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가 10.5%로 탈수급가구의 3.5%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간병을 필요로 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도 수급가구가 탈수급가구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았다.

일반적으로 요보호 가구원이 있을 경우에는 가구원 보호를 위한 가계지출이 발생된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의 취업 및 근로가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 가구주가 일자리에서 상하이동을 하거나 소득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는 가구원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탈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취업수급가구의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사회서비스 등을 통해 줄여주고, 근로능력 가구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지원 서비스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

〈표 4-15〉 가구원 구성유형 및 가구주 혼인상태

(단위: 명, %)

		전체(명)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가구원 구성유형	가구주	31.1	29.9	36.7
	배우자	10.4	11.1	6.9
	자녀/그 배우자	50.9	52.5	43.2
	부모	5.0	4.2	8.4
	손자녀/그 배우자	0.6	0.6	0.2
	조부모	0.3	-	1.6
	형제자매	1.5	1.1	3.0
	기타	0.3	0.4	-
전체		100.0 (3271)	100.0 (2,710)	100.0 (561)
가구주 혼인상태	유배우	33.7	37.3	19.3
	별거	3.0	3.0	3.0
	사별	16.0	14.8	20.8
	이혼	38.5	39.7	33.7
	미혼	8.9	5.3	23.3
전체		100.0 (1015)	100.0 (813)	100.0 (202)

〈표 4-16〉 요보호 가구원 유무

(단위: 명, %)

		전체(명)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미취학자녀 유무	있다	9.1	10.5	3.5
	없다	90.9	89.5	96.5
전체		100.0 (1015)	100.0 (813)	100.0 (202)
X2=9.591    p=.002				
간병필요가구원 유무	있다	6.5	7.4	3.0
	없다	93.5	92.6	97.0
전체		100.0 (1015)	100.0 (813)	100.0 (202)
X2=5.175    p=.023				

\*p<.05 \*\*p<.001 \*\*\*p<.000

### 3.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의 주거실태 비교

조사대상가구의 주거현황을 보면, 보증금 월세의 비율이 가장 높고, 전세, 무상거주, 무보증 월세, 자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가구의 열악한 주거현실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주거가 빈곤가구의 주요 지출요인을 유발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탈수급가구의 전세거주자 비율이 17.8%로 수급가구의 9.6%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체적으로 보증부월세의 비율이 높지만, 탈수급가구는 최소한의 자산형성 등을 통해 전세로 이동하여 주거안정을 이룬 집단일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말해준다.

〈표 4-17〉 주거현황

(단위: 명, %)

	전체(명)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자가	4.6	4.8	4.0
전세	11.2	9.6	17.8
보증금 있는 월세	64.4	64.5	63.9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포함)	6.2	7.1	2.5
무상거주	12.2	12.9	9.4
영구임대	1.4	1.1	2.5
전체	100.0 (1015)	100.0 (813)	100.0 (202)

## 제5절 소득 및 지출특성의 비교

### 1. 가구단위 소득의 비교

가구소득을 보면, 탈수급가구가 평균 1,271만원으로 수급가구 1,164만원보다 약 107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소득에서 탈수급 가구(65%)에 비해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9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탈수급에 이르는 주된 경로는 소득증가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수급가구의 경우, 취업수급자로 표본을 통제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취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구소득에서 기초보장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2%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들의 가구근로소득이 탈수급 가구에 비해 낮은 이유에 대해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 개인근로소득을 통해 설명할 것이다.

아울러 수급가구의 경우, 사적이전소득 금액이 탈수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들이 탈수급가구에 비해 근로소득 제고에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타 민간단체 등을 통한 이전소득이 발생하고 있을 개연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표 4-18〉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의 소득 비교

(단위 : 만원, %)

	소득(만원)			소득비중(%)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전체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전체
가구근로소득	759	1,174	843	65	92	71
사회보험급여	1	1	1	0	0	0
민간보험급여	2	0	1	0	0	0
기초보장급여	372	68	311	32	5	26
공공부조급여	16	11	15	1	1	1
사적이전소득	13	17	13	1	1	1
재산 소득	0	0	0	0	0	0
가구총소득	1,164	1,271	1,185	100	100	100

가계지출의 경우 탈수급 가구의 가계지출액이 101만원으로 수급가구의 97만원보다 약 4만원 가량 높지만, 두가구의 지출항목별 비중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가계수지와 연소득대비 부채 비율에서 수급가구가 탈수급 가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수급가구는 총소득에서 기초보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부채 비율이 훨씬 커 막대한 부채는 탈수급 진입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해준다. 물론 탈수급 가구 또한 소득보다 지출과 부채 비율이 낮지만 여전히 부채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4-19〉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의 지출 비교

(단위 : 만원, %)

	월 가계지출(만원)			월 가계지출(%)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전 체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전 체
월 세	9	7	9	9	7	9
관리비	3	4	3	3	4	3
광열수도비	8	7	8	8	7	8
약 값	4	6	4	4	5	4
입원비	2	1	1	2	1	2
간병비	0	0	0	0	0	0
공교육비	7	10	8	8	10	8
사교육비	5	4	4	5	4	4
보육비	1	0	1	1	0	1
교통비	10	12	10	10	12	11
통신비	8	9	8	9	9	9
송금	0	0	0	0	0	0
식료품비	24	24	24	25	24	25
피복비	6	6	6	6	6	6
부채상환금	5	3	5	5	3	5
기타지출	5	6	6	6	6	6
가구총지출	97	101	98	100	100	100

〈표 4-20〉 가계소득 및 부채비율

(단위 : %)

	전 체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가계수지(지출/소득)	99	100	95
근로소득비중	71	65	92
보험료비중	0	0	0
기초보장비중	26	32	5
공공부조비중	1	1	1
사적이전비중	1	1	1
연소득대비부채비율	161	180	93

다음 표는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타 복지제도에 의해 가구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이는 이들 집단에게서 복지제도로 인해 소득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물론 그것은 단순히 소득만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지출과의 비교가 필요한 항목이다. 아래 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타 공공부조제도 급여로 인해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에게서 소득의 역전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표 4-21〉 가구별 경상소득과 공공부조전 경상소득의 비교

(단위 : 만원)

	수급	탈수급	전체
경상소득	1,164	1,271	1,185
경상-생계급여	791	1,203	874
경상-공공부조	775	1,192	859

## 2. 개인단위의 소득 비교

개인단위의 소득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의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간 총소득은 탈수급가구가 평균 1306만원으로 수급가구(평균 814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소득에서 개인근로소득과 기초보장생계급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급가구의 개인근로소득은 평균 1,305만원으로 수급가구(평균 812만원)보다 약 593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탈수급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에서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앞서의 분석결과를 감안하면, 자녀의 성장을 통한 가구원의 취업상태 변화가 탈수급을 주도했을 개연성을 시사한다.

기초보장생계급여는 전체적으로 수급가구가 약 367만원으로 탈수급 가구(탈수급 이전 수급시 급여를 지칭하며 평균 62만원)에 비해 높고, 특히 수급가구의 실업자가 약 587만원(소득의 82%)으로 공공부조의 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22〉 수급가구와 탈수급 가구의 개인소득 비교

(단위 : 만원)

	수급자					탈수급자				
	취업자			실업자	전체	취업자			실업자	전체
	입금	비입금	계			입금	비입금	계		
총소득	1,184	1,204	1,186	720	1,154	1,337	2,175	1,394	193	1,324
개인근로소득	826	749	816	394	812	1,262	1,991	1,311	33	1,305
사회보 험급여	연금	1	0	1	0	1	0	0	0	0
	산재수당	0	0	0	0	0	0	0	0	0
	실업급여	0	0	0	0	0	0	0	0	0
민간보험	1	1	1	0	1	1	0	1	0	1
공공부 조급여	기초보장	340	417	350	587	367	54	154	61	76
	기타급여	10	20	11	40	13	8	4	8	34
사적이 전소득	가족친척	6	15	7	28	8	11	30	12	70
	친구이웃	0	2	0	5	1	1	0	1	1
	사회단체	0	0	0	10	1	0	0	0	10
재산소득	0	0	0	0	0	0	0	0	0	0

〈표 4-23〉 임금근로자의 연령별 평균 개인근로소득 비교

(단위 : 만원)

근로 소득	수급								탈수급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활 또는 공공근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활 또는 공공근로	
	전일 제	시간 제	전일 제	시간 제	전일 제	시간 제	전일 제	시간 제	전일 제	시간 제	전일 제	시간 제	전일 제	시간 제	전일 제	시간 제
전체	958	-	877	757	889	656	815	748	1493	-	1450	1117	995	1038	1071	1832
30세 이하	1074	-	790	360	989	908	340	800	1428	-	1068	468	783	417	-	-
30대	953	-	910	790	874	711	903	774	1177	-	1750	650	480	930	-	-
40대	994	-	888	767	909	693	802	679	2146	-	1630	1198	983	1319	1065	2569
50대	779	-	779	773	853	491	880	1366	1465	-	1635	1944	1327	833	1078	
60세 이상	1080	-	918	544	875	622	-	505	-	-	840	-	280	-	-	600

### 3. 재산

총재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의 비중이 가장 크며, 수급가구(평균 808만원, 실재 해당가구 평균 1,003만원)보다 탈수급가구(평균 1,136만원, 실재 해당가구 평균 1,305만원)의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채무불이행에 대해 과거 경험이 있는 경우는 수급가구가 46.0%로 탈수급 가

구의 28.2% 보다 높았지만, 현재 신용불량 경험이 있는 경우는 탈수급가구가 87.9%로 수급가구의 83.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탈수급가구의 경우, 복지제도를 통한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주거비나 교육비 등을 부채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들의 탈수급상태는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부채액 규모는 수급가구가 탈수급 가구보다 약 두 배 가량 크고, 임금근로자보다 비임금근로자의 부채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급가구의 경우, 수급요인 중 하나가 과도한 부채로 인한 지출부담과 경제활동 제약에 있었을 개연성을 말해준다. 하지만 탈수급가구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실업자 가구의 경우, 탈수급 가구(평균 2,071만원)가 수급가구(평균 1,092만원)보다 부채액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부채와 금융채무불이행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준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탈수급가구는 전반적으로 부채금액이 수급가구에 비해 작다. 그리고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순자산이 11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고 있다. 이는 탈수급자 중 임금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연령이 젊고 상용직 비중이 높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전세 등 일정 정도의 기초자산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반면에 수급가구는 비임금 근로자(평균 -1,857만원)와 임금 근로자(평균 -1,178만원), 탈수급 집단의 실업자(평균 -631만원) 순으로 부채가 많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초보장제도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의 경우, 소득과 지출의 비중, 자산과 부채의 비중 측면에서 탈수급가구에게서 지속적인 탈빈곤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은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 4-24〉 금융채무불이행(신용불량) 현황

(단위 : %)

		가구주			가구원		
		전체	수급	탈수급	전체	수급	탈수급
과거 경험 여부	있음	42.5	46.0	28.2	17.2	17.6	15.2
	없음	57.5	54.0	71.8	82.8	82.4	84.8
	계 (수)	100.0 (1015)	100.0 (813)	100.0 (202)	100.0 (3271)	100.0 (2710)	100.0 (561)
		X <sup>2</sup> =20.946 p=.000			X <sup>2</sup> =1.905 p=.168		
현재 경험 여부	있음	84.0	83.4	87.9	85.9	84.9	91.7
	없음	16.0	16.6	12.1	14.1	15.1	8.3
	계 (수)	100.0 (413)	100.0 (360)	100.0 (53)	100.0 (550)	100.0 (469)	100.0 (81)
		X <sup>2</sup> =.774 p=.379			X <sup>2</sup> =2.719 p=.099		
해결 방법	본인 또는 가족친지 도움	36.8	38.7	16.7	35.4	37.5	14.3
	개인회생	5.9	4.8	16.7	5.1	4.2	14.3
	개인파산	39.7	40.3	33.3	40.5	40.3	42.9
	신용회복기관지원	10.3	9.7	16.7	10.1	9.7	14.3
	기타	7.4	6.5	16.7	8.9	8.3	14.3
	계 (수)	100.0 (65)	100.0 (59)	100.0 (6)	100.0 (77)	100.0 (70)	100.0 (7)
		X <sup>2</sup> =3.127 p=.537			X <sup>2</sup> =2.657 p=.617		

\*p<.05 \*\*p<.001 \*\*\*p<.000

〈표 4-25〉 수급가구와 탈수급 가구의 재산 비교

(단위 : 만원)

		수급자					탈수급자				
		취업자			실업자	전체	취업자			실업자	전체
		입금	비입금	계			입금	비입금	계		
부동산	자가	152	193	158	180	159	150	0	140	125	139
	전세	272	214	264	271	265	644	410	628	0	592
	보증부 월세	367	385	369	246	360	382	446	386	137	372
	소유부동산	0	0	0	0	0	2	0	2	0	2
금융자산		14	21	14	19	15	15	0	14	0	13
동산		6	33	10	0	9	14	82	19	0	18
총재산		811	845	815	716	808	1,208	938	1,190	262	1,136
부채		1,989	2,702	2,082	1,092	2,014	1,174	1,258	1,180	2,071	1,231
순자산		-1,178	-1,857	-1,267	-376	-1,205	34	-321	11	-1,809	-95

〈표 4-26〉 수급가구와 탈수급 가구의 재산 비교(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단위 : 만원)

		수급자						탈수급자					
		취업자			실업자	전체	(수)	취업자			실업자	전체	(수)
		임금	비임금	계				임금	비임금	계			
부 동 산	자가	3,289	4,273	3,415	2,484	3,318	(38)	3,541	-	3,541	3,000	3,508	(8)
	전세	2,847	2,234	2,766	3,018	2,783	(83)	3,350	3,410	3,352	-	3,352	(36)
	보증부 월세	568	594	571	372	558	(524)	592	588	591	333	582	(133)
	소유부 동산	100	-	100	-	100	(1)	500	-	500	-	500	(2)
	금융자산	413	947	461	714	476	(21)	1,125	-	1,125	-	1,125	(3)
	동산	202	220	210	30	207	(34)	205	527	249	-	249	(13)
	총재산	1,006	1,066	1,014	861	1,003	(658)	1,346	1,068	1,328	579	1,305	(179)

## 제6절 취업특성의 비교

### 1.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의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비교

2009년 8월 기준으로 조사된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탈수급가구의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율이 28.9%로 수급가구 14.0%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자영업자 비율은 수급가구 9.5%, 탈수급가구 5.0%로 약 4% 정도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전업주부 비율도 탈수급가구(1.5%)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시·일용직 임금근로보다는 상용직 임금근로가 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탈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탈수급 가구는 전업주부 비율이 낮는데 이는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가구 내 2차 소득원이 있음을 의미한다. 탈빈곤 수단으로 빈곤가구 내에 일하는 사람의 수를 증가시키는 정책대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전업주부 비율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추후 보다 정확한 연구나 분석이 필요하다.

〈표 4-27〉 가구주 경제활동상태(2009년 8월 기준)

(단위: 명, %)

		전체(명)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2009년8월31일 현재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6.9	14.0	28.9
	임시직 임금근로자	22.2	22.4	21.4
	일용직 임금근로자	33.5	34.5	29.4
	자활 또는 공공근로자	3.5	3.8	2.5
	고용주	0.2	0.2	-
	자영업자	8.6	9.5	5.0
	무급가족종사자	0.2	0.2	-
	실업자	10.7	10.7	10.9
	전업주부	3.5	4.1	1.5
	기타	0.6	0.6	0.5
전체		100.0(1015)	100.0(813)	100.0(202)

$X^2=30.924$      $p=.000$

\*p<.05 \*\*p<.001 \*\*\*p<.000

주: 기타 집단은 아동/학생/65세 이상 미취업 노인을 지칭

가구주의 최초 일자리는 수급가구 27.2%, 탈수급가구 28.2%로 두 집단 모두 제조업인 경우가 많았다. 가구주 현재 일자리의 경우에는 수급가구는 도소매업이 15.7%로 가장 높았고, 탈수급가구는 숙박음식점업이 16.7%로 가장 높았다. 최초 일자리의 경우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가 비슷한 분포를 보인 반면, 현재 일자리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수급가구는 숙박음식업(15.5%), 제조업(10.9%), 공공수리개입 서비스업(9.8%)순으로 가구주 최초 일자리와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탈수급가구는 사업서비스업(15.8%), 도소매·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10%), 제조업(6.9%)순으로 나타나 제조업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사업서비스업, 도소매·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 가구주 취업 업종 : 현재 업종과 최초 일자리 업종 비교

(단위: 명, %)

		전체(명)	수급(현)	탈수급(현)	수급(최초)	탈수급(최초)
가구주 취업업종	농림업/어업/광업	4.0	3.8	4.5	4.4	5.0
	제조업	10.1	10.9	6.9	27.2	28.2
	전기가스수도사업	0.2	0.1	0.5	0.1	1.0
	건설업	4.6	4.2	6.4	4.1	5.9
	도소매업	14.7	15.7	10.3	16.2	12.9
	숙박음식업	15.7	15.5	16.7	10.5	12.4
	운수업	6.9	7.7	3.4	6.6	2.0
	통신업	0.6	0.5	1.0	0.6	0.5
	금융보험업	1.3	1.1	2.0	2.5	2.0
	부동산업	0.1	0.1	-	-	-
	사업서비스업	9.6	8.1	15.8	8.9	11.4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1.0	0.9	1.5	1.0	1.0
	교육서비스업	3.3	3.0	4.9	3.2	4.0
	보건사회복지사업	5.5	5.7	4.9	3.1	4.5
	오락문화운동서비스업	1.5	1.5	1.5	0.9	1.0
	기타공공개인서비스업	9.9	9.8	10.3	4.9	4.0
	가사서비스업	3.2	3.2	3.4	3.6	4.5
	국제 및 외국기관	7.7	8.1	5.9	2.3	-
	전체	100.0(1015)	100.0(813)	100.0(202)	100.0(813)	100.0(202)
현재 취업업종			$X^2=30.524$	$p=.045$		
최초일자리 업종			$X^2=22.731$	$p=.158$		

\*p<.05 \*\*p<.001 \*\*\*p<.000

두 집단 모두 가구주의 최초 취업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로 서비스종사자나 판매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탈수급가구에는 사무종사자(18.3%)가 서비스종사자(16.8%)보다 높고, 수급가구의 사무종사자(10.2%) 비율에 비해 8%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 가구주의 현재 직종을 살펴보면 여전히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두 집단 간 차이점은 탈수급가구의 경우 여전히 수급가구에 비해 사무종사자 비율이 높고,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소폭 감소한 것이다. 빈곤가구 가구주의 경우 노동시장 초기 진입부터 단순노무, 서비스나 판매직 등 저임금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저임금의 탓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단순노무, 서비스, 판매직보다는 사무직으로 진입하는 경우, 탈수급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9〉 가구주 취업 직종 : 현재 직종과 최초 일자리 직종 비교

(단위: 명, %)

		전체(명)	수급(현)	탈수급(현)	수급(최초)	탈수급(최초)
가구주 취업 직종	의회의원/임직원/관리자	-	-	-	0.4	-
	전문가	2.9	2.8	3.0	2.3	2.0
	기술공및준전문가	1.5	1.1	3.0	1.4	1.5
	사무종사자	7.2	5.7	13.3	10.2	18.3
	서비스종사자	22.0	23.0	18.2	21.0	16.8
	판매종사자	12.1	12.5	10.3	13.0	9.9
	농업어업 숙련근로자	0.6	0.5	1.0	1.0	1.0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4.0	3.8	4.9	6.6	5.9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2.0	2.1	1.5	2.2	4.5
	단순노무종사자	40.0	40.3	38.4	39.5	40.1
	군인	0.1	-	0.5	-	-
	기타	7.7	8.1	5.9	2.3	-
전체		100.0(1015)	100.0(813)	100.0(202)	100.0(813)	100.0(202)
		현재 취업업종		$X^2=25.967$	p=.004	
		최초일자리 업종		$X^2=22.731$	p=.158	

\*p<.05 \*\*p<.001 \*\*\*p<.000

근로기간을 통해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가구주가 최초일자리에서 근로한 기간은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가구는 2년 이상 3년 미만이 1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탈수급 가구는 1년 이상 2년 미만이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주로 1년 이상 3년 미만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초기 노동시장 진입이 불안정했음을 알 수 있다.

〈표 4-30〉 가구주 최초 일자리 근로기간

(단위: 명, %)

		전체(명)	수급(현)	탈수급(현)
가구주 최초일자리 근로기간	6개월 미만	10.1	9.1	14.3
	6개월 이상 1년 미만	8.6	8.4	9.4
	1년 이상 2년 미만	15.3	13.5	22.7
	2년 이상 3년 미만	15.7	15.9	15.3
	3년 이상 4년 미만	10.7	11.6	7.4
	4년 이상 5년 미만	6.8	7.4	4.4
	5년 이상 6년 미만	6.1	6.5	4.4
	6년 이상 10년 미만	12.4	12.5	12.3
	10년 이상	14.0	15.1	9.9
전체		100.0(999)	100.0(797)	100.0(202)

$X^2=22.582$      $p=.004$

\*p<.05 \*\*p<.001 \*\*\*p<.000

현재 일자리의 근로기간을 보면 최초 일자리 근로기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탈수급가구는 32.8%, 수급가구는 1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탈수급가구는 1년 이상 2년 미만이 22.2%, 6개월 미만이 18.5%로 전체의 약 70%가 2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 수급가구도 마찬가지로 약 60% 이상이 3년 미만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현재 일자리에서의 근로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가구주의 현재 일자리 근로기간

(단위: 명, %)

		전체(명)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가구주 현재일자리 근로기간	6개월 미만	14.9	13.9	18.5
	6개월 이상 1년 미만	20.2	17.0	32.8
	1년 이상 2년 미만	17.6	16.5	22.2
	2년 이상 3년 미만	11.8	12.0	10.6
	3년 이상 4년 미만	8.3	9.5	3.7
	4년 이상 5년 미만	5.8	6.7	2.1
	5년 이상 6년 미만	3.4	4.0	1.1
	6년 이상 10년 미만	11.1	12.6	5.3
	10년 이상	6.9	7.8	3.7
전체		100.0(932)	100.0(741)	100.0(192)

$X^2=50.141$      $p=.000$

\*p<.05 \*\*p<.001 \*\*\*p<.000

반면 2008년 근로기간과 지난 6개월간 근로시간 및 주당 근로일수를 분석해보면 두 집단 모두 약 80% 정도가 10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하였고, 주당 5일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도 주당 30시간 이상인 경우가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탈수급 가구의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도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한해의 취업기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등을 고려할 때 빈곤 가구 가구주의 경제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일자리에서의 고용기간, 최초일자리에서의 고용기간과 대비해서 본다면 일의 양과 무관하게 실직과 재취업을 반복하는 고용단절이 크고,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가구를 근로빈곤층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최소화하거나, 그에 따라 소득을 보장하는 탄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4-32〉 가구주의 2008년 취업기간

(단위: 명, %)

		전체(명)	수급(현)	탈수급(현)
가구주 2008년 취업기간	취업안함	0.2	0.3	-
	1개월 이상 ~ 3개월 이하	2.5	2.1	4.2
	4개월 이상 ~ 6개월 이하	5.1	5.1	5.3
	7개월 이상 ~ 9개월 이하	7.5	6.9	9.9
	10개월 이상 ~ 12개월 이하	84.6	85.7	80.6
전체		100.0(944)	100.0(753)	100.0(191)
		$X^2=11.324$	$p=.501$	

\*p<.05 \*\*p<.001 \*\*\*p<.000

〈표 4-33〉 가구주의 지난 6개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단위: 명, %)

		전체(명)	수급(현)	탈수급(현)
가구주 지난 6개월간 평균 근로시간	10시간 미만	3.9	3.8	4.2
	11시간 ~ 20시간 미만	9.5	10.1	7.3
	21시간 ~ 30시간 미만	16.0	17.0	12.0
	31시간 ~ 40시간 미만	26.1	25.8	27.2
	41시간 ~ 50시간 미만	25.9	24.7	30.4
	50시간 이상	18.7	18.6	18.8
전체		100.0(932)	100.0(741)	100.0(191)
$X^2=5.659$ $p=.341$				
가구주의 지난 6개월간 평균 주당 근로일수	1일	0.4	0.4	0.5
	2일	3.5	3.7	2.6
	3일	9.2	9.5	7.9
	4일	9.0	10.0	4.7
	5일	38.0	35.2	48.9
	6일	34.0	34.3	33.2
	7일	5.9	6.8	2.1
	전체		100.0(937)	100.0(741)
$X^2=19.107$ $p=.004$				

\* $p<.05$  \*\* $p<.001$  \*\*\* $p<.000$

## 2.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 가구주 일자리의 질 비교

여기서는 각 집단의 일자리의 질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일의 규칙성 여부, 일자리 규모를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의 경우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수급가구 가구주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집단의 비율이 23.0%로 탈수급가구 가구주의 46.1%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탈수급가구 가구주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을 작성함으로써 사전에 임금과 고용기간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는 탈수급가구에서 상용직근로자 비중이 높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상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영세사업체 종사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사업장 규모나 업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4-34〉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단위: 명, %)

		전체(명)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현 일자리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작성했음	27.7	23.0	46.1
	작성 안했음	60.4	63.9	47.1
	비해당(비임금)	11.8	13.1	6.8
전체		100.0(932)	100.0(741)	100.0(191)

$X^2=41.320$      $p=.000$

\*p<.05 \*\*p<.001 \*\*\*p<.000

일자리의 규칙성에서는 규칙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탈수급가구는 74.9%, 수급가구는 53.7%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탈수급가구가 임시·일용직 비율이 수급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수급가구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35〉 일자리의 규칙성 여부

(단위: 명, %)

		전체(명)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현 일자리 규칙적 일	규칙적으로 일한다	58.0	53.7	74.9
	불규칙적으로 일하지만,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17.3	18.7	11.5
	불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	24.7	27.5	13.6
전체		100.0(932)	100.0(741)	100.0(191)

$X^2=28.214$      $p=.000$

\*p<.05 \*\*p<.001 \*\*\*p<.000

사업장 규모는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집단 모두 3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중은 탈수급자에게서 약 두 배 가량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율은 수급가구 53.7%, 탈수급가구 34.2%로 수급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높고,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율은 수급가구 16.3%, 탈수급가구 32.1%로 탈수급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36〉 사업장 규모

		(단위: 명, %)		
		전체(명)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현 일자리 근로자 수	1~4명	49.7	53.7	34.2
	5~9명	19.5	16.3	32.1
	10~29명	11.6	10.6	15.8
	30~49명	5.1	5.5	3.7
	50~69명	1.4	1.2	2.1
	70~99명	1.2	1.5	-
	100명 이상	4.9	3.9	8.9
	일정치 않다	4.7	5.5	1.6
	모름	1.8	1.9	1.6
전체		100.0(932)	100.0(741)	100.0(192)
		$X^2=51.948$ $p=.000$		

\*p<.05 \*\*p<.001 \*\*\*p<.000

근로시간은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일자리 질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탈수급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빈곤계층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상향이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경제활동상태 비교

임금근로를 하고 있는 비임금 근로를 하고 있는지는 수급지위와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실태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수급가구와 탈수급 가구 모두 임금근로의 비율이 높으나 탈수급 가구의 경우 임금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표 4-37〉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비율

		(단위: 명, %)		
		전체(명)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임금/비임금 비율	임금근로자	88.2	86.9	93.2
	비임금근로자	11.8	13.1	6.8
전체		100.0(932)	100.0(741)	100.0(191)
		$X^2=5.715$ $p=.017$		

\*p<.05 \*\*p<.001 \*\*\*p<.000

## 가. 임금 근로자

임금근로자의 경우 어떤 계기로 취업하게 되었는지를 수급여부에 따라 구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두 집단 모두 직장동료나 주변사람의 소개를 통해 취업한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 비록시장 및 일간지 구인란 등을 통해 취업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 노동시장의 채용과정을 통해 일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취업한 것을 의미한다. 빈곤가구 가구주의 인적자본 특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은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채용자격을 갖춘 경우가 적다. 따라서 빈곤가구의 경우 채용에 있어 엄격한 자격이나 기준을 요하고, 정해진 채용과정에 합격해야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보다는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일자리는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 강한 노동강도의 열악한 일자리인 경우가 많다.

현재 일자리의 고용상태를 살펴보면 수급집단의 약 30%, 탈수급 집단의 약 20%가 호출근로나 용역, 파견근로, 개인도급, 위탁 등의 고용상태에 놓여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용형태는 중간착취, 열악한 고용환경 등에 처할 위험이 훨씬 많고, 태생적으로 저임금 노동인 경우가 많으므로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표 4-38〉 현재 일자리 취업계기

		(단위: 명, %)		
		전체(명)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현재 일자리 취업계기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로	15.0	14.9	15.2
	직장동료나 주변사람의 소개로	49.3	48.8	51.1
	공공직업알선기관의 취업알선을 통해	7.0	7.2	6.2
	민간직업알선기관의 취업알선을 통해	4.1	4.0	4.5
	벼룩시장 및 일간지 구인란, 인터넷 등을 보고	15.6	16.3	12.9
	동사무소나 자활기관 등의 소개로	8.9	8.6	10.1
	스스로 공부해서 개척	0.1	0.2	-
전체		100.0(811)	100.0(633)	100.0(178)
$X^2=2.119$ $p=.908$				
현재 일자리 특성	시간제	34.4	36.4	27.1
	전일제	65.6	63.6	72.9
	전체		100.0(811)	100.0(633)
$X^2=5.269$ $p=.022$				
현재 일자리 고용상태	직접고용	73.7	72.4	78.5
	호출근로	18.0	19.1	14.1
	용역, 파견근로	5.4	5.1	6.8
	개인도급, 위탁	2.2	2.6	0.6
	가내근로	0.6	0.8	-
전체		100.0(811)	100.0(633)	100.0(178)
$X^2=7.409$ $p=.116$				

\*p<.05 \*\*p<.001 \*\*\*p<.000

임금근로자의 이직 또는 창업희망 여부를 살펴본 결과 수급가구는 이직보다는 창업, 탈수급 가구는 창업보다는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탈수급 가구의 경우 희망하지 않음이 수급가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39〉 이직 또는 창업희망 여부

		(단위: 명, %)		
		전체(명)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이직 또는 창업희망 여부	이직희망	18.2	18.0	19.0
	창업희망	20.6	21.6	16.4
	희망안함	61.2	60.3	64.6
전체		100.0(894)	100.0(705)	100.0(189)
$X^2=2.336$ $p=.311$				

\*p<.05 \*\*p<.001 \*\*\*p<.000

## 나. 비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 조사에서 가구주가 비임금근로자인 경우는 총 121가구였으며, 수급가구는 108가구, 탈수급 가구는 13가구였다. 분석대상이 되는 가구수가 너무 적어서 통계적 해석에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수급가구와 탈수급 가구 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결과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시작 계기를 보면, 수급가구의 경우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64.9%로 가장 높았으며, 탈수급가구는 주변사람이나 동일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소개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57.1%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는 사업장의 장소인데, 수급가구의 경우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가 55.7%로 가장 높았고, 본인 및 가족소유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16.5%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탈수급가구는 본인 및 가족이 임대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50%로 가장 높았고, 본인 및 가족소유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3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0〉 사업시작 계기

		(단위: 명, %)		
		전체(명)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사업시작 계기	가족이나 친지의 권유로	18.0	18.6	14.3
	주변사람이나 동일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소개로	21.6	16.5	57.1
	본인의 자발적 선택으로	58.6	64.9	14.3
	공공창업지원기관의 소개(지원)로	1.8	-	14.3
전체		100.0(121)	100.0(108)	100.0(13)
		$X^2=28.693$ $p=.000$		
사업장 특성 (장소)	본인 및 가족소유의 사업장이 있음	18.3	16.5	33.3
	본인 및 가족이 임대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음	30.3	27.8	50.0
	고정된 사업장이 없음	51.4	55.7	16.7
전체		100.0(121)	100.0(108)	100.0(13)
		$X^2=6.545$ $p=.038$		

\* $p<.05$  \*\* $p<.001$  \*\*\* $p<.000$

현재 사업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두 집단 모두 안정적인 일감이나 판매선의 확보가 가장 어렵다고 답했으며, 운영 또는 신규투자금의 조달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1〉 현재 사업(일)에서 어려운 점

		(단위: 명, %)		
		전체(명)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현재 사업(일)에서 어려운 점	운영(신규투자) 자금의 조달	16.4	16.3	16.7
	안정적인 일감이나 판매선 확보	74.5	73.5	83.3
	행정절차(각종 인허가)	1.8	2.0	-
	필요한 인력확보	2.7	3.1	-
	어려운 점 없음	3.6	4.1	-
	건강이 허락하지 않음	0.9	1.0	-
전체		100.0(121)	100.0(108)	100.0(13)
		$X^2=1.365$ $p=.928$		

\*p<.05 \*\*p<.001 \*\*\*p<.000

비임금근로자의 취업 또는 업종변경 희망 여부는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가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수급가구의 경우 취업보다는 업종변경을 희망하는 것으로 탈수급가구는 업종변경 보다는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수급가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42〉 취업 또는 업종변경 희망 여부

		(단위: 명, %)		
		전체(명)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취업또는 업종변경 희망여부	취업희망	12.6	10.2	30.8
	업종변경희망	14.4	15.3	7.7
	희망안함	73.0	74.5	61.5
전체		100.0(121)	100.0(108)	100.0(13)
		$X^2=4.574$ $p=.102$		

\*p<.05 \*\*p<.001 \*\*\*p<.000

### 다. 이직 또는 취업희망자

이직 또는 취업희망자의 희망이유, 관련 어려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직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가구는 총 175가구였으며, 수급가구는 137가구, 탈수급가구는 38가구였다. 두 집단 모두 이직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적어서였으며, 그 다음은 일자리가 불안정해서였다. 그 외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약 7% 정도 있었다.

〈표 4-43〉 이직 또는 취업 희망 이유(1순위/복수응답)

		1순위			복수응답	
		전체(명)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이직 취업 희망 사유	소득이 적어서	75.3	76.3	71.8	93.4	90.7
	일자리가 불안정해서	13.5	13.7	12.8	61.4	50.2
	적성에 안 맞아서	0.6	-	2.6	5.9	3.5
	건강이 좋지 않아서	7.3	7.2	7.7	18.6	16.9
	나이가 많아서	1.7	1.4	2.6	4.5	21.4
	시간활용이 자유롭지 못해서	0.6	0.7	-	-	-
	몸이 힘들어서	0.6	0.7	-	-	-
	거리가 멀어서	0.6	-	2.6	-	-
전체		100.0(175)	100.0(137)	100.0(38)	77.7(137)	22.3(38)
		X <sup>2</sup> =8.025 p=.330			-	
이직 또는 취업관련 어려움	취업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17.3	16.5	20.0	32.7	25.6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어서	2.8	2.9	2.5	10.8	6.8
	학력이나 직장경력이 부족해서	19.6	20.9	15.0	37.5	32.2
	나이가 많아서	21.8	20.1	27.5	37.0	53.4
	건강하지 않아서	19.6	18.0	25.0	29.9	42.8
	가사문제로	5.0	5.0	5.0	9.9	7.0
	이직(재취업)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생계비 문제로	7.8	8.6	5.0	25.6	24.8
	신용불량문제로	1.7	2.2	-	8.5	-
	교통불편	0.6	0.7	-		
	식구를 돌보아야 해서	2.2	2.9	-		
	취업하면 수급이 탈락되므로	0.6	0.7	-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1.1	1.4	-		
전체		100.0(175)	100.0(137)	100.0(38)	77.2(135)	22.8(38)
		X <sup>2</sup> =6.019 p=.872			-	

\*p<.05 \*\*p<.001 \*\*\*p<.000

이직 또는 취업을 준비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두 집단 모두 없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탈수급가구의 경우 준비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수급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빈곤가구가 이직이나 취업을 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은 구인정보 수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문의하는 방법이었다.

〈표 4-44〉 이직 또는 취업 준비경험 및 준비방법(복수응답)

		(단위: 명, %)		
		전체(명)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이직/취업 준비경험	있다	30.9	29.0	37.5
	없다	69.1	71.0	62.5
전체		100.0(175)	100.0(137)	100.0(38)
$X^2=5.715$ $p=.017$				
이직 취업 준비방법	구인정보수집	52.0	56.3	40.0
	주변 사람들에게 일자리 문의	40.3	42.5	34.1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취업훈련과정 참여	18.1	19.2	15.0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취업훈련과정 참여	3.7	2.2	7.9
	교육기관 등을 통한 학위취득	18.2	17.8	19.2
전체		100.0(58)	73.5(44)	26.5(14)

\*p<.05 \*\*p<.001 \*\*\*p<.000

## 라. 창업 또는 업종변경 희망자

창업이나 업종변경을 희망하는 가구는 총 194가구이며, 수급가구는 163가구, 탈수급 가구는 31가구이다. 두 집단 모두 소득이 적기 때문에 창업이나 업종을 변경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일자리가 불안정해서였다.

두 집단 모두 창업이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창업자금이 부족한 것이고, 그 다음은 경영능력이나 사업관련 기술이 부족한 점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복수응답의 경우 창업아이템이나 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과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많았다.

〈표 4-45〉 창업 또는 업종변경 희망 이유(1순위/복수응답)

(단위: 명, %)

		1순위			복수응답	
		전체(명)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창업 업종변경 희망이유	소득이 적어서	74.8	75.7	69.7	95.7	91.5
	일자리가 불안정해서	16.8	16.0	21.2	72.1	58.6
	적성에 안 맞아서	1.0	0.6	3.0	3.9	5.1
	건강이 좋지 않아서	6.4	7.1	3.0	18.5	23.3
	나이가 많아서	1.0	0.6	3.0	4.7	12.5
전체		100.0(194)	100.0(163)	100.0(31)	84.2(163)	15.8(31)
		X <sup>2</sup> =4.612    p=.330			-	

\*p<.05 \*\*p<.001 \*\*\*p<.000

〈표 4-46〉 창업 또는 업종변경 어려움(1순위/복수응답)

(단위: 명, %)

		1순위			복수응답	
		전체(명)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창업 업종 변경 어려움	창업정보나 사업아이템이 부족해서	4.9	4.7	6.1	23.5	22.6
	창업자금이 부족해서	76.0	77.8	66.7	88.3	88.9
	경영능력이나 사업관련 기술이 부족해서	6.4	5.3	12.1	20.7	22.2
	나이가 많아서	1.0	0.6	3.0	7.9	7.4
	건강하지 않아서	2.9	2.3	6.1	16.8	22.3
	창업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생계비 문제로	7.8	8.2	6.1	33.8	36.7
	부채가 많아서	1.0	1.2	-	6.4	-
전체		100.0(194)	100.0(163)	100.0(31)	84.2(163)	15.8(31)
		X <sup>2</sup> =6.134    p=.408			-	

\*p<.05 \*\*p<.001 \*\*\*p<.000

창업 준비경험에 대해서는 수급가구(40.9%)가 탈수급가구(18.8%) 보다 상대적으로 준비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방법을 살펴보면 수급가구는 주변 사람들에게 창업을 위한 자문요청, 아이템 구상을 위한 정보수집 순으로 나타났으며, 탈수급가구는 주변 사람들에게 창업을 위한 자문요청, 창업관련 기술습득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7〉 창업 준비경험 및 준비방법(복수응답)

(단위: 명, %)

		전체(명)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창업/업종변경 준비경험	그렇다	37.4	40.9	18.8
	그렇지 않다	62.6	59.1	81.3
전체		100.0(194)	100.0(163)	100.0(31)
		$X^2=5.665$ $p=.017$		
창업 준비 방법	아이템 구상을 위한 정보수집	37.7	38.7	26.1
	주변 사람들에게 창업에 대한 자문요청	50.8	50.2	57.5
	창업자금 마련	14.8	16.2	-
	창업관련 기술습득	17.4	14.0	55.7
전체		100.0(61)	91.7(56)	8.3(5)
		$X^2=5.715$ $p=.017$		

\* $p<.05$  \*\* $p<.001$  \*\*\* $p<.000$

#### 4.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의 가구원 경제활동상태 비교

탈수급가구의 경우 가구원이 임금근로에 종사하는 비율은 수급가구보다 약 15% 정도 높다.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율은 10% 이상 차이를 보여 가구주뿐만 아니라 가구원 경제활동상태도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원 취업 직종은 가구주 취업 직종과 분포가 거의 비슷하며, 가구주 직종과 마찬가지로 수급가구에 비해 사무직 및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48〉 가구원 경제활동상태

(단위: 명, %)

		전체(명)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가구원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5	4.7	15.5
	임시직 임금근로자	8.8	8.1	12.0
	일용직 임금근로자	12.2	12.0	13.6
	자활 또는 공공근로자	2.1	2.2	1.8
	자영업자	3.5	3.8	2.5
	무급가족종사자	0.3	0.3	0.2
	실업자	9.7	9.3	11.6
	전업주부	6.0	6.1	5.4
	기타	50.9	53.6	37.5
전체		100.0(3271)	100.0(2710)	100.0(561)
		$X^2=121.736$ $p=.000$		

\* $p<.05$  \*\* $p<.001$  \*\*\* $p<.000$

〈표 4-49〉 가구원 취업 직종

(단위: 명, %)

		전체(명)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가구주 취업직종	전문가	1.1	0.9	2.1
	기술공및준전문가	0.6	0.4	1.2
	사무종사자	2.9	2.0	7.1
	서비스종사자	7.9	7.2	11.2
	판매종사자	4.6	4.6	4.6
	농업,임업및어업 숙련근로자	0.2	0.1	0.4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4	1.2	2.3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0.6	0.6	0.5
	단순노무종사자	14.2	13.9	15.9
	군인	-	-	0.2
	기타	66.5	69.0	54.4
전체	100.0(3271)	100.0(2710)	100.0(561)	

$X^2=90.438$      $p=.000$

\*p<.05 \*\*p<.001 \*\*\*p<.000

〈표 4-50〉 가구원 비경제활동사유

(단위: 명, %)

		전체(명)	수급(현)	탈수급(현)
가구원 비경제활동 사유	근로무능력	14.6	14.3	16.1
	학업	65.3	67.9	50.0
	가사	10.0	9.8	10.7
	양육	1.5	1.5	1.2
	간병	1.0	0.7	2.4
	구직포기	0.5	0.4	1.2
	근로의사 없음	0.8	0.6	1.8
	기타	6.4	4.6	16.7
전체	100.0(1159)	100.0(984)	100.0(175)	

$X^2=48.513$      $p=.000$

\*p<.05 \*\*p<.001 \*\*\*p<.000

## 제7절 복지제도 수급실태 비교

### 1. 수급자와 탈수급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비교

현재 사회보험 가입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먼저 전체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의 경우, 전체적으로 가입률이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제도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10% 내외의 낮은 수준이며, 탈수급자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높기는 하지만 평균 30~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수급자와 탈수급자를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집단을 비교해 보면, 사회보험 가입률은 가구주와 가구원 두 방식으로 추정하더라도, 수급가구에 비해 탈수급가구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탈수급가구의 노동시장진입이 상대적으로 사회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51〉 사회보험 가입률의 비교(현재)

	가구주			가구원		
	전체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전체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국민연금	15.8	9.4	40.6	11.0	6.2	29.1
산재보험	13.9	8.4	35.3	14.8	8.2	35.5
고용보험	15.9	10.5	36.9	16.6	10.1	37.9
건강보험	87.6	70.7	94.6	87.3	70.5	95.1

아래 표는 위의 표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전체 사회보험 가입분류 항목별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참고로 아래 수치는 비해당집단을 포함한 전체 취업빈곤층 중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여기서 수급 전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보면, 산재보험, 고용보험 모두 가입한 경우는 탈수급가구의 가구주와 가구원의 비율이 수급가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52〉 현재 사회보험 가입여부

(단위 : %)

		가구주			가구원		
		전체	수급가구	탈수급 가구	전체	수급가구	탈수급 가구
국민연금	비행당	4.1	4.6	2.5	41.3	44.4	26.4
	직장국민연금	10.5	4.8	33.2	4.1	1.6	16.0
	지역국민연금	3.8	3.7	4.5	2.1	1.7	4.3
	특수지역연금	0.1	-	.5	.0	-	0.2
	납부예외	4.1	4.4	3.0	2.2	2.1	2.9
	미가입	76.7	81.9	55.9	49.9	49.9	50.1
	모름	0.6	0.6	.5	0.3	.3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3271)	(2710)	(561)
		X <sup>2</sup> =145.537 p=.000			X <sup>2</sup> =293.227 p=.000		
산재보험	비해당	7.7	8.1	5.9	66.5	69.0	54.4
	가입	12.7	7.6	33.2	4.9	2.5	16.2
	미가입	78.6	83.0	60.9	28.3	28.0	29.4
	모름	1.0	1.2	-	0.3	0.4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3271)	(2710)	(561)
		X <sup>2</sup> =96.622 p=.000			X <sup>2</sup> =195.364 p=.000		
고용보험	비해당	7.7	8.1	5.9	66.5	69.0	54.4
	가입	14.5	9.5	34.7	5.5	3.1	17.3
	미가입	76.9	81.3	59.4	27.7	27.5	28.3
	모름	.9	1.1	-	0.3	0.3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3271)	(2710)	(561)
		X <sup>2</sup> =84.164 p=.000			X <sup>2</sup> =186.169 p=.000		
건강보험	비해당	-	-	-	-	-	-
	직장	10.5	1.8	45.5	9.1	2.1	42.6
	지역	12.2	4.7	42.6	11.6	4.6	45.1
	미가입	3.2	2.7	5.0	2.9	2.6	4.5
	모름	-	-	-	0.1	0.1	-
	의료급여	74.1	90.8	6.9	76.3	90.5	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3271)	(2710)	(561)	
		X <sup>2</sup> =639.445 p=.000			X <sup>2</sup> =1916.259 p=.000		

\*p<.05 \*\*p<.001 \*\*\*p<.000

〈표 4-53〉 수급전 사회보험 가입여부

(단위 : %)

		가구주			가구원		
		전체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전체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국민연금	비해당	7.2	6.0	11.9	51.6	53.6	42.0
	가입	15.6	15.7	14.9	6.0	5.7	7.1
	미가입	76.3	77.2	72.6	42.0	40.2	50.7
	모름	0.9	1.0	0.5	0.4	0.4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3271)	(2710)	(561)
		$X^2=8.775$ p=.032			$X^2=26.759$ p=.000		
산재보험	비해당	21.1	19.0	29.7	68.8	69.6	64.9
	가입	9.5	9.1	10.9	3.5	3.2	5.0
	미가입	67.5	69.7	58.4	26.9	26.3	29.8
	모름	2.0	2.2	1.0	0.9	1.0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3271)	(2710)	(561)
		$X^2=13.667$ p=.003			$X^2=10.141$ p=.017		
고용보험	비해당	21.0	18.9	29.7	68.6	69.5	64.2
	가입	10.1	10.0	10.9	3.8	3.5	5.3
	미가입	66.9	69.0	58.4	26.8	26.1	30.1
	모름	2.0	2.2	1.0	0.9	1.0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3271)	(2710)	(561)
		$X^2=13.212$ p=.004			$X^2=11.076$ p=.011		
건강보험	비해당	0.1	0.1	-	.0	.0	-
	가입	54.0	53.0	57.9	54.0	53.2	57.8
	미가입	45.4	46.5	41.1	45.5	46.4	41.3
	모름	0.5	0.4	1.0	0.4	0.3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3271)	(2710)	(561)
		$X^2=3.278$ p=.351			$X^2=8.061$ p=.045		

\*p<.05 \*\*p<.001 \*\*\*p<.000

## 2. 수급자와 탈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경험 비교

### 가. 수급자와 탈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 경험

본 절에서는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 가구주의 수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사유, 최초수급시점, 최초수급연령, 중간탈수급 횟수, 총수급 기간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가장 최근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신청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이혼·사별 등으로 소득이 줄어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41.1%)의 경우, 이혼·사별로 인한 소득감소가 수급신청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 최초 수급시점을 보면, 2000년 이전에 최초 수급한 경우는 탈수급가구(30.1%)가 수급가구(25.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탈수급자 중 2005~2006년 진입한 집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초 수급연령을 보면, 30대와 40대가 77.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탈수급 가구(36.7세, 440.8개월)에 비해 수급가구(40.1세 481.0개월)의 연령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탈수급 가구의 경우 12세에서 29세의 비율(17.2%)이 수급가구(6.3%)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녀가 고등교육 이후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증가로 탈수급 하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간 탈수급 횟수의 경우 전반적으로 중간 탈수급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1회의 수급경험은 탈수급 가구(10.2%)가 수급 가구(4.3%)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1회 이상의 수급 경험이 있는 탈수급 집단(11.6%)이 수급 집단(5.0%)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1회이상 탈수급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탈수급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수급기간은 수급가구의 경우 8년 이상(2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평균 4.8년(57.8개월)으로 나타났다. 탈수급 가구(평균 4.7년, 57.5개월)의 경우 6년 이상 8년 미만이 33.8%로 가장 높았으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탈출하지 못하면 수급이 장기화 된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표 4-54〉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경험

(단위 : %)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신청이유	장애/질병 등으로 일할 수 없어서	29.0	30.3	23.8
	일감이 줄거나 파산해서	13.2	13.3	12.9
	이혼·사별 등으로 소득이 줄어서	35.0	33.5	41.1
	가구원을 돌봐야 해서	13.7	14.5	10.4
	예전부터 가난해서	7.7	7.4	8.9
	기타	1.5	1.1	3.0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11.371 p=.044				
최초수급시점	2000년 이전	26.0	25.2	30.1
	2001-2002년	14.7	14.2	17.1
	2003-2004년	20.1	20.3	19.2
	2005-2006년	20.0	19.8	21.2
	2007-2008년	19.2	20.5	12.3
	계	100.0	100.0	100.0
	(수)	(928)	(780)	(148)
X2=6.637 p=.173				
최초수급연령	12-19세	4.1	2.2	14.3
	20-29세	5.5	4.1	12.9
	30-39세	37.1	40.4	19.7
	40-49세	40.5	40.8	38.8
	50-59세	10.7	10.5	12.2
	60세이상	2.0	1.9	2.0
	계	100.0	100.0	100.0
	(수)	(928)	(780)	(148)
	평균	474.6406	481.0453	440.8997
X2=75.770 p=.000				
중간탈수급횟수	0회	93.9	95.0	88.4
	1회	5.2	4.3	10.2
	2회	.8	.6	1.4
	3회	.1	.1	.0
	계	100.0	100.0	100.0
	(수)	(928)	(780)	(148)
	평균	.07	.06	.13
X2=9.945 p=.019				

\*p<.05 \*\*p<.001 \*\*\*p<.000

〈표 4-5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경험(계속)

(단위 : %)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총수급기간	2년 미만	20.9	21.3	18.9
	2-4년 미만	20.5	20.0	23.0
	4-6년 미만	19.6	19.6	19.6
	6-8년 미만	18.0	15.0	33.8
	8년 이상	21.0	24.1	4.7
	계	100.0	100.0	100.0
	(수)	(928)	(780)	(148)
	평균	57.7621	57.8112	57.5034
		$X^2=47.584$ $p=.000$		

\*p<.05 \*\*p<.001 \*\*\*p<.000

### 나. 아동, 청소년 시절 경험과 현재 상황 비교

아동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을 여의었거나, 이혼으로 인한 가족 해체의 경험, 가계 생계를 위해 일한 경험, 과거 생활보호대상자 여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위험 또는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의 비율이 약 68~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이러한 위기 또는 위험의 경험과 관련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위기 경험에서 수급 가구주보다 탈수급 가구주의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과거에 이러한 위기를 경험한 집단은 현재 상황이 과거에 비해 큰 차이가 없거나, 지금이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반면, 이러한 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에는 약 70~80%가 지금의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의 경험과 비교할 때, 현재의 낙오감 또는 배제감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55〉 아동·청소년 시절의 경험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현재생활과 아동·청소년시절과 비교했을 때 변화			
		전체	수급 가구	탈수급 가구	전체	큰 변화가 없음	지금이에 전보다나아졌음	지금이에 전보다더 나빠졌음
(1)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비해당	6.6	7.3	4.0	6.7	8.8	3.5	5.9
	그렇다	25.0	25.7	22.3	25.0	30.8	36.5	19.8
	그렇지 않다	68.4	67.0	73.8	68.3	60.5	60.0	7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수)	(1015)	(813)	(202)	(1015)	(345)	(81)	(589)
			$X^2=4.495$ p=.106		$X^2=26.784$ p=.000			
(2)부모님이 이혼하셨다	비해당	15.0	16.6	8.4	15.0	18.1	20.0	12.3
	그렇다	8.0	7.4	10.4	8.0	10.2	9.4	6.4
	그렇지 않다	77.1	76.0	81.2	77.1	71.7	70.6	8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수)	(1015)	(813)	(202)	(1015)	(345)	(81)	(589)
			$X^2=9.632$ p=.008		$X^2=13.936$ p=.008			
(3)가계의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한 적이 있다	비해당	7.1	8.4	2.0	7.1	7.6	2.4	7.5
	그렇다	24.3	24.1	25.2	24.3	33.6	33.3	17.3
	그렇지 않다	68.6	67.5	72.8	68.6	58.8	64.3	7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수)	(1015)	(813)	(202)	(1015)	(345)	(81)	(589)
			$X^2=10.031$ p=.007		$X^2=38.746$ p=.000			
(4)생활보호대상자(영세민)여서 국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비해당	10.3	10.8	8.4	10.3	8.8	3.6	12.3
	그렇다	12.6	12.2	14.4	12.6	15.0	20.2	10.1
	그렇지 않다	77.0	77.0	77.2	77.1	76.3	76.2	7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수)	(1015)	(813)	(202)	(1015)	(345)	(81)	(589)
			$X^2=1.518$ p=.468		$X^2=15.229$ p=.004			

\*p<.05 \*\*p<.001 \*\*\*p<.000

현재생활과 비교해서 아동·청소년 시절과의 변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이 예전보다 더 나빠졌다가 56.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급 가구는 수급 가구보다 지금이 예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탈수급 이후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56〉 현재생활과 아동·청소년 시절과 비교했을 때의 변화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전체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현재생활과 아동·청소년 시절과의 변화 비교	큰 변화가 없음	34.8	34.2	37.1
	지금이 예전보다 나아졌음	8.3	7.0	13.4
	지금이 예전보다 더 나빠졌음	56.9	58.7	49.5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10.680$ $p=.005$		

\*p<.05 \*\*p<.001 \*\*\*p<.000

### 3. 기타복지제도 수급 실태

#### 가. 기타 복지 제도

본 절에서는 기타복지제도 가운데 과거와 현재의 수급경험을 통해 탈수급 이후에 지속되어야 할 기타복지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총 42가지의 복지제도 가운데 수급가구에서 과거와 현재 계속 수급 받고 있는 복지제도와 과거에는 받았으나 탈수급하면서 현재는 받고 있지 않은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탈수급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감면영역에서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감면, 집전화 기본요금/이동전화료 감면, 인터넷요금 감면,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제도 모두 탈수급 이후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탈수급 후 해당 항목과 관련한 지출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구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과거에 지원을 받았으나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영역의 영유아의 보육료와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수능방송, 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 신입생 교복지원, 방과후 공부방 등 탈수급에 주요 요인이 되는 자녀 교육이 탈수급 이후 이에 대한 지원이 끊겨 가계 소비에 교육 부담이 과중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밖에 탈수급 후 자활사업, 장애수당, 한시 생계비 지원이 낮아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는 과거에 지원을 받았던 집단은 분모로 하여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집단의 비율을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복지지원이 탈수급 이후에는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별항목에 따라 금액이 큰 장학금지원이나 임대료보조 등과 같은 복지제도는 수급자의 탈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탈수급자의 가계에도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탈수급가구로 하여금 재수급의 유혹을 강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탈수급을 촉진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가구의 지출 부담이 큰 항목을 중심으로 탈수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위의 결과를 보완하는 의미로 탈수급 가구의 지원 중단 비율이 높은 제도들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주거, 영유아, 아동/청소년 영역, 장애인 영역에 대한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57〉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 중 복지제도별 지원중단 경험 비율

		수급가구	탈수급가구
감면	주민세 비과세	8.1	83.8
	TV 수신료 감면	6.6	81.5
	전기요금할인	5.7	81.7
	집전화기본요금/이동전화료 감면	5.7	79.2
	인터넷요금감면	7.9	88.8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7.9	81.4
주거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5.6	45.2
영유아	보육료 지원	56.0	91.2
아동/청소년	인터넷 능방송	18.9	100.0
	장학금 지원	23.8	94.8
	학자금 대출	43.9	86.9
	신입생 교복지원	29.0	95.4
	방과후 공부방	23.0	75.8
취업	자활사업	34.7	72.7
장애인	장애수당	8.2	66.7
기타	한시생계비 지원	17.5	89.4

주: 각 셀의 수치는 현재 비수급자/(현재 비수급자 + 현재 수급자)\*100

주거 영역에서 영구 임대 아파트 신청을 보면 그 중단 비율이 45.2%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을 현재 수급하고 있는 수급가구와, 과거와 현재 모두 수급하고 있는 탈수급 가구, 그리고 과거에 수급했으나 현재는 수

급하고 있지 않은 비수급 가구의 주거형태를 살펴보았다.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을 보면 현재 수급하는 수급가구와 과거에도 수급하였으며 현재에도 수급하고 있는 탈수급 가구의 비율이 각각 2.6%, 2.7%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과거에 수급했으나 현재에 비수급 하는 탈수급의 비율은 6.9%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수급가구가 수급 탈출을 했다고 해서 바로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탈수급 가구의 경우 주거비에 대한 지출 부담이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4-58〉 주거 - 영구임대 아파트 신청

(단위 : %)

	수급		탈수급			
	현재수급 가구의 주거형태		과거수급 가구의 주거형태	현재수급 가구의 주거형태	과거수급 현재비수급 가구의 주거형태	
	%	수	%	수	%	수
자가	0.7	3	-	-	-	-
전세	1.3	5	1.3	1	10.3	5
보증금 있는 월세	92.8	268	93.9	44	82.8	35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포함)	2.1	7	-	-	-	-
무상거주	0.5	2	2.2	1	-	-
영구임대	2.6	8	2.7	2	6.9	3
계	100.0	100.0	100.0	48	100.0	43

탈수급 가구의 보육료 중단 비율이 높게 나타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우선 가구원의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통제한 후, 현재 영유아 보육료를 수급하고 있는 수급가구의 가구원의 학력과, 과거에 영유아 보육료를 수급했으나 현재는 비수급한 탈수급 가구의 가구원의 학력을 살펴보았다. 탈수급 가구의 지원 중단률이 91.2%로 높게 나온 것은, 현재 탈수급 가구의 영유아 비율이 4.6%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59〉 영유아 - 보육료 지원

(단위 : %)

	수급		탈수급	
	현재 수급 가구 가구원 학력		과거 수급 현재 비수급 가구 가구원 학력	
	%	수	%	수
미취학(만 7세 미만)	58.9	92	4.6	2
초등학교	32.0	55	68.3	18
중학교	7.0	14	24.9	7
고등학교	2.1	4	2.2	1
계	100.0	165	100.0	28

아동/청소년의 영역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수급 가구와 탈수급 가구의 연령을 만 7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로 통제한 후, 각 가구원의 현재 학력 상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급 가구와 탈수급 가구의 가구원의 학력 분포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학 자녀가 있는 수급 가구가 탈수급 한 이후 교육비에 대한 지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탈수급 가구의 재수급을 막기 위해 탈수급 이후 막대한 지출이 예상되는 교육비 영역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 4-60〉 아동/청소년 - 인터넷 수능방송, 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 신입생 교복 지원, 방과후 공부방

(단위 : %)

		수급		탈수급	
		현재 수급 가구 가구원 학력		과거 수급 현재 비수급 가구 가구원 학력	
		%	수	%	수
인터넷 수능방송	초등학교	26.4	13	-	-
	중학교	28.8	17	64.4	3
	고등학교	44.8	22	35.6	2
	계	100.0	52	100.0	5
장학금 지원	초등학교	18.2	53	20.1	4
	중학교	36.3	91	32.6	7
	고등학교	44.5	140	36.3	10
	대학(전문대)	-	-	8.8	1
	대학교	1.1	3	2.3	1
	계	100.0	287	100.0	23
학자금 대출	초등학교	17.0	14	19.8	2
	중학교	28.9	29	28.6	3
	고등학교	52.0	55	44.3	4
	대학교	2.2	2	7.4	1
	계	100.0	100	100.0	10
신입생 교복	무학(만 7세 이상)	0.3	1	-	-
	초등학교	14.1	20	15.8	2
	중학교	44.2	47	31.6	5
	고등학교	41.4	43	52.7	6
	계	100.0	111	100.0	13
방과후 공부방	무학(만 7세 이상)	0.1	1	-	-
	초등학교	54.2	145	56.2	14
	중학교	30.9	74	32.8	10
	고등학교	14.4	38	8.6	3
	대학교	0.4	1	2.3	1
	계	100.0	259	100.0	28

탈수급 가구의 장애수당 중단 비율은 66.7%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장애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수급가구의 가구원의 장애 보유 현황과 과거에 장애수당을 수급했으나 현재는 수급하지 않고 있는 탈수급 가구의 가구원의 장애보유현황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수급가구와 탈수급 가구의 장애인 분포가 비슷하게 나타나,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의 경우 탈수급 후 장애수당의 지출이 가중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61〉 장애인 - 장애수당

(단위 : %)

	수급		탈수급	
	현재 수급 가구 가구원 학력		과거 수급 현재 비수급 가구 가구원 학력	
	%	수	%	수
비해당(장애인)	67.4	436	68.4	39
1급	4.3	31	4.1	3
2급	8.8	56	4.4	1
3급	9.3	63	15.3	8
4급	3.1	20	2.1	2
5급	4.4	24	-	-
6급	2.5	16	4.1	2
비등록 장애인(보훈처등록 장애인 포함)	0.2	1	1.6	1
계	100.0	165	100.0	28

다음 표는 앞에서 분석한 복지지원제도들에 대해 수급가구와 탈수급 가구의 과거수급 현재수급, 과거수급 현재비수급, 과거비수급 현재수급, 과거비수급 현재 비수급 경험을 제시한 것이다.

〈표 4-62〉 기타 복지제도 수급경험

(단위 : %)

영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	탈수급	
감면	주민세 비과세	과거수급현재수급	56.9	68.1	11.9
		과거수급현재비수급	17.0	6.0	61.4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26.0	25.8	26.7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 <sup>2</sup> =380.907 p=.000		
	TV수신료 감면	과거수급현재수급	52.9	62.7	13.4
		과거수급현재비수급	15.3	4.4	58.9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31.9	32.9	27.7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 <sup>2</sup> =389.841 p=.000		
	전기요금 할인	과거수급현재수급	66.3	79.2	14.4
		과거수급현재비수급	16.6	4.8	64.2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17.1	16.0	21.4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 <sup>2</sup> =447.095 p=.000		
	집전화 기본요금 /이동전화료 감면	과거수급현재수급	61.5	73.1	15.3
		과거수급현재비수급	15.2	4.4	58.1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23.3	22.5	26.6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 <sup>2</sup> =398.400 p=.000			
인터넷 요금 감면	과거수급현재수급	45.0	54.7	5.9	
	과거수급현재비수급	13.1	4.7	47.0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41.9	40.6	47.0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 <sup>2</sup> =308.683 p=.000			

\*p<.05 \*\*p<.001 \*\*\*p<.000

〈표 4-62〉 기타 복지제도 수급경험(계속)

(단위 : %)

영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	탈수급
감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과거수급현재수급	62.9	74.7	15.3
		과거수급현재비수급	18.4	6.4	66.8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18.7	18.9	17.8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 <sup>2</sup> =411.437 p=.000		
주거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과거수급현재수급	33.0	35.6	22.8
		과거수급현재비수급	5.4	2.1	18.8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61.6	62.3	58.4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 <sup>2</sup> =91.800 p=.000		
영유아	보육료 지원	과거수급현재수급	5.8	7.0	1.0
		과거수급현재비수급	9.2	8.9	10.4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85.0	84.1	88.6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 <sup>2</sup> =10.892 p=.004		
아동청소년	인터넷 수능방송	과거수급현재수급	2.4	3.0	-
		과거수급현재비수급	1.0	0.7	2.0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96.7	96.3	98.0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 <sup>2</sup> =8.546 p=.014		
	장학금 지원	과거수급현재수급	19.5	24.0	1.5
		과거수급현재비수급	11.4	7.5	27.2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69.1	68.5	71.3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 <sup>2</sup> =97.251 p=.000		

\*p<.05 \*\*p<.001 \*\*\*p<.000

〈표 4-62〉 기타 복지제도 수급경험(계속)

(단위 : %)

영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	탈수급
아동청소년	학자금 대출	과거수급현재수급	5.9	6.9	2.0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7.0	5.4	13.3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87.1	87.7	84.7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 <sup>2</sup> =21.310 p=.000		
	신입생 교복지원	과거수급현재수급	6.2	7.6	.5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4.5	3.1	10.4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89.3	89.3	89.1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 <sup>2</sup> =32.391 p=.000		
	방과후 공부방	과거수급현재수급	13.5	16.1	3.0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5.7	4.8	9.4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80.8	79.1	87.6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 <sup>2</sup> =28.179 p=.000		
자활사업	자활사업	과거수급현재수급	5.2	6.2	1.5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3.4	3.3	4.0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91.3	90.5	94.6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 <sup>2</sup> =7.222 p=.027		
장애수당	장애수당	과거수급현재수급	18.9	22.4	5.0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3.6	2.0	10.0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77.5	75.6	85.1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 <sup>2</sup> =56.572 p=.000		
기타	한시생계비 지원	과거수급현재수급	12.7	15.6	1.0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4.3	3.3	8.4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83.0	81.1	90.6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 <sup>2</sup> =38.714 p=.000		

\*p<.05 \*\*p<.001 \*\*\*p<.000

## 나. 가구의 주요 복지 욕구

탈수급 가구는 미취학 자녀, 취학 자녀, 간병 가구원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수가 적으며, 이들을 돌보는 경우에는 수급가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을 돌보는 것 때문에 취업활동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 가구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빈곤가구의 경제활동 제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미취학 자녀

미취학자녀의 보육실태를 살펴보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것은 9.1%로 그 비중은 낮으나 탈수급 가구(3.5%)보다 수급가구(10.5%)의 미취학 자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자녀 수는 평균 1.30명으로 수급가구(1.31명)가 탈수급 가구(1.15명)보다 많으며, 민간보육시설과 동거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족이나 친척에게 아이를 맡기는 이유는 모두 비용부담(100.0%) 때문이며, 종일제로 맡기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가구를 돌보는 것이 취업 활동에 주는 어려움은 평균 3.55점으로 보통이상 어려워하고 있으며 특히 탈수급 가구(3.94점)가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가구의 여성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상용직보다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가구주의 경우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수급가구에서 미취학자녀의 비율이 높은 것은 미취학자녀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진입하는 가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에는 미취학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20~30대 여성가장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진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4-63〉 미취학자녀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	탈수급
해당가구원 유무	있다	9.1	10.5	3.5
	없다	90.9	89.5	96.5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9.591$ p=.002		
해당가구원수	1명	76.9	76.2	85.7
	2명	16.5	16.7	14.3
	3명	6.6	7.1	-
	계	100.0	100.0	100.0
	(수)	(99)	(91)	(8)
	평균	1.30	1.31	1.15
	$X^2=.598$ p=.741			
해당 가구원을 돌보는 방식	동거가족	29.3	28.6	37.5
	비동거 가족 및 친척	2.2	2.4	-
	개인(베이비시터)	-	-	-
	공공보육시설	25.0	25.0	25.0
	민간보육시설	32.6	33.3	25.0
	돌보지 못하고 있음	10.9	10.7	12.5
	기타	-	-	-
	계	100.0	100.0	100.0
	(수)	(99)	(91)	(8)
	$X^2=.566$ p=.967			
해당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지불하는 월평균 금액	0만원	65.2	66.9	57.1
	1-10만원 미만	17.4	17.6	14.3
	10-20만원 미만	12.0	11.8	14.3
	20-30만원 미만	1.1	1.2	-
	30-40만원 미만	3.3	2.4	14.3
	40만원 이상	1.1	1.2	-
	계	100.0	100.0	100.0
	(수)	(99)	(91)	(8)
	평균	4.52	4.24	8.07
	$X^2=3.141$ p=.678			

\*p<.05 \*\*p<.001 \*\*\*p<.000

〈표 4-63〉 미취학자녀(계속)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	탈수급
가족이나 친척에게 맡기는 이유	비용부담 때문에	100	100	100
	근처에 시설이 없어서	-	-	-
	시간대가 안 맞아서	-	-	-
	서비스가 마음에 안들어서	-	-	-
	아이가 싫어해서	-	-	-
	기타	-	-	-
	계	100.0	100.0	100.0
(수)	(32)	(29)	(3)	
맡기는 시간	시간제	14.6	15.8	-
	종일제	78.0	77.6	83.3
	필요한 경우에만	7.3	6.6	16.7
	계	100.0	100.0	100.0
	(수)	(91)	(84)	(7)
		$X^2=1.744$ p=.418		
해당 가구원을 돌보는 것이 취업 활동에 주는 어려움	① 매우작다	9.7	10.6	-
	② 작다	10.8	9.4	25.0
	③ 보통	22.6	23.5	12.5
	④ 크다	26.9	28.2	12.5
	⑤ 매우크다	30.1	28.2	50.0
	계	100.0	100.0	100.0
	(수)	(99)	(91)	(8)
	평균	3.55	3.52	3.94
		$X^2=4.717$ p=.318		
해당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취업을 중단한 경험 유무	있다	28.3	27.1	42.9
	없다	71.7	72.9	57.1
	계	100.0	100.0	100.0
	(수)	(99)	(91)	(8)
		$X^2=.796$ p=.372		

\*p<.05 \*\*p<.001 \*\*\*p<.000

〈표 4-64〉 여성가구주 가구의 미취학자녀유무

(단위 : %)

		여성 가구주						
		전체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수급	미취학자녀	있다	6.0	6.7	15.6	3.7	1.1	-
		없다	94.0	93.3	84.4	96.3	98.9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95)	(13)	(101)	(271)	(90)	(20)
		$X^2=27.205$ p=.000						
탈수급	미취학자녀	있다	1.6	4.8	-	-	5.0	-
		없다	98.4	95.2	100.0	100.0	95.0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5)	(18)	(18)	(50)	(17)	(2)
		$X^2=4.021$ p=.403						

\*p<.05 \*\*p<.001 \*\*\*p<.000

〈표 4-65〉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 %)

		수급	여성 가구주					
			전체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수급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1.9	-	35.0	-	-	-
		임시직 임금근로자	31.3	100.0	30.0	30.0	-	-
		일용직 임금근로자	31.3	-	25.0	60.0	-	-
		자활 또는 공공근로자	6.3	-	5.0	10.0	-	-
		자영업자	6.3	-	5.0	-	100.0	-
		실업자	-	-	-	-	-	-
		계	100.0	100.0	-	-	100.0	-
		(수)	(31)	(1)	(19)	(10)	(1)	(0)
$X^2=24.349$ p=.018								
탈수급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50.0	100.0	-	-	-	-
		임시직 임금근로자	-	-	-	-	-	-
		일용직 임금근로자	50.0	-	-	-	100.0	-
		자활 또는 공공근로자	-	-	-	-	-	-
		자영업자	-	-	-	-	-	-
		실업자	-	-	-	-	-	-
		계	100.0	100.0	-	-	100.0	-
		(수)	(2)	(1)	(0)	(0)	(1)	(0)
$X^2=2.000$ p=.157								

\*p<.05 \*\*p<.001 \*\*\*p<.000

## (2) 취학자녀

취학자녀의 보육비율은 수급가구(71.5%)가 탈수급 가구(3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자녀수는 평균 1.69명으로, 수급가구(1.73명)가 탈수급 가구(1.39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경제활동을 위해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돌보는 수급 가구의 경우 동거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탈수급 가구는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는 탈수급 가구(8.05만원)가 수급가구(5.33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맡기는 경우 두 집단 모두 비용부담 때문이며, 시간제로 맡기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가구원을 돌보는 데 어려움은 탈수급 가구(2.96점)가 수급가구(2.76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자녀를 돌보기 위해 취업을 중단한 경험은 탈수급 집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수급가구와 탈수급 가구 중 30대를 제외하면 일용직, 임시직, 상용직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용직의 비중이 높은 30대 탈수급 여성 가구주의 경우 아이를 돌보는 방식으로 사설학원을 이용하거나 돌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이를 돌보는 부담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적 지지망이 취약한 수급가구와 탈수급 가구의 여성 가구주는 자녀 양육으로 경제활동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양육 가구원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표 4-66〉 취학자녀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	탈수급
해당가구원 유무	있다	64.2	71.5	35.1
	없다	35.8	28.5	64.9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92.882$ p=.000		
해당가구원수	1명	42.1	39.7	62.0
	2명	47.9	49.3	36.6
	3명	9.1	10.0	1.4
	4명	0.9	1.0	-
	계	100.0	100.0	100.0
	(수)	(639)	(571)	(68)
	평균	1.69	1.73	1.39
	$X^2=15.497$ p=.001			
해당 가구원을 돌보는 방식	동거가족	22.3	22.9	16.9
	비동거 가족 및 친척	0.9	1.0	-
	개인	0.9	1.0	-
	지역공부방(복지관)	3.1	2.8	5.6
	방과후 교실	16.6	17.2	11.3
	사설학원	14.3	13.3	22.5
	돌보지 못하고 있음	41.8	41.6	43.7
	기타	0.2	0.2	-
	계	100.0	100.0	100.0
	(수)	(639)	(571)	(68)
	$X^2=9.550$ p=.216			
해당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지불하는 월평균 금액	0만원	65.2	65.9	57.1
	1-10만원 미만	17.4	17.6	14.3
	10-20만원 미만	12.0	11.8	14.3
	20-30만원 미만	1.1	1.2	-
	30-40만원 미만	3.3	2.4	14.3
	40만원 이상	1.1	1.2	-
	계	100.0	100.0	100.0
	(수)	(99)	(91)	(8)
	평균 (만원)	5.63	5.33	8.05
	$X^2=3.141$ p=.678			

\*p<.05 \*\*p<.001 \*\*\*p<.000

〈표 4-66〉 취학자녀(계속)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	탈수급
가족이나 친척에게 맡기는 이유	비용부담 때문에	94.7	95.0	91.7
	근처에 시설이 없어서	3.3	2.9	8.3
	시간대가 안 맞아서	0.7	0.7	-
	서비스가 마음에 안들어서	-	-	-
	아이가 싫어해서	1.3	1.4	-
	기타	-	-	-
	계	100.0	100.0	100.0
	(수)	(160)	(147)	(13)
$X^2=1.265$ p=.738				
맡기는 시간	시간제	62.1	63.5	50.0
	종일제	19.7	20.0	17.5
	필요한 경우에만	18.2	16.5	32.5
	계	100.0	100.0	100.0
	(수)	(391)	(352)	(39)
$X^2=6.233$ p=.044				
해당 가구원을 돌보는 것이 취업 활동에 주는 어려움	① 매우작다	20.2	21.0	14.1
	② 작다	16.9	16.2	22.5
	③ 보통	34.8	35.3	31.0
	④ 크다	20.1	20.3	18.3
	⑤ 매우크다	8.0	7.2	14.1
	계	100.0	100.0	100.0
	(수)	(639)	(571)	(68)
	평균	2.78	2.76	2.96
$X^2=7.199$ p=.126				
해당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취업을 중단한 경험 유무	있다	25.8	25.0	32.4
	없다	74.2	75.0	67.6
	계	100.0	100.0	100.0
	(수)	(639)	(571)	(68)
$X^2=1.830$ p=.176				

\*p<.05 \*\*p<.001 \*\*\*p<.000

〈표 4-67〉 여성가구주 가구의 취학자녀유무

(단위 : %)

		여성 가구주						
		전체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수급	취학자녀	있다	74.6	20.0	96.7	83.6	40.4	14.3
		없다	25.4	80.0	3.3	16.4	59.6	8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95)	(13)	(101)	(271)	(90)	(20)
		$X^2=161.458$ p=.000						
탈수급	취학자녀	있다	43.4	4.8	91.3	50.0	15.0	-
		없다	56.6	95.2	8.7	50.0	85.0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5)	(18)	(18)	(50)	(17)	(2)
		$X^2=43.333$ p=.000						

\*p<.05 \*\*p<.001 \*\*\*p<.000

〈표 4-68〉 취학자녀가 있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 %)

		여성 가구주						
		전체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수급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5.1	33.3	23.5	11.3	10.8	-
		임시직 임금근로자	31.9	33.3	26.9	35.1	29.7	-
		일용직 임금근로자	35.2	33.3	37.0	33.8	37.8	50.0
		자활 또는 공공근로자	7.3	-	3.4	9.5	8.1	-
		자영업자	6.3	-	4.2	6.3	10.8	50.0
		실업자	3.1	-	4.2	2.7	2.7	-
		전업주부	1.0	-	0.8	1.4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61)	(3)	(95)	(225)	(35)	(2)
		$X^2=26.038$ p=.351						
탈수급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0.2	-	66.7	7.1	-	-
		임시직 임금근로자	18.9	100.0	14.3	21.4	-	-
		일용직 임금근로자	32.1	-	16.0	39.3	66.7	-
		자활 또는 공공근로자	11.3	-	-	17.9	33.3	-
		자영업자	5.7	-	-	10.7	-	-
		실업자	1.9	-	-	3.6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수)	(44)	(1)	(16)	(24)	(3)	(44)
		$X^2=31.183$ p=.008						

\*p<.05 \*\*p<.001 \*\*\*p<.000

**(3) 간병 필요 가구원**

가구의 간병실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간병가구는 있는 경우는 수급가구(7.4%)가 탈수급 가구(3.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 가구원 수는 수급 가구가 1.1명, 탈수급 가구가 1.4명이며, 많은 경우 동거가족이 돌보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탈수급 가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보기 위해 드는 지불금액은 탈수급 가구가 평균 12.32만원으로, 수급가구(평균 6.38만원)보다 많이 지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맡기는 이유는 비용부담 때문이며, 간병으로 인한 취업에 어려움은 수급가구(3.61점)가 탈수급 가구(3.54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구주의 간병가구원 유무를 살펴보면 탈수급 가구보다 수급가구가 더 많으며, 수급가구의 경제활동 상태는 일용직 비율이 높게 나타나 요보호 가구원으로 인해 경제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표 4-69〉 간병 필요 가구원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	탈수급
해당가구원 유무	있다	6.5	7.4	3.0
	없다	93.5	92.6	97.0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5.175$ $p=.023$		
해당가구원수	1명	89.6	91.7	71.4
	2명	7.5	6.7	14.3
	3명	3.0	1.7	14.3
	계	100.0	100.0	100.0
	(수)	(66)	(58)	(8)
	평균	1.13	1.10	1.40
		$X^2=4.118$ $p=.128$		

\*p<.05 \*\*p<.001 \*\*\*p<.000

〈표 4-69〉 간병 필요 가구원 (계속)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	탈수급
해당 가구원을 돌보는 방식	동거가족	48.5	47.5	57.1
	비동거 가족 및 친척	1.5	1.7	-
	개인(간병사)	-	-	-
	주간·단기보호시설	.0	-	-
	장기요양시설	4.5	5.1	-
	의료기관	3.0	1.7	14.3
	돌보지 못하고 있음	42.4	44.1	28.6
	기타	-	-	-
	계	100.0	100.0	100.0
	(수)	(66)	(58)	(8)
		$X^2=4.223$ $p=.518$		
해당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지불하는 월평균 금액	0만원	65.2	65.9	57.1
	1-10만원 미만	17.4	17.6	14.3
	10-20만원 미만	12.0	11.8	14.3
	20-30만원 미만	1.1	1.2	-
	30-40만원 미만	3.3	2.4	14.3
	40만원 이상	1.1	1.2	-
	계	100	100	100
	(수)	(99)	(91)	(8)
	평균	6.95	6.38	12.32
		$X^2=3.141$ $p=.678$		
가족이나 친척에게 맡기는 이유	비용부담 때문에	90.9	89.7	100.0
	근처에 시설이 없어서	3.0	3.4	-
	시간대가 안 맞아서	3.0	3.4	-
	서비스가 마음에 안들어서	-	-	-
	본인이 싫어해서	3.0	3.4	-
	기타	-	-	-
	계	100.0	100.0	100.0
(수)	(39)	(34)	(5)	
		$X^2=455$ $p=.929$		
맡기는 시간	시간제	12.8	5.9	60.0
	종일제	46.2	52.9	.0
	필요한 경우에만	41.0	41.2	40.0
	계	100.0	100.0	100.0
	(수)	(45)	(39)	(6)
		$X^2=12.606$ $p=.002$		

\*p<.05 \*\*p<.001 \*\*\*p<.000

〈표 4-69〉 간병 필요 가구원 (계속)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	탈수급
해당 가구원을 돌보는 것이 취업 활동에 주는 어려움	① 매우작다	7.6	8.3	-
	② 작다	10.6	8.3	33.3
	③ 보통	28.8	31.7	-
	④ 크다	21.2	18.3	50.0
	⑤ 매우크다	31.8	33.3	16.7
	계	100.0	100.0	100.0
	(수)	(66)	(58)	(8)
	평균	3.60	3.61	3.54
			$X^2=8.669$ $p=.070$	
해당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취업을 중단한 경험 유무	있다	47.0	48.3	33.3
	없다	53.0	51.7	66.7
	계	100.0	100.0	100.0
	(수)	(66)	(58)	(8)
			$X^2=.493$ $p=.483$	

\*p<.05 \*\*p<.001 \*\*\*p<.000

〈표 4-70〉 여성가구주 가구의 간병가구원 유무

(단위 : %)

		여성 가구주						
		전체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수급	간병가구	있다	6.6	6.7	5.7	4.5	12.4	14.3
		없다	93.4	93.3	94.3	95.5	87.6	9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95)	(13)	(101)	(271)	(90)	(20)
				$X^2=8.905$ $p=.064$				
탈수급	간병가구	있다	2.5	-	-	5.4	-	-
		없다	97.5	100.0	100.0	94.6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5)	(18)	(18)	(50)	(17)	(2)
				$X^2=3.625$ $p=.459$				

\*p<.05 \*\*p<.001 \*\*\*p<.000

〈표 4-71〉 간병가구원이 있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 %)

	수급	여성 가구주						
		전체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수급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8.2	-	71.4	8.3	-	-
		임시직 임금근로자	18.2	100.0	-	16.7	30.0	-
		일용직 임금근로자	39.4	-	28.6	41.7	50.0	33.3
		자활 또는 공공근로자	6.1	-	-	16.7	-	-
		자영업자	12.1	-	-	16.7	10.0	33.3
		실업자	3.0	-	-	-	10.0	-
		전업주부	3.0	-	-	-	-	3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0)	(1)	(4)	(12)	(10)	(3)
		$X^2=39.441$ $p=.025$						
탈수급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	-	-	33.3	-	-
		임시직 임금근로자	-	-	-	33.3	-	-
		일용직 임금근로자	-	-	-	-	-	-
		자활 또는 공공근로자	-	-	-	-	-	-
		자영업자	-	-	-	33.3	-	-
		실업자	-	-	-	-	-	-
		전업주부	-	-	-	-	-	-
		계	-	-	-	100.0	-	-
		(수)	(3)	(0)	(0)	(3)	(0)	(0)

\*p<.05 \*\*p<.001 \*\*\*p<.000

#### 4.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수급실태

수급가구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실태는 다음 <표 5-51>와 같다. 수급형태를 살펴보면 일반수급(76.5%)이 조건부수급(18.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는 대부분 의료급여 2종(87.0%)을 수급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급여는 생계급여(43.3%), 교육급여(26.1%), 의료급여(16.5%), 주거급여(12.4%)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타복지지원제도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주거(29.7%), 한시생계비지원(23.4%), 아동/청소년(23.1%), 용자(7.2%) 순이며, 세부사항별로 살펴보면, 한시생계비지원(23.4%), 영구임대아파트 신청(18.1%), 장학금 지원(16.7%) 순으로 나타나 수급가구의 수급 탈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탈수급 후에도 교육·의료·주거 영역에 대한 제도가 계속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표 4-72〉 수급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실태

(단위 : %)

	구분	%
수급형태	일반수급	76.5
	조건부 수급	18.8
	기타	4.7
	계	100.0
	(수)	(813)
의료급여수급형태	의료급여 1종	13.0
	의료급여 2종	87.0
	계	100.0
	(수)	(813)
가장 중요한 급여 (다중응답)	생계급여	43.3
	의료급여	16.5
	교육급여	26.1
	주거급여	12.4
	자활급여	1.7
	계	100.0
(수)	(1575)	

〈표 4-72〉 수급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실태(계속)

(단위 : %)

		구분	%
기타복지지원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감면	주민세 비과세	1.3
		TV 수신료 감면	0.2
		전기요금 할인	1.7
		집전화 기본요금/이동통신료 감면	0.4
		인터넷 요금 감면	0.1
	주거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18.1
		기존주택/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0.1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7.1
		전세자금융자	3.5
		집수리 사업(도매, 장판교체)	0.9
	융자	생업자금 융자	4.6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융자금	2.6
	영유아	보육료 지원	0.8
	아동/ 청소년	인터넷 수능방송	0.1
		장학금 지원	16.7
		학자금 대출	5.5
		방과후 공부	0.8
	취업	근로장려금 지원	1.0
		무료 직업훈련	0.1
		공공근로	0.4
		자활사업	0.9
		사회적 일자리	3.5
	노인 복지	기초노령연금	0.5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0.1
		양로 및 요양시설 입소	0.1
	장애인	장애수당	4.2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0.2
		장애인 보장구, 재활기구 보조	0.3
		가사간병 서비스	0.2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신청	0.4
	기타	한시생계비 지원	23.4
		계	100.0
		(수)	(813)

## 제8절 탈수급에 대한 인식과 실태

### 1. 수급자의 탈수급 전망과 탈수급자의 경험에 대한 비교

본 절에서는 안정된 일자리, 주거부담, 자녀교육, 보육 및 간병, 의료비, 부채 영역에 대해 수급가구의 경우 탈수급 한다면 <향후 수급 탈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물었고, 탈수급가구의 경우에는 <현재 탈수급 이후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어려움의 정도는 5점 척도로 설정하였다. (① : 매우 불만족 ~ ⑤ : 매우 만족). 각 영역에 대한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수급 가구보다 탈수급 가구가 조금 더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4-73〉 수급가구의 탈수급 전망과 탈수급가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단위 : 평균점수)		
	전체	수급	탈수급
안정된 일자리	2.37	2.36	2.41
주거부담	2.18	2.14	2.33
자녀교육	2.34	2.23	2.80
보육이나 간병	2.39	2.22	3.08
의료비	2.13	2.12	2.21
부채문제	2.23	2.10	2.72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정된 일자리에 대해 수급가구(그렇지 않다 38.6%, 매우 그렇지 않다 25.2%)와 탈수급 가구(매우 그렇지 않다 31.2%, 그렇지 않다 26.2%)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수급가구(2.36)가 탈수급가구(2.41)보다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주거 부담의 경우 탈수급 가구(2.33)보다 수급 가구(2.14)가 탈수급후 주거비 부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탈수급 가구의 경우 수급가구에 비해 전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율이 높고, 수급가구는 보증금 있는 월세와 보증금 없는 월세의 비중이 높아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자녀교육 및 교육비 부담의 경우 탈수급가구(2.80)의 경우 그렇다 20.8%, 매우 그렇다 20.3%로 수급가구(2.23)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가 없고 교육비가 들어가지 않는 가구 연령대가 수급 가구로 잠시 들어왔다가 수급탈출을 하는 경우와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육비는 줄어들고 취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보육이나 간병 부담에 대해 탈수급 가구(3.08)가 그렇다 25.4%로 수급가구(2.22)에 비해 어려움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초보장제도에서 탈출한 가구가 젊은 가구일 경우 초기에 교육비가 들지 않다가 자녀가 태어나면서 교육비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와 오랫동안 빈곤 가구에 있다가 자녀가 장성했지만 피부양 가구원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의료부담에 대해 수급가구(2.12)와 탈수급 가구(2.21)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부채해결에 대해 수급가구(2.10)가 탈수급가구(2.72)에 비해서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수급가구의 부채가 탈수급 가구보다 부채부담이 더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4-74〉 수급가구의 탈수급 전망과 탈수급가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	탈수급
안정된 일자리	① 매우 그렇지 않다	26.4	25.2	31.2
	② 그렇지 않다	36.1	38.6	26.2
	③ 보통이다	15.3	14.7	17.3
	④ 그렇다	18.1	17.8	19.3
	⑤ 매우그렇다	4.1	3.7	5.9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11.930$ $p=.018$		
주거부담	① 매우 그렇지 않다	34.2	34.6	32.7
	② 그렇지 않다	33.2	33.9	30.2
	③ 보통이다	15.9	16.1	14.9
	④ 그렇다	14.5	14.0	16.3
	⑤ 매우그렇다	2.3	1.4	5.9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16.643$ $p=.002$		

\* $p<.05$  \*\* $p<.001$  \*\*\* $p<.000$

〈표 4-74〉 수급가구의 탈수급 전망과 탈수급가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계속)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	탈수급
자녀교육	① 매우 그렇지 않다	31.3	31.5	30.7
	② 그렇지 않다	31.6	34.7	19.3
	③ 보통이다	14.5	15.9	8.9
	④ 그렇다	16.7	15.6	20.8
	⑤ 매우그렇다	5.9	2.3	20.3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108.426$ p=.000		
보육이나 간병	① 매우 그렇지 않다	27.2	29.0	19.9
	② 그렇지 않다	29.1	32.5	15.4
	③ 보통이다	25.5	26.8	20.4
	④ 그렇다	13.4	10.5	25.4
	⑤ 매우그렇다	4.7	1.2	18.9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156.735$ p=.000		
의료비	① 매우 그렇지 않다	32.3	30.8	38.4
	② 그렇지 않다	36.6	39.7	24.1
	③ 보통이다	18.2	17.7	20.2
	④ 그렇다	10.9	10.8	11.3
	⑤ 매우그렇다	2.0	1.0	5.9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34.371$ p=.000		
부채문제	① 매우 그렇지 않다	32.3	33.2	28.7
	② 그렇지 않다	31.9	36.0	15.3
	③ 보통이다	20.2	19.7	22.3
	④ 그렇다	11.7	9.2	21.8
	⑤ 매우그렇다	3.8	1.8	11.9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87.432$ p=.000		

\*p<.05 \*\*p<.001 \*\*\*p<.000

## 2. 수급가구의 탈수급 및 재수급 실태

현재 수급가구 가운데 탈수급 경험이 있는 가구의 탈수급 및 재수급 실태를 살펴 보았다. 탈수급 경험에 대해서 대부분 경험한 적이 없지만(95.2%), 수급탈출을 경험한 응답자 65.2%가 소득 증가(65.2%)와 행정상의 이유(17.8%)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상의 경우 가구여건의 변화가 없지만 수급자 판정결과의 변화 때문(52.1%)에 수급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가구의 자산변동 및 부양 의무자에 대한 행정조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탈수급 희망여부를 물어본 결과 대부분 원하지 않으며(76.9%), 탈수급 예상 시간에 대해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49.0%와 잘 모르겠다 36.1%로 재수급 경험이 있는 다수의 수급자가 탈수급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증가로 수급탈출을 하더라도 이후 조세감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의 혜택이 줄어들 만큼 지출의 부담이 늘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다시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계비 지원을 제외하고 수급탈출을 하게 되더라도 계속 받고 싶은 지원에 대해 교육비가 40.6%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비(27.4%)와 주거비(27.9%)에 대한 욕구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5〉 수급자의 탈수급 및 재수급 실태

		(단위 : %)
	구분	%
탈수급경험여부	있다	4.8
	없다	95.2
	계	100.0
	(수)	(813)
탈수급 사유	소득이 늘어서	65.2
	재산이 늘어서	6.7
	지출이 줄어서	5.7
	행정상의 이유로	17.8
	기타	4.7
	계	100.0
	(수)	(36)

〈표 4-75〉 수급자의 탈수급 및 재수급 실태(계속)

(단위 : %)

	구분	%
탈수급 사유 : 소득변화 사유	가구주의 소득이 늘어서	52.1
	배우자의 소득이 늘어서	18.6
	가구원의 소득이 늘어서	29.3
	친인척이나 주변사람들이 도와줘서	-
	기타	-
	계	100.0
	(수)	(23)
탈수급 사유 : 재산변화 사유	금융재산(갯돈, 적금)이 생겨서	-
	부동산재산(상속 등)이 생겨서	100.0
	민간(보장성)보험금을 받게 되서	-
	부채가 해결되어서	-
	기타	-
	계	100.0
	(수)	(1)
탈수급 사유 : 지출변화 사유	질병, 양육, 간병 등이 해결되어서	-
	자녀의 교육비 문제가 해결되어서	63.8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서	-
	사망, 이혼, 분가 등으로 가구원수가 줄어서	36.2
	기타	-
	계	100.0
	(수)	(2)
탈수급 사유 : 행정상의 변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서	-
	가구여건의 변화는 없으나 수급자 판정결과가 달라져서	52.1
	사유를 모르겠다	47.9
	기타	-
	계	100.0
	(수)	(7)
향후 탈수급 희망 여부	원한다	23.1
	원하지 않는다	76.9
	계	100.0
	(수)	(813)

〈표 4-75〉 수급자의 탈수급 및 재수급 실태(계속)

(단위 : %)		
	구분	%
탈수급 예상 시간	6개월 이내	.6
	6개월 후 ~ 1년 이내	.4
	1년 후 ~ 3년 이내	2.8
	3년 후 ~ 5년 이내	2.2
	5년 후	8.9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49.0
	잘모르겠다	36.1
	계	100.0
	(수)	(813)
생계비 지원 제외하고 수급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 받고 싶은 지원	의료비 지원	27.4
	교육비 지원	40.6
	주거비 지원	27.9
	자활관련 지원	3.8
	기타	.1
	없음	.3
	계	100.0
	(수)	(813)

### 3. 탈수급 가구의 특성

2006년 1월 이후 탈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가장 최근 수급가구에서 벗어나게 된 원인으로 소득이 늘어서(69.1%)가 가장 비율이 높아, 소득 증가가 수급 탈출에 가장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행정상의 이유가 18.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약 69.5%가 가구여건의 변화는 없는데 수급자 판정결과 변화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상 소득이나 재산 발견으로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이며, 이는 탈수급보다는 수급자격 상실 또는 수급 탈락으로 봐야 한다. 이밖에 기타의견으로 자녀가 성인이라 동시에 노동력이 있다고 해서(1.2%), 취업해서(.3%), 조건부 수급이었는데 자활근무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3%) 등이 있었다. 탈수급 이후 생계비 지원을 제외하고 가장 아쉬운 지원으로는 의료비(36.5%), 교육비(31.1%), 주거비(25.4%) 순으로 나타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촉진하고, 탈수급자의 재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탈수급 이후에도 의료·교육·주거 분야의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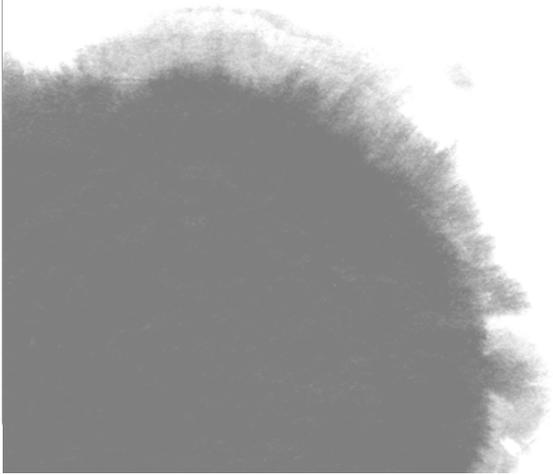
〈표 4-76〉 탈수급 가구의 탈수급 사유

(단위 : %)

	구분	%
탈수급 사유	소득이 늘어서	69.1
	재산이 늘어서	.6
	지출이 줄어서	.5
	행정상의 이유로	18.9
	기타	10.9
	계	100.0
	(수)	(36)
탈수급 사유 : 소득변화 사유	가주주의 소득이 늘어서	58.3
	배우자의 소득이 늘어서	2.4
	가구원의 소득이 늘어서	38.7
	친인척이나 주변사람들이 도와줘서	.6
	기타	-
	계	100.0
	(수)	(23)
탈수급 사유 : 재산변화 사유	금융재산(갯돈, 적금)이 생겨서	-
	부동산재산(상속 등)이 생겨서	-
	민간(보장성)보험금을 받게 되서	-
	부채가 해결되어서	100.0
	기타	-
	계	100.0
탈수급 사유 : 지출변화 사유	질병, 양육, 간병 등이 해결되어서	-
	자녀의 교육비 문제가 해결되어서	100.0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서	-
	사망, 이혼, 분가 등으로 가구원수가 줄어서	-
	기타	-
	계	100.0
	(수)	(1)
탈수급 사유 : 행정상의 변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서	2.5
	가구여건의 변화는 없으나 수급자 판정결과가 달라져서	69.5
	사유를 모르겠다	-
	기타	28.0
	계	100.0
	(수)	(38)
탈수급 이후 생계비를 제외하고 가장 아쉬운 지원	의료비 지원	36.5
	교육비 지원	31.1
	주거비 지원	25.4
	자활관련 지원	2.7
	기타	.6
	없음	3.8
	계	100.0
	(수)	(202)



## 기초생활보장 수급기구의 탈수급 결정요인 분석결과





# 제5장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탈수급 결정요인 분석결과

## 제1 절 문제제기

이전 장의 내용을 상기해보면, 탈빈곤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탈수급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제도의 미성숙 및 데이터 불충분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대안적인 방법(전국규모데이터에서 수급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소득기준으로 빈곤유무로 추정)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성과물들은 그 희소성으로 인해 탈빈곤 제도의 효과성 및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어 논거로 활용되고 있으나, 연구방법 상의 한계로 인한 비판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는 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전국규모 데이터 상에 포착된 수급가구나 탈수급가구의 표본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이끌어내기에 무리가 있으며, 모집단 규모를 고려하여 분석한다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 과대추정의 문제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그러하다. 다른 대안적인 방법인 빈곤유무 혹은 빈곤이행을 이용한 연구 역시, 소득요인과 비소득요인을 감안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원리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행 연구동향의 한계를 극복하여 ‘제도의 순효과(net-effect)’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구축된 (취업)수급가구 및 탈수급가구 실태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탈수급 결정요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하의 절에서는 종속변수로 탈수급여부를 설정한 로짓분석이 사용되었다.

로짓분석의 경우 주어진 데이터의 구조 및 조사대상가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용가능한 분석방법이나, 그 함의에 있어 제한점이 존재하는 것 또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는 로짓분석을 포함한 회귀분석의 기본전제가, ‘다른 독립변수가 일정할 때

(또는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특정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수가 여러 개 일 경우 변수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논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자연히 탈수급을 이끄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질문에 있어서도 명쾌한 답변을 내리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제한점을 감안하여, 본 분석에서는 전체 조사대상가구에 대한 로짓분석과 함께, 집단별로 구분한 로짓분석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추가적인 로짓분석을 통한 기대효과로 ‘다양한 인구집단을 관통하여 나타나는 일관된 탈수급 결정요인’을 명확히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제2절에서는 분석을 위한 변수의 구성 및 데이터 처리내용, 그리고 전체수급가구에 대한 로짓분석결과를, 제3절에서는 집단별 로짓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전체 가구의 탈수급 결정요인

### 1. 데이터 및 변수 구성

분석에 앞서 변수구성 및 데이터 처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탈수급 결정요인의 경우 가구주 개인특성(성, 연령, 학력, 혼인상태, 장애여부), 가구특성(미취학 자녀유무, 취학자녀유무, 간병필요가구원유무, 주거유형), 경제적특성(경제활동상태, 기술여부, 금융채무경험여부)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가구의 탈수급여부가 사용되었다. 데이터의 경우 수급가구와 탈수급가구 조사데이터를 결합하여 구성하였으며, 취업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가구주 연령은 20세부터 69세까지로 제한하고 경제활동상태에서는 전업주부를 제외시켰다. 그 결과 수급 및 탈수급가구주 총 1,015케이스 중 995케이스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원활한 분석을 위해 각 변수는 다음과 같이 재구성되었다. 개인특성의 경우 연령은 20대(20-29세), 30대(30-39세), 40대(40-49세), 50대(50-59세), 60대(60-69세)로 분류하였으며, 20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혼인상태는 유배우, 미혼, 별거·사

별, 이혼으로 범주화 하였으며, 기준값은 유배우이다. 교육은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재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기준값은 대재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였으며(여성이 기준값), 장애여부의 경우는 장애 있음과 없음으로 분류하였다(장애있음을 기준). 다음으로 가구특성에 있어서는 미취학자녀여부, 취학자녀여부, 간병필요가구원여부가 있음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주거형태는 자가를 기준값으로 하여 전세, 월세, 무상·영구로 범주화하였다. 끝으로 경제적 특성의 경우 경제활동 상태는 상용직을 기준으로 임시, 일용(이상 임금근로), 자영(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 등으로 분류하였다. 끝으로 금융채무경험은 있음을, 직업기술은 없음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 2. 분석결과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로짓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6- 1>과 같다. 전체가구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직업기술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들이(개인특성, 가구특성, 경제적특성)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개인특성변수에 따른 탈수급 확률의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주성별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탈수급 확률이 낮은 것은 노동시장 참여형태에 있어서의 성별차이와 가구내 가사서비스 책임정도에 따른 복합적인 결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령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20대와 60대간에만 발생하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다른 연령대들 역시 추정값의 부호가 (-)인 점을 감안할 때, 연령대별 로짓분석의 시행을 통해 영향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편 혼인상태에서 주목할 점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유배우)에 비해 없는 경우(별거·사별, 이혼)의 탈수급확률이 높게 나온 점이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근로능력가구원이 증가함으로 인해 탈수급할 개연성이 높다고 예상되는데, 분석결과는 이와는 반대로 나타났다. 즉 빈곤가구에서 배우자의 역할은 가사노동을 통한 가구지출의 감소에 기여하거나, 노동시장참여를 통한 가구소득의 증가에 도움을 주지 못할 개연성이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은 <표 6- 2>의 수치에서 보다 분명해지는데,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보통이하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할 근로능력은 부족하고, 지속적인 치료·간병을 위한 지출사유는 증가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구특성에 따른 탈수급확률 분석결과는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해준다. 즉 미취학자녀나 취학자녀, 간병필요가구원이 있는 경우의 탈수급확률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게 나타난 점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추후 분석에서는 이러한 가구지출요인이 연령대별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여부(30대의 경우는 미취학자녀여부, 40대의 경우는 취학자녀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됨)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편 주거형태의 결과, 즉 자가에 비해 전세의 탈수급확률이 높은 점은 지난 장의 수급빈곤층과 비수급빈곤층의 특성과 동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결과에서 탈수급가구의 경우 수급가구에 비해 전세비율이 약 2배 높은 반면 자가 비중은 거의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특성이 본 결정요인 분석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경제적특성에 따른 탈수급결정요인 분석결과 선행연구에서 입증한 결과들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경제활동상태의 경우 상용직이 다른 상태에 있는 경우보다 탈수급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이는 일자리안정성이 높고 보수수준이 높은 상용직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상용직과 같은 임금근로유형인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비해 비임금근로에 속하는 자영직의 탈수급확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볼 때, 저소득층에게 자영업 선택은 빈곤으로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금융채무를 경험한 가구의 탈수급확률이 낮은 점은 최근 들어 강조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회복제도의 중요성과 연결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직업기술 유무는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특성과 연결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의 경우 직업기술이 높지 않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데, 이전 장의 기초분석에 따르면 수급가구의 가구주와 탈수급가구의 가구주 모두 단순노무종사자(수급 40.3%, 탈수급 38.4%)-서비스종사자(수급 23.0%, 탈수급 18.2%) 순으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이를 반영한다.

〈표 5-1〉 탈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전체가구주

		B	S.E.	Wald	Exp(B)
개인특성	성별(여성)	-.392†	.219	3.196	.676
	연령(20대)			8.249	
	- 60대	-1.862*	.759	6.021	.155
	- 50대	-.922	.574	2.581	.398
	- 40대	-.552	.543	1.033	.576
	- 30대	-.378	.545	.482	.685
	혼인상태(유배우)			8.417	
	- 미혼	.426	.530	.646	1.531
	- 별거·사별	.776**	.284	7.447	2.173
	- 이혼	.623*	.257	5.888	1.864
	교육(대재이상)			4.946	
	- 중졸이하	-.240	.320	.561	.787
- 고졸이하	-.555†	.290	3.661	.574	
장애여부(있음)	-.585†	.303	3.734	.557	
가구특성	미취학자녀여부(있음)	-1.523***	.473	10.354	.218
	취학자녀여부(있음)	-1.808***	.229	62.189	.164
	간병필요가구원여부(있음)	-.943*	.474	3.951	.390
	주거형태(자가)			13.496	
	- 전세	1.014*	.485	4.377	2.758
	- 월세	.148	.441	.113	1.160
- 무상·영구	-.128	.499	.066	.880	
경제적특성	경제활동상태(상용)			12.156	
	- 임시	-.673*	.271	6.164	.510
	- 일용	-.630*	.251	6.306	.532
	- 자영	-1.137**	.385	8.731	.321
	- 실업	-.901*	.424	4.514	.406
	금융채무경험(있음)	-.448*	.196	5.237	.639
	직업기술(없음)	-.244	.198	1.516	.784
Constant	1.227†	.743	2.723	3.410	
X2	201.998***				
-2LL	816.365				
Nagelkerke R2	.286				

주: 1) † p<.1, \*p<.05, \*\*p<.01, \*\*\*p<.001  
 2) 종속변수에서 탈수급=1, 수급=0으로 코딩

〈표 5-2〉 배우자의 건강상태

	배우자의 건강상태					전체 (빈도)
	아주 건강	건강한편	보통	건강하지 않은편	매우 안 좋은편	
혼인상태: 유배우	7.3	21.8	12.4	32.1	26.4	100 (330)

(단위: %)

### 제3절 집단별 탈수급 결정요인

위에서 살펴본 분석결과의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본 장의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귀분석에서의 탈수급 확률은 ‘다른 독립변수를 통제했을 때’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함의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가 분석을 통해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집단별로 어떤 양상을 보이며 일관된 요인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사용되는 추가분석의 기준은 가구주 성별, 연령별 범주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간 등이다.

#### 1. 성별 탈수급 결정요인 분석

가구주의 성별(남성과 여성)에 따른 탈수급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6- 3>과 <표 6- 4>와 같다. 가구주 성별 분석결과에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사점으로는, 두 집단 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탈수급 결정요인은 가구특성이며, 그 중에서도 미취학자녀여부와 취학자녀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즉 가구주 성별에 상관없이 가구내 보육 및 교육부담이 있는 경우 탈수급할 가능성이 낮음을 두 표는 보여준다. 따라서 가구특성별 지출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탈수급으로의 이행에 중요한 지점이라 판단된다.

두 번째 시사점은 남성가구주에 비해 여성가구주가 경제적 특성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가구주의 경우 상용직과 일용직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상용직과 다른 직종간의 탈수급 확률의 차이가 없는 반면, 여성가구주의 경우는 일용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상용직에 비해 탈수급확률이 낮은 양상이 이

를 증명해준다. 또한 금융채무경험이나 직업기술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이를 토대로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상대적으로 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가구주의 경우 가구지출요인(보육, 학원교육 등)을 감안하여 노동시장참여를 촉진하거나 보호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일-가정양립정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표 5-3〉 가구주 성별 탈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남성

		B	S.E.	Wald	Exp(B)
개인특성	연령(20대)			2.457	
	- 60대	-1.173	1.152	1.036	.310
	- 50대	-.492	.861	.326	.611
	- 40대	-.453	.814	.312	.635
	- 30대	-.995	.845	1.386	.370
	혼인상태(유배우)			9.877	
	- 미혼	-.026	.737	.001	.974
	- 별거·사별	1.278*	.509	6.312	3.589
	- 이혼	.955*	.399	5.734	2.597
	교육(대재이상)			3.686	
	- 중졸이하	-1.018†	.534	3.629	.361
	- 고졸이하	-.563	.463	1.478	.569
	장애여부(있음)	-.652†	.381	2.927	.521
가구특성	미취학자녀여부(있음)	-1.108†	.628	3.109	.330
	취학자녀여부(있음)	-2.160***	.398	29.460	.115
	간병필요가구원여부(있음)	-.985	.686	2.061	.374
	주거형태(자가)			6.937	
	- 전세	2.179*	.913	5.701	8.841
	- 월세	1.258	.834	2.273	3.517
	- 무상·영구	1.306	.887	2.167	3.693
경제적특성	경제활동상태(상용)			4.260	
	- 임시	-.391	.501	.610	.676
	- 일용	-.839†	.436	3.706	.432
	- 자영	-.801	.543	2.179	.449
	- 실업	-.602	.601	1.002	.548
	금융채무경험(있음)	-.246	.330	.556	.782
	직업기술(없음)	.235	.334	.496	1.265
Constant	.027	1.216	.000	1.027	
X2	102.400***				
-2LL	290.823				
Nagelkerke R2	.367				

주: 1) † p<.1, \*p<.05, \*\*p<.01, \*\*\*p<.001  
 2) 종속변수에서 탈수급=1, 수급=0으로 코딩

〈표 5-4〉 가구주 성별 탈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여성

		B	S.E.	Wald	Exp(B)
개인특성	연령(20대)			8.758	
	- 60대	-1.903	1.136	2.804	.149
	- 50대	-.581	.879	.437	.559
	- 40대	-.039	.839	.002	.961
	- 30대	.403	.829	.236	1.496
	혼인상태(유배우)			2.724	
	- 미혼	1.185	.839	1.994	3.270
	- 별거·사별	.457	.378	1.465	1.580
	- 이혼	.320	.369	.751	1.377
	교육(대제이상)			7.658	
	- 중졸이하	.199	.428	.217	1.221
- 고졸이하	-.510	.388	1.734	.600	
장애여부(있음)	-.280	.555	.254	.756	
가구특성	미취학자녀여부(있음)	-1.716*	.832	4.256	.180
	취학자녀여부(있음)	-1.760***	.301	34.267	.172
	간병필요가구원여부(있음)	-1.077	.702	2.352	.341
	주거형태(자가)			13.131	
	- 전세	.524	.627	.697	1.688
	- 월세	-.401	.568	.497	.670
- 무상·영구	-1.244†	.692	3.231	.288	
경제적특성	경제활동상태(상용)			10.165	
	- 임시	-.681*	.341	3.988	.506
	- 일용	-.479	.330	2.106	.620
	- 자영	-1.469*	.591	6.184	.230
	- 실업	-1.779*	.826	4.636	.169
	금융채무경험(있음)	-.561*	.258	4.718	.571
	직업기술(없음)	-.601*	.258	5.442	.548
Constant	1.086	1.089	.995	2.963	
X2	128.087***				
-2LL	496.575				
Nagelkerke R2	.293				

주: 1) † p<.1, \*p<.05, \*\*p<.01, \*\*\*p<.001  
 2) 종속변수에서 탈수급=1, 수급=0으로 코딩

## 2. 연령별 탈수급 결정요인 분석

다음으로는 가구주의 연령을 구분하여 해당 연령대(30대, 40대, 50대)별로 나타나는 탈수급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20대와 60대의 경우는 해당 케이스수가 적어 (65케이스, 45케이스) 회귀분석을 시행하기에 적절치 않아 제외하였다. 그 결과 발견되는 시사점은 우선 미취학자녀나 취학자녀 유무가 세 연령대 공히 탈수급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점이다. 30대의 경우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40대와 50대의 경우는 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탈수급확률이 낮았는데, 이는 본 장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가구내 보육 및 교육부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시사점은 탈수급을 유도하는 정책이 가구주 연령대별로 특성화될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공히 발견되는 자녀 보육 및 교육부담 이외에, 30대의 자영직에서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한 직업기술 및 재취업지원정책이 요청되며, 40대의 경우는 가구의 부채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50대의 경우는 개인특성, 가구특성, 경제적특성 등 다양한 영역에 있어 집단내 편차가 확대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대상인구집단에 대한 연구를 통한 신중한 지원책이 요청된다.

〈표 5-5〉 가구주 연령별 탈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30대

		B	S.E.	Wald	Exp(B)
개인특성	성별(여성)	.052	.823	.004	1.054
	혼인상태(유배우)			1.206	
	- 미혼	-.210	2.377	.008	.810
	- 별거·사별	-.967	1.160	3695	.380
	- 이혼	-.014	.889	.000	.986
	교육(대재이상)			.837	
	- 중졸이하	-.842	.923	.832	.431
	- 고졸이하	-.351	.705	.248	.704
장애여부(있음)	-1.738	1.485	1.371	.176	
가구특성	미취학자녀여부(있음)	-5.433*	2.477	4.811	.004
	취학자녀여부(있음)	-3.028	2.075	2.130	.048
	간병필요가구원여부(있음)	-20.949	9579.286	.000	.000
	주거형태(자가)			4.997	
	- 전세	15.386	41679.932	.000	4810577.9
	- 월세	13.950	41679.932	.000	1143698.1
	- 무상·영구	13.381	41679.932	.000	647611.902
경제적특성	경제활동상태(상용)			4.896	
	- 임시	-.872	.613	2.022	.418
	- 일용	-1.309	.621	4.441	.270
	- 자영	-20.297***	9683.503	.000	.000
	- 실업	-1.097	1.488	.544	.334
	금융채무경험(있음)	-.571	.546	1.094	.565
	직업기술(없음)	-1.073†	.566	3.595	.342
Constant	-10.592***	41679.932	.000	.000	
X2			55.235***		
-2LL			113.121		
Nagelkerke R2			.423		

주: 1) † p<.1, \*p<.05, \*\*p<.01, \*\*\*p<.001  
 2) 종속변수에서 탈수급=1, 수급=0으로 코딩

〈표 5-6〉 가구주 연령별 탈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40대

		B	S.E.	Wald	Exp(B)
개인특성	성별(여성)	-.348	.354	.970	.706
	혼인상태(유배우)			2.994	
	- 미혼	-.236	.978	.058	.790
	- 별거·사별	.644	.394	2.674	1.905
	- 이혼	.420	.371	1.277	1.521
	교육(대재이상)			5.837	
	- 중졸이하	1.002	.665	2.273	2.724
	- 고졸이하	.369	.656	.316	1.446
장애여부(있음)	-.443	.534	.689	.642	
가구특성	미취학자녀여부(있음)	-.901	.631	2.037	.406
	취학자녀여부(있음)	-1.846***	.290	40.384	.158
	간병필요가구원여부(있음)	-.317	.712	.198	.729
	주거형태(자가)			7.194	
	- 전세	.625	.716	.762	1.868
	- 월세	-.411	.647	.404	.663
- 무상·영구	-.453	.730	.385	.636	
경제적특성	경제활동상태(상용)			1.697	
	- 임시	-.115	.483	.057	.891
	- 일용	.280	.429	.428	1.324
	- 자영	.113	.579	.038	1.119
	- 실업	-.287	.736	.152	.751
	금융채무경험(있음)	-.568†	.302	3.537	.567
직업기술(없음)	-.309	.297	1.081	.734	
Constant		-.396	1.009	.154	.673
X2		76.390***			
-2LL		362.900			
Nagelkerke R2		.246			

주: 1) † p<.1, \*p<.05, \*\*p<.01, \*\*\*p<.001  
 2) 종속변수에서 탈수급=1, 수급=0으로 코딩

〈표 5-7〉 가구주 연령별 탈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50대

		B	S.E.	Wald	Exp(B)
개인특성	성별(여성)	-1.023*	.473	4.673	.360
	혼인상태(유배우)			3.464	
	- 미혼	1.007	1.069	.888	2.739
	- 별거·사별	.925†	.532	3.020	2.522
	- 이혼	.409	.509	.647	1.506
	교육(대재이상)			.169	
	- 중졸이하	-.388	.945	.169	.679
	- 고졸이하	-.336	.955	.123	.715
장애여부(있음)	.165	.484	.116	1.179	
가구특성	미취학자녀여부(있음)	.507	1.055	.231	1.661
	취학자녀여부(있음)	-1.747***	.525	11.095	.174
	간병필요가구원여부(있음)	-1.080	.970	1.239	.340
	주거형태(자가)			5.529	
	- 전세	.834	.865	.931	2.303
	- 월세	1.113	.724	2.363	3.045
- 무상·영구	-.686	1.140	.361	.504	
경제적특성	경제활동상태(상용)			8.817	
	- 임시	-.380	.733	.269	.684
	- 일용	-1.051	.649	2.619	.350
	- 자영	-1.973*	.787	6.283	.139
	- 실업	-1.645†	.919	3.202	.193
	금융채무경험(있음)	-.407	.429	.904	.665
직업기술(없음)	.325	.480	.460	1.385	
Constant		-.311	1.269	.060	.733
X2		47.931***			
-2LL		181.014			
Nagelkerke R2		.303			

주: 1) † p<.1, \*p<.05, \*\*p<.01, \*\*\*p<.001  
 2) 종속변수에서 탈수급=1, 수급=0으로 코딩

### 3. 수급기간별 탈수급 결정요인 분석

이전까지 살펴본 집단범주가 가구주의 개인특성에 대한 것인 반면, 여기서 살펴볼 범주는 기초생활 수급기간이라는 복지의존성에 관한 것이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이 단기적으로 필요한 집단과 장기적으로 필요한 집단간에 탈수급 요인양상을 살펴보려는 데 분석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급기간을 3년이하인 집단(이하 단기수급)과 4년이상인 집단(이하 장기수급)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로짓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우선 이전의 분석과 일치되는 경향으로 미취학자녀여부 및 취학자녀여부가 두 집단 모두에서 탈수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구지출요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단기수급집단의 경우 일자리요인에 의해서 탈수급이 결정되는 반면, 장기수급집단의 경우는 일자리 뿐만 아니라 가구주 개인특성의 영향을 받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단기수급집단에게는 노동시장으로의 pull & push 전략이 요청된다. 반면 장기수급집단에게는 탈수급기능집단을 선별하여 지원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수급으로 갈 경우 여성의 탈수급확률이 감소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여성가구주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 위험에 대한 예방차원에서는 생애주기적 방향에서 설계되어야 하며, 사후적으로는 수급기간을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8〉 수급기간별 탈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단기수급(3년이하)

		B	S.E.	Wald	Exp(B)
개인특성	성별(여성)	.035	.379	.009	1.036
	연령(20대)			7.365	
	- 60대	-2.601*	1.256	4.288	.074
	- 50대	-.751	.972	.597	.472
	- 40대	-.572	.918	.388	.564
	- 30대	-.069	.915	.006	.934
	혼인상태(유배우)			4.188	
	- 미혼	1.335	.870	2.352	3.799
	- 별거·사별	.734	.480	2.344	2.084
	- 이혼	.267	.408	.428	1.305
	교육(대재이상)			.347	
	- 중졸이하	-.292	.532	.301	.747
	- 고졸이하	-.272	.488	.311	.762
장애여부(있음)	-.596	.537	1.232	.551	
가구특성	미취학자녀여부(있음)	-1.842**	.671	7.524	.159
	취학자녀여부(있음)	-2.368***	.393	36.298	.094
	간병필요가구원여부(있음)	-2.345*	1.167	4.041	.096
	주거형태(자가)			13.105	
	- 전세	1.442†	.795	3.288	4.231
	- 월세	.203	.754	.072	1.225
- 무상·영구	-.416	.856	.237	.659	
경제적특성	경제활동상태(상용)			7.866	
	- 임시	-.932*	.470	3.932	.394
	- 일용	-.565	.392	2.078	.568
	- 자영	-1.604*	.697	5.295	.201
	- 실업	-1.177	.802	2.150	.308
	금융채무경험(있음)	-.407	.325	1.575	.665
직업기술(없음)	-.377	.331	1.295	.686	
Constant		1.374	1.246	1.216	3.951
X2		130.451***			
-2LL		308.470			
Nagelkerke R2		.408			

주: 1) † p<.1, \*p<.05, \*\*p<.01, \*\*\*p<.001  
 2) 종속변수에서 탈수급=1, 수급=0으로 코딩

〈표 5-9〉 수급기간별 탈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장기수급(4년이상)

		B	S.E.	Wald	Exp(B)
개인특성	성별(여성)	-.632*	.286	4.896	.531
	연령(20대)			5.752	
	- 60대	-2.005†	1.061	3.568	.135
	- 50대	-1.602†	.845	3.594	.201
	- 40대	-1.050	.798	1.732	.350
	- 30대	-1.105	.786	1.976	.331
	혼인상태(유배우)			8.422	
	- 미혼	-.360	.790	.207	.698
	- 별거·사별	.954*	.378	6.380	2.596
	- 이혼	.812*	.350	5.383	2.252
	교육(대재이상)			5.604	
	- 중졸이하	-.277	.426	.423	.758
	- 고졸이하	-.754†	.387	3.790	.471
장애여부(있음)	-.452	.386	1.372	.636	
가구특성	미취학자녀여부(있음)	-1.576*	.752	4.398	.207
	취학자녀여부(있음)	-1.631***	.297	30.178	.196
	간병필요가구원여부(있음)	-.372	.532	.489	.689
	주거형태(자가)			2.205	
	- 전세	.636	.649	.960	1.890
	- 월세	.210	.562	.140	1.234
	- 무상·영구	-.066	.638	.011	.936
경제적특성	경제활동상태(상용)			6.009	
	- 임시	-.410	.359	1.304	.664
	- 일용	-.629†	.345	3.315	.533
	- 자영	-.897†	.484	3.435	.408
	- 실업	-1.124*	.573	3.847	.325
	금융채무경험(있음)	-.538*	.261	4.268	.584
	직업기술(없음)	-.191	.264	.523	.826
Constant	1.692	1.049	2.604	5.431	
X2	95.6653***				
-2LL	483.776				
Nagelkerke R2	.242				

주: 1) † p<.1, \*p<.05, \*\*p<.01, \*\*\*p<.001  
 2) 종속변수에서 탈수급=1, 수급=0으로 코딩

## 제4절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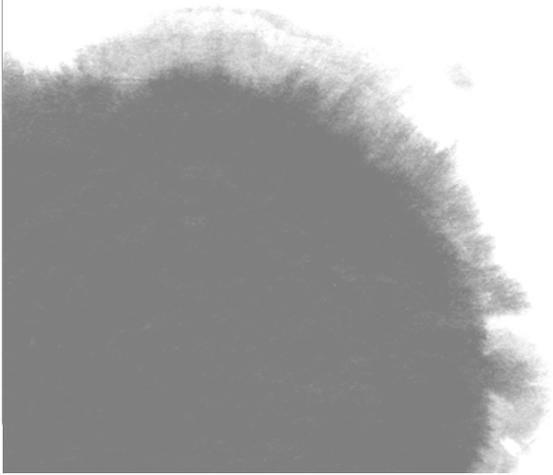
전체 조사대상 및 각 집단별 탈수급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의 자녀보육부담과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가 일관되게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가구지출을 변화시키는 자녀보육 및 교육관련 변수는 모든 분석에서 유의미하게 나온 반면, 가구소득을 결정하는 경제활동상태는 분석범주별로 결정요인으로서의 영향이 달라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탈수급에 있어 가구지출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보육문제는 해당 가구의 지출증가 요인 뿐만 아니라 소득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아래<표 5-10> 참조), 탈수급 강화와 관련하여 노동유인과 지출보존의 방안 중 하나로 해당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표 5-10〉 미취학자녀 및 취학자녀에 의한 취업활동 어려움

(단위: %)

	취업활동에 주는 어려움					전체 (빈도)
	매우작다	작다	보통이다	크다	매우크다	
미취학자녀	8.5	9.6	19.1	30.9	31.9	100 (94)
취학자녀	12.6	11.9	23.6	15.4	6.1	100 (619)

지활사업 참여자 분석결과





## 제6장 자활사업 참여자 분석결과

### 제1 절 문제제기

본 장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특성, 소득 및 부채실태, 자활사업에 대한 만족도, 각종 복지제도에 대한 수급경험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이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의 탈수급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연구결과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벌 수 있는 능력의 문제이다.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크거나,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집단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 및 재진입은 매우 힘든 문제일 수 밖에 없다. 둘째, 자활사업을 비롯한 현재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이들의 욕구와 능력을 고려한 효과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지난 수년간 자활사업과 기타 근로빈곤층 취업지원정책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들의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전반적으로 이들의 취업과 탈수급을 촉진하기에는 취업성과 자체가 낮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제도가 이들의 탈수급을 가로막는 문턱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현재 각종 복지제도가 외형적인 선정기준과 달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등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나는 경우, 각종 지원이 중단됨으

로써 실제 가치분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인특성 및 가구특성,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임금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 복지제도에 대한 수급경험 및 수급중단경험 등을 살펴보고, 이것이 이들의 탈수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 제 2절 조사표본의 특성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조사는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에 이루어졌으며, 지역사회센터의 도움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된 표본은 총 158개이며, 가구주 면접을 통해 가구원 전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가구원 데이터를 추가 구성하였으며 조사된 수는 465개이다.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대도시에 41.2%, 중소도시 38.8%, 농어촌에 20.0%가 분포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규모가 큰 행정구역으로 서울시, 울산, 경북 영덕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자활센터 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29.8%, 남성 70.2%로 여성의 자활 사업 참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성비 분포 또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연령별 참여비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40대의 참여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농어촌에서는 40대와 50대의 참여율이 높고, 중소도시에서는 40대와 30대의 자활사업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6-1〉 자활사업 참여자(가구주)의 성별

(단위 : %)

	구분	가구주				가구원		
		빈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대도시	서울 종로	12	10.3	14.0	8.7	8.4	10.3	6.9
	부산 연제	9	7.9	6.0	8.7	6.9	3.9	9.3
	광주 남구	8	6.7	8.0	6.1	6.9	8.9	5.4
	광주 북구	4	3.6	-	5.2	2.2	2.0	2.3
	울산 북구	14	12.7	18.0	10.4	11.5	12.8	10.4
중소도시	경기 구리	8	3.0	2.0	3.5	4.3	3.9	4.6
	경기 부천	12	4.8	2.0	6.1	5.4	4.9	5.8
	경기 시흥	11	4.8	-	7.0	6.5	3.0	9.3
	전북 익산	21	8.4	12.0	6.9	10.4	12.3	8.8
	전북 전주	9	3.6	2.0	4.3	4.3	3.9	4.6
	전남 목포	10	4.2	6.0	3.5	4.8	5.4	4.2
	경남 창원	13	5.5	6.0	5.2	5.8	6.9	5.0
	제주	8	3.6	4.0	3.5	3.5	4.4	2.7
농어촌	경북 영덕	11	12.1	10.0	13.0	8.7	7.4	9.7
	충남 청양	8	8.5	10.0	7.8	10.4	9.9	10.8
	계	15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58)	(158)	(47)	(111)	(463)	(206)	(257)
		X <sup>2</sup> =14.544      p=.485				X <sup>2</sup> =20.263      p=.162		

\*p<.05 \*\*p<.001 \*\*\*p<.000

〈표 6-2〉 자활사업 참여자(가구주)의 지역별·성별 분포

(단위 :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 성비 분포	남성	29.9	33.3	26.6	29.4
	여성	70.1	66.7	73.4	70.6
	계	100.0	100.0	100.0	100.0
	(수)	(158)	(47)	(92)	(19)
			X <sup>2</sup> =7.31      p=.694		
지역별 연령 분포	30-39세	14.3	15.9	20.0	-
	40-49세	50.6	40.6	60.0	52.9
	50-59세	26.2	36.2	15.4	26.5
	60세 이상	8.9	7.2	4.6	20.6
	계	100.0	100.0	100.0	100.0
	(수)	(158)	(47)	(92)	(19)
		X <sup>2</sup> =21.322      p=.002			

\*p<.05 \*\*p<.001 \*\*\*p<.000

### 제 3절 인구학적 특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과 남성의 성별은 각각 70.2%, 29.8%로 자활사업에 여성의 참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대부분 가구주임을 감안해 볼 때, 여성가구주 가구가 취업애로 및 가구여건 등으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3〉 자활사업 참여자(가구주)의 성별

(단위 : %)			
	구분	비율(%)	수
성별	남성	29.8	47
	여성	70.2	111
	계	100.0	158

자활사업참여자의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은 전체적으로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고, 5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46.9세이며, 여성(46.12세)과 남성(48.92세) 모두 이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남성 자활사업 참여자는 유배우 32.6%, 이혼30.4% 순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은 이와 반대로 이혼(45.0%), 유배우(22.0%)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이혼·사별·별거로 인한 가정 해체의 비율은 71.2%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이혼이나 사별 등의 혼인상태 변화는 갑자기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이중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자활참여자들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자활참여자의 초대졸 이상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낮은 임금이나 취업차별로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 평균 학력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대부분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지역자활지원센터의 사업참여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는 자활공동체 등에 참여함으로써 상용직이나 임시직의 지위를 갖지만, 대부분이 자활

근로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6-4〉 자활사업 참여자(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연령	30-39세	14.5	12.0	15.5
	40-49세	50.6	40.0	55.2
	50-59세	26.5	38.0	21.6
	60세 이상	8.4	10.0	7.8
	계	100.0	100.0	100.0
	(수)	(158)	(47)	(111)
	평균	46.95	48.92	46.12
	X <sup>2</sup> =5.663 p=.129			
혼인상태	유배우	25.0	31.9	22.0
	별거	12.8	17.0	11.0
	사별	15.4	4.3	20.2
	이혼	40.4	29.8	45.0
	미혼	6.4	17.0	1.8
	계	100.0	100.0	100.0
	(수)	(147)	(44)	(103)
	X <sup>2</sup> =21.314 p=.000			
교육수준	무학(만7세 이상)	1.8	5.9	-
	초등학교	16.4	13.7	17.5
	중학교	14.5	17.6	13.2
	고등학교	53.3	51.0	54.4
	대학(전문대)	7.9	3.9	9.6
	대학교	6.1	7.8	5.3
	계	100.0	100.0	100.0
	(수)	(156)	(47)	(109)
X <sup>2</sup> =9.439 p=.093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6	2.0	4.3
	임시직 임금근로자	1.8	3.9	0.9
	일용직 임금근로자	1.2	3.9	-
	자활 또는 공공근로자	88.0	80.4	91.4
	고용주	1.8	-	2.6
	자영업자	3.0	7.8	0.9
	기타	0.6	2.0	-
	계	100.0	100.0	100.0
(수)	(158)	(47)	(111)	
X <sup>2</sup> =16.785 p=.010				

\*p<.05 \*\*p<.001 \*\*\*p<.000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일반계층에 비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애, 만성질환,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종류는 시각, 지체, 정신 장애로 모두 경증으로 남성에서만 나타나며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만성질환은 남성과 여성 모두 비해당의 비율이 높았으며, 6개월 이상의 투병, 투약의 비율은 남성(24.0%)과 여성(22.2%) 모두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남성(2.65%)이 여성(2.88%)보다 건강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 자활사업 참여자의 장애·만성질환·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장애종류 (다중응답)	지체장애	27.2	27.2	-
	시각장애	45.7	45.2	-
	정신장애	27.2	27.2	-
	계	100.0	100.0	-
	(수)	(4)	(4)	(0)
장애 등급	비해당(비장애인)	97.0	90.0	100.0
	경증(5급/6급)	2.4	8.0	-
	비등록장애인(보훈처등록 장애인포함)	0.6	2.0	-
	계	100.0	100.0	100.0
	(수)	(158)	(47)	(111)
		X <sup>2</sup> =12.061	p=.007	
만성질환 여부	비해당	65.9	66.0	65.8
	3개월 미만 투병, 투약	7.8	2.0	10.3
	3개월~6개월 투병, 투약	3.6	8.0	1.7
	6개월 이상 투병, 투약	22.8	24.0	22.2
	계	100.0	100.0	100.0
	(수)	(158)	(47)	(111)
		X <sup>2</sup> =6.975	p=.073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안 좋은 편	16.2	21.6	13.8
	건강하지 않은 편	22.8	29.4	19.8
	보통	27.5	17.6	31.9
	건강한 편	29.9	23.5	32.8
	아주 건강	3.6	7.8	1.7
	계	100.0	100.0	100.0
	(수)	(157)	(47)	(110)
	평균	2.81	2.65	2.88
		X <sup>2</sup> =10.066	p=.039	

\*p<.05 \*\*p<.001 \*\*\*p<.000

## 제 4절 가구특성의 비교

본 절에서 응답자의 가구특성으로 가구원수, 가구유형, 수급형태, 주거형태, 돌봄 가족의 유무를 살펴보도록 한다.

조사가구의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3인 가구가 가장 많으며, 남성은 평균 2.65명, 여성은 평균 2.86명의 구성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을 보면 남성은 부자 가구의 비율이, 여성은 모자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분석대상을 가구주로 통제함에 따라 각각 부자가구와 모자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성가구주의 경우에는 남성 가구주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가구의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활 사업 참여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가족해체 등을 경험한 집단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초보장수급형태를 살펴보면, 조건부 수급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차상 위계층 및 기타 일반계층, 일반수급, 특례수급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상위계층 및 기타 일반계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자활사업 대상자의 범위가 근로능력 수급자에서 실직빈곤층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응답자의 주거형태에서 남성 자활참여자는 보증금 있는 월세, 자가, 전세 순으로 나타나며, 여성은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무상거주, 보증금 없는 월세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여성 자활 참가자의 경우 특히 자가의 비율이 가장 낮고, 보증부월세의 비율이 가장 높아 주거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 자산빈곤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가구 내 미취학 아동, 취학자녀 또는 간병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 가구원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미취학 자녀(12.2%)와 간병가구원(4.4%)은 남성 자활참여 가구에 더 많았으며, 취학자녀는 64.7%로 여성 가구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혼이나 사별 등의 가족해체로 주생계부양자와 어린 자녀의 양육자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는 부자 혹은 모자 가구의 자활 참여자의 경제 활동에 제약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

급여 수급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근로능력이 없는 집단에게 1종 의료급여가 지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자활사업 참여자 자체가 장애나 질환문제를 안고 있거나, 해당 가구원 중 중질환자나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6〉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구특성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총가구원 수	1명	20.4	23.5	19.0
	2명	17.4	19.6	16.4
	3명	35.5	31.4	34.5
	4명	21.6	17.6	23.3
	5명	5.4	7.8	4.3
	6명 이상	1.8	-	2.6
	계	100.0	100.0	100.0
	(수)	(158)	(47)	(111)
	평균	2.80	2.65	2.86
X <sup>2</sup> =3.337 p=.648				
가구유형	일반가구(부부+자녀)	20.6	30.0	16.5
	부부가구	5.5	8.0	4.3
	모자가구	37.0	-	53.0
	부자가구	9.7	32.0	-
	단독가구	18.8	22.0	17.4
	기타가구	8.5	8.0	8.7
	계	100.0	100.0	100.0
	(수)	(156)	(47)	(109)
X <sup>2</sup> =67.660 p=.000				
수급형태	일반수급	2.4	4.0	1.7
	조건부수급	63.6	58.0	66.1
	특례수급	1.8	4.0	0.9
	차상위계층 및 기타일반계층	32.1	34.0	31.3
	계	100.0	100.0	100.0
	(수)	(157)	(47)	(110)
X <sup>2</sup> =3.050 p=.384				

\*p<.05 \*\*p<.001 \*\*\*p<.000

〈표 6-7〉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구특성(계속)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주거형태	자가	13.3	22.4	9.5
	전세	21.2	20.4	21.6
	보증금 있는 월세	32.7	26.5	35.3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포함)	13.3	12.2	13.8
	무상거주	18.8	16.3	19.8
	기타	0.6	2.0	-
	계	100.0	100.0	100.0
	(수)	(157)	(47)	(110)
X2=7.837 p=.165				
의료급여 수급형태	비해당	4.5	6.5	3.8
	의료급여 1종	95.5	93.5	96.2
	의료급여 2종	-	-	-
	기타	-	-	-
	계	100.0	100.0	100.0
	(수)	(108)	(78)	(108)
X2=.361 p=.548				

\*p<.05 \*\*p<.001 \*\*\*p<.000

〈표 6-8〉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의 돌봄 가족 유무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미취학자녀 유무	있다	7.3	12.2	5.2
	없다	92.7	87.8	94.8
	계	100.0	100.0	100.0
	(수)	(158)	(47)	(111)
	X2=2.555 p=.110			
취학자녀 유무	있다	60.8	52.0	64.7
	없다	39.2	48.0	35.3
	계	100.0	100.0	100.0
	(수)	(158)	(47)	(111)
	X2=2.349 p=.125			
간병가구원 유무	있다	3.0	4.4	2.2
	없다	97.0	95.6	97.8
	계	100.0	100.0	100.0
	(수)	(130)	(42)	(88)
	X2=.515 p=.473			

\*p<.05 \*\*p<.001 \*\*\*p<.000

## 제 5절 소득 및 지출특성의 비교

### 1. 소득 비교

#### 가. 가구단위 소득 비교

가구 총소득은 남성 가구가 913만원으로 여성(808만원)가구보다 약 105만원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가구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 87%, 여성 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근로소득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 중 남성과 여성의 참여업종별 임금격차, 가구규모 등에 따른 참여소득의 제한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9〉 자활사업 참여 가구의 소득비교

(단위 : %)

	소득(만원)			소득비중(%)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가구근로소득	797	692	723	87	86	86
사회보험급여	16	8	10	2	1	1
민간보험급여	3	3	3	0	0	0
기초보장급여	68	54	58	7	7	7
공공부조급여	7	1	2	1	0	0
자활급여	23	27	26	3	3	3
사적이전소득	0	24	17	0	3	2
재산소득	0	0	0	0	0	0
가구총소득	913	808	839	100	100	100

#### 나. 개인단위 소득 비교

개인단위의 연간소득을 사업유형별(자활공동체 사업,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로 살펴본 결과 남성의 개인근로소득은 평균 923만원, 여성은 평균 814만원으로 남성이 약 109만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자활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의 소득이 가장 높으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 근로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

조적으로 자활공동체의 경우, 사업의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수익의 일정부분을 개인에게 배분함으로써 근로소득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반면, 자활근로는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에게 배분하지 않고 적립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이 점에서 자활사업에서는 근로유지형 보다는 시장진입형 사업에 참가할수록 그리고 자활공동체 사업에 참여할수록 빈곤탈출의 개연성이 높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탈수급을 결정하는 요인은 단순히 근로소득만으로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 또한 지적해야 할 것이다.

〈표 6-10〉 사업유형별 자활사업 참여자 개인의 소득 비교

(단위 : 만원)

	남성				여성				
	자활 공동체사 업	시장 진입형 자활 근로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 근로	전체	자활 공동체사 업	시장 진입형 자활 근로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전체	
총소득	1001	954	858	923	1005	911	741	814	
개인근로소득	937	792	778	806	905	809	616	697	
사회보험급 여	연금	0	31	1	16	0	7	6	5
	산재수당	0	0	0	0	0	0	0	0
	실업급여	0	0	0	0	5	0	2	2
민간보험	0	5	0	3	0	14	1	3	
공공부조급 여	기초보장	45	90	50	69	49	29	62	54
	기타급여	0	1	17	7	0	0	1	1
	자활급여	19	34	11	23	38	52	18	27
사적이전소 득	가족친척	0	0	0	0	6	0	34	24
	친구이웃	0	0	0	0	0	0	0	0
	사회단체	0	0	0	0	2	0	0	0
재산소득	0	0	0	0	0	0	0	0	

## 2. 지출 비교

월 지출액을 살펴보면 남성 가구는 총 92만원, 여성가구는 96만원으로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가구의 소득과 비교할 때, 여성가구주 가구가 적자가계를 운영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연소득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남성은 151%, 여성은 304%로 특히 여성 가구의 부채부담이

막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생계급여나 자활급여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채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가구 모두 생계비와 주거관리비, 교육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남성가구는 식료품비, 주거관리비, 교육비 순이며, 여성가구는 주거관리비, 식품비, 교육비로 주거비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두 집단의 가계지출은 구성항목별로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표 6-11〉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의 지출 비교

(단위 : %)

	지출(만원)			지출비중(%)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월세	5	8	7	6	8	7
관리비	2	3	3	2	3	3
광열수도비	10	13	12	11	13	13
약값	3	4	4	4	4	4
입원비	1	1	1	1	1	1
간병비	1	0	0	1	0	0
공교육비	8	7	7	9	7	8
사교육비	5	8	7	5	8	7
보육비	1	1	1	1	1	1
교통비	10	9	9	10	9	9
통신비	6	8	7	6	8	8
송금	1	0	0	1	0	0
식료품비	22	20	21	23	21	22
피복비	8	7	7	8	7	7
부채상환금	5	5	5	5	5	5
기타지출	6	4	4	6	4	4
총지출	92	96	95	100	100	100

〈표 6-12〉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계소득 및 부채비율

(단위 : %)

	남성	여성	전체
가계수지(지출/소득)	121	143	136
근로소득비중	87	86	86
연소득대비부채비율	151	304	254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친척, 친지의 도움이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대출, 카드 및 사채를 이용하거나 비공식적인 근로를 통한 부업활동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생계비를 제외하고 소득증가시 가장 늘리고 싶은 지출항목으로 생계비를 제외하고 교육비와 주거비를 들었으며 특히 여성 가구에서 교육비(27.9%)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성가구와 남성 가구 모두 자녀 양육 및 교육문제를 가장 큰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3〉 생활비 부족시 이용방법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부업	23.9	22.2	24.5
그동안의 저축	18.2	19.0	17.9
재산을 팔거나 줄여서	4.7	6.8	3.8
대출, 카드 및 사채	25.3	26.1	25.0
생업자금융자	1.3	2.2	1.0
친척, 친지의 도움	34.6	36.4	33.9
친구, 이웃의 도움	23.0	29.5	20.4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의 도움	9.3	13.6	7.5

〈표 6-14〉 자활사업 참여자의 늘리고 싶은 지출 항목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소득증가시 가장 늘리고 싶은 지출항목 (다중응답)	총생활비	0.2	-	0.3
	주거비	14.2	15.0	13.9
	보건의료비	5.5	8.8	4.2
	교육비	24.9	17.4	27.9
	교통통신비	1.0	1.8	0.7
	사적이전	0.6	0.6	0.6
	생계비	30.1	31.1	29.7
	부채상환금	10.1	11.2	9.7
	기타(가사용품·교양오락·담배·이미용 등)	7.3	8.5	6.8
	저축	4.3	5.4	3.5
	노후자금	1.4	-	2.0
	주택마련	0.5	-	0.7
	자녀결혼	0.2	-	0.2
	계	100.0	100.0	100.0
(수)	(151)	(44)	(107)	

〈표 6-15〉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

		(단위 : %)		
		전체	남성	여성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 (다중응답)	구분			
	특별한 어려움 없음	23.0	26.6	21.3
	가구원의 알코올 중독	3.0	2.6	3.2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41.5	37.4	43.4
	가구원 취업 및 실업문제	14.7	22.8	11.0
	배우자의 기출 및 외도	1.2	1.6	1.0
	가족 내 폭력	0.5	-	0.7
	가구원간 갈등관계	5.7	2.7	7.1
	기타	10.4	6.3	12.2
계	100.0	100.0	100.0	
(수)	(154)	(46)	(108)	

### 3. 재산 비교

총 재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의 비중이 가장 크고, 수급형태별 자활사업 참여 가구의 재산을 살펴보면 남성(평균 1,987만원, 실제 해당가구 평균 6,381만원)이 여성(평균 1,164만원, 실제 해당가구 평균 2,601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총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하는 순자산이다. 여성가구주 가구는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부채에 의해 자산이 완전 잠식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표 6-16〉 수급형태별 자활사업 참여 가구의 재산 비교

(단위 : 만원)

		남성					여성				
		일반 수급	조건부 수급	특례 수급	차상위 계층 및 기타일 반계층	전체	일반 수급	조건부 수급	특례 수급	차상위 계층 및 기타일 반계층	전체
부동산	자가	5000	429	0	2133	1157	0	336	0	475	368
	전세	0	665	1584	734	711	792	556	0	601	568
	보증부 월세	0	32	0	88	50	0	130	124	259	167
	소유 부동산	0	0	0	95	35	0	0	0	21	7
금융자산		0	2	0	0	1	68	8	294	91	39
동산		0	18	0	78	38	0	1	0	47	15
총재산		5000	1142	1584	3128	1987	860	1030	418	1493	1164
부채		0	1119	1850	2628	1577	200	3681	0	847	2726
순자산		5000	72	-266	954	524	1000	-2690	710	236	-1706

〈표 6-17〉 사업유형별 자활사업 참여 가구의 재산 비교

(단위 : 만원)

		남성				여성			
		자활 공동체사업	시장 진입형 자활 근로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 근로	전체	자활 공동체사업	시장 진입형 자활 근로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전체
부동산	자가	0	1257	1438	1157	0	423	446	368
	전세	1479	178	1094	711	1358	352	426	568
	보증부 월세	230	35	1	50	433	207	90	167
	소유부동산	0	0	92	35	0	0	10	7
금융자산		0	2	0	1	54	2	44	39
동산		71	17	53	38	72	0	5	15
총재산		1780	1488	2666	1987	1917	984	1021	1164
부채		2139	1089	2058	1577	1810	8291	1573	2726
순자산		-490	468	846	524	-678	-7202	-590	-1706

금융채무불이행에 대해 과거 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성이 58.7%로 여성(46.7%)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현재 신용불량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여성이 52.8%로 남성 42.1% 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채액의 규모는 여성이 남성 가구보다 2배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성가구주 가구가 소득대비 지출규모

가 크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부채에 의존할 개연성이 높으며, 이것이 상환능력부족으로 인해 신용불량에 이르게 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6-18〉 자활사업 참여자의 금융채무불이행(신용불량) 현황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금융채부불이행 여부(경험)	있음	50.3	58.7	46.7
	없음	49.7	41.3	53.3
	계	100.0	100.0	100.0
	(수)	(143)	(42)	(101)
X2=1.843 p=.175				
금융채부불이행 여부(현재)	있음	49.1	42.1	52.8
	없음	50.9	57.9	47.2
	계	100.0	100.0	100.0
	(수)	(104)	(35)	(69)
X2=1.134 p=.287				
해결방법	본인 또는 가족친지 도움	21.2	21.1	21.2
	개인회생	21.2	21.1	21.2
	개인파산	15.4	5.3	21.2
	신용회복기관 지원	7.7	5.3	9.1
	기타	34.6	47.4	27.3
	계	100.0	100.0	100.0
	(수)	(54)	(17)	(34)
X2=3.630 p=.458				

\*p<.05 \*\*p<.001 \*\*\*p<.000

#### 4. 저축현황

자활 참여 대상자의 저축현황을 살펴보면 여성(46.6%)이 남성(22.4%)보다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저축 형태는 보통예금과 적금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저축액은 약 20만원 가량으로, 저축을 하는 주된 목적으로 남성은 노후대비, 교육비 마련, 주택 마련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주택마련, 노후대비, 교육비 마련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9〉 자활사업 참여자의 저축 현황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저축여부	하고 있다	39.4	22.4	46.6
	하고 있지 않다	60.6	77.6	53.4
	계	100.0	100.0	100.00
	(수)	(157)	(47)	(110)
	X <sup>2</sup> =8.382    p=.004			
저축형태 (다중응답)	보통예금	29.5	28.4	29.7
	적금	35.0	57.8	30.2
	계	0.9	-	1.0
	기타	34.6	13.8	39.0
	계	100.0	100.0	100.0
	(수)	(57)	(10)	(47)
저축	10만원 미만	14.5	20.0	13.5
	10만원-20만원 미만	38.7	40.0	38.5
	20만원-30만원 미만	21.0	20.0	21.2
	30만원-40만원 미만	14.5	-	17.3
	40만원 이상	11.3	20.0	9.6
	계	100.0	100.0	100.0
	(수)	(56)	(9)	(47)
	평균	20.28(만원)	20.63(만원)	20.21(만원)
저축을 하는 주된 목적 (다중응답)	노후대비	21.3	26.6	20.1
	부채 해결	8.7	12.1	7.9
	주택 마련	24.8	14.4	27.1
	본인 및 가족의 결혼 준비	1.8	3.8	1.4
	치료 및 수술비 마련	14.3	7.3	15.7
	교육비 마련	19.5	21.3	19.1
	사업자금 마련	2.8	3.3	2.7
	사고 싶은 물건의 구입(자동차, 가전제품 등)	3.1	-	3.7
	기타	3.8	11.1	2.3
	계	100.0	100.0	100.0
(수)	(57)	(10)	(47)	

\*p<.05 \*\*p<.001 \*\*\*p<.000

## 제 6절 취업특성의 비교

### 1.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 일자리 특성

다음 표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의 유형 및 내용, 참여 기간, 참여인원, 애로 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자활사업의 참여비율은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비중이 67.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주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자리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이들의 건강상태, 취업경험, 그리고 가구여건(일과 가족의 양립) 등에 따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5대 표준화 사업(간병,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청소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전국차원에서 자활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5대 표준화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에 주력해 왔으나, 점차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5대 표준화사업만으로 다양한 일자리 욕구를 충족시키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지역특색에 맞고, 각 참여자의 능력과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 참여기간은 2년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참여인원 규모를 보면 남성은 10명 미만(62.5%)인 사업에, 여성은 10명이상 20명 미만(49.1%)인 사업에 참여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경우 현재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활사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에 대해 남성 응답자는 적성, 본인의 건강상태, 직업으로서의 전망 순이며, 여성은 적성, 자녀를 양육할 시간적 여유, 직업으로서의 전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의 경우 가구 여건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이들이 일반직업과 자활사업 가운데 자활을 선택하는 것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가구여건을 고려한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데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가? 이에 대해 자활참여자 모두 적은 수입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이 각종 지원을 받고 있지만, 실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소득원을 발굴해야 하며, 이 점에서 비공식부문의 노동을 통해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유혹받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밖에 어려움으로 남성은 사업단에 관련 전문가 부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들었으며, 여성은 기술을 배울 수 없고, 좋지 않은 건강상태, 장비 및 지원 부족, 사업단 관련 전문가 부재를 들어, 참여자들이 기술을 배우는데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자활사업 참여가 본인의 욕구에 맞을 때 참여의 지속성과 자활효과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다양한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이에 맞는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표 6-20〉 자활사업참여 일자리 특성(현재)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자활공동체 사업 유형	자활공동체 사업	15.7	14.0	16.4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25.9	48.0	16.4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58.4	38.0	67.2
	계	100.0	100.0	100.0
	(수)	(158)	(47)	(111)
X <sup>2</sup> =18.726    p=.000				
사업 내용	청소	8.8	11.5	7.6
	자활도우미(인큐베이터)	1.2	-	1.7
	세탁(빨래방)	2.9	3.8	2.5
	집수리	10.5	23.1	5.0
	간병	14.0	7.7	16.8
	식품제조	5.3	5.8	5.0
	한지공예	1.2	-	1.7
	재활용분리수거	7.0	7.7	6.7
	유통사업단	4.1	-	5.9
	농업	5.8	3.8	6.7
	관광홍보도우미	1.2	-	1.7
	제품수리판매	3.5	9.6	0.8
	부품제조	2.9	3.8	2.5
	황토벽돌	1.2	1.9	0.8
	농업	3.5	3.8	3.4

\*p<.05 \*\*p<.001 \*\*\*p<.000

〈표 6-20〉 자활사업참여 일자리 특성(현재)(계속)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복지시설도우미	1.2	-	1.7
	제과제빵	0.6	-	0.8
	식당	0.6	-	0.8
	천연염색	2.3	1.9	2.5
	소독방역	2.3	5.8	0.8
	옷제작판매	2.3	-	3.4
	구분	전체	남성	여성
	보육지도도우미	10.5	3.8	13.4
	문화예술교육사업	0.6	1.9	-
	천연비누제작판매	2.9	3.8	2.5
	가사지원서비스	3.5	-	5.0
	계	100.0	100.0	100.0
	(수)	(158)	(47)	(111)
X <sup>2</sup> =44.621 p=.006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 참여 기간	2년 미만	53.0	52.1	53.4
	2년 이상 4년 미만	29.3	27.1	30.2
	4년 이상 6년 미만	12.2	16.7	10.3
	6년 이상 8년 미만	2.4	2.1	2.6
	8년 이상	3.0	2.1	3.4
	계	100.0	100.0	100.0
	(수)	(158)	(47)	(111)
	평균	28.3802	28.0494	28.5210
X <sup>2</sup> =1.478 p=.831				
참여인원	10명 미만	47.0	62.5	40.5
	10명 이상 20명 미만	42.7	27.1	49.1
	20명 이상 30명 미만	4.9	4.2	5.2
	30명 이상 40명 미만	3.0	4.2	2.6
	40명 이상	2.4	2.1	2.6
	계	100.0	100.0	100.0
	(수)	(156)	(45)	(111)
평균	12.84	11.45	13.40	
X <sup>2</sup> =7.747 p=.101				
현재 참여 프로그램 스스로 선택 여부	예	81.0	78.3	82.1
	아니오	19.0	21.3	17.9
	계	100.0	100.0	100.0
	(수)	(155)	(44)	(111)
X <sup>2</sup> =.308 p=.579				

\*p<.05 \*\*p<.001 \*\*\*p<.000

〈표 6-20〉 자활사업참여 일자리 특성(현재)(계속)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현재참여하고 있는 사업단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다중응답)	소득이 높은지	9.6	12.3	8.2
	본인의 건강상태에 적합한지	11.9	15.5	9.9
	거리가 가까운지	4.0	4.2	4.4
	적성에 맞는지	23.0	21.6	20.9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15.7	11.7	19.8
	직업으로서의 전망이 있는지	12.4	13.3	13.7
	참여하는 사람들과 마음에 맞는지	5.9	2.0	7.7
	기술을 배울 수 있는지	10.7	13.1	11.0
	기타	6.7	6.3	4.4
	계	100.0	100.0	100.0
(수)	(124)	(33)	(91)	
공동체사업(자활 근로사업)에 참여하는데 애로사항 (다중응답)	수입이 적다	43.3	47.9	41.3
	건강이 좋지 않다	9.8	10.1	9.8
	거리가 멀다	3.2	3.3	3.1
	돌봄 가족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	3.8	2.3	4.5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1.2	1.4	1.1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부끄럽다	1.9	4.2	0.9
	기술을 배울 수 없다	8.8	4.4	10.7
	적성에 맞지 않는다	0.5	4.4	0.7
	사업단에 관련 전문가가 없다	7.8	19.0	9.2
	장비 및 지원이 부족하다	12.4	3.1	9.5
	기타	7.3	1.8	9.2
계	100.0	100.0	100.0	
(수)	(157)	(47)	(110)	

\*p<.05 \*\*p<.001 \*\*\*p<.000

## 2. 일자리 만족도 및 직무태도

다음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현재 일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것으로, 일에 대한 만족도는 총 7개 문항으로 작업환경, 임금수준, 사업단 내 인간관계, 일자리 안정, 일의 수행능력, 노동강도, 근로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매우 만족'은 5점, '매우 불만족'은 1점) 설정되어 있다.

분석결과 임금수준(2.45)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모두 3점 이상으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임금을 제외하고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분석결과는 조사방식 자체가 갖는 문제점을 일정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sup>6)</sup>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대부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들은 생계급여나 자활급여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만족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사업단 내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나머진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업단 운영방식과 해당 집단이 갖는 동질성에 따른 친밀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달리 표현하면, 실직과 빈곤으로 인해 배제를 경험해 왔던 취업애로계층들이 자활사업을 통해 사회적 통합의 과정을 경험하는 측면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21〉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성별 만족도

	(단위 : 평균점수)		
	전체	남성	여성
작업환경	3.57	3.53	3.58
임금수준	2.45	2.46	2.45
사업단 내 인간관계	3.83	3.82	3.83
일자리 안정	3.30	3.48	3.23
일의 수행 능력	3.65	3.54	3.70
노동 강도	3.44	3.26	3.52
근로시간	3.73	3.64	3.77

참여 사업별로 보면 자활공동체사업이 모든 영역에서 3점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

6) 이 조사는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를 통해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다소 긍정적으로 답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응답자체가 다소 상향 응답되었을 개연성을 갖고 있다.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활공동체 사업의 경우, 여전히 지역자활지원센터의 지원이나 규제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높고, 자신들의 노력의 수익을 실현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자신들에게 배분된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단에 비해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일자리의 안정성이나 수행능력 등은 자활공동체가 갖는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노동강도와 근로시간의 문제이다. 통상적으로 자활공동체가 다른 사업단에 비해 노동강도가 강하고 근로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향후 심층분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표 6-22〉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사업 참여별 만족도

(단위 : 평균점수)

	전체	자활공동체사업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
작업환경	3.57	3.75	3.41	3.59
임금수준	2.45	3.20	2.14	2.39
사업단 내 인간관계	3.83	3.98	3.76	3.82
일자리 안정	3.30	3.61	3.19	3.26
일의 수행 능력	3.65	3.98	3.49	3.63
노동 강도	3.44	3.64	2.97	3.59
근로시간	3.73	3.83	3.47	3.81

다음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직무 태도를 살펴보는 것으로 일에 대한 책임성, 자부심, 권한부여 영역에 대해 주관적 생각을 5점 척도 문항(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으로 살펴보았다.

성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일에 대한 책임감과 하는 업무에 대한 자부심은 4점 이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일에 대한 권한 부여는 3.48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자활공동체 참여자가 다른 사업 참여자들에 비해 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고 볼 수 있다.

〈표 6-23〉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성별 인식

(단위 : 평균점수)

	전체	남성	여성
내가 시작한 일의 마무리는 항상 스스로 한다	4.31	4.23	4.34
내가 맡은 업무는 전체 사업에서 중요하다	4.10	4.19	4.06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 어느정도 권한을 갖고 있다	3.48	3.7	3.39

〈표 6-24〉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사업유형별 인식

(단위 : 평균점수)

	전체	자활공동동 체사업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회적일자 리형 자활근로
내가 시작한 일의 마무리는 항상 스스로 한다	4.31	4.76	4.15	4.26
내가 맡은 업무는 전체 사업에서 중요하다	4.10	4.56	4.03	4.00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 어느정도 권한을 갖고 있다	3.48	4.18	3.40	3.33

###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소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여부

자활참여대상자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으로 배치되기 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소개에 대해 상담 및 교육을 받았는지 물어본 결과,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소개를 받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가운데 자활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은 본인의 욕구에 맞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때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지면 자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자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6-25〉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으로 배치되기 전 받았던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받았다	58.5	68.1	54.5
	받지 않았다	41.5	31.9	45.5
	계	100.0	100.0	100.0
	(수)	(149)	(43)	(106)
			X <sup>2</sup> =2.530	p=.112
자활사업소개	받았다	89.0	100.0	84.5
	받지 않았다	11.0	-	15.5
	계	100.0	100.0	100.0
	(수)	(154)	(45)	(109)
			X <sup>2</sup> =8.198	p=.004

\*p<.05 \*\*p<.001 \*\*\*p<.000

〈표 6-26〉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으로 배치되기 전 받았던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단위 : %)

	구분	전체	자활공동체사 업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받았다	58.6	88.5	69.2	45.7
	받지 않았다	41.4	11.5	30.8	54.3
	계	100.0	100.0	100.0	100.0
	(수)	(149)	(27)	(43)	(79)
			X <sup>2</sup> =17.731	p=.000	
자활사업소개	받았다	88.9	92.3	92.5	86.5
	받지 않았다	11.1	7.7	7.5	13.5
	계	100.0	100.0	100.0	100.0
	(수)	(154)	(27)	(45)	(82)
			X <sup>2</sup> =1.410	p=.491	

\*p<.05 \*\*p<.001 \*\*\*p<.000

#### 4. 자활사업 참여 역사

조사 대상자가 처음부터 현재까지 참여한 자활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 가운데 전반적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자활사업의 최초 참여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총 자활참여기간은 남성은 평균 2.1년, 여성은 평균 2.2년으로 나타났다. 자활 근로사업 참여 종류는 평균 1.5개 인 것을 알 수 있다. 자활프로그램 참여유형을 살펴보면,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시장 진입형, 자활 공동체 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 중단한 이유로는 치료, 창업준비, 사업의 종료 때문으로 나타났다.

아래 분석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자활사업 참여기간의 문제이다. 전체적으로 절반이상의 참여자가 2년 미만이지만, 나머지 집단은 자활사업에 2년 이상 머물고 있으며, 4년 이상인 참여자가 약 15.6%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자활사업의 참여기간 문제와 관련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즉, 자활사업에 대한 장기간 체류가 경제적 자립이나 탈수급과 무관한 단순한 근로기회제공이 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주로 농어촌지역 등 지역의 중고령참여자와 관련된 문제로 판단된다.

〈표 6-27〉 자활사업 참여 역사 - 과거부터 현재까지(2008년 12월 기준)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최초 자활근로사업 참여시기	2000년 10월-2001년		1.8	-	2.6
	2002년-2003년		4.9	4.2	5.2
	2004년-2005년		20.9	25.0	19.1
	2006년-2007년		38.7	39.6	38.3
	2008년		33.7	31.3	34.8
	계		100.0	100.0	100.0
	(수)		(155)	(46)	(109)
			X <sup>2</sup> =2.028	p=.731	

\*p<.05 \*\*p<.001 \*\*\*p<.000

〈표 6-27〉 자활사업 참여 역사 - 과거부터 현재까지(2008년 12월 기준)(계속)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총자활근로 참여기간	2년 미만	54.4	53.2	54.9
	2년-4년 미만	30.0	27.7	31.0
	4년-6년 미만	12.5	17.0	10.6
	6년 이상	3.1	2.1	3.5
	계	100.0	100.0	100.0
	(수)	(155)	(46)	(109)
	평균	26.7763	26.1182	27.0543
	X <sup>2</sup> =1.439 p=.696			
최초 자활사업참여 연령	28세-30세 미만	1.2	-	1.8
	30세-40세 미만	22.7	14.3	26.3
	40세-50세 미만	47.2	49.0	46.5
	50세-60세 미만	25.2	34.7	21.1
	60세 이상	3.7	2.0	4.4
	계	100.0	100.0	100.0
	(수)	(155)	(46)	(109)
	평균	535.0021	559.2043	524.7781
X <sup>2</sup> =6.137 p=.189				
자활근로사업 참여종류수	1종류	67.5	68.1	67.3
	2종류	16.3	14.9	16.8
	3종류	11.9	17.0	9.7
	4종류	2.5	-	3.5
	5종류	1.9	-	2.7
	계	100.0	100.0	100.0
	(수)	(154)	(46)	(108)
	평균	1.5567	1.5059	1.5784
X <sup>2</sup> =4.474 p=.346				
자활프로그램 참여유형 (다중응답)	참여중단	5.1	5.5	5.0
	자활공동체 사업	13.6	17.0	12.2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25.5	40.5	19.4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형	51.3	35.8	57.7
	자활근로 근로유지형	3.2	-	4.5
	업그레이드용 자활근로	0.6	-	0.8
	지역봉사(자원봉사)	.2	-	0.3
	노동부 자활취업촉진사업	.3	1.1	-
	계	100.0	100.0	100.0
	(수)	(153)	(46)	(107)

\*p<.05 \*\*p<.001 \*\*\*p<.000

〈표 6-28〉 자활사업 참여기간별 참여횟수

		(단위 : %)				
		전체	2년 미만	2년-4년 미만	4년-6년 미만	6년 이상
총참여 기간별 참여횟수	1회	66.7	83.6	52.8	38.5	25.0
	2회	16.7	9.8	27.8	7.7	50.0
	3회	9.6	6.6	11.1	15.4	25.0
	4회	3.5	-	2.8	23.1	-
	5회	3.5	-	5.6	15.4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8)	(54)	(34)	(16)	(4)
		X <sup>2</sup> =6.137    p=.189				

\*p<.05 \*\*p<.001 \*\*\*p<.000

### 5.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 및 창업 희망 여부

자활사업의 성공률에 중요한 지표로 자활사업 참여자 중 취업 또는 창업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조사 대상자의 향후 취업 또는 창업의 희망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남성은 취업 희망, 창업희망, 희망 안함 순이며, 여성은 취업 희망, 희망 안함, 창업 희망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 형태별로 보면 자활공동체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는 창업 희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는 취업 희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가 참여하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짧을수록 취업을 희망하다 기간이 장기화 되면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다. 이는 자활사업에 장기간 체류하는 것이 참여자의 경제적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활사업 참여초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자신이 건강상태나 취업능력 등을 감안할 때, 취업이나 탈수급 가능성을 희박하게 인식하는 참여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참여자 중 실제로 자활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선정하여 지원을 집중화하는 방식이 필

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정책제안을 한다면, 자활사업은 참여자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수급 탈출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먼저 적절한 자활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이어 선정된  
참여자에 대해서는 초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29〉 향후 취업 창업 희망 여부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취업 창업 희망 여부	취업희망	41.4	41.7	41.2
	창업희망	27.8	33.3	25.4
	희망안함	30.9	25.0	33.3
	계	100.0	100.0	100.0
	(수)	(153)	(45)	(108)
		X <sup>2</sup> =1.159 p=.468		

\*p<.05 \*\*p<.001 \*\*\*p<.000

〈표 6-30〉 향후 취업 창업 희망 여부

(단위 : %)

	구분	전체	자활공동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사업참여별 취업창업희망 여부	취업희망	41.6	28.0	35.7	47.9
	창업희망	28.0	36.0	42.9	19.1
	희망안함	30.4	36.0	21.4	33.0
	계	100.0	100.0	100.0	100.0
	(수)	(153)	(26)	(46)	(81)
		X <sup>2</sup> =10.447 p=.034			

\*p<.05 \*\*p<.001 \*\*\*p<.000

〈표 6-31〉 자활참여기간에 따른 취업 창업 희망 여부

		(단위 : %)				
	구분	전체	2년 미만	2-4년 미만	4-6년 미만	6년 이상
향후 취업/창업 희망 여부	취업희망	41.4	46.5	40.8	25.0	28.6
	창업희망	27.8	25.6	30.6	35.0	14.3
	희망안함	30.9	27.9	28.6	40.0	5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53)	(78)	(47)	(22)	(6)
		X <sup>2</sup> =5.686		p=.459		

\*p<.05 \*\*p<.001 \*\*\*p<.000

취업 혹은 창업을 희망하거나 이를 희망하지 않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취업 관련 어려움으로 남성은 학력이나 경력의 부족, 많은 나이와 건강 문제를 들었으며, 여성은 많은 나이, 학력이나 경력의 부족, 아직 (재취업)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생계비 문제를 들었다. 이들은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공공·민관기관을 이용하기 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구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창업을 희망하는 자활참여자는 창업관련 어려움으로 전체적으로 창업자금 부족과 창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생계비 문제를 들었으며, 창업을 위한 구체적 준비로 창업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창업을 위한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재 취업 및 창업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이용도가 매우 낮으며, 이들이 주변의 제한된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보다 지역밀착형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6-32〉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취업관련 어려움 (다중응답)	취업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7.7	14.1	5.0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어서	9.9	11.4	9.3
	학력이나 직장경력이 부족해서	20.1	21.2	19.7
	나이가 많아서	19.7	14.4	21.9
	건강하지 않아서	15.7	14.2	16.4
	가사문제로	2.9	2.0	3.2
	이직(재취업)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생계비 문제로	14.8	9.7	16.9
	신용불량문제로	6.7	13.0	4.1
	기타	2.5	-	3.6
	계	100.0	100.0	100.0
	(수)	(62)	(17)	(45)
취업 관련 준비 여부	있다	56.1	55.0	56.5
	없다	43.9	45.0	43.5
	계	100.0	100.0	100.0
	(수)	(61)	(17)	(44)
X <sup>2</sup> =.013    p=.909				
취업을 위한 구체적 준비 (다중응답)	구인정보수집	24.4	25.7	24.2
	주변 사람들에게 일자리 문의	32.6	36.2	31.8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취업훈련과정 참여	7.3	6.4	7.4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취업훈련과정 참여	13.7	12.5	13.9
	교육기관 등을 통한 학위(자격증) 취득	18.5	6.4	21.2
	기타	3.5	12.8	1.4
	계	100.0	100.0	100.0
	(수)	(38)	(9)	(29)

\*p<.05 \*\*p<.001 \*\*\*p<.000

〈표 6-33〉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창업관련 어려움 (다중응답)	창업관련 사업아이템이 마땅치 않아서	15.9	10.6	18.6
	창업자금이 부족해서	31.5	34.8	29.8
	경영능력이나 사업관련 기술이 부족해서	14.4	13.1	15.1
	나이가 많아서	1.8	2.7	1.4
	건강하지 않아서	4.2	1.9	5.4
	가사문제로	2.4	4.5	1.2
	창업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생계비 문제로	24.3	22.9	25.0
	부채가 많아서	3.0	4.5	2.2
	기타	2.5	5.0	1.2
	계	100.0	100.0	100.0
(수)	(51)	(18)	(33)	
창업 관련 준비 여부	있다	54.5	62.5	50.0
	없다	45.5	37.5	50.0
	계	100.0	100.0	100.0
	(수)	(50)	(18)	(32)
	X <sup>2</sup> =.642    p=.423			
창업을 위한 구체적 준비 (다중응답)	아이템 구상을 위한 정보수집	17.5	15.2	19.0
	주변 사람들에게 창업에 대한 자문요청	25.8	29.4	23.4
	창업자금 마련	15.9	15.2	16.5
	창업 관련 기술습득	33.0	32.3	33.4
	기타	7.8	7.9	7.7
	계	100.0	100.0	100.0
(수)	(29)	(11)	(19)	
공공창업지원기 관 이용 여부	이용한 적이 있다	19.4	27.3	15.0
	이용한 적이 없다	80.6	72.7	85.0
	계	100.0	100.0	100.0
	(수)	(35)	(12)	(23)
	X <sup>2</sup> =.685    p=.408			

\*p<.05 \*\*p<.001 \*\*\*p<.000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지 않는 응답자 가운데 남성은 지금의 자활 사업에 만족한다. 돌봄 가족 때문에, 노동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수입이 적어질 것 같아서를 이유로 들었으며, 여성은 많은 나이와 지금의 자활사업에 만족, 불안정할 것 같은 일자리, 보유한 기술이 적음을 이유로 들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활 참여자가 자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활에 장

애가 되는 개인 요인, 가구 요인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의 장기적인 목적에 맞는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표 6-34〉 취업 혹은 창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다중응답)	지금의 자활 사업 참여에 만족한다	19.9	21.6	19.4
	나이가 많다	22.6	9.6	26.8
	건강이 좋지 않다	9.5	9.0	9.7
	돌볼 가족이 있다	8.6	18.6	5.4
	보유한 기술이 적다	9.2	5.6	10.4
	수입이 적을 것 같다	2.7	11.2	-
	일자리가 불안정할 것 같다	17.3	18.6	16.8
	노동시간이 길어질 것 같다	6.3	5.6	6.5
	일이 고되 것 같다	3.1	-	4.1
	기타	0.7	-	1.0
	계	100.0	100.0	100.0
	(수)	(39)	(10)	(29)

## 제 7절 복지제도 수급실태 비교

### 1. 4대 사회보험 가입률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여성 자활 참여자의 경우의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수급전 보다 현재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성 가구주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노동활동으로 사회보험 혜택을 받아 가입률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남성 참여자는 수급전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참여과정에서 실직이나 파산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취업지위가 하향 이동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35〉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대보험 가입현황

(단위 : %)

구분	현재 사회보험 가입 여부			수급전 사회보험 가입 여부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국민연금	67	55	71	55	74	45
산재보험	91	83	94	49	71	36
고용보험	77	67	81	48	67	36
건강보험	45	39	47	90	91	90

## 2. 기초보장제도 수급 경험 비교

### 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경험

가장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신청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여성 자활 참여자는 이혼·사별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37.4%)를, 남성 가구주는 가구원 양육, 간병(24.4%)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자활 참여자의 가구 구성을 보면 특히 모자 가구와 부자 가구 비율이 높아 남성과 여성 모두 가족적 지지망이 취약하며 이는 경제활동에 제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초보장제도 수급경험에 대해 최초수급시점, 최초수급연령, 중간 탈수급 횟수, 총수급기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초수급시점은 전체적으로 2006년에서 2007년, 2004년에서 2005년에 수급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수급연령을 살펴보면 여성은 평균 40.4세로 30대와 40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남성은 평균 25.4세로 40대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혼이나 사별 등의 가족해체로 생계를 책임지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이 중 부담으로 일 반노동시장과 자활참여 가운데 어린 자녀를 돌보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자활사업 참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간 탈수급 횟수는 대부분 거의 없으나, 1회 경험은 남성이 26.3%(0.47회)로 여성(14.7%, 0.15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급기간은 전체적으로 2년에서 4년 미만이 큰 비중을 나타내며, 남성은 평균 2.5년, 여성은 평균 2.9년으로 나타났다.

〈표 6-36〉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초보장제도 수급 신청 이유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기초보장제도 수급 신청 이유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할 수 없어서	17.6	22.2	15.4
	일감이 줄거나 파산해서	12.6	22.2	7.7
	이혼 사별 등으로 소득이 줄어서	30.9	17.8	37.4
	가구원을 돌봐야(양육, 간병) 되서	19.9	24.4	17.6
	예전부터 가난해서	11.0	11.1	11.0
	기타	8.1	2.2	11.0
	계	100.0	100.0	100.0
	(수)	(133)	(42)	(133)
X <sup>2</sup> =13.199    p=.022				
최초 수급시점	2000년 10월-2001년	6.2	5.4	6.6
	2002년-2003년	11.5	10.8	11.8
	2004년-2005년	25.7	21.6	27.6
	2006년-2007년	36.3	37.8	35.5
	2008년	20.4	24.3	18.4
	계	100.0	100.0	100.0
	(수)	(113)	(36)	(77)
	X <sup>2</sup> =.891    p=.926			

\*p<.05 \*\*p<.001 \*\*\*p<.000

〈표 6-37〉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초보장제도 수급경험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최초 수급 연령		19세이상-30세미만	2.6	-	3.9
		30세이상-40세미만	35.1	18.4	43.4
		40세이상-50세미만	43.9	50.0	40.8
		50세이상-60세미만	15.8	28.9	9.2
		60세 이상	2.6	2.6	2.6
		계	100.0	100.0	100.0
		(수)	(113)	(36)	(77)
		평균	505.2497	545.9377	485.0004
			X <sup>2</sup> =12.753 p=.013		
중간 탈수급 횟수		0회	81.4	73.7	85.3
		1회	18.6	26.3	14.7
		계	100.0	100.0	100.0
		(수)	(113)	(36)	(77)
		평균	0.19	0.27	0.15
		X <sup>2</sup> =2.262 p=.133			
총수급기간		2년 미만	43.9	50.0	40.8
		2년-4년 미만	34.2	31.6	35.5
		4년-6년 미만	11.4	13.2	10.5
		6년-8년 미만	6.1	-	9.2
		8년 이상	4.4	5.3	3.9
		계	100.4.40	100.0	100.0
		(수)	(113)	(36)	(77)
		평균	34.0985	30.8363	35.7221
		X <sup>2</sup> =4.359 p=.360			

\*p<.05 \*\*p<.001 \*\*\*p<.000

### 나. 아동, 청소년 시절 경험과 현재 상황 비교

아동 청소년 시절 부모님을 여의었거나, 이혼으로 인한 가족 해체의 경험, 가계 생계를 위해 일했던 경험, 과거 생활보호대상자 여부 등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이러한 위기를 경험한 집단이 40%~70%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생활과 비교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이 예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며, 여성(62.4%)이 남성(54.3%)보다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8〉 자활사업 참여자의 아동·청소년 시절의 경험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현재생활과 아동·청소년시절과 비교했을 때 변화			
		전체	남성	여성	전체	큰 변화가 없음	지금이에전보다 나아졌음	지금이에전보다 더 나빠졌음
(1)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비해당	26.1	16.3	30.5	24.1	14.3	14.8	30.5
	그렇다	43.5	44.2	43.2	44.5	50.0	37.0	45.1
	그렇지 않다	30.4	39.5	26.3	31.4	35.7	48.1	2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수)	(134)	(40)	(94)	(132)	(27)	(24)	(81)
		X <sup>2</sup> =4.010 p=.135			X <sup>2</sup> =7.873 p=.096			
(2)부모님이 이혼하셨다	비해당	29.5	20.9	33.3	27.9	18.5	18.5	34.1
	그렇다	66.9	72.1	64.6	68.4	74.1	81.5	62.2
	그렇지 않다	3.6	7.0	2.1	3.7	7.4	-	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수)	(134)	(40)	(94)	(132)	(27)	(24)	(81)
		X <sup>2</sup> =3.776 p=.151			X <sup>2</sup> =6.125 p=.190			
(3)가계의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한 적이 있다	비해당	20.9	14.0	24.0	20.4	10.7	7.4	28.0
	그렇다	45.3	34.9	50.0	46.0	42.9	48.1	46.3
	그렇지 않다	33.8	51.2	26.0	33.6	46.4	44.4	2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수)	(134)	(40)	(94)	(132)	(27)	(24)	(81)
		X <sup>2</sup> =8.465 p=.015			X <sup>2</sup> =9.829 p=.043			
(4)생활보호대상자(영세민)여서 국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비해당	26.1	16.3	30.5	24.3	18.5	7.4	31.7
	그렇다	52.2	51.2	52.6	53.7	51.9	48.1	56.1
	그렇지 않다	21.7	32.6	16.8	22.1	29.6	44.4	1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수)	(134)	(41)	(93)	(132)	(26)	(25)	(81)
		X <sup>2</sup> =5.679 p=.058			X <sup>2</sup> =16.113 p=.003			

\*p<.05 \*\*p<.001 \*\*\*p<.000

〈표6-39〉 자활 사업 참여자의 현재생활과 아동·청소년 시절과 비교했을 때의 변화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전체	남성	여성
현재생활과 아동·청소년 시절과의 변화 비교	큰 변화가 없음	19.4	15.2	21.5
	지금에 예전보다 나아졌음	20.9	30.4	16.1
	지금에 예전보다 더 나빠졌음	59.7	54.3	62.4
	계	100.0	100.0	100.0
	(수)	(137)	(44)	(93)
		X <sup>2</sup> =3.977 p=.137		

\*p<.05 \*\*p<.001 \*\*\*p<.000

### 3. 기타복지제도 수급 실태

#### 가. 기타복지제도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및 기타 일반계층의 기타복지제도 가운데 과거 수급 경험과 현재 수급 여부를 통해 수급 탈출 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할 기타복지제도를 살펴본 것이다.

아래 표는 과거에 지원을 받았던 집단을 분모로 하여 현재 지원받지 못하는 집단의 비율을 수급계층과 차상위계층 및 기타일반계층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으로 감면, 주거, 영유아, 아동/청소년, 취업 및 기타 영역에서 차상위계층 및 기타 일반계층이 되면 국민기초보장제도에 의해 수급자격이 박탈되고 동시에 모든 급여의 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중단은 자녀를 양육하거나 의료비가 부담이 큰 자활참여자로 하여금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을 기피하고 자활사업에 머무르거나, 수급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 다시 수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출 부담이 큰 항목을 중심으로 지원마련이 필요하다.

〈표 6-40〉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타복지제도 수급 중단자 비율

		(단위 : %)	
		수급계층	차상위계층 및 기타일반계층
감면	주민세비과세	3.6	100.0
	TV 수신료 감면	5.9	92.4
	전기요금할인	1.4	92.3
	집전화기본요금/이동전화료 감면	1.2	60.0
	인터넷 요금 감면	1.9	23.3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1.5	77.8
주거	집수리사업(도배, 장판 교체)	20.8	57.2
영유아	보육료 지원	33.5	60.0
아동/청소년	신입생 교복 지원	7.3	100.0
취업	근로장려금지원	16.6	100.0
	무료직업훈련	52.4	100.0
	공공근로	59.7	66.7
기타	한시생계비 지원	60	83.2

주 : 각 셀의 수치는 현재 비수급자/(현재 비수급자 + 현재 수급자) \*100

〈표 6-41〉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타복지제도 수급경험

(단위 : %)

		전체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기타일반계층
주민세 비과세	과거수급현재수급	46.9	59.6	-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11.5	2.2	45.8
	과거비수급현재수급	5.3	5.6	4.2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36.3	32.6	50.0
	계	100.0	100.0	100.0
	(수)	(114)	(90)	(84)
			X2=47.162 p=.000	
TV 수신료 감면	과거수급현재수급	44.1	54.5	4.3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13.5	3.4	52.2
	과거비수급현재수급	7.2	8.0	4.3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35.1	34.1	39.1
	계	100.0	100.0	100.0
	(수)	(114)	(90)	(24)
			X2=42.956 p=.000	
전기 요금 할인	과거수급현재수급	60.9	76.7	4.0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11.3	1.1	48.0
	과거비수급현재수급	5.2	3.3	12.0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22.6	18.9	36.0
	계	100.0	100.0	100.0
	(수)	(117)	(91)	(26)
			X2=60.375 p=.000	
집전화 기본요금 / 이동전화료 감면	과거수급현재수급	68.7	83.3	16.0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5.2	-	24.0
	과거비수급현재수급	7.8	5.6	16.0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18.3	11.1	44.0
	계	100.0	100.0	100.0
	(수)	(119)	(93)	(26)
			X2=48.829 p=.000	
인터넷 요금 감면	과거수급현재수급	41.8	51.7	4.3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5.5	1.1	21.7
	과거비수급현재수급	6.4	6.9	4.3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46.4	40.2	69.6
	계	100.0	100.0	100.0
	(수)	(112)	(88)	(24)
			X2=27.464 p=.000	

\*p<.05 \*\*p<.001 \*\*\*p<.000

〈표 6-42〉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타복지제도 수급경험

		(단위 : %)		
		전체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기타일만계층
음식물 쓰레기 / 종량제 봉투 지원	과거수급현재수급	60.3	74.7	8.0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6.9	1.1	28.0
	과거비수급현재수급	4.3	4.4	4.0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28.4	19.8	60.0
	계	100.0	100.0	100.0
	(수)	(117)	(92)	(25)
		$X^2=46.208$ $p=.000$		
집수리 사업(도배, 장판교체)	과거수급현재수급	20.0	22.1	12.5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8.2	5.8	16.7
	과거비수급현재수급	5.5	7.0	-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66.4	65.1	70.8
	계	100.0	100.0	100.0
	(수)	(111)	(87)	(24)
		$X^2=5.331$ $p=.149$		
보육료 지원	과거수급현재수급	11.0	11.9	8.0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7.3	6.0	12.0
	과거비수급현재수급	4.6	6.0	-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77.1	76.2	80.0
	계	100.0	100.0	100.0
	(수)	(110)	(86)	(24)
		$X^2=2.751$ $p=.432$		
신입생 교복 지원	과거수급현재수급	22.7	29.1	-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2.7	2.3	4.2
	과거비수급현재수급	5.5	7.0	-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69.1	61.6	95.8
	계	100.0	100.0	100.0
	(수)	(111)	(87)	(24)
		$X^2=12.062$ $p=.007$		
근로 장려금 지원	과거수급현재수급	14.2	18.1	-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4.7	3.6	8.7
	과거비수급현재수급	8.5	9.6	4.3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72.6	68.7	87.0
	계	100.0	100.0	100.0
	(수)	(110)	(86)	(24)
		$X^2=6.565$ $p=.087$		

\* $p<.05$  \*\* $p<.001$  \*\*\* $p<.000$

〈표 6-43〉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타복지제도 수급경험

		(단위 : %)		
		전체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기타일반계층
무료직업훈련	과거수급현재수급	9.3	11.9	-
	과거수급현재비수급	11.1	13.1	4.2
	과거비수급현재수급	4.6	6.0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75.0	69.0	95.8
	계	100.0	100.0	100.0
	(수)	(110)	(86)	(24)
		$X^2=7.411$ $p=.060$		
공공근로	과거수급현재수급	4.6	4.8	4.0
	과거수급현재비수급	7.3	7.1	8.0
	과거비수급현재수급	6.4	8.3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81.7	79.8	88.0
	계	100.0	100.0	100.0
	(수)	(109)	(85)	(24)
		$X^2=2.287$ $p=.515$		
한시생계비 지원	과거수급현재수급	2.8	2.4	4.2
	과거수급현재비수급	7.5	3.6	20.8
	과거비수급현재수급	6.5	8.4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83.2	95.5	75.0
	계	100.0	100.0	100.0
	(수)	(109)	(85)	(24)
		$X^2=9.860$ $p=.020$		

\*p<.05 \*\*p<.001 \*\*\*p<.000

### 나. 가구의 주요 복지 욕구

자활참여 대상자의 가구 내 미취학 자녀, 간병 가구의 수는 거의 없으며 있더라도 그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요보호 가구원인 취학자녀가 있는 가구는 남성 52.0%, 여성 64.7%로 나타났다. 평균 자녀수는 남성 가구 1.46명, 여성 가구 1.96명이며, 해당 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취업을 중단한 경험은 취학 자녀의 경우 남성이 66.7%로 여성 26.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보호 자녀 때문에 취업을 중단한 경험은 자활참여자의 가구 형태가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비율이 높아 가족적 지지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일반 노동시장과 자활사업 중의 아동의 보호 때문에 그나마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자활사업을 선택하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적인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족적 지지망이 취약한 가정의 노동 계

층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요보호 가족원에 대한 지원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표 6-44〉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의 요보호 가구원 - 미취학 자녀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미취학자녀 유무	있다	7.3	12.2	5.2
	없다	92.7	87.8	94.8
	계	100.0	100.0	100.0
	(수)	(158)	(47)	(111)
		$X^2=2.555$ $p=.110$		
평균 가구원수	평균	1.19	1.0	1.38
해당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취업을 중단한 경험 유무	있다	20.0	-	40.0
	없다	80.0	100.0	60.0
	계	100.0	100.0	100.0
	(수)	(9)	(4)	(5)
		$X^2=2.500$ $p=.114$		

\*p<.05 \*\*p<.001 \*\*\*p<.000

〈표 6-45〉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의 요보호 가구원 - 취학 자녀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취학자녀 유무	있다	60.8	52.0	64.7
	없다	39.2	48.0	35.3
	계	100.0	100.0	100.0
	(수)	(158)	(47)	(111)
		$X^2=2.349$ $p=.125$		
가구원수	평균	1.83	1.46	1.96
해당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취업을 중단한 경험 유무	있다	26.9	18.2	30.4
	없다	73.1	81.8	69.6
	계	100.0	100.0	100.0
	(수)	(78)	(19)	(59)
		$X^2=1.190$ $p=.275$		

\*p<.05 \*\*p<.001 \*\*\*p<.000

〈표 6-46〉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의 요보호 가구원 - 간병 가구원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간병가구원 유무	있다	3.0	4.4	2.2
	없다	97.0	95.6	97.8
	계	100.0	100.0	100.0
	(수)	(130)	(42)	(88)
	X <sup>2</sup> =.515    p=.473			
가구원수	평균	1.0	1.10	1.40
해당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취업을 중단한 경험 유무	있다	-	-	-
	없다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수)	(3)	(1)	(2)

\*p<.05 \*\*p<.001 \*\*\*p<.000

#### 4. 기초보장제도 수급가구 수급 실태

다음 표에서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수급실태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급여 형태와 기타 복지지원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를 살펴보았다.

가장 중요한 급여로는 생계급여를 제외하고 남성은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들었으며, 여성은 교육급여와 의료급여를 들었다.

기타 복지 지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주거, 교육, 취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참여 대상자의 지출규모에서 교육비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들 자녀의 교육 기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거, 교육, 의료, 직업 영역의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표 6-47〉 수급가구의 수급 실태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급여 (다중응답)	생계급여		32.8	31.2	33.4
	의료급여		20.2	23.8	18.8
	교육급여		23.5	21.6	24.4
	주거급여		8.6	8.7	8.5
	자활급여		14.9	14.7	15.0
	계		100.0	100.0	100.0
	(수)		(110)	(31)	(79)
기타 복지지원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원제도 (다중응답)	감면	주민세 비과세	0.4	-	0.6
		전기요금 할인	1.1	-	1.6
		집전화 기본요금/이동전화료 감면	3.1	2.9	3.2
	주거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13.2	9.6	14.9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0.5	-	0.7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1.2	3.7	-
		전세자금 융자	9.7	9.3	9.9
		집수리 사업(도배, 장판 교체)	2.5	2.9	2.3
	융자	생업자금 융자	4.9	8.7	3.1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융자금	5.1	8.6	3.3
	융자	보육료 지원	1.9	5.6	-
		아이돌봄 서비스	2.4	3.9	1.6
	아동/청소년	인터넷 수능방송	1.2	-	1.9
		장학금 지원	20.1	16.8	21.8
		학자금 대출	6.0	2.3	7.9
	노인복지	방과후 공부방	1.6	1.4	1.7
		기초 노령연금	0.9	1.4	0.7
		노인건강검진	0.5	-	0.7
	취업	근로장려금 지원	2.9	3.8	2.5
		무료직업훈련	2.3	2.3	2.3
		자활사업	10.4	6.7	12.2
		사회적 일자리	3.5	1.4	4.6
	장애인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신청	0.4	-	0.6
기타	한시 생계비 지원	4.1	8.7	1.8	
계		100.0	100.0	100.0	
(수)		(86)	(27)	(59)	

\*p<.05 \*\*p<.001 \*\*\*p<.000

## 제 8절 탈수급에 대한 인식과 실태 : 탈수급 전망과 장애요인

### 1. 수급자의 탈수급 전망과 탈수급 경험이 있는 차상위계층 및 기타일반계층 경험 비교

본 절에서는 안정된 일자리, 주거부담, 자녀교육, 보육 및 간병, 의료비, 부채 영역에 대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계층(일반수급, 조건부수급, 특례수급)에게 탈수급 한다면 <향후 수급 탈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및 일반계층 가운데 과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은 경험이 있는 탈수급가구에 <현재 탈수급 이후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살펴보았다. ① 매우 불만족, ⑤ 매우 만족으로 어려움의 정도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반적으로 안정된 일자리, 주거부담, 자녀교육, 보육이나 간병, 의료비, 부채문제에 대해서 현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및 기타 일반계층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상위계층 및 기타 일반계층의 경우 수급 탈출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막대한 부채 부담감을 안고 있으며, 수급 자격 박탈과 함께 그동안 받던 모든 지원이 중지되면서 수급 탈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48〉 수급계층과 차상위계층 및 기타일반계층의 탈수급 전망에 대한 인식 비교

(단위 : 평균 점수)

	전체	수급	차상위계층 및 기타일반계층
안정된 일자리	2.86	2.84	2.97
주거부담	2.72	2.80	2.28
자녀교육	2.76	2.72	2.96
보육이나 간병	2.72	2.64	3.15
의료비	2.48	2.47	2.56
부채문제	2.49	2.50	2.42

\*p<.05 \*\*p<.001 \*\*\*p<.000

〈표 6-49〉 수급계층과 차상위계층 및 기타일반계층의 탈수급 전망에 대한 인식

(단위 : %)

		전체	수급	차상위계층 및 기타일반계층
안정된 일자리	① 매우 그렇지 않다	18.1	18.7	15.0
	② 그렇지 않다	29.1	29.9	25.0
	③ 보통이다	12.6	10.3	25.0
	④ 그렇다	30.7	31.8	25.0
	⑤ 매우그렇다	9.4	9.3	10.0
	계	100.0	100.0	100.0
	(수)	(122)	(17)	(122)
	$X^2=3.424$ p=.490			
주거부담	① 매우 그렇지 않다	18.4	16.0	31.6
	② 그렇지 않다	31.2	30.2	36.8
	③ 보통이다	16.8	17.9	10.5
	④ 그렇다	27.2	29.2	15.8
	⑤ 매우그렇다	6.4	6.6	5.3
	계	100.0	100.0	100.0
	(수)	(121)	(104)	(17)
	$X^2=3.986$ p=.408			
자녀교육	① 매우 그렇지 않다	20.8	19.8	26.3
	② 그렇지 않다	25.6	27.4	15.8
	③ 보통이다	19.2	20.8	10.5
	④ 그렇다	24.8	24.5	26.3
	⑤ 매우그렇다	9.6	7.5	21.1
	계	100.0	100.0	100.0
	(수)	(119)	(104)	(15)
	$X^2=5.130$ p=.274			
보육이나 간병	① 매우 그렇지 않다	17.6	18.7	11.1
	② 그렇지 않다	30.4	31.8	22.2
	③ 보통이다	21.6	22.4	16.7
	④ 그렇다	24.8	21.5	44.4
	⑤ 매우그렇다	5.6	5.6	5.6
	계	100.0	100.0	100.0
	(수)	(118)	(104)	(14)
	$X^2=4.475$ p=.346			

\*p<.05 \*\*p<.001 \*\*\*p<.000

〈표 6-50〉 수급계층과 차상위계층 및 기타일반계층의 탈수급 전망에 대한 인식

(단위 : %)

		전체	수급	차상위계층 및 기타일반계층
의료비	① 매우 그렇지 않다	24.6	22.4	36.8
	② 그렇지 않다	33.3	36.4	15.8
	③ 보통이다	17.5	17.8	15.8
	④ 그렇다	19.0	17.8	26.3
	⑤ 매우그렇다	5.6	5.6	5.3
	계	100.0	100.0	100.0
	(수)	(121)	(104)	(17)
		$X^2=4.088$ p=.394		
부채문제	① 매우 그렇지 않다	29.8	27.6	42.1
	② 그렇지 않다	28.2	30.5	15.8
	③ 보통이다	16.1	16.2	15.8
	④ 그렇다	16.9	17.1	15.8
	⑤ 매우그렇다	8.9	8.6	10.5
	계	100.0	100.0	100.0
	(수)	(120)	(104)	(16)
		$X^2=2.449$ p=.654		

\*p<.05 \*\*p<.001 \*\*\*p<.000

## 2. (일반·조건부·특례)수급 가구의 탈수급 및 재수급 실태

현재 수급 가구 가운데 탈수급 경험이 있는 가구의 탈수급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난 경험은 조건부 수급 가구(5.3%)에서만 나타났으며, 탈수급한 사유로는 재산 증가(50.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향후 탈수급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물어본 결과 원하는 경우가 특례수급(66.7%), 조건부 수급(54.8%), 일반수급(50.0%)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탈수급 예상 기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벗어나기 힘들 것(26.8%)으로 예상하여 수급 탈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급탈출을 하더라도 계속 지원받고 싶어 하는 지원제도로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특례의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급여는 계속 지원받지만, 주거급여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주거비에 대한 지출 부담을 고려하여 주거비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표 6-51〉 일반수급, 조건부 수급, 특례수급 대상자의 탈수급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전체	일반수급	조건부 수급	특례수급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에서 벗어난 경험	있다	4.9	-	5.3	-
	없다	95.1	100.0	94.7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수)	(96)	(3)	(89)	(4)
			X <sup>2</sup> =447	p=.800	
탈수급 사유	소득이 늘어서	16.7	-	16.7	-
	재산이 늘어서	50.0	-	50.0	-
	지출이 줄어서	-	-	-	-
	행정상의 이유로	16.7	-	16.7	-
	기타	16.7	-	16.7	-
	계	100.0	-	100.0	-
	(수)	(7)	(0)	(7)	(0)
탈수급 희망 여부	원한다	55.0	50.0	54.8	66.7
	원하지 않는다	45.0	50.0	45.2	33.3
	계	100.0	100.0	100.0	100.0
	(수)	(108)	(3)	(101)	(4)
			X <sup>2</sup> =.207	p=.902	
탈수급 예상 기간	6개월 이내	1.8	-	1.9	-
	6개월 후 ~ 1년 이내	1.8	-	1.9	-
	1년후 ~ 3년 이내	5.4	-	4.9	20.0
	3년 후 ~ 5년 이내	9.8	-	10.7	-
	5년 후	17.9	-	15.5	40.0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26.8	50.0	26.2	20.0
	기타	36.6	50.0	38.8	20.0
	계	100.0	100.0	100.0	100.0
	(수)	(107)	(3)	(100)	(4)
			X <sup>2</sup> =10.457	p=.576	
생계비 지원을 제외하고 수급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 받고 싶은 지원 (다중응답)	의료비 지원	36.6	50.0	35.8	42.5
	교육비 지원	30.9	29.4	31.0	28.5
	주거비 지원	20.3	-	21.2	18.3
	자활관련 지원	12.0	20.6	11.7	10.8
	기타	0.3	-	0.3	-
	계	100.0	100.0	100.0	100.0
	(수)	(107)	(3)	(100)	(4)

\*p<.05 \*\*p<.001 \*\*\*p<.000

### 3. 탈수급 경험이 있는 차상위계층 및 기타일반계층 가구의 특성

차상위계층 및 기타일반계층의 수급기간 중의 경험을 물어본 결과 수급 탈출의 사유에 대해 소득 증가(41.9%)와 행정상의 이유(22.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변화 사유로는 가구주의 소득 증가(57.6%)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급 후 생계비를 제외하고 가장 아쉬운 제도로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급 후에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차상위 계층의 경우 다시 수급자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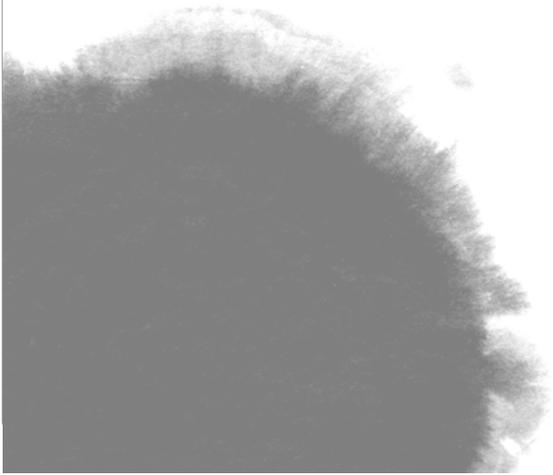
〈표 6-52〉 차상위계층 및 기타 일반계층의 탈수급 특성

(단위 : %)			
	구분	%	(수)
탈수급에서 벗어난 사유	소득이 늘어서	41.9	7
	재산이 늘어서	8.8	1
	지출이 줄어서	4.8	1
	행정상의 이유로	22.2	3
	기타	22.3	3
	계	100.0	15
소득 변화 사유	가구주의 소득이 늘어서	57.6	4
	배우자의 소득이 늘어서	21.1	1
	가구원의 소득이 늘어서	21.3	2
	친인척이나 주변사람들이 도와줘서	-	-
	기타	-	-
	계	100.0	7
탈수급 후 생계비 제외하고 가장 아쉬운 지원 (다중응답)	의료비 지원	37.1	9
	교육비 지원	22.8	6
	주거비 지원	15.3	4
	자활관련 지원	12.0	3
	기타	5.1	1
	없음	7.5	2
	계	100.0	25

\*p<.05 \*\*p<.001 \*\*\*p<.000



## 기초보장수급자의 탈수급 의지 - 취업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자 비교를 중심으로 -





# 제7장 기초보장수급자의 탈수급 의지

-취업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자 비교를 중심으로-

## 제1 문제제기

기초보장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공공부조제도이다. 그 중에서도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과 자립지원은 과거 생활보장제도와 갖는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이다. 이 점에서 기초보장제도는 도입직후부터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이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달리 표현하면,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기능 중 어느 하나라도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 비판에 직면해 왔던 것이다.

여기서는 기초보장제도의 특징 중 하나인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탈수급 촉진과 관련해서 수급자들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것은 앞서의 분석들이 수급자와 비수급자, 수급자와 탈수급자에 초점을 맞추어 어떠한 요인이 이러한 차이점을 발생시키는지에 주목했다면, 여기서는 취업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이들이 스스로의 탈수급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취업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 가능성을 평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재정을 투입하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복지 의존성이 매우 높다는 비판이 적절한가 하는 점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업수급자에 비해 지속적으로 탈수급을 위한 노력을 교육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연성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능력이나 건강상태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개연성이 있을 수 있

지만, 의식측면에서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앞 부분의 기초현황 분석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수급기간의 장기화가 탈수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탈수급의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앞서의 분석결과가 갖는 객관성에 비추어 볼 때, 실증분석을 통한 논증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탈수급의식에 대한 분석에서 수급기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면, 그 자체로서도 매우 중요한 발견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제2절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중 취업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의 탈수급을 희망하는가>를 묻는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의 차이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앞의 기초분석에서 제시한 결과표에 잘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초보장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근로능력자들이 탈수급을 희망한다는 집단보다 희망하지 않는다는 집단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선정체계와 운영방식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것은 이 제도가 수급자의 경제적 자립의지를 촉진하기보다 안주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결과가 지적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즉, 기초보장제도의 급여체계나 기타 복지제도의 미비가 수급자로 하여금 이 제도 안에 머물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이 제도가 실제로 경제적 자립을 통해 탈수급을 할 수 없는 집단에게 탈수급을 강요하는 체계가 아닌가하는 문제제기 또한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탈수급을 희망하는가에 대한 답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첫째, 수급자의 지위이다. 취업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자는 기초보장제도의 관리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집중화된 관리를 받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대별할 수 있다. 취업수급자는 상대적으로 관리에 어려

움이 있고, 자활사업 참여자는 근로활동 자체에 대해 자치단체의 전담공무원이나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집중적인 관리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차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지역의 경제여건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구분하는 이유는 기초보장수급자의 탈수급 전망은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어떠한 취업여건이 조성되어 있는가 하는 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농어촌지역이라면 상대적으로 중고령 수급자 비중이 높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도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셋째, 각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것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세 가지 변수를 투입한 이유는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경제적 자립의 의지가 높다는 일부의 분석결과를 논증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연령이 높을수록 탈수급의지가 낮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탈수급의 개연성이 클 수 있다는 점 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넷째, 조사대상의 총수급기간이 이들의 탈수급 전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수급기간이 긴 집단일수록 상대적으로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개연성이 있으며, 이것이 탈수급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모형에 따라 탈수급 희망여부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실시했던 두 개의 독립된 조사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머지(merge)하였다. 그것은 취업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조사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재구성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분석대상을 가구주이자 수급자로 통제하였다. 이는 분석대상 중 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일반계층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통제하는 경우,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게 된다. 총 표본은 906개 이며, 취업수급자 759개, 자활사업 참여자 107 케이스(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탈수급 희망자의 비율은 자활사업 참여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7-1〉 분석대상 표본의 구성

	빈도	수급지위		
		전체	취업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
탈수급 비희망	689	76.05	80.23	44.86
탈수급 희망	217	23.95	19.77	55.14
합계	906	100.0	100.0 (759)	100.0 (107)

### 제3절 기초현황

본 분석에서 활용하는 조사대상은 앞서 기초현황에서의 분석대상과 동일하지 않다. 그것은 가구주이자 수급집단으로 통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본 분석에 활용된 대상집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는 전체적으로 취업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 전망을 분석하는 데이터로서는 큰 무리가 없다. 아래 표는 취업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자 중 가구주로 통제된 뒤, 각 집단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제시한 것이다.

먼저 지역적으로 보면, 취업수급자는 농어촌지역보다 대도시지역에, 자활사업 참여자는 중소도시에 큰 비중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특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2인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자활사업 참여자는 1인 가구의 비중이 17.4%로 나타나고 있다. 점유형태는 자활사업 참여자는 자가비율과 전세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취업수급자는 월세거주자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7-2〉 분석대상집단의 지역 및 가구특성

			취업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
지역특성	지역구분	대도시	47.5	41.6
		중소도시	29.4	38.6
		농어촌	23.1	19.9
가구특성	가구원수	1명	4.3	20.4
		2명	16.1	17.4
		3명	38.2	33.5
		4명	27.5	21.6
		5명이상	13.9	7.2
	점유형태	자가	4.8	13.9
		전세	9.5	21.1
		보증금월세	64.6	32.5
		월세	7.3	13.3
		무상거주	13.9	19.3
전체			100.0	100.0

개인특성을 보면,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고 연령도 고령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혼인상태는 자활사업 참여자 중 이혼, 별거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며, 장애은 취업수급자가 다소 높은 반면, 건강상태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3〉 분석대상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취업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
개인특성	성별	남자	37.0	29.5
		여자	63.0	70.5
	연령	20대이하	3.6	
		30대	21.5	14.5
		40대	49.0	50.6
		50대	21.6	26.5
		60대이상	4.3	8.4
	교육수준	저학력자	41.4	39.4
		고졸자	48.8	47.5
		고학력자	9.9	13.1
	혼인상태	유배우	37.8	24.7
		별거	3.0	12.7
		사별	14.4	15.8
		이혼	39.5	39.9
미혼		5.3	7.0	
건강상태	장애유무	비장애인	85.8	97.6
		장애인	14.2	2.4
	건강상태	매우 양 좋음	9.3	16.3
		건강하지 않음	23.6	22.9
		보통	19.4	27.7
		건강한 편	31.3	30.1
		아주 건강	16.5	3.0
	증질환정도	비해당	62.9	66.3
		3개월미만	3.3	7.8
		3~6개월	3.5	3.6
6개월이상		30.4	22.3	
전체			100.0	100.0

분석대상집단의 취업 관련 특성은 취업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자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것은 자활사업 참여자는 참여전 미취업자로 자활사업을 통해 자활근로사업이나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사상지위에서 주목해야 할 집단은 취업수급자이며, 그 중 일용직과 임시직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업종은 취업수급자는 도소매숙박업과 개인서비스업에, 자활사업 참여자는 개인서비스업과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흥미로

은 점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술자격 보유율이 취업수급자보다 높다는 것이다.

〈표 7-4〉 분석대상집단의 취업 관련 특성

			취업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
취업특성	종사상지위	상용직	14.5	3.6
		임시직	24.7	1.8
		일용직	36.2	1.2
		자활사업	5.6	88.0
		고용주	-	1.8
		자영업자	12.1	3.6
		실업자	6.9	-
	업종	농림어업	4.0	6.8
		제조업	12.1	12.4
		전기건설업	4.8	5.0
		도소매숙박업	34.0	11.2
		운수통신업	10.2	2.5
		사업서비스업	8.8	5.6
		공공행정	0.9	
		교육서비스업	3.2	7.5
		보건복지업	6.0	23.6
	기타개인서비스	15.8	25.5	
	자격기술	공인면허자격증	10.1	15.4
		자격증 없는 기능자	1.9	12.9
		운전면허증	35.9	47.8
		없음	52.1	23.9
		전체		100.0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최종 분석모형에서는 빠져 있지만, 취업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자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최초의 경험이다. 아래 표는 최초 취업연령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취업수급자의 경우, 30대 이후에 최초로 취업경험을 가진 집단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이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해 전업주부에서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했을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최초 취업했던 경우, 해당 일자리의 종사상지위이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최초 일자리의 종사상지위가 상용직이었던

집단이 5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초기에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다 건강상의 이유나 가구여건 또는 연령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퇴장 또는 탈락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자활사업이 최초의 일자리였던 집단의 비율 또한 19.7%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표 7-5〉 분석대상집단의 생애최초 취업에 관한 특성

			취업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	
최초 취업특성	최초취업연령	19세이하	14.9	25.2	
		20대	34.6	40.8	
		30대	30.0	12.9	
		40대	16.4	11.6	
		50대이상	4.2	9.5	
	최초취업의 종사상지위	상용직	28.2	51.2	
		임시직	32.2	9.4	
		일용직	25.4	7.9	
		자활사업	3.0	19.7	
		고용주	0.1	0.8	
		자영업자	10.4	9.4	
		무급종사자	0.6	1.6	
	전체			100.0	100.0
	최초취업연령		평균	30.4	28.6
최초취업연령2		평균	31.4	29.6	

#### 제4절 탈수급의지 결정요인 분석결과

본 분석에서는 탈수급 희망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탈수급을 희망하는 경우를 1로 코딩하였다. 여기서 탈수급을 희망한다는 답변을 탈수급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설명변수로는 아래와 같은 변수를 투입하였다. 이는 위에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탈수급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주요 영역별 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수급지위(취업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자), 지역구분, 가구여건, 성별, 연령, 교육수준, 기초보장수급기간이다. 취업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자보다 평균 총수급기간이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나지만, 탈수급 희망여부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6〉 분석에 투입된 범주형 변수의 코딩과 분포(1)

		명	%
수급지위	취업수급자	799	88.7
	자활사업참여자	102	11.3
지역	대도시	356	39.5
	중소도시	402	44.6
	농어촌	143	15.9
미취학자녀 유무	있음	99	11.0
	없음	802	89.0
성별	남자	345	38.3
	여자	556	61.7
연령	30대 이하	202	22.4
	40대	459	50.9
	50대 이상	240	26.6
교육수준	저학력자	364	40.4
	고졸자	427	47.4
	고학력자	110	12.2
전체		901	100.0
기초보장 수급기간 (월)	취업수급자	55.45	
	자활사업 참여자	47.24	
기초보장 수급기간 (월)	탈수급비희망자	54.58	
	탈수급희망자	54.39	

위와 같은 분석모형에 따라 수급자가 탈수급을 희망한다고 답하는 경우, 지역특성, 개인특성, 복지제도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지역구분과 관련해서는 대도시지역에 비해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탈수급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거주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탈수급에 대한 전망이 대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주로 취업관련 노동시장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가구특성 중 미취학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그것이 탈수급 희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해서 한편으로는 지출부담과 취업애로 등을 통해 탈수급 전망을 어둡게 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양육을 통해 탈수급의 의지를 강하게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분석결과는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탈수급을 희망한다고 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면 가구주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을 확률이 높아 탈수급에 긍정적으로 답할 개연성이 크고, 자녀를 양육함에 따라 경제적 자립의지가 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개인특성과 관련해서는 성별특성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탈수급을 희망한다고 답할 확률이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그것은 50대에 비해, 30대와 40대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탈수급을 희망한다고 답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서의 분석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중고령층은 자신의 세대에서 탈수급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낮은 집단이 탈수급을 희망한다고 답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낮은 유의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분석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인적자본을 개발하고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이 분석에 주목하고 있는 두 가지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수급지위와 관련해서 취업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자가 탈수급 의지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면, 자활사업 참여자에 비해 취업수급자의 탈수급 의지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비해 취업을 희망한다고 답할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Wald 통계량을 보면, 분석모형에서 수급지위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 현재의 수급지위가 탈수급 의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어 총수급기간이 탈

수급 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기초분석에서 제시하였던 것처럼, 수급기간이 장기화될수록 탈수급 개연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실증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7〉 탈수급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탈수급 희망(=1)			
		B	S.E.	Wald	Exp(B)
지역특성	지역구분(대도시 기준)			10.110	
	중소도시	-0.575	0.189** *	9.272	0.563
	농어촌	-0.045	0.251	0.032	0.956
가구특성	미취학자녀(없음)	0.453	0.268*	2.861	1.574
	성별(여성 기준)	0.084	0.180	0.216	1.087
개인특성	연령구분(50대 이상 기준)			3.410	
	30대 이하	0.408	0.276*	2.192	1.504
	40대	0.415	0.229*	3.283	1.514
	교육수준(고학력자 기준)			11.201	
	저학력자	-0.795	0.282** *	7.915	0.452
	고졸자	-0.199	0.254	0.618	0.819
복지제도	수급지위(자활참여자)	-1.802	0.232** *	60.346	0.165
	총 기초보장 수급기간	0.042	0.030	1.988	1.043
상수		0.398	0.418	0.907	1.488
Nagelkerke R square		0.244			
Initial -2LL		992.376			
-2LL		899.557			
Cases		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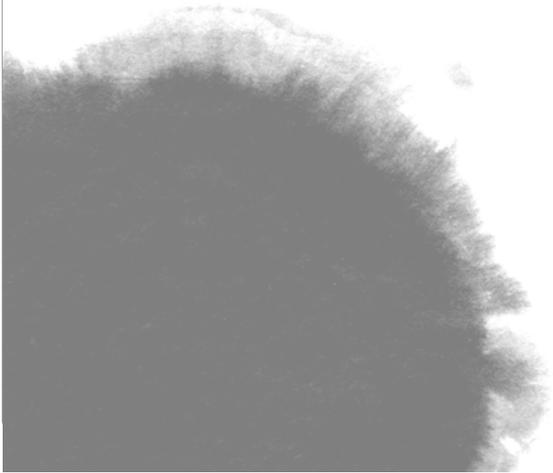
주: \*\*\* P < 0.01, \*\* P < 0.05, \* P < 0.1

## 제5절 시사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탈수급 의지에 대한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급자의 탈수급 의지에는 지역의 경제환경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수급자의 취업여건이 양호한지가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의미한다. 특히 대도시지역과 비교할 때, 중소도시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취업여건이 취약하며, 해당지역 거주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탈수급에 대한 의지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탈수급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유무를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은 취학자녀 유무에 관한 변수를 투입하는 경우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해당 가구 가구주의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탈수급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주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젊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탈수급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자활사업 참여자에 비해 취업수급자의 탈수급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취업수급자의 노동시장 경험 및 개인특성이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수급지위가 탈수급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개연성 또한 시사하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보장제도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 의지가 취약하다는 기존의 통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며, 적어도 취업수급자와 비교하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취업촉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며, 사업참여 과정이 탈수급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탈수급 의지가 취업수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탈수급 의지에는 가족관계와 가구주의 연령 및 교육수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의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부양자녀가 있고, 상대적으로 젊으며 교육수준이 고졸이상인 집단을 대상으로 표적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탈수급 촉진방안





# 제8장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탈수급 촉진방안

## 제1 절 문제제기

앞의 분석결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실태가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하며 탈수급 전망과 관련해서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수급자의 가구여건 및 개인특성이 탈수급의 개연성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과 낮은 교육수준, 그리고 취약한 건강상태가 이들의 탈수급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러한 특성은 현재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탈수급 정책이 각 수급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로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탈수급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현재 기초보장제도가 전반적으로 건강성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앞의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를 위해 별도로 실시했던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와의 면접조사결과를 참조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로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면접조사는 2009년 6월과 7월 중에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약 10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물론 면접조사는 일종의 탐색적 조사라는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 자체로 일반화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탐색적 조사와 연구는 기존의 실증분석에 앞서 문제의식을 명료화하며, 복합적인 문제를 보다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

해 준다는 강점을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방안은 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통해 유의미한 장애요인 및 유인요인으로 포착된 사항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그것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1) 대상집단의 선별 문제, 2) 지역단위 고용전략 수립 문제, 3) 복지제도의 근로유인 및 탈수급 대책 강화가 그것이다.

## 제2절 탈수급 지원정책의 주요 대상

### 1. 면접조사결과에 따른 수급자의 특성

본 장에서 활용한 방문면접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은 대상자에 대한 조사결과임을 밝혀둔다. 면접시간은 평균 1~2시간 가량 소요되었다.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는 기존의 조사결과를 참조하였다.<sup>7)</sup>

〈표 8-1〉 면접조사대상의 특성

	성별	연령	가구형태	취업상태
<면접대상 1>	여	32세	모자가구	일용직
<면접대상 2>	남	54세	일반가구	임시직
<면접대상 3>	여	48세	일반가구(여성가장)	임시직
<면접대상 4>	남	42세	단독가구	일용직
<면접대상 5>	여	55세	모자가구	자활사업 참여자
<면접대상 6>	여	38세	모자가구	자활사업 참여자

면접조사는 크게 다섯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 생애이력, 2) 현재 취업상태, 3) 가구소득 및 지출상태, 4) 복지수급 실태, 5) 복지제도로부터의 탈수급 전망 등이 그것이다.

7) 노대명, <자립촉진지원제도 도입 관련 현장조사: 출장결과 보고>, 2009년 7월 6일 (미간행 자료) 참조

첫째, 생애이력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집단으로 구분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집단구분이 매우 포괄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빈곤층 수급자의 특성은 아래 두 가지 경우로 대별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집단은 유년기부터 빈곤을 경험했고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어 왔던 경우이며, 다른 한 집단은 부채나 이혼 그리고 건강악화 등이 원인이 되어 갑작스럽게 빈곤상태에 빠졌으며, 이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들 집단의 공통점은 가족적 연계망이 취약하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원 가족과의 관계 및 새롭게 형성한 가족관계의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고, 이것이 빈곤상태에서 마땅히 지원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수급 빈곤층의 경우,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역사회의 지지망이 개입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현재 취업상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수급자가 일용직이나 임시직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일부 면담자는 상용직이라고 응답하였지만, 사실상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었다. 이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매우 낮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면접대상자의 취업이력과 관련해서 특징적인 현상은 가구여건으로 인해 뒤늦게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우와 건강상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였지만 생계문제로 인해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참고로 위의 면접조사대상 중 <면접대상 1>은 이혼 후 최초로 취업하게 된 경우이며, 별도의 취업경험이 없어 식당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면접대상 2>는 자영업을 운영하다 파산한 경우로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어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물경비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이다. 상대적으로 사업 관련 경험은 풍부하였지만, 건강상태가 취약하다는 점이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면접대상 3>은 남편의 질환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친구의 상점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이다. 결혼 전 취업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무정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른 취업기회를 찾기에 어려움 겪고 있었다. <면접대상 4>는 본래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였으며, 수년전 가족해체를 경험한 경

우이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지속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이것이 빈곤상태에 처하게 된 주요한 요인이었다. <면접대상 5>와 <면접대상 6> 중 전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근로자로 농촌에서 일용직으로 일해 왔던 경험을 갖고 있으나 경제적 자립에 이를 수 있는 근로활동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후자는 이혼으로 인해 자활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이것이 최초의 취업경험인 경우였다.

셋째, 가구소득 및 지출상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경우가 지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는 가구소득이 낮은 것 자체가 문제인 경우이다. 이는 주로 일용직이나 임시직에 종사하는 단독가구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이 소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가구소득이 낮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지출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이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 소득이 낮은 상황에서도 필수재적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위의 면접대상 중 <면접대상 3>과 <면접대상 6>은 자녀가 중학교와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어 높은 교육비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면접 과정에서 이들은 낮은 소득으로 자녀의 학원비 등을 감당하기 힘들며, 교육비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생계비 지출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다. 이는 생애주기별로 일정기간 특정 지출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교육비 외에도 주거비와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것은 가구소득에서 월세부담이 과도하며, 월세보증금을 인상해야 하는 경우 각별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해당 가구가 작더라도 자가를 보유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수급가구들은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호소하지 않았다. 이는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개별 가구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며 자 부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료비 부담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중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발견되지 않았다.

넷째, 복지수급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의견이 개진되었다. 면접대상 중 상당수는 현재 정부의 지원이 과거에 비해 크게 확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것은 정부의 지원금액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 집단 중 상당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자활사업을 통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응답자 중 상당수는 근로능력 판정 및 소득과약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먼저 근로능력 판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침으로는 빠져 나갈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진단서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근로능력판정 및 그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판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로는 근로능력이 취약한 집단이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면접대상 5>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어 소득과약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중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소득과약이 잘 안되는 부문에서 활동하기를 선호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수급자들이 사회보험을 보장하는 일자리보다 다소 임금이 낮더라도 소득과약을 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섯째, 복지제도로부터의 탈수급 전망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매우 신중한 답변을 하였다. 그것은 대체로 탈수급 전망이 희박하다는 것이었고, 현재의 제도 운영체계 하에서는 탈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 또한 있었다. 이러한 판단은 자신의 건강상태나 취업능력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탈수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단서를 붙여 우회적으로 질문을 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만일 탈수급 후에도 장학금 지원이나 주거비 지원 그리고 의료비 지원 등이 지속되는 경우, 탈수급을 선택하겠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근로빈곤층 대부분이 생애주기별로 과도하게 소요되는 지출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기초보장제도에서 탈출할 의지가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미취학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여성가장의 탈수급 전망이다. 여성가장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었다. 물론 보육서비스 등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들

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면접대상 1>과 <면접대상 6>은 미취학자녀 및 취학자녀의 보육문제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호소한 경우이다. 이들은 식당 등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 야간과 주말에 자녀가 방치되는 문제점을 호소하였고, 고용주의 태도에 따라 근무 중 자녀와의 통화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가사와 노동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젊은 나이에도 손목관절이나 디스크 등에 따른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여성가장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의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면접대상 6>의 답변은 자활사업이 빈곤층 여성가장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기도 하였다. 그것은 임금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안정된 노동시간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는 향후 우리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여성가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 2. 실증분석결과에 따른 대상자 특성

위의 분석결과는 우리사회의 빈곤층 일반,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와 탈수급자,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각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어떠한 집단이 어떠한 문제로 인해 탈수급을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어떠한 요인이 어떠한 집단의 탈수급에 부정적인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살펴볼 것이다.

먼저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령, 가구규모와 점유형태, 기타복지제도 수급여부 등이 탈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연령측면에서 보면, 50대를 기준으로 그보다 많을 수록 탈수급 확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건강상태는 탈수급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취업확률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탈수급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취업이 탈수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2) 이어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그

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탈수급 확률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과도한 부채로 시달리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3) 끝으로 기타복지제도 중 탈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료비 지원과 임대주택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초보장제도로부터 탈출함에 있어 필수재적 지출요인에 대한 지원이 수반되는 경우, 탈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수급 빈곤층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은 탈수급의 가능성이 높은 가구주 연령대가 50대 이하라는 점, 그리고 이들의 건강상태는 취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 끝으로 저임금 상황에서 필요한 중요한 지출을 보전하는 기타 복지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구주 특성이 대상집단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면, 나머지 두 가지 요인은 정책적으로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즉, 과도한 부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부채조정 프로그램>과 생애주기별 지출을 보전해주는 <육구별 급여제도>의 강화가 그것이다.

이어 기초보장제도 취업수급자와 탈수급자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1) 탈수급을 유도하는 정책은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특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가구주의 연령이 경제활동상태 및 가구여건 측면에서 일정한 공통의 조건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주로 40대와 50대의 가구주 가구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가구주 본인의 취업을 통한 것일 뿐 아니라, 해당 가구 자녀의 취업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이다. 2) 그리고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의 탈수급은 가구 내에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탈수급 확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30대의 경우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40대와 50대의 경우는 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탈수급확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탈수급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보육 및 교육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보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취업촉진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또한 수급

기간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단기수급집단의 경우 일자리요인에 의해서 탈수급이 결정되는 반면, 장기수급집단의 경우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가구주 개인특성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기간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신규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탈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탈수급과 관련해서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점 중 하나는 탈수급자의 경제적 생활수준이나 취업상태가 기존 취업수급자에 비해 현저하게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탈수급 정책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유용한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탈수급을 강조하더라도 실제 탈수급자의 생활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높은 가계지출부담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의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촉진하는 전략(Push)과 외부에서 이들을 끌어당기는 유인전략(Pull)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단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지원뿐 아니라, 학자금지원, 임대주택지원, 의료비 지원, 부채조정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기초보장제도 취업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가 탈수급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모든 객관적인 실태 분석 이상으로 강력한 의미를 가진 것이다. 왜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들은 탈수급을 희망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1) 자녀의 존재는 실제 탈수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탈수급 의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2) 가구주의 연령대와 교육수준 모두 탈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구주의 연령대는 다른 요인에 비해 탈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령집단이 건강상태와 교육수준 측면에서 차별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3) 취업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자에 비해 탈수급 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통념과 비교할 때, 매우 흥미로운 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의지가 더 강하고 이들의 탈수급 의지가 강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상대적으로 취업능력이 낮은

자활사업 참여자에게서 탈수급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책적으로 두 가지 시사점을 안겨준다. 하나는 수급 빈곤층 대부분이 당대에서 취업을 통해 탈수급 할 전망이 희박하다는 현실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과 프로그램이 탈수급 의지를 유지 또는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 3.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Guide Line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의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대상집단을 정교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일관되게 지적되었던 사항이다. 그리고 이는 다양한 실증분석과정에서 동일한 결과로 입증되었다. 물론 그들은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 즉 근로능력빈곤층(workable poor)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구분은 보다 하위집단으로 정교화 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초보장제도 중 탈수급을 정책목표로 설정해야 할 대상집단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집단을 구분하는 전제조건은 이들의 건강상태가 양호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건강상태가 취업과 탈수급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노대명 외, 2009). 하지만 본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던 사항 중 하나는 근로능력 판정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취업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자에 사실상의 근로능력 미약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근로능력 판정체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둘째, 일할 수 있는 가구여건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30대의 가구주에게서 탈수급과 취업률 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이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은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으로 인해 취업활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먼저 정책방향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거나, 가족친화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소득보장을 강화하거나, 또는 이러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향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방향 설정을 전제로 별도의 패키지화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근로능력 판정이 정확하다면, 탈수급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는 연령기준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근로연령집단은 18세~64세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연령기준은 취업을 통한 탈수급, 탈빈곤을 촉진하기에는 현실적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이는 탈수급 지원정책의 핵심대상을 20대~50대로 한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sup>8)</sup> 참고로 본 연구를 통해서도 탈수급 확률이 높은 집단은 40대와 50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세 가지 기준은 탈수급 지원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소득보장, 취업지원, 근로유인, 사회서비스 공급 등을 패키지화함에 있어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이는 보편적 성격을 갖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구별 욕구에 따른 지원프로그램 공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제3절 탈수급 지원정책의 개편방안

#### 1. 탈수급 지원정책의 전제조건

현재 우리사회에는 각종 복지정책과 취업지원정책이 탈수급을 정책목표로 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 간 연계체계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1) 탈수급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환경, 2) 대상자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양한 부처가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탈수급 정책이 이처럼 종합적으로 구성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탈수급을 촉진하는 정책은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초보장제도를 확대하거나 제재를 강

8)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초기, 조건부과의 연령은 60세였지만, 연금급여 수급연령과 관련시켜 연령기준이 64세로 변경되었다.

화하는 것을 넘어 공공부조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기초보장제도 수급이 탈수급에 미치는 영향과 기타 공공부조제도 수급이 탈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한 제도로의 집중화나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빈곤층의 기초보장제도 진입을 억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다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지 않고 기초보장제도로의 진입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존 수급자의 탈수급을 저해하고, 빈곤층의 복지진입 욕구를 강화시키며, 그로부터 배제된 사각지대 집단의 박탈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수급을 촉진하는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그것은 기초보장제도로부터 밀어내는 정책 외에도, 다른 복지제도를 통해 생활상의 박탈을 최소화하는 욕구별 지원과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도 이러한 지원을 통해 생애주기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근로유인대책, 그리고 미취업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정교한 취업지원대책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의 탈수급을 촉진하는 방안은 다른 많은 정책의 일부라는 점을 전제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둘째,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탈수급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현재 각종 복지제도는 지원대상의 범주설정에 있어 다분히 초기 발전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지원대상을 분화시킴으로써 보다 전문화된 지원을 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지원대상의 세분화와 그에 따른 정책 패키지 구성이 향후 핵심적인 연구과제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문제 중 탈수급 확률이 높은 지원대상의 특성에 대해서는 앞서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어떻게 특성화된 지원을 하는가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별가구의 탈수급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경우,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탈수급 확률이 상이하며, 주력 집단은 20대, 40대, 50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현 경제사회여건 및 제도적 환경 하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들 중 20대 가구주의 높은 탈수급 확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대 가구주의 경우, 원가구에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양호한 취업상태(상용직 근로자로의 취업)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탈수급에 이르게 될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젊고 인적자본개발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20대 연령집단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탈수급 경로를 촉진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20대 연령집단의 교육훈련과 취업 및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타 복지지원제도의 결합 없이 경제적 자립에 이를 개연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 20대 연령집단에 비해, 40대와 50대 연령집단의 경우에는 단기간의 취업중심전략을 채택하기보다 근로능력과 취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여기에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욕구별 지출을 보전해 주는 전략을 덧붙이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0대와 50대 연령집단의 경우, 취업능력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지원을 통해 취업에 이를 수 있는 집단과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고용기회 제공이 필요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건강이나 과도한 부채 등 장애요인이 해소되면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집단과 생애최초로 취업하였거나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집단 모두에 대해 완전한 의미의 탈수급을 전제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탈수급 지원정책이 일정 정도 <근로소득과 복지급여의 결합>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들의 고용단절과 저소득 문제를 반드시 현금급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빈곤층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제도에 대한 욕구를 질문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현금급여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물급여의 경우, 해당 가구가 자신의 욕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금급여는 항상 부정수급의 위험성이 크다는 단점을 갖는다. 그리고 근로빈곤층이 실제로 필요한 급여는 생계비에 해당되는 급여라기보다 기타 필수재적 성격을 갖는 욕구별 급여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크게 <교육, 의료, 주거>와 관련된 욕구를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지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정교한 현물급여 확대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절충적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현물급여라 하더라도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0대 가구주와 관련해서는 대표적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여성 한부모가구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집단은 미취학 또는 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가정 양립>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가족관계의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기존 복지제도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현 기초보장제도는 미취학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미취업 여성가장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참여를 유예하고 있지만, 실제 가정 내 보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수 여성가장이 경제활동참여를 해야 한다. 200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면,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수급권자를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 또는 조건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대별 1인에 한하고, 양육할 수 있는 다른 세대원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등) 등에서 양육 또는 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이는 보육료지원을 포함하는 것이다. 문제는 미취학자녀를 보육하더라도 가정 내에서만 보육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여성가장들은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거나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그에 따라 여성가장들은 가사와 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요구를 받게 된다. 물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여성가장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자활사업 등에 참여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타협을 하는 것이다. 이는 정규 근로시간을 지키는 일자리에 참여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일반노동시장보다 저임금을 감수하는 선택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자녀의 연령이 낮고 교육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수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만일 추가적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선택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반노동시장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높은 임금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것이 여성가구주 가구의 부채가 남성 가구주 가구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이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애주기별 지출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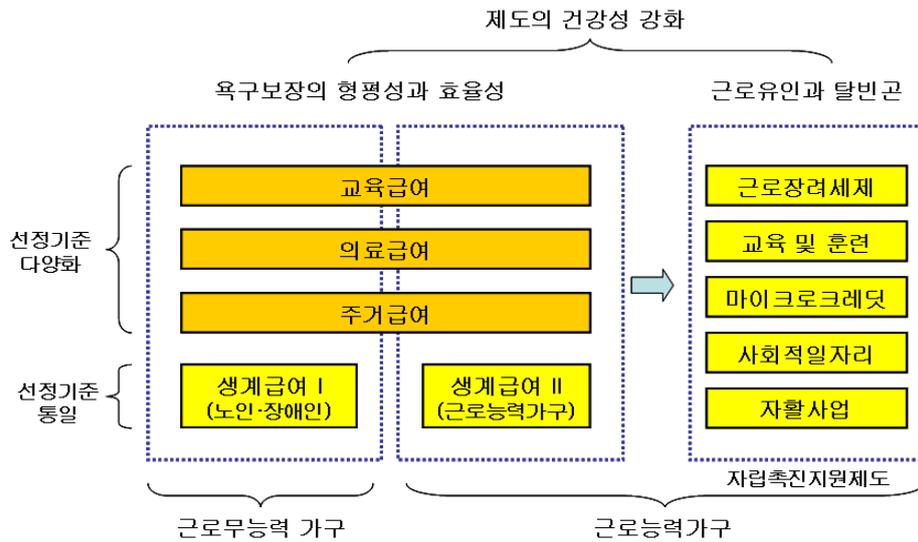
## 2. 탈수급 지원정책의 개편방향

위와 같이 탈수급 확률이 높은 집단을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서는 제도개편과 같은 큰 규모의 개편작업과 지참개편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의 개편작업을 포함하여 제안하기로 하겠다.

첫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초보장제도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비단 자활사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취업수급자 전반에도 적용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기초보장제도의 현물급여와 기타 복지지원의 수급기준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명확해 졌음을 의미한다. 현재 모든 지원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의 지원방식은 크게 두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현재의 지원방식이 지원총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수급자의 근로소득 증가를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별 수급자의 노동공급과 직업능력 손실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어 각종 복지제도가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중심으로 지원되는 상황에서 기초보장제도에서 벗어나는 선택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프로그램은 저소득층 판별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 복지제도 수급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일반 취업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현물급여 수급을 가능케 하는 선정기준 개편이 필요하다. 이번 면담에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질문하였던 것은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에 대한 지원이 전제된다면 자활사업 참여 및 노동시장 진입을 하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근로능력자와 미약자 대부분에게서 그렇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답변은 탈수급자의 경우, 기초보장제도 수급당시 받았던 기타 복지지원 중 상당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달리 표현하면, 이들이 계속 제도에 머물게 함으로써 노동공급을 위축시키기보다 이들의 노동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비용편익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점은 향후 연구를 통해 제기해야 할 핵심과제이다.

[그림 8-1] 자립촉진지원제도의 기본구조



자료: 노대명 외(2009), <자립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둘째, 각종 저소득층 지원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약을 비롯한 대상선정 및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사항 중 하나는 취업수급자 및 탈수급자가 원하는 복지지원 중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주거지원과 교육비지원(장학금지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프로그램 모두 기초보장제도나 한부모가구 지원제도 등의 수급자가 아닌 빈곤층을 선정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비판 중 하나인 All or Nothing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의 탈수급을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능력은 현재로서는 정체상태에 놓여 있지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되는 경우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기초보장제도 수급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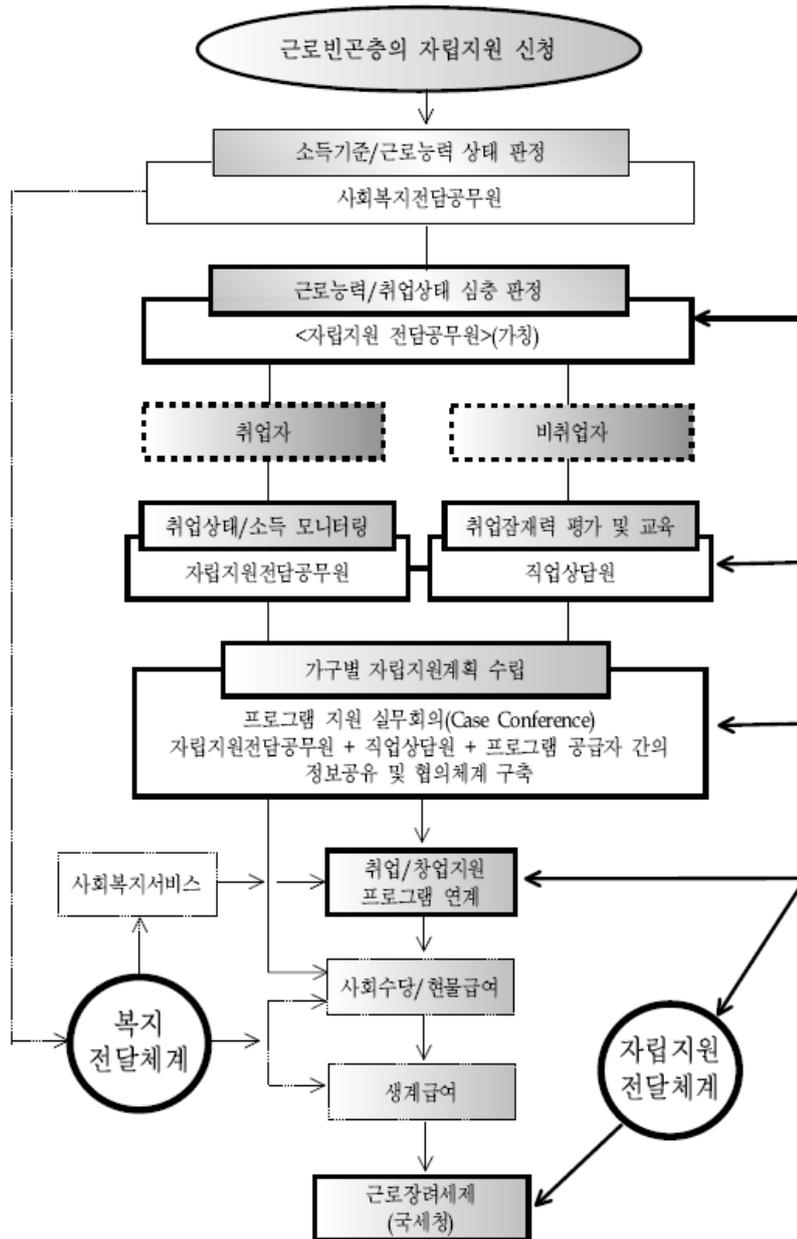
아닌 저소득층의 판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타 복지지원으로부터의 배제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지적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에너지지원과 교육비(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은 기초보장 수급자에게 우선 지원되고 있으며, 이들 해당부처는 지원대상을 선별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는 각종 복지지원의 선정기준을 다원화시킴으로써 기타 지원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부터 중단되었지만 장학금 지원제도는 40대 연령집단이 매우 강력한 욕구를 표현했던 것 중 하나였다. 그 이유는 대학학자금의 경우, 연간 1000만원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빈곤층이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지출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보장제도 등 지원을 약속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sup>9)</sup>

셋째, 탈수급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 및 유형화를 위한 사례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수차례 강조했던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초기사례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것은 지금까지 강조되어 왔던 소득과약 등의 관리체계를 넘어서, 개별가구와 개인의 취업능력과 탈수급 잠재력을 포착할 수 있는 사례관리체계를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사례관리체계는 근로능력집단에 대해 좀 더 집중화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근로능력판정에 치우쳐왔던 관리체계를 취업능력과 중장기 탈수급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개편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먼저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능력빈곤층(수급자) 중심의 사례관리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의 판정업무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맡겨진 상황에서 위에 언급한 사례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능력판정과 직업능력판정 중 후자의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사례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인력과의 업무협력을 강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거나, 민간단체를 활용한

9) 실제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의 면담과정에서 일부 수급자는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해 기초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하였으며, 기타 경제활동을 자제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유지하기를 희망하였다. 이는 근로빈곤층 대부분이 특정한 지출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기존 복지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말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능력판정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앞서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 대상 복지전달체계를 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립촉진지원제도 도입방안연구>에서 제안했던 전달체계 구성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그림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관리하는 전달체계와 자립지원전담공무원(가칭)이 관리하는 전달체계를 구분하고, 그것이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새로운 전달체계는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자와 비취업자를 구분하여 <소득·근로능력·취업상태>를 파악하고, 각 집단별로 지원방식을 차별화하고 있다. 특히 비취업자에게는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소득 증가를 유인하고, 사회수당과 현물급여, 생계급여,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2] 자립촉진지원제도의 전달체계 및 업무의 흐름도



자료: 노대명 외(2009), <자립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넷째, 참여자 특성에 따른 대상집단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개별 수급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통의 욕구를 가진 주요한 수급집단을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화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탈수급 지원정책은 40대 연령집단, 30대 여성가장, 20대 청년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패키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집단에게 제공할 지원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아래 표에서 각 셀의 번호는 정책 패키지에서 우선순위를 갖는 순서를 의미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원의 우선순위란 평균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20대 청년층에 대해서는 인적자본개발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며, 30대 여성가장에 대해서는 소득보장과 보육지원 등이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며, 40대 연령집단에 대해서는 취업지원과 지출보전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것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50대 이상 집단에 대해서는 취업지원과 지출보전 그리고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표 8-2〉 수급자 특성에 따른 지원정책의 패키지화 방안

가구주 연령	소득보장	취업지원	근로유인	기타 복지지원
20대 청년층		①	②	
30대 여성가장	①	③		②
40대		①	③	②
50대	③	①		②

다섯째, 미취업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미취업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상당수는 미취업 수급자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미취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자활사

업이 갖고 있는 효용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던 바와 같이, 자활사업은 탈수급율은 높지 않지만 탈수급 의지를 제고하는 강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현 자활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탈수급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1) 탈수급이 가능한 대상자 선정, 2) 탈수급을 유인할 수 있는 복지제도의 정비, 3)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자활사업이 유지하고 있는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라는 강점을 유지하며, 각종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어 취업잠재력이 높은 집단에 대해서는 재정일자리사업에 투입하기보다 적극적인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재정일자리사업의 과도한 확대가 이들의 취업의지를 약화시킬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현재 노동부의 취업패키지와 복지부의 성과시범사업의 경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활사업이 취업애로계층에게 갖는 효용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자활사업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더라도 <일·가정 양립>이 필요한 여성가장에게는 중요한 출구가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보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내에서 이들 여성가장이 진입할 수 있는 정규일자리를 확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일자리 확대가 단기간에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일자리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sup>10)</sup>

### 3. 탈수급 지원을 위한 기타 정책

위에 언급한 탈수급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이 가장 중추적인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다루고 있다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던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타 지원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탈수급 경로와 관련해서 <취업능력 및 취업여건

10)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일반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으로 동일 노동을 하는 여성가장과의 형평성 문제이다. 이어 <여가와 노동>에 대한 선택과 관련해서 복지지원 수급에 따른 노동기피 문제의 해결방안이다. 끝으로 여성가장이 직업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개발 전략이다.

→ 경제활동참여(근로소득 증가) → 지출요인 해소>이 하나의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서비스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취업여건과 취업능력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유인체계를 강화하며, 생애주기별 지출을 보전하는 기타복지제도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외에도 자산형성 또는 부채증가라는 또 다른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물질적, 심리적으로 빈곤층의 탈수급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자가를 소유한 수급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탈수급 확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자산이 부채에 의해 잠식되어 있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인상을 따라잡기도 벅찬 빈곤층에게서 탈수급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금융채무불이행은 직간접으로 수급자의 경제활동참여를 제약함으로써 재정일자리로 진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크게 두 가지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전반적으로 자산형성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단순히 빈곤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만을 강구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것은 투입하는 재정규모에 비해 정책 효과가 미미할 개연성이 있으며,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각종 복지정책이 빈곤층의 자산형성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저축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제제도 등을 확대하며, 주거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를 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둘째, 빈곤층의 부채문제나 금융채무불이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는 금융채무불이행이 수급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또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회생 프로그램이나 개인파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인파산 등의 절차를 밟은 집단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수년간 추진되어

왔던 각종 금융소외대책이 일정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및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했던 미소금융재단의 경우는 금융소외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의지를 보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재원측면에서는 재정이 투입된 것이 아니라 민간의 기부금과 휴면예금이 중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민간자원을 활용한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개입정책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비영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던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 양적으로 대폭 확대하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이는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정책의 경우, 전달체계의 지속성과 안정성 그리고 책임성의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제4절 소결

앞서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의 탈수급을 촉진하는 정책은 다양한 지원정책과 전달체계 개편을 전제로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탈수급 지원정책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만큼 많은 장애물을 돌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탈수급을 촉진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던 사회적 여론과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 또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울러 탈수급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를 복지제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이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의 수급기간을 제한한다면, 단기적으로 수급자 규모를 크게 감축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으로 정채된 복지제도를 정비하는 성과이상을 기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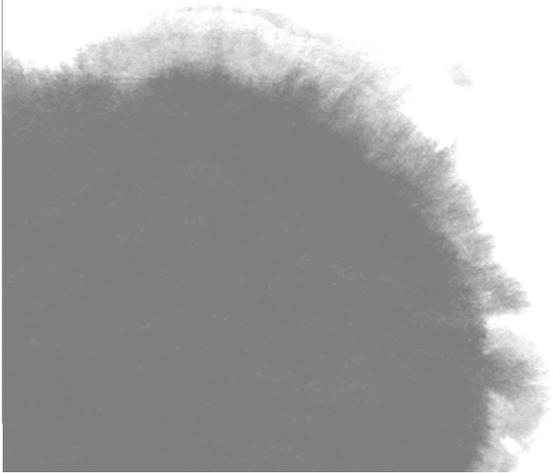
힘들다. 적절한 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토대구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반복빈곤의 문제와 복지제도로의 재유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탈수급 지원정책은 복지제도로부터 밀어내는 기능(Push)과 외부에서 이를 유인하는 기능(Pull)이 효과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09

K  
I  
H  
S  
A

결론 및 정책제안





# 제9장 결론 및 정책제안

## 제1절 연구결과의 함의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매우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각 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내용은 향후 정책수립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비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탈수급자의 비교, 취업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자의 비교 등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이 탈수급과 관련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은 분석내용의 신뢰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

여기서는 위의 각 장에서 시도하고 있는 분석결과가 함축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각 장의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중복을 피해 핵심적인 내용만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기초보장제도로의 진입과정에서 급격한 몰락을 경험하는 집단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수급가구 가구주의 취업상태를 보면, 상당수의 집단이 수급을 전후하여 최초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거에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 바가 없는 가구의 빈곤화 문제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중산층의 붕괴, 특히 중하층의 급작스러운 빈곤화가 이들 가구에게 심리적으로 더 큰 충격을 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빈곤예방 정책을 강화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 진입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최근 30대 인구집단의 빈곤화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그 밖에도 다양한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가령 가구규모나 가구형태, 가구주의 혼인상태, 사적이전소득, 점유형태 등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됨에 따라, 30대 인구집단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확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제도의 개편 또는 내실화 논의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미취학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가장의 진입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적인 요인이 갖는 의미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앞서 행정전산망 자료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탈수급자 중 상당수는 실질적인 소득증가보다 가구규모변화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에 따라 탈수급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의 탈수급이 반드시 실질적인 탈빈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실태조사결과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다. 많은 탈수급자는 자신이 소득증가와 무관하게 탈수급하게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될 때, 탈수급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1) 탈수급가구는 가구 내 취업자 수가 수급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만, 그와 동시에 평균 가구원 수 또한 작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소득증가요인과 지출절감요인이 결합됨으로써 탈수급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탈수급가구의 경우, 2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녀성장을 통한 탈빈곤이 일정 정도 유효한 가설임을 말해주고 있다. 3) 탈수급은 당연히 근로소득의 증가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이 경우에도 자녀가 어떠한 일자리로 진입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임금근로자로의 진입이 탈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비임금근로자, 즉 자영업자로의 진입은 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탈수급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수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4) 탈수급자가 주로 어떠한 업종과 직종을 통해 탈수급에 이르는가 하는 점을 보면, 사무직 종사자와 사업서비스업 등으로의 진입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제조업부문으로 진입에 비해, 사업서비스업으로의 진입이 취업을 통한 탈빈곤의 주요한 경로임을 의미한다.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업으로 진입과 다른 경로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보육이나 간병 등 주요한 가계 지출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지출증가 외에도 가구원의 취업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해당 서비스의 지원확대가 전제되어야 탈수급이 용이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섯째,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수급자들이 탈수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이들의 능력과 여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말해준다. 그것은 자신들의 탈수급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탈수급 하겠다는 의지 자체도 낮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노동시장에서 적정한 소득을 벌 수 없으리라는 생각, 가계의 높은 지출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나는 경우 감당해야 할 각종 지출 부담 증가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수급자 대부분은 자신이 이 제도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으며, 이를 위한 여건도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결과는 탈수급가구에 대한 후속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탈수급가구는 수급가구와 비교할 때, 중요한 특성차이를 보이며, 근로소득과 자산 등에 있어서도 비교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가구 중 상당수가 금융채무불이행과 같은 금융소외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이들 가구는 근로활동을 통해 부지런히 부채를 상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경우,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경제활동에 차질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본 연구에서는 탈수급가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남에 따라 상실하게 된 각종 급여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복지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추가적인 가구지출 또는 결핍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급가구의 탈수급을 촉진하는 문제가 탈수급가구에 대한 각종 지출보전 및 금융채무지원 등의 조치를 수반해

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 제2절 주요 정책제안

앞서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탈수급 지원정책은 다양한 정책들이 결합된 종합적인 형태를 띠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전제에 따라 몇 가지 주요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탈수급 정책이 매우 다양한 경로와 지원방식을 전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수급집단의 연령과 가구여건, 취업상태 등에 따라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설정하는 대상집단별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으로 정책적 접근성과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상집단별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20대 청년층의 <인적자본개발 중심 탈수급전략>, 30대 여성가장에 대한 <일·가정양립전략>, 40대 연령집단에 대한 <취업촉진 및 지출보전전략>, 50대이상 연령집단에 대한 <취업지원 및 소득보장 연계전략>이 그것이다.

둘째,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의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타복지제도를 확대하고, <교육, 주거, 의료급여>를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를 위해 수행했던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었던 사항이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기초보장제도 개편 작업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지금도 빈곤정책의 사각지대가 큰 상황에서 기초보장제도 개편이 급여수준을 축소하거나 지원대상을 감축할 개연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보장제도 개편의 전제가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제도의 건강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타 복지제도의 수급대상 선정을 용이하게 하는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것은 이미 각 부처가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제도가 저소득층 판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기존

복지제도 수급자에게 자원을 집중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저소득층 판별서비스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기초보장제도에서 탈출하더라도 기타 복지제도를 통해 필요한 지출을 보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와 취업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근로능력빈곤층의 자립을 촉진하는 별도의 제도를 통해, 근로능력자의 욕구와 특성에 따른 패키지 지원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원제도를 <자립촉진지원제도>(가칭)로 명명하였다. 이처럼 종합적인 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이유는 지난 수년간 근로빈곤층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단편적인 취업지원, 소득보전, 서비스 제공 등의 형태를 띠고 있어, 각 지원 정책이 단절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실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행정자료를 토대로 탈수급율을 추정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이는 연구성과 측면에서는 일정 수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정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행정데이터의 결측치를 보정한 <Model\_2>를 기준으로 할 때, 2008년 탈수급율이 2.74%~4.5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둘러싼 효과성 논쟁에서 매우 중요한 논거를 제공해주는 것이며, 향후 제도개편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도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1. 국내연구

- 구인회(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Vol.48, 2002년 3월 pp.82-112
- 구인회(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Vol.57, No.2 2005, pp.351-374
- 금재호·김승택(2001), “빈곤의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 : 패널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2001년 9월 10일
- 노대명·최승아(2004), 『한국 근로빈곤층의 소득·고용실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이현주·강신욱(2007), 『빈곤의 동태적 특성 연구: 2003~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 심상용(2006),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1982~2004)”, 『한국사회복지학』, vol.58, No.4 2006, pp.313-339
- 이병희·정재호(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구조 분석: 반복빈곤 및 고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경제 전환기위 노동자 상태 및 노사관계』 학술대회 발표문, 2001년 12월 8일
- 정진호·황덕순·이병희·최강식(200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최옥금(2005),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이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2005년 제5권 제1호, pp.1~42
- 홍경준(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24권

2004년

황덕순(2001), “경제위기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가을호

황덕순·이병희(2009), “일자리 위기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orking Poor의 현황과 정책과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 2. 국외연구

Mary Jo Bane and David Ellwood(1986), "Slipping Into and Out of Poverty: The Dynamics of Spells," 『Journal of Human Resources』, 21, 1-23, Winter 1986.

B. Bradbury, S. P. Jenkins and J. Micklewright(eds) (2001), 『The Dynamics of Child Poverty in Industrialised Countr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reg J. Duncan and Willard Rodgers(1991), "Has Children's Poverty Become More Persist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538-50, August 1991.

Greg J. Duncan, B. Gustafsson, Richard Hauser, G. Schmaus, Hans Messinger, Ruud Muffels, Brian Nolan, and Jean-Claude Ray(1993), "Poverty Dynamics in Eight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6, 215-34, 1993.

Ross Finnie and Authur Sweetman(2003), "Poverty Dynamics: Empirical Evidence for Canada,"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36(2), 291-325, 2003.

P. Gottschalk and T. Smeeding(1997), “Cross-national comparisons of earnings and income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5: 633.87.

Martha S. Hill and Stephen P. Jenkins(2001), "Poverty among British Children: Chronic or Transitory?" in Bruce Bradbury, Stephen P. Jenkins, and John Micklewright (eds), The Dynamics of Child Poverty in Industrialised Count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01

John Iceland(1997), "The Dynamics of Poverty Spells and Issues of Left-Censoring", Population Studies Center Research Report Series No.97-378, January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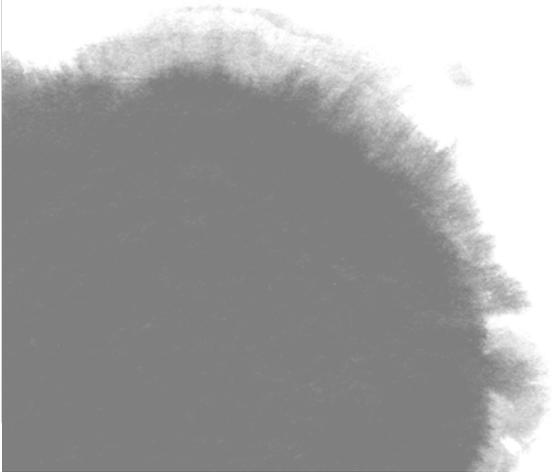
Stephen P. Jenkins and John Rigg(2001), "The Dynamics of Poverty in Britain,"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Research Report No. 157, Corporate Document Services, Leeds, December 2001.

Stephen P. Jenkins and Christian Schluter(2003), "Why Are Child Poverty Rates

- Higher in Britain than in Germany?" 『Journal of Human Resources』 , 38(2), 441-65, 2003.
- Peter Kemp, Jonathan Bradshaw, Paul Dornan, Naomi Finch and Emese Mayhew(2004), 『Routes out of Poverty』 , Joseph Rowntree Foundations, University of York
- Richard Layte and Christopher T. Whelan(2003), "Moving In and Out of Poverty: The Impact of Welfare Regimes on Poverty Dynamics in the EU", 『European Societies』 , 5(2) 2003: 167-191
- OECD (2001), "When Money is Tight: Poverty Dynamics in OECD Countries," Chapter 2 in OECD Employment Outlook 2001, OECD, Paris, 2001.
- Lars Osberg(2002), "Trends in Poverty: The UK in International Perspective-How Rates Mislead and Intensity Matters," Working Papers of the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paper 2002-10, University of Essex, 2002.
- Howard Oxley, Thai-Thanh Dang, and Pablo Antol(2000), "Poverty Dynamics in Six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Studies, 30, 7-52, 2000.
- Joan R. Rodgers and John L. Rodgers(1993), "Chronic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 28(1), 25-54, 1993.
- Timothy M. Smeeding and Andrzej Grodner(2000), "Changing Income Inequality in OECD Countries: Updated Results from the Luxembourg Income Study (LIS)," in R. Hauser and I. Becker (eds), 『The Personal Distribution of Income i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 Springer-Verlag, Berlin, 205-24, 2000.
- Ann Huff, Stevens(1999), "Climbing Out of Poverty, Falling Back In: Measuring the Persistence of Poverty Over Multiple Spells," 『Journal of Human Resources』 , 34(3), 557-88, 1999.
- Robert G. Valletta(2006), "The Ins and Outs of Poverty in Advanced Economies: Government Policy and Poverty Dynamics in Canada, Germany,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 Series 52, Number 2, June 2006
- Robert Walker & Karl Ashworth ed.(1994), 『Poverty Dynamics: Issues and Examples』 , Ashgate.



부 록





# 부록

## 부록1]

### 기초보장 수급여부에 따른 기타복지제도 수급 여부(4장 참고)

#### 〈부표 1〉 감면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	탈수급
주민세 비과세	과거수급현재수급	56.9	68.1	11.9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17.0	6.0	61.4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26.0	25.8	26.7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380.907$ $p=.000$	
TV수신료 감면	과거수급현재수급	52.9	62.7	13.4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15.3	4.4	58.9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31.9	32.9	27.7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389.841$ $p=.000$	
전기요금 할인	과거수급현재수급	66.3	79.2	14.4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16.6	4.8	64.2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17.1	16.0	21.4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447.095$ $p=.000$	

\* $p<.05$     \*\* $p<.001$     \*\*\* $p<.000$

〈부표 1〉 감면(계속)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	탈수급
집전화 기본요금 /이동전화료 감면	과거수급현재수급	61.5	73.1	15.3
	과거수급현재비수급	15.2	4.4	58.1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23.3	22.5	26.6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398.400$ p=.000		
인터넷 요금 감면	과거수급현재수급	45.0	54.7	5.9
	과거수급현재비수급	13.1	4.7	47.0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41.9	40.6	47.0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308.683$ p=.000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과거수급현재수급	62.9	74.7	15.3
	과거수급현재비수급	18.4	6.4	66.8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18.7	18.9	17.8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411.437$ p=.000		

\*p<.05 \*\*p<.001 \*\*\*p<.000

〈부표 2〉 주거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	탈수급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과거수급현재수급	33.0	35.6	22.8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5.4	2.1	18.8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61.6	62.3	58.4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91.800$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과거수급현재수급	1.2	1.4	.5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8	.9	.5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98.0	97.8	99.0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1.319$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과거수급현재수급	4.0	4.4	2.5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6	.6	.5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95.4	95.0	97.0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1.640$
전세자금 융자	과거수급현재수급	3.8	4.2	2.5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1.0	.7	2.0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95.2	95.1	95.5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3.764$
집수리 사업(도배, 장판교체)	과거수급현재수급	4.7	5.2	3.0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1.9	1.8	2.0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93.4	93.0	95.0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1.739$

\*p<.05 \*\*p<.001 \*\*\*p<.000

〈부표 3〉 용자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	탈수급
생업자금용자	과거수급현재수급	1.2	1.5	-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9	1.0	.5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97.9	97.5	99.5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3.482$ $p=.175$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용자금	과거수급현재수급	.9	1.1	-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4	.2	1.0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98.7	98.6	99.0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4.512$ $p=.105$		

\*p<.05 \*\*p<.001 \*\*\*p<.000

〈부표 4〉 영유아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	탈수급
보육료 지원	과거수급현재수급	5.8	7.0	1.0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9.2	8.9	10.4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85.0	84.1	88.6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10.892$ $p=.004$		
아이돌봄 서비스	과거수급현재수급	.6	.7	-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6	.4	1.5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98.8	98.9	98.5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4.903$ $p=.086$		
이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바우처	과거수급현재수급	1.2	1.5	-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8	1.0	-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98.0	97.5	100.0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5.069$ $p=.079$		

\* $p<.05$  \*\* $p<.001$  \*\*\* $p<.000$

〈부표 5〉 아동/청소년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	탈수급
인터넷 수능방송	과거수급현재수급	2.4	3.0	-
	과거수급현재비수급	1.0	0.7	2.0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96.7	96.3	98.0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8.546$
장학금 신청	과거수급현재수급	19.5	24.0	1.5
	과거수급현재비수급	11.4	7.5	27.2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69.1	68.5	71.3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97.251$
학자금 대출	과거수급현재수급	5.9	6.9	2.0
	과거수급현재비수급	7.0	5.4	13.3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87.1	87.7	84.7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21.310$
신입생 교복지원	과거수급현재수급	6.2	7.6	.5
	과거수급현재비수급	4.5	3.1	10.4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89.3	89.3	89.1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32.391$
방과후 공부방	과거수급현재수급	13.5	16.1	3.0
	과거수급현재비수급	5.7	4.8	9.4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80.8	79.1	87.6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28.179$

\* $p<.05$  \*\* $p<.001$  \*\*\* $p<.000$

〈부표 6〉 노인복지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	탈수급
기초노령연금	과거수급현재수급	3.3	3.2	3.5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9	.6	2.0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95.9	96.2	94.6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3.491$ p=.175		
장기용양보험 서비스	과거수급현재수급	.3	.4	-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3	.2	.5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99.4	99.5	99.5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1.085$ p=.581		
양로 및 요양시설 입소	과거수급현재수급	.1	.1	-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2	.2	-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99.7	99.6	100.0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748$ p=.688		
노인돌봄서비스 바우처	과거수급현재수급	.5	.4	1.0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2	.2	-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99.3	99.4	99.0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1.766$ p=.413		
노인건강검진	과거수급현재수급	1.5	1.4	2.0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9	1.0	.5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97.6	97.7	97.5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867$ p=.648		
노인주간 보호사업	과거수급현재수급	.2	.1	.5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	-	-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99.8	99.9	99.5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1.139$ p=.286		

\*p<.05 \*\*p<.001 \*\*\*p<.000

〈부표 7〉 취업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	탈수급
근로장려금 지원	과거수급현재수급	.9	1.1	-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7	.5	1.5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98.4	98.4	98.5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 <sup>2</sup> =4.550 p=.103	
무료직업훈련	과거수급현재수급	.9	1.0	.5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8	.7	1.0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98.3	98.3	98.5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 <sup>2</sup> =.568 p=.753	
공공근로	과거수급현재수급	1.4	1.1	2.5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3.1	2.8	4.0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95.6	96.1	93.6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 <sup>2</sup> =2.980 p=.225	
자활사업	과거수급현재수급	5.2	6.2	1.5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3.4	3.3	4.0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91.3	90.5	94.6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 <sup>2</sup> =7.222 p=.027	
사회적 일자리	과거수급현재수급	1.0	1.1	.5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1.1	1.0	1.5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97.9	97.9	98.0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 <sup>2</sup> =.990 p=.610	

\*p<.05 \*\*p<.001 \*\*\*p<.000

〈부표 8〉 장애인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	탈수급
장애인	과거수급현재수급	18.9	22.4	5.0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3.6	2.0	10.0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77.5	75.6	85.1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56.572$
장애아동 부양수당	과거수급현재수급	1.6	1.8	.5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1	.1	-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98.3	98.0	99.5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2.155$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과거수급현재수급	.7	.7	.5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	-	-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99.3	99.3	99.5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139$
발달장애아동 지원 비우치	과거수급현재수급	.6	.7	-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3	.2	.5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99.1	99.0	99.5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1.834$
장애인 보장구, 재활기구 보조	과거수급현재수급	1.5	1.8	-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6	.5	1.0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97.9	97.7	99.0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4.436$

\*p<.05 \*\*p<.001 \*\*\*p<.000

〈부표 8〉 장애인(계속)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	탈수급
가시간병 서비스	과거수급현재수급	.4	.5	-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3	.2	.5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99.3	99.3	99.5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1.334$ $p=.513$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신청	과거수급현재수급	.2	.2	-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3	.2	.5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99.5	99.6	99.5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836$ $p=.658$		
이동서비스 (콜택시)	과거수급현재수급	.7	.9	-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4	.4	.5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98.9	98.8	99.5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1.812$ $p=.404$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과거수급현재수급	-	-	-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4	.4	.5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99.6	99.6	99.5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065$ $p=.798$		

\* $p<.05$  \*\* $p<.001$  \*\*\* $p<.000$

〈부표 9〉 한시생계비 지원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	탈수급
한시생계비 지원	과거수급현재수급	12.7	15.6	1.0
	과거수급현재재비수급	4.3	3.3	8.4
	과거비수급현재재비수급	83.0	81.1	90.6
	계	100.0	100.0	100.0
	(수)	(1015)	(813)	(202)
		$X^2=38.714$ $p=.000$		

\*p<.05 \*\*p<.001 \*\*\*p<.000

[부록 2]

(6장 참고) 자활사업 참여자 분석결과 표

(1) 일에 대한 만족도

〈부표 10〉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성별 만족도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작업환경	① 매우 불만족	2.5	4.3	1.7
	② 불만족	8.6	6.5	9.5
	③ 보통	32.1	32.6	31.9
	④ 만족	43.8	43.5	44.0
	⑤ 매우 만족	13.0	13.0	12.9
	계	100.0	100.0	100.0
	(수)	(154)	(44)	(110)
	평균	3.57	3.53	3.58
	$X^2=1.260$ p=.868			
임금수준	① 매우 불만족	22.2	19.1	23.5
	② 불만족	36.4	38.3	35.7
	③ 보통	21.6	19.1	22.6
	④ 만족	13.6	23.4	9.6
	⑤ 매우 만족	6.2	-	8.7
	계	100.0	100.0	100.0
	(수)	(154)	(45)	(109)
	평균	2.45	2.46	2.45
	$X^2=9.323$ p=.054			
사업단 내 인간관계	① 매우 불만족	0.6	-	0.9
	② 불만족	2.4	2.1	2.6
	③ 보통	27.3	29.2	26.5
	④ 만족	54.5	56.3	53.8
	⑤ 매우 만족	15.2	12.5	16.2
	계	100.0	100.0	100.0
	(수)	(155)	(45)	(110)
	평균	3.83	3.82	3.83
	$X^2=.882$ p=.927			
일자리 안정	① 매우 불만족	4.9	4.3	5.2
	② 불만족	17.9	6.4	22.6
	③ 보통	31.5	38.3	28.7
	④ 만족	32.7	36.2	31.3
	⑤ 매우 만족	13.0	14.9	12.2
	계	100.0	100.0	100.0
	(수)	(154)	(44)	(110)
	평균	3.30	3.48	3.23
	$X^2=6.378$ p=.173			

\*p<.05 \*\*p<.001 \*\*\*p<.000

〈부표 10〉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성별 만족도 (계속)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일의 수행능력	① 매우 불만족	0.6	2.1	-
	② 불만족	3.6	6.3	2.6
	③ 보통	40.0	37.5	41.0
	④ 만족	41.8	45.8	40.2
	⑤ 매우 만족	13.9	8.3	16.2
	계	100.0	100.0	100.0
	(수)	(155)	(45)	(110)
	평균	3.65	3.54	3.70
	$X^2=5.602$ $p=.231$			
노동강도	① 매우 불만족	3.1	4.3	2.6
	② 불만족	12.3	17.0	10.3
	③ 보통	36.2	40.4	34.5
	④ 만족	36.2	29.8	38.8
	⑤ 매우 만족	12.3	8.5	13.8
	계	100.0	100.0	100.0
	(수)	(155)	(45)	(110)
	평균	3.44	3.27	3.52
	$X^2=3.355$ $p=.500$			
근로 시간	① 매우 불만족	1.8	-	2.6
	② 불만족	7.3	8.3	6.9
	③ 보통	29.9	37.5	26.7
	④ 만족	38.4	35.4	39.7
	⑤ 매우 만족	22.6	18.8	24.1
	계	100.0	100.0	100.0
	(수)	(156)	(45)	(111)
	평균	3.73	3.64	3.77
	$X^2=3.252$ $p=.517$			

\* $p<.05$  \*\* $p<.001$  \*\*\* $p<.000$

〈부표 11〉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사업 참여별 만족도

(단위 : %)

	구분	전체	자활공동체사업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작업환경	① 매우 불만족	2.5	-	2.4	3.2
	② 불만족	8.6	3.7	9.8	9.6
	③ 보통	32.1	33.3	43.9	26.6
	④ 만족	43.8	48.1	36.6	45.7
	⑤ 매우 만족	13.0	14.8	7.3	14.9
	계	100.0	100.0	100.0	100.0
	(수)	(154)	(27)	(46)	(81)
	평균	3.57	3.75	3.41	3.59
			$X^2=6.495$	$p=.592$	
임금수준	① 매우 불만족	22.1	-	33.3	23.2
	② 불만족	36.2	34.6	33.3	37.9
	③ 보통	22.1	26.9	16.7	23.2
	④ 만족	13.5	23.1	14.3	10.5
	⑤ 매우 만족	6.1	15.4	2.4	5.3
	계	100.0	100.0	100.0	100.0
	(수)	(154)	(27)	(46)	(81)
	평균	2.45	3.20	2.14	2.39
			$X^2=16.386$	$p=.037$	
사업단 내 인간관계	① 매우 불만족	0.6	-	2.3	-
	② 불만족	2.4	3.8	2.3	2.1
	③ 보통	27.3	15.4	37.2	26.0
	④ 만족	54.5	61.5	37.2	60.4
	⑤ 매우 만족	15.2	19.2	20.9	11.5
	계	100.0	100.0	100.0	100.0
	(수)	(155)	(27)	(46)	(82)
	평균	3.83	3.98	3.76	3.82
			$X^2=.882$	$p=.927$	
일자리 안정	① 매우 불만족	5.5	-	9.5	5.2
	② 불만족	18.2	19.2	14.3	19.6
	③ 보통	30.9	19.2	35.7	32.0
	④ 만족	32.1	42.3	28.6	30.9
	⑤ 매우 만족	13.3	19.2	11.9	12.4
	계	100.0	100.0	100.0	100.0
	(수)	(154)	(27)	(45)	(82)
	평균	3.30	3.61	3.19	3.26
			$X^2=6.534$	$p=.588$	

\*p<.05 \*\*p<.001 \*\*\*p<.000

〈부표 11〉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사업 참여별 만족도(계속)

(단위 : %)

	구분	전체	자활공동체사 업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일의 수행능력	① 매우 불만족	0.6	-	2.4	-
	② 불만족	3.7	-	2.4	5.2
	③ 보통	40.2	26.9	53.7	38.1
	④ 만족	41.5	46.2	29.3	45.4
	⑤ 매우 만족	14.0	26.9	12.2	11.3
	계	100.0	100.0	100.0	100.0
	(수)	(155)	(27)	(46)	(82)
	평균	3.65	3.98	3.49	3.63
			$X^2=3.442$ p=.098		
노동강도	① 매우 불만족	2.5	-	4.8	2.1
	② 불만족	12.3	8.0	23.8	8.3
	③ 보통	36.2	24.0	45.2	35.4
	④ 만족	36.2	64.0	21.4	35.4
	⑤ 매우 만족	12.9	4.0	4.8	18.8
	계	100.0	100.0	100.0	100.0
	(수)	(155)	(27)	(46)	(82)
	평균	3.44	3.64	2.97	3.59
			$X^2=23.848$ p=.002		
근로 시간	① 매우 불만족	1.8	-	2.4	2.1
	② 불만족	7.4	4.0	9.8	7.2
	③ 보통	30.1	36.0	39.0	24.7
	④ 만족	38.7	36.0	34.1	41.2
	⑤ 매우 만족	22.1	24.0	14.6	24.7
	계	100.0	100.0	100.0	100.0
	(수)	(156)	(27)	(46)	(83)
	평균	3.73	3.83	3.47	3.81
			$X^2=5.384$ p=.716		

\*p<.05 \*\*p<.001 \*\*\*p<.000

## (2) 일에 대한 태도

〈부표 12〉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성별 인식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내가 시작한 일의 마무리는 항상 스스로 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	-
	② 그렇지 않다	1.2	2.1	0.9
	③ 보통이다	8.6	14.9	6.1
	④ 그런 편이다	47.5	40.4	50.4
	⑤ 매우 그렇다	42.6	42.6	42.6
	계	100.0	100.0	100.0
	(수)	(155)	(45)	(110)
	평균	4.31	4.23	4.34
	$X^2=4.125$ $p=.248$			
내가 맡은 업무는 전체 사업에서 중요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	-
	② 그렇지 않다	1.2	-	1.7
	③ 보통이다	21.6	17.4	23.3
	④ 그런 편이다	43.2	45.7	42.2
	⑤ 매우 그렇다	34.0	37.0	32.8
	계	100.0	100.0	100.0
	(수)	(155)	(45)	(110)
	평균	4.10	4.19	4.06
	$X^2=1.581$ $p=.664$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5.5	4.2	6.0
	② 그렇지 않다	7.9	6.3	8.5
	③ 보통이다	40.0	35.4	41.9
	④ 그런 편이다	28.5	29.2	28.2
	⑤ 매우 그렇다	18.2	25.0	15.4
	계	100.0	100.0	100.0
	(수)	(156)	(45)	(111)
	평균	3.48	3.70	3.39
	$X^2=2.531$ $p=.639$			

\* $p<.05$  \*\* $p<.001$  \*\*\* $p<.000$

〈부표 12〉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사업유형별 인식(계속)

(단위 : %)

	구분	전체	자활공동체 사업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내가 시작한 일의 마무리는 항상 스스로 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	-	-
	② 그렇지 않다	1.8	-	4.8	1.1
	③ 보통이다	8.6	3.8	9.5	9.5
	④ 그런 편이다	47.2	19.2	52.4	52.6
	⑤ 매우 그렇다	42.3	76.9	33.3	36.8
	계	100.0	100.0	100.0	100.0
	(수)	(155)	(27)	(46)	(82)
	평균	4.31	4.76	4.15	4.26
			$X^2=17.523$	$p=.008$	
내가 맡은 업무는 전체 사업에서 중요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	-	-
	② 그렇지 않다	1.2	-	4.9	-
	③ 보통이다	21.6	7.7	22.0	25.3
	④ 그런 편이다	43.2	26.9	39.0	49.5
	⑤ 매우 그렇다	34.0	65.4	34.1	25.3
	계	100.0	100.0	100.0	100.0
	(수)	(155)	(27)	(46)	(82)
	평균	4.10	4.56	4.03	4.00
			$X^2=21.127$	$p=.002$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4.9	3.7	2.5	6.3
	② 그렇지 않다	7.4	-	10.0	8.3
	③ 보통이다	40.5	18.5	50.0	42.7
	④ 그런 편이다	28.8	33.3	20.0	31.3
	⑤ 매우 그렇다	18.4	44.4	17.5	11.5
	계	100.0	100.0	100.0	100.0
	(수)	(156)	(27)	(46)	(83)
	평균	3.48	4.18	3.40	3.33
			$X^2=21.571$	$p=.006$	

\* $p<.05$  \*\* $p<.001$  \*\*\* $p<.000$

### (3)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대보험 가입현황

〈부표 13〉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대보험 가입현황(현재)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국민연금 (현재)	비해당	48.8	49.0	48.7
	직장국민연금	28.7	20.4	32.2
	지역국민연금	.6	2.0	-
	납부예외	7.3	10.2	6.1
	미가입	14.6	18.4	13.0
	계	100.0	100.0	100.0
	(수)	(154)	(45)	(109)
X2=5.469 p=.242				
산재보험	비해당	19.0	25.0	16.5
	가입	73.6	62.5	78.3
	미가입	7.4	12.5	5.2
	계	100.0	100.0	100.0
	(수)	(155)	(45)	(110)
X2=4.862 p=.089				
고용보험	비해당	35.4	43.8	31.9
	가입	50.0	37.5	55.2
	미가입	14.6	18.8	12.9
	계	100.0	100.0	100.0
	(수)	(154)	(44)	(110)
X2=4.255 p=.119				
건강보험	비해당	30.9	36.7	28.4
	직장	27.3	20.4	30.2
	지역	3.6	10.2	0.9
	미가입	7.3	10.2	6.0
	의료급여	30.9	22.4	34.5
	계	100.0	100.0	100.0
	(수)	(154)	(45)	(109)
X2=12.675 p=.013				

\*p<.05 \*\*p<.001 \*\*\*p<.000

〈부표 14〉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대보험 가입현황(수급전)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국민연금 (수급전)	비해당	27.3	20.0	30.6
	가입	38.5	55.6	30.6
	미가입	31.5	20.0	36.7
	모름	2.8	4.4	2.0
	계	100.0	100.0	100.0
	(수)	(135)	(41)	(94)
X2=9.644 p=.022				
산재보험	비해당	35.7	27.3	39.6
	가입	30.0	50.0	20.8
	미가입	31.4	20.5	36.5
	모름	2.9	2.3	3.1
	계	100.0	100.0	100.0
	(수)	(133)	(41)	(92)
X2=12.371 p=.006				
고용보험	비해당	34.0	22.7	39.2
	가입	29.8	50.0	20.6
	미가입	32.6	25.0	36.1
	모름	3.5	2.3	4.1
	계	100.0	100.0	100.0
	(수)	(133)	(40)	(93)
X2=12.610 p=.006				
건강보험	비해당	20.0	18.2	20.8
	가입	70.3	72.7	69.3
	미가입	7.6	6.8	7.9
	모름	2.1	2.3	2.0
	계	100.0	100.0	100.0
	(수)	(136)	(41)	(95)
X2=.217 p=.979				

\*p<.05 \*\*p<.001 \*\*\*p<.000

(4) 자활사업참여자의 기타복지제도 수급 경험

〈부표 15〉 감면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형태		
		전체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기타일반계층
주민세 비과세	과거수급현재수급	46.9	59.6	-
	과거수급현재비수급	11.5	2.2	45.8
	과거비수급현재수급	5.3	5.6	4.2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36.3	32.6	50.0
	계	100.0	100.0	100.0
	(수)	(114)	(90)	(84)
		$X^2=47.162$ p=.000		
TV 수신료 감면	과거수급현재수급	44.1	54.5	4.3
	과거수급현재비수급	13.5	3.4	52.2
	과거비수급현재수급	7.2	8.0	4.3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35.1	34.1	39.1
	계	100.0	100.0	100.0
	(수)	(114)	(90)	(24)
		$X^2=42.956$ p=.000		
전기 요금 할인	과거수급현재수급	60.9	76.7	4.0
	과거수급현재비수급	11.3	1.1	48.0
	과거비수급현재수급	5.2	3.3	12.0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22.6	18.9	36.0
	계	100.0	100.0	100.0
	(수)	(117)	(91)	(26)
		$X^2=60.375$ p=.000		
집전화 기본요금 / 이동전화료 감면	과거수급현재수급	68.7	83.3	16.0
	과거수급현재비수급	5.2	-	24.0
	과거비수급현재수급	7.8	5.6	16.0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18.3	11.1	44.0
	계	100.0	100.0	100.0
	(수)	(119)	(93)	(26)
		$X^2=48.829$ p=.000		

\*p<.05 \*\*p<.001 \*\*\*p<.000

〈부표 15〉 감면(계속)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형태		
		전체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기타일반계층
인터넷 요금 감면	과거수급현재수급	41.8	51.7	4.3
	과거수급현재비수급	5.5	1.1	21.7
	과거비수급현재수급	6.4	6.9	4.3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46.4	40.2	69.6
	계	100.0	100.0	100.0
	(수)	(112)	(88)	(24)
		$X^2=27.464$ p=.000		
음식물 쓰레기 / 종량제 봉투 지원	과거수급현재수급	60.3	74.7	8.0
	과거수급현재비수급	6.9	1.1	28.0
	과거비수급현재수급	4.3	4.4	4.0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28.4	19.8	60.0
	계	100.0	100.0	100.0
	(수)	(117)	(92)	(25)
		$X^2=46.208$ p=.000		

\*p<.05 \*\*p<.001 \*\*\*p<.000

〈부표 16〉 주거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형태		
		전체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기타일반계층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과거수급현재수급	10.9	11.6	8.3
	과거수급현재비수급	4.5	3.5	8.3
	과거비수급현재수급	7.3	9.3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77.3	75.6	83.3
	계	100.0	100.0	100.0
	(수)	(112)	(88)	(24)
		$X^2=3.534$ p=.316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과거수급현재수급	7.2	9.2	-
	과거수급현재비수급	0.9	-	4.2
	과거비수급현재수급	5.4	6.9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86.5	83.9	95.8
	계	100.0	100.0	100.0
	(수)	(113)	(89)	(24)
		$X^2=7.796$ p=.050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과거수급현재수급	6.4	8.1	-
	과거수급현재비수급	0.9	1.2	-
	과거비수급현재수급	5.5	7.0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87.3	83.7	100.0
	계	100.0	100.0	100.0
	(수)	(111)	(87)	(24)
		$X^2=4.477$ p=.214		
전세자금 용자	과거수급현재수급	15.0	17.9	4.3
	과거수급현재비수급	0.9	-	4.3
	과거비수급현재수급	5.6	7.1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78.5	75.0	91.3
	계	100.0	100.0	100.0
	(수)	(109)	(86)	(23)
		$X^2=8.110$ p=.044		
집수리 사업(도배, 장판교체)	과거수급현재수급	20.0	22.1	12.5
	과거수급현재비수급	8.2	5.8	16.7
	과거비수급현재수급	5.5	7.0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66.4	65.1	70.8
	계	100.0	100.0	100.0
	(수)	(111)	(87)	(24)
		$X^2=5.331$ p=.149		

\*p<.05 \*\*p<.001 \*\*\*p<.000

〈부표 17〉 용자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형태		
		전체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기타일반계층
생업자금 용자	과거수급현재수급	0.9	1.2	-
	과거수급현재비수급	0.9	-	4.2
	과거비수급현재수급	6.5	8.3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91.7	90.5	95.8
	계	100.0	100.0	100.0
	(수)	(110)	(86)	(24)
		$X^2=5.844$ $p=.119$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용자금	과거수급현재수급	2.8	3.6	-
	과거수급현재비수급	0.9	1.2	-
	과거비수급현재수급	6.5	8.3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89.7	86.9	100.0
	계	100.0	100.0	100.0
	(수)	(109)	(86)	(23)
		$X^2=3.357$ $p=.340$		

\*p<.05 \*\*p<.001 \*\*\*p<.000

〈부표 18〉 영유아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형태		
		전체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기타일반계층
보육료 지원	과거수급현재수급	11.0	11.9	8.0
	과거수급현재비수급	7.3	6.0	12.0
	과거비수급현재수급	4.6	6.0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77.1	76.2	80.0
	계	100.0	100.0	100.0
	(수)	(110)	(86)	(24)
		$X^2=2.751$ $p=.432$		
아이돌봄 서비스	과거수급현재수급	0.9	1.2	-
	과거수급현재비수급	-	-	-
	과거비수급현재수급	6.5	8.4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92.5	90.4	100.0
	계	100.0	100.0	100.0
	(수)	(109)	(85)	(24)
		$X^2=2.500$ $p=.286$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바우처	과거수급현재수급	1.9	2.4	-
	과거수급현재비수급	0.9	1.2	-
	과거비수급현재수급	6.5	8.4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90.7	88.0	100.0
	계	100.0	100.0	100.0
	(수)	(108)	(84)	(24)
		$X^2=3.190$ $p=.363$		

\* $p<.05$  \*\* $p<.001$  \*\*\* $p<.000$

〈부표 19〉 아동/청소년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형태		
		전체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기타일반계층
인터넷 수능방송	과거수급현재수급	2.8	3.6	-
	과거수급현재비수급	0.9	1.2	-
	과거비수급현재수급	6.5	8.3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89.8	86.9	100.0
	계	100.0	100.0	100.0
	(수)	(111)	(87)	(24)
		$X^2=3.499$ p=.321		
장학금 지원	과거수급현재수급	21.8	25.9	8.0
	과거수급현재비수급	4.5	3.5	8.0
	과거비수급현재수급	5.5	5.9	4.0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68.2	64.7	80.0
	계	100.0	100.0	100.0
	(수)	(113)	(88)	(25)
		$X^2=4.469$ p=.215		
학자금 대출	과거수급현재수급	6.5	6.0	8.3
	과거수급현재비수급	1.9	1.2	4.2
	과거비수급현재수급	8.4	10.8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83.2	81.9	87.5
	계	100.0	100.0	100.0
	(수)	(110)	(86)	(24)
		$X^2=3.697$ p=.296		
신입생 교복 지원	과거수급현재수급	22.7	29.1	-
	과거수급현재비수급	2.7	2.3	4.2
	과거비수급현재수급	5.5	7.0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69.1	61.6	95.8
	계	100.0	100.0	100.0
	(수)	(111)	(87)	(24)
		$X^2=12.062$ p=.007		
방과후 공부방	과거수급현재수급	30.3	34.1	16.7
	과거수급현재비수급	3.7	3.5	4.2
	과거비수급현재수급	6.4	8.2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59.6	54.1	79.2
	계	100.0	100.0	100.0
	(수)	(111)	(87)	(24)
		$X^2=5.849$ p=.119		

\*p<.05 \*\*p<.001 \*\*\*p<.000

〈부표 20〉 노인복지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형태		
		전체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기타일반계층
기초노령연금	과거수급현재수급	4.7	3.6	8.3
	과거수급현재비수급	-	-	-
	과거비수급현재수급	6.5	8.4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88.8	88.0	91.7
	계	100.0	100.0	100.0
	(수)	(109)	(85)	(24)
		X2=2.940 p=.230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과거수급현재수급	0.9	-	4.2
	과거수급현재비수급	-	-	-
	과거비수급현재수급	6.5	8.4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92.5	91.6	95.8
	계	100.0	100.0	100.0
	(수)	(109)	(85)	(24)
		X2=5.519 p=.063		
양로 및 요양시설 입소	과거수급현재수급	0.9	-	4.2
	과거수급현재비수급	-	-	-
	과거비수급현재수급	6.5	8.4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92.5	91.6	95.8
	계	100.0	100.0	100.0
	(수)	(109)	(85)	(24)
		X2=5.519 p=.063		
노인 돌봄 서비스 바우처	과거수급현재수급	-	-	-
	과거수급현재비수급	-	-	-
	과거비수급현재수급	6.5	8.4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93.5	91.6	100.0
	계	100.0	100.0	100.0
	(수)	(109)	(85)	(24)
		X2=2.166 p=.141		
노인 건강검진	과거수급현재수급	2.8	2.4	4.3
	과거수급현재비수급	-	-	-
	과거비수급현재수급	6.6	8.4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90.6	89.2	95.7
	계	100.0	100.0	100.0
	(수)	(108)	(85)	(23)
		X2=2.263 p=.323		

\*p<.05 \*\*p<.001 \*\*\*p<.000

〈부표 20〉 노인복지(계속)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형태		
		전체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기타일반계층
노인 주간 보호사업	과거수급현재수급	0.9	-	4.2
	과거수급현재비수급	-	-	-
	과거비수급현재수급	6.5	8.4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92.5	91.6	95.8
	계	100.0	100.0	100.0
	(수)	(108)	(84)	(24)
		X <sup>2</sup> =5.519    p=.063		

\*p<.05 \*\*p<.001 \*\*\*p<.000

〈부표 21〉 취업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형태		
		전체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기타일반계층
근로 장려금 지원	과거수급현재수급	14.2	18.1	-
	과거수급현재비수급	4.7	3.6	8.7
	과거비수급현재수급	8.5	9.6	4.3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72.6	68.7	87.0
	계	100.0	100.0	100.0
	(수)	(110)	(86)	(24)
	$X^2=6.565$ p=.087			
무료직업훈련	과거수급현재수급	9.3	11.9	-
	과거수급현재비수급	11.1	13.1	4.2
	과거비수급현재수급	4.6	6.0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75.0	69.0	95.8
	계	100.0	100.0	100.0
	(수)	(110)	(86)	(24)
	$X^2=7.411$ p=.060			
공공근로	과거수급현재수급	4.6	4.8	4.0
	과거수급현재비수급	7.3	7.1	8.0
	과거비수급현재수급	6.4	8.3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81.7	79.8	88.0
	계	100.0	100.0	100.0
	(수)	(109)	(85)	(24)
	$X^2=2.287$ p=.515			
자활사업	과거수급현재수급	80.2	87.8	53.8
	과거수급현재비수급	12.1	5.6	34.6
	과거비수급현재수급	5.2	4.4	7.7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2.6	2.2	3.8
	계	100.0	100.0	100.0
	(수)	(117)	(92)	(25)
	$X^2=17.629$ p=.001			
사회적 일자리	과거수급현재수급	26.9	31.8	8.7
	과거수급현재비수급	4.6	4.7	4.3
	과거비수급현재수급	7.4	8.2	4.3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61.1	55.3	82.6
	계	100.0	100.0	100.0
	(수)	(110)	(86)	(24)
	$X^2=6.172$ p=.104			

\*p<.05 \*\*p<.001 \*\*\*p<.000

〈부표 22〉 장애인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형태		
		전체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기타일반계층
장애수당	과거수급현재수급	5.6	7.3	-
	과거수급현재비수급	0.9	-	4.0
	과거비수급현재수급	4.7	6.1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88.8	86.6	96.0
	계	100.0	100.0	100.0
	(수)	(110)	(85)	(25)
	$X^2=6.825$ $p=.078$			
장애아동 부양수당	과거수급현재수급	0.9	1.2	-
	과거수급현재비수급	-	-	-
	과거비수급현재수급	5.6	7.2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93.5	91.6	100.0
	계	100.0	100.0	100.0
	(수)	(109)	(85)	(24)
	$X^2=2.166$ $p=.339$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과거수급현재수급	-	-	-
	과거수급현재비수급	-	-	-
	과거비수급현재수급	5.6	7.2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94.4	92.8	100.0
	계	100.0	100.0	100.0
	(수)	(109)	(85)	(24)
	$X^2=1.838$ $p=.175$			
발달장애 아동 지원 바우처	과거수급현재수급	-	-	-
	과거수급현재비수급	-	-	-
	과거비수급현재수급	5.7	7.3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94.3	92.7	100.0
	계	100.0	100.0	100.0
	(수)	(108)	(84)	(24)
	$X^2=1.861$ $p=.172$			
장애인 보장구, 재활기구 보조	과거수급현재수급	-	-	-
	과거수급현재비수급	-	-	-
	과거비수급현재수급	5.7	7.3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94.3	92.7	100.0
	계	100.0	100.0	100.0
	(수)	(108)	(84)	(24)
	$X^2=1.861$ $p=.172$			

\*p<.05 \*\*p<.001 \*\*\*p<.000

〈부표 22〉 장애인(계속)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형태		
		전체	수급기구	차상위계층 및 기타일반계층
가시간병 서비스	과거수급현재수급	-	-	-
	과거수급현재비수급	0.9	1.2	-
	과거비수급현재수급	5.7	7.3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93.4	91.5	100.0
	계	100.0	100.0	100.0
	(수)	(108)	(84)	(24)
	$X^2=2.194$ $p=.334$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신청	과거수급현재수급	-	-	-
	과거수급현재비수급	-	-	-
	과거비수급현재수급	5.7	7.3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94.3	92.7	100.0
	계	100.0	100.0	100.0
	(수)	(108)	(84)	(24)
	$X^2=1.861$ $p=.172$			
이동서비스(콜택시)	과거수급현재수급	-	-	-
	과거수급현재비수급	-	-	-
	과거비수급현재수급	5.7	7.3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94.3	92.7	100.0
	계	100.0	100.0	100.0
	(수)	(108)	(84)	(24)
	$X^2=1.861$ $p=.17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과거수급현재수급	-	-	-
	과거수급현재비수급	-	-	-
	과거비수급현재수급	5.7	7.3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94.3	92.7	100.0
	계	100.0	100.0	100.0
	(수)	(108)	(84)	(24)
	$X^2=1.861$ $p=.172$			

\* $p<.05$  \*\* $p<.001$  \*\*\* $p<.000$

〈부표 23〉 한시 생계비 지원

(단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형태		
		전체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기타일반계층
한시생계비 지원	과거수급현재수급	2.8	2.4	4.2
	과거수급현재비수급	7.5	3.6	20.8
	과거비수급현재수급	6.5	8.4	-
	과거비수급현재비수급	83.2	95.5	75.0
	계	100.0	100.0	100.0
	(수)	(109)	(85)	(24)
		$X^2=9.860$ $p=.020$		

\*p<.05 \*\*p<.001 \*\*\*p<.000

### (5) 가구의 주요 복지 욕구

〈부표 24〉 미취학자녀

(단위 : %)

		전체	남성	여성
해당가구원 유무	있다	7.3	12.2	5.2
	없다	92.7	87.8	94.8
	계	100.0	100.0	100.0
	(수)	(158)	(47)	(111)
		X2=2.555 p=.110		
해당가구원수	1명	92.3	100.0	85.7
	4명	7.7	-	14.3
	계	100.0	100.0	100.0
	(수)	(11)	(5)	(6)
	평균	1.19	1.0	1.38
		X2=.929 p=.335		
해당 가구원을 돌보는 방식	동거가족	81.8	80.0	83.3
	비동거 가족 및 친척	-	-	-
	개인(베이비시터)	-	-	-
	공공보육시설	-	-	-
	민간보육시설	9.1	-	16.7
	돌보지 못하고 있음	9.1	20.0	-
	기타	-	-	-
	계	100.0	100.0	100.0
(수)	(9)	(4)	(5)	
		X2=2.037 p=.361		
해당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지불하는 월평균 금액	0만원	10.0	33.3	-
	1-10만원 미만	30.0	33.3	28.6
	10-20만원 미만	50.0	33.3	57.1
	20만원 이상	10.0	-	14.3
	계	100.0	100.0	100.0
	(수)	(9)	(3)	(6)
평균	9.75	5.13	12.15	
		X2=3.016 p=.389		

\*p<.05 \*\*p<.001 \*\*\*p<.000

〈부표 24〉 미취학자녀(계속)

(단위 : %)

		전체	남성	여성
가족이나 친척에게 맡기는 이유	비용부담 때문에	80.0	100.0	50.0
	근처에 시설이 없어서	-	-	-
	시간대가 안 맞아서	20.0	-	50.0
	서비스가 마음에 안들어서	-	-	-
	아이가 싫어해서	-	-	-
	기타	-	-	-
	계	100.0	100.0	100.0
	(수)	(4)	(2)	(2)
		$X^2=1.875$ p=.171		
맡기는 시간	시간제	20.0	25.0	16.7
	종일제	70.0	50.0	83.3
	필요한 경우에만	10.0	25.0	-
	계	100.0	100.0	100.0
	(수)	(8)	(3)	(5)
		$X^2=1.964$ p=.171		
해당 가구원을 돌보는 것이 취업 활동에 주는 어려움	① 매우작다	27.3	40.0	16.7
	② 작다	9.1	20.0	-
	③ 보통	18.2	20.0	16.7
	④ 크다	18.2	-	33.3
	⑤ 매우크다	27.3	20.0	33.3
	계	100.0	100.0	100.0
	(수)	(9)	(4)	(5)
	평균	3.18	2.36	3.92
		$X^2=3.606$ p=.462		
해당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취업을 중단한 경험 유무	있다	20.0	-	40.0
	없다	80.0	100.0	60.0
	계	100.0	100.0	100.0
	(수)	(9)	(4)	(5)
			$X^2=2.500$ p=.114	

\*p<.05 \*\*p<.001 \*\*\*p<.000

〈부표 25〉 취학자녀

(단위 : %)

		전체	남성	여성
해당가구원 유무	있다	60.8	52.0	64.7
	없다	39.2	48.0	35.3
	계	100.0	100.0	100.0
	(수)	(158)	(47)	(111)
	$X^2=2.349$ p=.125			
해당가구원수	1명	37.9	62.1	28.4
	2명	44.7	27.6	51.4
	3명	14.6	6.9	17.6
	4명	2.9	3.4	2.7
	계	100.0	100.0	100.0
	(수)	(103)	(25)	(78)
	평균	1.83	1.46	1.96
$X^2=10.549$ p=.014				
해당 가구원을 돌보는 방식	동거가족	53.4	41.7	57.8
	비동거 가족 및 친척	2.3	-	3.1
	개인	2.3	-	3.1
	지역공부방(복지관)	14.8	25.0	10.9
	방과후 교실	11.4	8.3	12.5
	사설학원	9.1	4.2	10.9
	돌보지 못하고 있음	5.7	16.7	1.6
	기타	1.1	4.2	-
	계	100.0	100.0	100.0
	(수)	(87)	(20)	(87)
$X^2=15.510$ p=.030				
해당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지불하는 월평균 금액	0만원	5.5	6.7	5.2
	1-20만원 미만	30.1	33.3	29.3
	20-40만원 미만	35.6	33.3	36.2
	40-60만원 미만	17.8	20.0	17.2
	60만원 이상	11.0	6.7	12.1
	계	100.0	100.0	100.0
	(수)	(73)	(14)	(59)
	평균 (만원)	27.78	25.12	29.75
$X^2=.509$ p=.973				

\*p<.05 \*\*p<.001 \*\*\*p<.000

〈부표 25〉 취학자녀(계속)

(단위 : %)

		전체	남성	여성
가족이나 친척에게 맡기는 이유	비용부담 때문에	38.1	16.7	46.7
	근처에 시설이 없어서	14.3	16.7	13.3
	시간대가 안 맞아서	9.5	16.7	6.7
	서비스가 마음에 안들어서	-	-	-
	아이가 싫어해서	14.3	33.3	6.7
	기타	23.8	16.7	26.7
	계	100.0	100.0	100.0
	(수)	(22)	(6)	(16)
		$X^2=3.809$ p=.432		
맡기는 시간	시간제	37.5	66.7	26.1
	종일제	12.5	-	17.4
	필요한 경우에만	50.0	33.3	56.5
	계	100.0	100.0	100.0
	(수)	(30)	(8)	(22)
		$X^2=5.101$ p=.078		
해당 가구원을 돌보는 것이 취업 활동에 주는 어려움	① 매우작다	39.5	52.4	34.5
	② 작다	13.2	-	18.2
	③ 보통	17.1	23.8	14.5
	④ 크다	10.5	4.8	12.7
	⑤ 매우크다	19.7	19.0	20.0
	계	100.0	100.0	100.0
	(수)	(76)	(18)	(58)
	평균	2.60	2.40	2.67
		$X^2=6.728$ p=.151		
해당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취업을 중단한 경험 유무	있다	26.9	18.2	30.4
	없다	73.1	81.8	69.6
	계	100.0	100.0	100.0
	(수)	(78)	(19)	(59)
		$X^2=1.190$ p=.275		

\*p<.05 \*\*p<.001 \*\*\*p<.000

〈부표 26〉 간병 필요 가구원

(단위 : %)

		전체	남성	여성
해당가구원 유무	있다	3.0	4.4	2.2
	없다	97.0	95.6	97.8
	계	100.0	100.0	100.0
	(수)	(130)	(42)	(88)
			$X^2=.515$ $p=.473$	
해당가구원수	1명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수)	(4)	(1)	(3)
	평균	1.0	1.10	1.40
해당 가구원을 돌보는 방식	동거가족	40.0	50.0	33.3
	비동거 가족 및 친척	-	-	-
	개인(간병사)	-	-	-
	주간/단기보호시설	20.0	-	33.3
	장기요양시설	20.0	50.0	-
	의료기관	20.0	-	33.3
	돌보지 못하고 있음	-	-	-
	기타	-	-	-
	계	100.0	100.0	100.0
	(수)	(5)	(2)	(3)
		$X^2=2.917$ $p=.518$		
해당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지불하는 월평균 금액	30만원	40.0	50.0	33.3
	40만원	20.0	-	33.3
	50만원	40.0	50.0	33.3
	계	100.0	100.0	100.0
	(수)	(5)	(2)	(3)
	평균	40.0	40.0	40.0
		$X^2=3.016$ $p=.389$		
맡기는 시간	시간제	-	-	-
	종일제	50.0	100.0	-
	필요한 경우에만	50.0	-	100.0
	계	100.0	100.0	100.0
	(수)	(2)	(1)	(1)
		$X^2=2.000$ $p=.157$		

\*p<.05 \*\*p<.001 \*\*\*p<.000

〈부표 26〉 간병 필요 가구원(계속)

(단위 : %)

		전체	남성	여성
해당 가구원을 돌보는 것이 취업 활동에 주는 어려움	① 매우작다	-	-	-
	② 작다	-	-	-
	③ 보통	-	-	-
	④ 크다	-	-	-
	⑤ 매우크다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수)	(3)	(1)	(2)
	평균	5.0	-	5.0
해당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취업을 중단한 경험 유무	있다	-	-	-
	없다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수)	(3)	(1)	(2)

\*p<.05 \*\*p<.001 \*\*\*p<.000